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26-10

정책보고서 2016-57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이소영·강은나·기재량·박성화·김정근·김태현·이수욱·최재성



보건복지부



【책임연구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재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정근 강남대학교 교수

김태현 한국통계진흥원 인구사회연구센터장

이수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성 연세대학교 교수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사회는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15년 이상 겪고 있는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제에서 사회경제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약화, 더 나아가 경제의 성장과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범국가적 개입을 시작하였고,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해당 정책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계획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실적을 통한 목표달성률과 예산대비 집행 실적을 통한 예산집행률을 분석하고, 중요한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5년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해당 기간(2011~2015)동안의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성장동력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와 한계,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과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수행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주신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와 해당 부처의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을 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층면접 참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2016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성과평가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성과평가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기본과제 실적 평가	13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15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30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43
제4절 소결	55
제3장 핵심과제 평가	75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77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93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06
제4절 소결	116
제4장 심층 평가	121
제1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고운맘 카드) 평가	123
제2절 육아휴직제도 평가	135
제3절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 평가	148
제4절 노인일자리아업 정책 평가	168
제5절 노인장기요양사업 정책 평가	188
제5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종합평가	209
제1절 저출산 분야	207
제2절 고령사회 분야	221
제3절 성장동력 분야	231

제6장 결론 및 개선방안	249
제1절 요약 및 결론	247
제2절 성과지표 개선방안	252
제3절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283
참고문헌	291
부록	295
부록 1. 전문가조사 조사표	295
부록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특성	338

표 목차

〈표 1- 1〉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과제)	4
〈표 1- 2〉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7
〈표 1- 3〉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8
〈표 1- 4〉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9
〈표 1- 5〉 심층 평가 과제별 분석 대상 및 주요 내용	11
〈표 2- 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추진실적	16
〈표 2- 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추진실적	17
〈표 2- 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18
〈표 2- 4〉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20
〈표 2- 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추진실적	21
〈표 2- 6〉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추진실적	23
〈표 2- 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추진실적	24
〈표 2- 8〉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추진실적	26
〈표 2- 9〉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추진실적	27
〈표 2-10〉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추진실적	28
〈표 2-11〉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30
〈표 2-12〉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추진실적	33
〈표 2-13〉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추진실적	34
〈표 2-14〉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36
〈표 2-15〉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설계 강화(소영역) 추진실적	36
〈표 2-16〉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추진실적	37
〈표 2-17〉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추진실적	38
〈표 2-18〉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추진실적	39
〈표 2-19〉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 추진실적	40
〈표 2-20〉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42
〈표 2-21〉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추진실적	43
〈표 2-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소영역) 추진실적	45
〈표 2-23〉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추진실적	46
〈표 2-24〉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추진실적	48
〈표 2-25〉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추진실적	50
〈표 2-26〉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추진실적	52
〈표 2-27〉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추진실적	52
〈표 2-28〉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 추진실적	53
〈표 2-29〉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추진실적	54
〈표 2-30〉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추진실적	54
〈표 2-31〉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55

〈표 2-32〉 2015년도 저출산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57
〈표 2-33〉 2015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58
〈표 2-34〉 2015년도 고령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61
〈표 2-35〉 2015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62
〈표 2-36〉 2015년도 성장동력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64
〈표 2-37〉 2015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65
〈표 2-38〉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67
〈표 2-39〉 2015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68
〈표 2-40〉 2015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69
〈표 2-41〉 2015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70
〈표 2-42〉 2015년도 저출산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71
〈표 2-43〉 2015년도 고령사회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72
〈표 2-44〉 2015년도 성장동력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73
〈표 3- 1〉 저출산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77
〈표 3- 2〉 저출산 분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82
〈표 3- 3〉 저출산 분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89
〈표 3- 4〉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93
〈표 3- 5〉 고령사회 분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98
〈표 3- 6〉 고령사회 분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103
〈표 3- 7〉 성장동력 분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106
〈표 3- 8〉 성장동력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113
〈표 3- 9〉 성장동력 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115
〈표 3-10〉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핵심과제의 목표달성도	117
〈표 3-11〉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118
〈표 3-12〉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119
〈표 3-13〉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120
〈표 4- 1〉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의 지원 금액	124
〈표 4- 2〉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 평가 연구	125
〈표 4- 3〉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 심층평가 분석대상	126
〈표 4- 4〉 정책 대상여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28
〈표 4- 5〉 정책 대상여부별 산과적 특성	128
〈표 4- 6〉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정식: 추가 출산 의향	130
〈표 4- 7〉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추가출산 의향)	131
〈표 4- 8〉 육아휴직제도 평가 연구	138
〈표 4- 9〉 분석 대상자 특성별 추가 출산 의향 여부	141
〈표 4-10〉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추가 출산 의향)	142
〈표 4-11〉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154
〈표 4-12〉 지역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현황(2015~2016)	158
〈표 4-13〉 결혼 전 희망했던 주택유형(혼인 1년차)	159

〈표 4-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	159
〈표 4-15〉 신혼부부가구의 사용방수	159
〈표 4-16〉 부정기적·비자발적 이사 이유	160
〈표 4-17〉 공공임대주택 인지도	161
〈표 4-1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1순위)	161
〈표 4-19〉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필요한 시설(1순위)	161
〈표 4-20〉 신혼부부 관련 정책 선호도(1순위)	162
〈표 4-21〉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162
〈표 4-22〉 분석모형의 유형 및 종속변수 설정	164
〈표 4-23〉 설명변수 설정	165
〈표 4-24〉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모형 1)	166
〈표 4-25〉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모형 2)	166
〈표 4-26〉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률	170
〈표 4-27〉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예산	170
〈표 4-28〉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175
〈표 4-29〉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현황	175
〈표 4-3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 중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내용	176
〈표 4-31〉 2011~2015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창출현황	176
〈표 4-32〉 2011~2015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현황	177
〈표 4-33〉 시니어인턴십 사업추진 실적	179
〈표 4-34〉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추진 실적	180
〈표 4-35〉 2011~2015년 시니어클럽 현황	181
〈표 4-36〉 연도별 시니어직능클럽 지정개수 및 창출 목표 실적	182
〈표 4-3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및 참여희망노인의 일반적 특성	183
〈표 4-38〉 삶의 영역별 만족도	184
〈표 4-39〉 연도별 신규등급 인정자의 최초 갱신결과 동일등급 유지자 분포	190
〈표 4-4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추이	192
〈표 4-41〉 장기요양기관 변화추이	193
〈표 4-42〉 장기요양인력 변화추이	193
〈표 4-43〉 장기요양보험료 급여비 지출	193
〈표 4-44〉 2011~2015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성과지표 및 달성률	195
〈표 4-45〉 2011~2015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집행예산	195
〈표 4-46〉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198
〈표 4-4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추이	200
〈표 4-4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세부 과제별 전문가 평가(N=12)	201
〈표 4-49〉 지난 5년간(2011-2015) 긍정적 변화 정도 및 지속추진의 필요성(N=12)	202
〈표 5- 1〉 저출산 분야 연도별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 추진실적	209
〈표 5- 2〉 핵심과제의 18개 성과지표별 연도별 실적	210
〈표 5- 3〉 저출산 분야 연도별 90% 이상 예산 집행 과제 추진실적	211

〈표 5- 4〉 고령사회 분야 연도별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 추진실적	224
〈표 5- 5〉 핵심과제 17개 성과지표의 연도별 실적	225
〈표 5- 6〉 고령사회 분야 연도별 90% 이상 예산 집행 과제 추진실적	226
〈표 5- 7〉 성장동력분야 평가과제 및 예산 변화:2011~2015	232
〈표 5- 8〉 성장동력분야 연도별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 추진실적	233
〈표 5- 9〉 핵심과제의 10개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234
〈표 5-10〉 성장동력 분야 연도별 90% 이상 예산 집행 과제 추진실적	236
〈표 5-11〉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2013년 기준	237
〈표 5-12〉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전망과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242
〈표 6- 1〉 저출산 분야 성과지표별 평가척도 평균점수	254
〈표 6- 2〉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56
〈표 6- 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57
〈표 6-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61
〈표 6- 5〉 고령사회 분야 성과지표별 평가척도 평균점수	263
〈표 6- 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64
〈표 6- 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68
〈표 6- 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70
〈표 6- 9〉 성장동력 분야 성과지표별 평가척도 평균점수	272
〈표 6-1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74
〈표 6-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78
〈표 6-12〉 성장동력정책 3. 고령친화산업 육성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279
〈표 6-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차별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checklist)	286
〈표 6-1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과정	287
〈부 록 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일반적 특성 비교	338

그림 목차

[그림 2-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15
[그림 2-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19
[그림 2-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26
[그림 2- 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31
[그림 2- 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37
[그림 2- 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41
[그림 2- 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44
[그림 2- 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51
[그림 2- 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53
[그림 3- 1]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78
[그림 3-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79
[그림 3- 3] 유연근로제 확산 핵심성과지표: 행정기관 유연근로제 이용률(%)	80
[그림 3-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81
[그림 3- 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사)	81
[그림 3- 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83
[그림 3- 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핵심성과지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84
[그림 3- 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 지역 수(개소)	84
[그림 3- 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핵심성과지표: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85
[그림 3-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율(%)	86
[그림 3-11]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핵심성과지표: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87
[그림 3-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	87
[그림 3-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88
[그림 3-1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89
[그림 3-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명)	90
[그림 3-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성과지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91
[그림 3-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성과지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92
[그림 3-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92
[그림 3-19]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성과지표: 고령자(55~64세) 고용률(%)	94
[그림 3-2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성과지표: 50세 이상 취업성공까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합 가입률(%)	95
[그림 3-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95
[그림 3-2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성과지표: 퇴직연금 가입률(%)	96
[그림 3-23]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97
[그림 3-24] 노후설계 기반 조성 핵심성과지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97
[그림 3-2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 수(만명)	99
[그림 3-26]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공적 소득보장률(%)	99
[그림 3-2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천명)	100

[그림 3-2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01
[그림 3-2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102
[그림 3-3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천명)	102
[그림 3-3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03
[그림 3-3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성과지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104
[그림 3-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 명당)	105
[그림 3-3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105
[그림 3-3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소)	106
[그림 3-3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108
[그림 3-3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핵심성과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명)	109
[그림 3-3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핵심성과지표: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규모(명)	110
[그림 3-3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핵심성과지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111
[그림 3-4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112
[그림 3-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112
[그림 3-42] 금융분야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113
[그림 3-4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성과지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114
[그림 3-44]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핵심성과지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115
[그림 3-45]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성과지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개소)	116
[그림 4- 1] 정책 대상여부별 추가 출산 의향	129
[그림 4- 2] 육아휴직이용 현황	136
[그림 4- 3]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138
[그림 4- 4]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154
[그림 4- 5] 거주지 선택시 고려사항(10점 척도 평균)	160
[그림 4- 6]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174
[그림 4- 7] 세부과제 내용의 적절성(N=12)	202
[그림 4- 8] 세부과제의 추진성과(N=12)	202
[그림 4- 9] 지난 5년간 긍정적 변화 정도(N=12)	203
[그림 4-10] 지속추진 필요성(N=12)	203
[그림 5- 1]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17
[그림 5- 2]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	229
[그림 5- 3] 고령친화산업의 환경변화	241

제 1 장

서론

제1절 성과평가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성과평가 내용 및 방법

제1절 성과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성장동력 분야와 관련
된 총 2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과 제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매년 수립하며 추진하게 되어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 연도의 추진실적과 익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평가
하고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따른 2006~2010년도 중앙부처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는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실시되었음(이삼식 외, 2014, p.3)
 -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1차 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2009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지표를 간명화하고 지수화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따른 2011~2015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
한 성과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
 -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를 마련
함
 - 시행계획 상 과제는 핵심과제와 기본과제로 구분함
 - 핵심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는 전문가에 의해 설정되고 부처

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하는 절차를 가짐

- 기본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는 해당 부처(부서)가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직접 설정하는 절차를 가짐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1차년도인 2011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2012년에 실시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차년도인 2012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2013년에 실시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3차년도인 2013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2014년에 실시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4차년도인 2014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2015년에 실시됨
-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5차년도인 2015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에 제시된 총 234개 기본과제 및 45개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

□ 평가대상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임

- 중앙정부(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저출산 분야 98개 과제, 고령사회 분야 76개 과제, 성장동력 분야 60개 과제 총 23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총 234개 과제 중 이미 사업이 종료 또는 완료된 과제 및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11개)를 제외한 223개 과제가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대상이 됨

〈표 1-1〉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기본과제)

구분	평가대상 과제 수	최종 평가 과제 수	기 종료(완료)	성과지표 없는 과제
전체	234	223	6	5
저출산 분야	98	90	4	4
고령사회 분야	76	75	1	-
성장동력 분야	60	58	1	1

- 핵심과제는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 고령사회 분야 17개 과제, 성장동력 분야 10개 과제, 총 45개 과제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므로 본 성과평가의 대상에서는 제외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는 총 6단계를 거쳐 실시됨(강은나 외, 2015, p.27)
 - 1단계: 평가지침 및 추진실적 자료 요청
 - 시행계획 상 제시된 과제 관련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일정, 평가방법, 성과지표 등을 수록한 지침을 해당 부처에 통보
 - 2단계: 기본과제 및 핵심과제 추진실적 제출
 - 기본과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015년도 과제별 목표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 예산계획, 집행액, 집행률 등)을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핵심과제는 성과지표과 산식, 목표치와 실적치, 실적에 대한 근거수치 및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3단계: 기본과제 및 핵심과제 추진실적 검토
 - 성과평가 연구 주체(기관)는 각 부처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한 실적을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부처 확인을 통해 수정·보완
 - 4단계: 추진실적 평가
 - 성과평가 연구 주체(기관) 부처 확인을 통해 완료된 추진실적에 대해 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 등을 산출하고 분석·평가
 -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지표 값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 5단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평가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6단계: 성과평가 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토록 함
 - 총 6개 단계 중 1~2단계와 5~6단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각 정책 또는 사업들을 수행한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3~4단계를 수행하게 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기본과제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2011년~2015년) 핵심과제의 추진 실적을 검토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있음

제2절 성과평가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는 기본과제에 대한 평가,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 핵심과제 중 중요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 심층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체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된 핵심과제(45과제)의 수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 선정된 분야별 각각의 성과지표 의거하여 연차별 목표치에 대비한 달성도를 평가
-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종류, 개수, 지표별 측정산식, 연도별 목표치는 제9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2011. 12)에서 심의·확정되었고, 2013년과 2014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부 핵심지표에 대해 수정된 결과에 의거
- 핵심과제 중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 제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대해 2011~2014년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 추진 성과에 대한 시계열적 제시

○ 일부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평가

- 핵심과제 중 투입된 예산, 정책의 중요도(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 정책의 보편성, 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5개 핵심과제를 선정
- 저출산 분야 18개 핵심과제 중 투입된 예산, 정책의 중요도(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 정책의 보편성, 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개 핵심과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임(표 1-2 참조)

〈표 1-2〉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핵심과제	2014년 집행액 ¹⁾	정책의 중요도 ²⁾	정책의 보편성 ³⁾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05,350 + α ⁴⁾	△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8,919,560	△	○
육아휴직제도 개선	753,689	○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655,430	△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398,251	○	△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51,806	△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20,096	△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85,996	○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81,449	△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65,236	△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63,038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825	△	△
유연근로제 확산	24,088	○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0,345	△	△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17,316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554	△	△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1,769	△	○

주 1) 집행액은 관련 기본과제의 2014년도 집행액임.

2) 중요도는 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핵심과제는 ○, 기본과제는 △로 제시함.

3) 보편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로 제시함.

4) α 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집행액을 의미함.

5) 과제 집행 예산이 없는 핵심과제는 심층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

- 고령사회 분야 17개 핵심과제 중 투입된 예산, 정책의 중요도(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 정책의 보편성, 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개 핵심과제는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임(표 1-3 참조)

〈표 1-3〉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핵심과제	2014년 집행액 ¹⁾	정책의 중요도 ²⁾	정책의 보편성 ³⁾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870 + α ⁴⁾	○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6,860,533	△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584,931	○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576,389	△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218,440	△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196,785	△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65,808	○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52,965	○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32,956	○	○
고령자 고용연장	31,128	○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9,076	△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8,482	△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11,220	△	○
학대노인 보호강화	11,072	△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5,436	△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1,236	○	△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0	△	○

주 1) 집행액은 관련 기본과제의 2014년도 집행액임.

2) 중요도는 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으로 핵심과제는 ○, 기본과제는 △로 제시함.

3) 보편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로 제시함.

4) α 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예산 집행액을 의미함.

5) 과제 집행 예산이 없는 핵심과제는 심층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

- 성장동력 분야 6개 핵심과제는 투입된 예산, 정책의 중요도(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 정책의 보편성, 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했을 때 선정되지 않음(표 1-4 참조)

〈표 1-4〉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핵심과제	2014년 집행액 ¹⁾	정책의 중요도 ²⁾	정책의 보편성 ³⁾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100,447	△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63,096	△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50,258	△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강화	21,791	△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18,327	○	△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17,576	△	△

주 1) 집행액은 관련 기본과제의 2014년도 집행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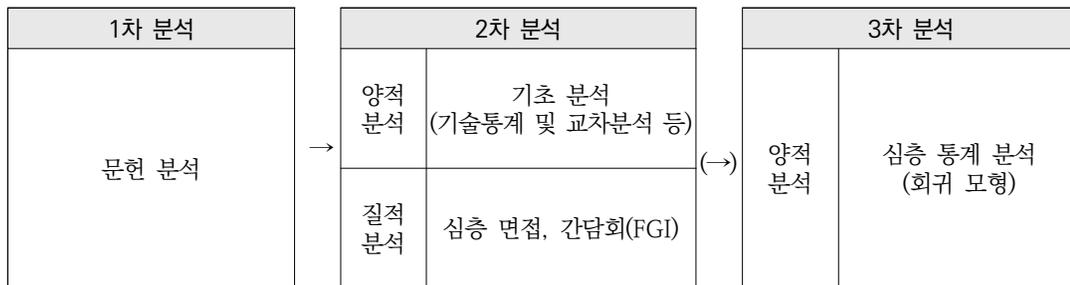
2) 중요도는 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성으로 핵심과제는 ○, 기본과제는 △로 제시함.

3) 보편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는 △로 제시함.

4) 과제 집행 예산이 없는 핵심과제는 심층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

- 최종적으로 저출산 분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의 3개 과제, 고령사회 분야에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의 2개 과제가 심층 분석을 통한 평가 주제로 선정됨

○ 심층 평가를 위한 단계



- 심층 평가 주제에 따라 가능한 단계까지 분석

□ 실적 평가

○ 중앙부처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부처에서 과제별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에 근거하여 각 부처별 자체 평가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
- 2015년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별로 책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 평가

□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기본과제 성과지표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 SMART 분석의 관점을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성과지표를 평가
 - ※ SMART 기준은 성과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선행 연구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나 성과지표를 수립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됨(최정아, 2014; 김영록, 2013)

* SMART 기준을 활용한 성과지표의 평가

- 지표의 구체성(specific)
- 지표의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지표의 달성 가능성(attainable)
- 지표의 과제목표와의 관련성(relevant)
- 지표의 시간 내 달성 가능성(time-bounded)

- 성과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환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 제2차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영역별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에 관한 총평

- 제2차 기본계획 실행 전반에 관한 영역별 총평
- 영역별 2차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걸쳐 관련된 외부 전문가 활용

2. 연구 방법

□ 심층평가 방법

- 체계적 문헌 연구
 - 2010년 이후 관련 과제에 대한 학술 논문 및 보고서 분석
- 행정통계 및 정책통계 자료 분석
- STATA 및 SAS 등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심층 통계 분석(양적 분석)
 - 활용 가능 Data: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복지패널, 노인실태조사
 - 분석 방법: 정책 개입의 효과성 및 영향력 분석을 위한 회귀 모형 등
- 정성적 평가 방법(질적 분석)
 - 핵심 과제 중 선정된 5가지 심층 평가 과제에 관한 질적 분석
 - 전문가 및 관련 과제 담당자(정책 제공자), 정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접 조사 또는 간담회(FGI)

〈표 1-5〉 심층 평가 과제별 분석 대상 및 주요 내용

심층 평가 과제	분석 대상	주요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정책 대상자: 2010년~2015년 동안 임신 및 출산한 여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 및 개선 사항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산부인과 관련 보건의료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체감도 -향후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육아휴직제도 개선	-정책 대상자: 2010년~2015년 동안 육아휴직 대상자인 여성(육아휴직 이용자와 육아휴직 비이용자)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및 만족도 -육아휴직 이용 및 비이용의 이유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의 욕구 및 개선 사항
	-공공기관, 기업의 인사관련 담당자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문화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	-정책 대상자: 2010년~2015년 동안 결혼한 여성(신혼부부주택지원 이용자 및 비이용자)	-신혼부부주택지원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만족도 -신혼부부주택지원 이용 및 비이용의 이유 -신혼부부주택지원 이용에 있어서의 개선점
	-은행 및 LH 등 신혼부부주택지원 담당자	-신혼부부주택지원에 대한 인식 -신혼부부주택지원 제도에 관한 욕구 및 개선 사항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및 질적 확대	-정책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참고하고 있는 사업 특성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만족도, 개선사항
	-서비스제공자: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방향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의 내실화	-정책대상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재가급여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등급판정, 서비스이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경험 및 만족도 서비스 이용의 한계와 개선점
	-서비스제공자: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기관 중간관리자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에 대한 평가 -서비스제공기관 및 인력 -제도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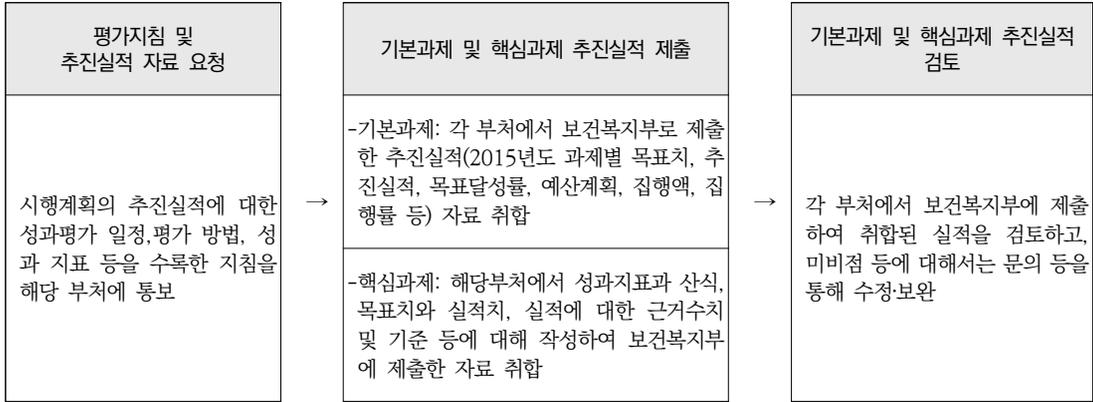
□ 결과의 환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전문가 의견조사간담회

- 성과평가 결과 객관성 확보 및 핵심과제의 중요도와 성과지표의 유용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간담회 등 개최

□ 실적 평가 방법

- 2015년도 시행계획 상 기본과제 및 핵심과제에 대한 실적 분석
 - 정책별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

○ 추진실적 취합을 위한 방법



제 2 장

기본과제 실적 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 제4절 소결

2

기본과제 실적 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 본 절에서는 저출산 분야 98개 과제, 고령사회분야 76개 과제, 성장동력분야 60개 과제, 총 234개 과제의 실적분석을 통한 추진성과와 예산 집행률을 제시함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의 총 3개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소영역은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산전 후 휴가 등 제도 개선'의 3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완료과제(3개)를 제외한 6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당초 목표 미달성 과제는 1개임. 해당 과제의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음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1-5)의 성과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성과목표 미달성. 19대 국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목표달성이 부진하였고,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계류 중에 있음
- (예산 집행률) 완료과제(3개)와 비예산과제(2개)를 제외한 4개 과제 중 2개 과제(1-1, 1-4)는 전액 집행(100.0%),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1-2)의 집행률은 97.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9)는 의 집행률은 81.3%임. 해당 과제의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9)’의 성과지표는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으로 제도 이용 요건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으로 제한적인 이유로 적용대상 자체가 적고(비정규직의 경우 출산휴가 전 퇴사하는 비율이 높음), 제도 홍보도 어린이집, 소규모 병원 등 특정 업종에 국한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향후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주 지원 제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② 지원사업장 발굴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업종 위주로 우수사례 확산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제도 활용 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

〈표 2-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개정완료 (2011)	100.0	500,663	500,663	100.0
	육아휴직대체인력 확대 ²⁾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1-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개정완료 (2014)	100.0	25,996	25,360	97.6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1-3)	해당 없음	완료과제(20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출산전후 휴가자수*100	1.3	2.1	161.5	7,204	7,204	100.0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1-5)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	미달성	0.0	비예산		
산전 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산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쌍둥이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1-6)	해당 없음	완료과제(2013)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1-7)	해당 없음	완료과제(2014)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1-8)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점검실시	전국 507개 사업장	100.0	비예산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지도점검 완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9)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	고용보험법 고시 개정	고시 개정 (2015)	100.0	1,264	1,028	81.3

주: 1) '15년 육아휴직자는 87,339명이고, 육아휴직 종류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은 '15년 84.2%임
 2) '15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현황은 6,602명임.

나.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소영역은 ‘유연근로제 확산’, ‘유연근로형태 도입여건 조성’의 2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7개 과제 모두 100.0% 초과달성

- 특히,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의 성과지표인 컨설팅기업 수는 536.7%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예산 집행률) 비예산과제(3개)를 제외한 4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0%이상이며, 그 중 1개 과제(1-14)는 전액 집행

(표 2-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유연근로제 확산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1-10)	유연근무제 이용률(%) ¹⁾	15	18.9	126.0	비예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1-11)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인원 목표달성률(%)	981명 이상	1,659	169.1	비예산		
		국가직 지방직	607명 이상	1,306	215.2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1-1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명)	9,240	11,636	125.9	40,752	40,674	99.8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1-13)	유연한 근무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개소)	3	3	100.0	992	924	93.1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1-14)	스마트워크 센터 이용률(%) ²⁾	60	99.5	165.8	3,461	3,461	100.0
	육아연계형 스마트 워크 센터 모델개발(1-15)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사업장수(개소)	1	1	100.0	1,062	1,060	99.8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1-16)	컨설팅 기업 수(개)	90	483	536.7	비예산		

주: 1) 유연근무제 이용률=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수/대상인원×100
 2) 스마트워크센터 연간 이용률 = ∑(이용자수/(운영일수×센터좌석수))

다.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소영역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기업 등 참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1개 과제 중 8개 과제는 100.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내고, 나머지 1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98.0%이며, 나머지 2개 과제는 성과지표가 없음

-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강화(1-24) 과제는 각 기관별로 업무의 특수성, 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초과근무를 관리할 사항이므로 성과지표 제정을 통한 초과근무 강제 감축은 어려워 성과지표 부재
-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1-25) 과제는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과제로서 매년 지표선정 계획에 따라 지표개발 TF 심의를 거쳐 지표의 반영 최종규모 및 내용이 확정되므로 성과목표 달성도는 미리 설정할 수 없음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8개)를 제외한 3개 과제 중 전액집행 과제는 2개, 나머지 1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61.9%임. 해당 과제의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음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1-22) 과제의 성과지표는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에 있어 개별 기업들이 입법추세를 관망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됨에 따라 예산집행 부진

〈표 2-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1-17)	직장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92.0	92.8	100.9	92,388	92,379	100.0
		민간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수(개소)	650	785	120.8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제고(1-18)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사업장 명단 공표(회)	1	1	100.0	비예산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회)	1	1	100.0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기업 등 참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1-19)	가족친화 포럼 활동 횟수(회)	4	9	225.0	과제 1-21에 포함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횟수(회)	12	19	158.3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인센티브 추가 제공 건수(건)	5	8	160.0	과제 1-21에 포함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1-2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개)	200	602	301.0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1-22)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시간)	2,030	2071	98.0	59,486	36,798	61.9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1-23)	가족사랑의 날 시행률(%)	91.0	98.0	107.7	과제 1-21에 포함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강화(1-24)	해당 없음 (*부처별 자체평가)	해당 없음	-	-	비예산		
	출산장려 우수지역 (지자체) 인센티브(1-2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예산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1-26)	고시개정	개정	개정완료	100.0	비예산		
	대체인력뱅크 구축 지원(1-27)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비율(%) ¹⁾	76.0	92.4	121.6	비예산		

주: 1)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비율=육아휴직대체인력 활용자 수/육아휴직 이용 공무원 수×100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총 4개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소영역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7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당초 목표 미달 성 과제는 1개임. 해당 과제의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음

-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 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31)의 성과지표는 시설 사업 기본계획 및 고시와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으로 각각의 목표 달성률은 85.7%, 66.7%임. 첫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지표 관련 7개 과제 중 1개 사업이 취소되어 6개 사업이 고시 완료되었고, 두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지표 관련 총 3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소송 진행 중으로 기숙사 협약체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5개)를 제외한 1개 과제(1-34)는 전액 집행(100.0%)되었고,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1-31)의 집행률은 95.7%임

〈표 2-4〉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1-28)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	100.0	100.0	100.0	비예산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1-29)	신혼부부 우선입주 시행(%)	100.0	100.0	100.0	비예산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1-30)	행복주택 공급률(%) ¹⁾	38,000호	38,000호	100.0	1,045,368	1,000,890	95.7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31)	시설사업 기본 계획 및 고시	7	6	85.7	비예산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3	2	66.7	비예산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1-32)	기혼자 가구 장학금 우대(건)	2	2	100.0	비예산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1-33)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개소)	170	201	118.2	비예산		
		예비부부 교육인원(명)	7,500	18,526	247.0	비예산		
		작은 혼인식 서명(명)	2,000	78,359	3918.0	비예산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1-34)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천명)	1,946	2,303	118.3	16,873	16,873	100.0

주: 1) 행복주택 공급률=(사업승인호수/목표호수)×100

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소영역은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의 4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1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1개 과제는 시행계획 수립 당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당초 목표 미달성 과제는 3개임. 해당 과제의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1-39)의 성과지표는 고위험 임신부 수혜자 수로 목표달성률은 15.0%임. 본 사업은 '15년 7월부터 시행하여 시행초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였고,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강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지원 실적이 저조함. 사업 활성화 및 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사업 수혜대상에 대한 직접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지원기준 개선 등을 지속하여 사업 개선 노력을 추진함
-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1-41)의 성과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로 목표달성률은 70.0%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인식부족 등으로 서비스 신청률 부진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 정부 3.0 행복출산 윈스톱서비스사업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서비스를 통합신청하게 함으로써 출산비용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률을 제고하고자 함

○ (예산 집행률) 총 11개 과제 중 90.0% 이상 예산집행률을 나타내는 과제는 8개이며 이중 6개 과제는 전액 집행되었고, 예산집행률이 90.0% 미만인 과제는 3개임

-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1-40)’ 과제의 예산 집행률은 67.5%로 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원 단가를 50% 감액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함
-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1-41)’ 과제의 예산 집행률은 54.3%로 사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 발생함에 따라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청률 제고 노력 강화

〈표 2-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1-35)	분만산부인과 누적설치 개소수(개소)	12	12	100.0	11,050	10,024	90.7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1-36)	실제 설치 병상수/ 계획 설치 병상수 (병상수)	50	50	100.0	10,140	10,140	100.0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1-37)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건)	76,000	82,153	108.1	92,552	90,780	98.1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8)	영유아 완전 접종률(%) ¹⁾	93.0	94.0	101.1	383,860	383,860	100.0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1-39)	고위험임산부 수혜자 수(명)	8,440	1,268	15.0	8,817	8,817	100.0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1-40)	내용부재	내용부재	-	-	7,810	5,270	67.5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1-4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²⁾	80	56	70.0	1,426 (지방비 711)	779 (지방비 381)	54.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42)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연간 상담 건수(건))	8,700	10,721	123.2	267	267	100.0
	영유아 건강관리(1-43)	선천성대사이상(PKU)환아 장애 예방률(%) ³⁾	98.2	98.2	100.0	38,401	38,401	100.0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1-44)	대상자 수(천명)	90.0	90.0	100.0	18,060 ⁴⁾	18,060	100.0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91.5	91.3	99.7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1-45)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⁵⁾	16	17.9	111.9	49,294	39,514	80.2

주: 1) 영유아 완전 접종률=(기본접종 3종(B형간염3차, DTPa3차, 폴리오3차) 완전접종자수/접종대상자수)×100
 2) 1~3급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을 반영하여 '12년 실적대비(81.5%, 575/793명) 약 7% 증가한 지원율 80%로 목표치
 3) 선천성 대사이상(PKU)환아 장애예방률=선천성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없는 PKU환아수/PKU환아수×100
 4) '13년도부터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포괄보조방식) 예산으로 이관되어 영양플러스사업 별도 예산 산출 불가
 5)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연간 수혜자 수/연간 출생아 수×100

다.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소영역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의 4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8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목표달성률이 9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중 5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으며,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는 1개(1-51)임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51)는 '1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제22조의2)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당초 '15.12.31에서 '18.12.31로 연장함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를 제외한 5개 과제 모두 예산은 전액 집행

〈표 2-6〉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확대(1-46)	보육료 지원 만족도(%)	62.0	72.7	117.3	4,687,138	4,687,138	100.0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복지부)(1-47-①)	3~5세 누리과정 연수 교사 수(명)	148,872	134,834	90.6	282	282	100.0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교육부)(1-47-②)	만3~5세아 취원율(%) ¹⁾	91.5	92.2	100.8	3,940,711	3,940,711	100.0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1-48)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75	72	96.0	1,887,141	1,887,141	100.0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1-49)	국내입양비율(%) ²⁾	61.0	64.0	104.9	25,660	25,660	100.0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50)	다자녀 가구 장학금 우대(건)	2	2	100.0	비예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5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비예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 개정(%)	100	100	100.0	비예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3)	'사교육비 의식 조사' 결과 분석 및 발표(회)	1	1	100.0	1,800	1,800	100.0

주: 1) 만3~5세아 취원율=취원아 수/취원대상아 수×100

2) 국내입양비율=국내입양아수/(국내입양아 수+국외 입양아 수)×100

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소영역은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5개 세부 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9개 과제 중 목표달성률이 90% 이상인 과제는 17개이며 이 중 15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나머지 2개 과제는 각각 57.1%, 80.0%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냄. 해당 사업의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1-55)' 사업의 성과지표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로 목표달성률은 57.1%임.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사업부지 및 운영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목표달성이 부진함. 향후 수요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요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1-71)' 사업의 성과지표는 '방과 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로

목표 달성률은 80.0% 임.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1학생 1스포츠 가입 및 1학생 1악기 다루기 등 예술·체육 강화 정책 추진으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 다양해 졌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진로, 동아리, 예술체육, 진로체험 등) 및 각종 동아리 활동 증가로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강사가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포함시킴에 따라 목표달성률이 부진함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4개)를 제외한 15개 과제 중 90.0% 이상 집행과제는 13개 인데, 이 중 9개 과제는 전액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과제의 예산 집행률은 각각 63.4%, 87.1% 임. 해당 과제의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1-55)’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63.4%로 사업부지 및 운영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실제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함. 향후 수요조사 정확도를 제고하고 사업을 다양화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함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3)’의 성과지표는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실시 어린이집 개소 수’로 예산 집행률은 87.1%임. '15년은 시간제보육 본 사업 시행 첫 해로 신규 시간제 보육반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이 소요(리모델링, 교사채용 등)됨에 따라 개설시기 순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따라서 이용대상 아동이 영아인 점을 감안하여, 부모의 인지와 신뢰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표 2-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 수(개소)	150	150	100.0	70,576	63876.0	90.5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1-55)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개소)	7	4	57.1	1471	932	63.4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1-56)	평가 인증률(%) ¹⁾	117.0	124	106.0	8600.0	8600.0	100.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7)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명)	9.3	9.3	100.0	80,886	80,114	99.0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8)	보수교육 인원(명)	80	90	112.5	2,340	2,340	100.0
	유치원 평가 내실화(1-59)	사립유치원 평가 실시율(%) ²⁾	34.2	34.1	99.7	2,000	2,000	100.0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1-60)	시간연장, 휴일, 24시 어린이집 수 합계(개소)	9,400	9,155	97.4	119,865	119,865	100.0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1-61)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 ³⁾	99.0	99.6	100.6	41,392	41,392	100.0

세부영역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1-62)	실수요계층을 위한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 수립	입소 우선 순위 관련 법률 및 시스템 개선	완료	100.0	비예산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3)	시간차등형 보육시험사업 실시 어린이집 개소수(개소)		230	237	103.0	15,014	13,072	87.1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4)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수(개소)		90	109	121.1	1,050	1,045	99.5
공동육아나눔터 연 이용자수(명)			200,000	297,565	148.8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6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수(가구)		54,000	57,687	106.8	122,829	114,907	93.6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점)		72.1	77.9	108.0			
	방과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66)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이용 아동수(명)		16,000	25,418	158.9	비예산(과제 1-65에 포함)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1-67)	종일제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수(명)		4,500	5,614	124.8	비예산(과제 1-65에 포함)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8)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수혜율, %) ⁴⁾		44.4	59.0	132.9	285,865	285,864	1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1-69)	1) 청소년 만족도(점)	내용부재	84.1	100.0	30,398	30,398	100.0	
		2) 학부모 만족도(점)	내용부재	83.9	100.0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1-70)	1)초등돌봄교실수(실)		10,966	12,380	112.9	351,464	351,464	100.0
		2) 학부모 만족도(%)		92.0	94.8	103.0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1-71)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개)		60	48.0	80.0 ⁶⁾	비예산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72)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7,500	7,778	103.7	76,666	76,666	100.0	

주: 1) 평가인증률=평가인증통과시설(누계)/전체어린이집×100
 2) 사립유치원 평가 실시율=3년 주기내 매년 평가실시 유치원 수/총유치원 수×100
 3)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전체유치원×100
 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수혜율=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수/방과후 돌봄필요 아동수×100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은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의 총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소영역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4개 과제 모두 100.0% 이상 목표달성함

○ (예산 집행률) 총 4개 과제 모두 90.0% 이상의 예산집행률을 나타내고, 이 중 2개 과제는 전액 집행함

<표 2-8>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1-73)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	25.5	34.5	135.3	68,083	68,063	100.0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확대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1-74)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의 변화정도(p)	17.0	17.9	105.3	21,646	21,646	100.0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1-75)	퇴소아동 자립률(%)	77.0	77.8	101.0	16,800	16,407	97.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1-76)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27.5	29	105.5	15,952	15,752	98.7

나.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소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7개 과제 모두 90.0% 이상 목표달성률을 나타내고, 이 중 4개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100.0% 이상임
- (예산 집행률) 총 7개 과제 중 4개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고, 2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0% 이상이며, 나머지 1개 과제는 예산 불용
 -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1-79)’ 과제의 성과지표는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이고 예산집행률은 82.8%임.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세수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불용액 발생한 것에 기인함

〈표 2-9〉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1-77)	'15년 취약계층 아동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아동 수(명)	80,000	80,890	101.1	73,169	73,169	100.0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휴먼네트워크 확대(1-78)	멘토링시스템 상 협력기관 수(누적 개소)	900	848	94.2	1,067	1,067	100.0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1-79)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천명, 연인원)	40,000	43,346	108.4	99,910	82,696	82.8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80)	1) 청소년 지원사업 수혜 청소년 수(명)	296,640	522,104	176.0	1,460	1,460	100.0
		2)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인원(명)	2,900,000	3,505,371	120.9	160	160	100.0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1)	참가자 만족도(점)	83.8	82.8	98.8	4,219	4,219	100.0
	통합문화이용원(문화누리 카드) 지원(1-82)	문화바우처 이용자 수(명)	155	164	105.8	96,754	96,560	99.8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83)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90.0	85.4	94.9	3,455	3,125	90.4
참여자 수수료율(%)		96.2	97.6	101.5				

다.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소영역은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유해 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의 5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2개 과제 중 11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100.0% 이상이고, 나머지 1개 과제는 목표미달성. 해당 과제의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1-85-②)’ 과제의 성과지표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로 목표달성률은 55.0%임.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사고가 증가함. 따라서 교직원 및 관련단체 등을 활용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강화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스쿨존 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1-89)’ 과제의 세 가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의 평균은 100.0% 이상이나, 첫 번째 성과지표인 ‘신고의무자 신고율’의 목표달성률은 75.4%로 낮게 나타남. 아동학대 신고·발생사례는 ‘06년 이후 완만하게 지속 증가하다’ ‘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종합대책 시행 등으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발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함.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도 지속 증가하였으나,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감소

* (아동학대 신고 건 수) '12년 8,979건, '14년 15,025건, '15년 19,214건

* (아동학대 발생 건 수) '12년 6,403건, '14년 10,027건, '15년 11,715건

-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3-③)’ 과제의 성과지표는 ‘청소년 현재 음주율’이고 목표달성률은 80.7%임.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15년 목표치를 상향 설정함에 따라 목표달성 부진함('14년 실적(16.7)과 동일한 수준임)

○ (예산 집행률) 총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고, 6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0%이상이며, 나머지 1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86.4%임. 해당과제 예산집행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94)’ 과제의 성과지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시설 서비스 만족도’이고 예산집행률은 86.4%임.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지자체별로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14년신규 설치된 센터 중 11월 이후 설치가 다수로 운영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단축(4개월 → 2개월)되어 예산 불용액이 발생함. ‘16년도에는 7월 현재 국비 예산(35,008백만원)의 99.2%(34,734백만원)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액(274백만원)도 지자체의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연내 모두 집행 예정

〈표 2-10〉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아동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안전사고사망률(%) ¹⁾	4.7	3.9	117.9	1,003	979	97.6

세부영역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강화	교육실시(1-84)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국민안전처) (1-85-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비 집행률(%) ²⁾	95.0	100	105.3	19,000	19,000	100.0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교육부) (1-85-②)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373	541	55.0	550	550	100.0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1-86-①)	CCTV 설치율(%) ³⁾	95%이상	118	124.2	81,200	77,761	95.8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1-86-②)	통합관제센터 구축률(%) ⁴⁾	95	100	105.3	26,598	26,598	100.0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7)	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 전·후성의식교육효과성 (점)	0.62	0.64	103.2	6,310	5,946	94.2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1-88)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센터 이용현황(명)	25,200	28,253	112.1	(성폭력피해자 지원) 19,539	17,737	90.8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1	87	107.3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9,400	8,876	94.4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1-89)	신고의무자 신고율(%) ⁵⁾	39	29.4	75.4	47,161	45,796	97.1
		학대 재발률(%) ⁶⁾	12	10.6	111.7			
		쉼터아동 심리치료 효과율(%)	20	23.4	117.0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1-90)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534개교) 지정 운영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수	534	536	100.4	2,430	2,430	100.0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1-91)	아동안전 지킴이 만족도(%)	73.8	77.2	104.6	24,009	24,008	100.0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1-92)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	70	70.3	100.4	2,158	2,158	100.0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여성가족부, 1-93-①)	흡연·음주 청소년 교육 및 치료 지원 건수(명)	20,500	26,366	128.6	240	240	100.0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보건복지부, 1-93-②)	중고등학생 흡연율(%)	9.7	7.8	119.6	305	305	100.0
	흡연, 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보건복지부, 1-93-③)	청소년 현재 음주율(%)	14.0	16.7	80.7 ⁸⁾	8,511	8,485	99.7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94)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시설 서비스 만족도(점)	50	50.0	100.0	국비:30,841 지방비:3,2670	국비:27,032 지방비:2,7840	86.4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1-95)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 ⁷⁾	43.6	48.1	110.4	6,500	6,500	100.0

주: 1) 아동안전사고사망률=아동안전사고사망수(14세이하)/10만명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집행률=(국비집행실적/전체국비)×100
 3) CCTV 설치율=15년 CCTV 설치개소/설치계획(3630)×100
 4) 통합관제센터 구축률=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자체 수/22*×100 (*예산확보액 기준으로 당초 28에서 22로 변경함)
 5) 신고의무자 신고율=신고의무자 신고건 수/전체 신고건 수×100
 6) 학대재발율=이전에도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던 건 수/당해년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100
 7)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초기 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 점수-6개월 이후 SDQ-Kr 점수가 호전된 아동 청소년 수/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100
 8)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초기 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 점수-6개월 이후 SDQ-Kr 점수가 호전된 아동 청소년 수/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100

라.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

□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소영역은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의 2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완료과제 1개를 제외한 2개 과제 모두 목표달성률은 100.0%임

○ (예산 집행률) 완료과제 1개를 제외한 2개 과제 모두 비예산 과제임

〈표 2-11〉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6)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립	수립	100.0	비예산		
	청소년정책 15년 시행계획 수립(1-97)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3~'17) '15년 시행계획 수립	수립	수립	100.0	비예산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1-98)	해당 없음	완료과제(2014)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정책대상에 포함하고 정책범위를 소득과 건강보장 중심에서 주거, 노후설계 등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고령사회 대응 시스템 구축을 도모함

○ 고령사회분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됨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은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가.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소영역은 ‘고령자 고용연장’,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의 5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21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9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당초 목표 미달성 과제는 4개임

-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2-4)’의 성과지표는 개정안 시행령 마련이었으나, 해당성과지표는 입법기 도과로 인한 계류 법률안 자동폐기
-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0)’의 성과지표 귀농·귀촌 가구증가율(%)은 '15년 귀농귀촌가구 통계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3년간 평균을 적용한 결과 귀농·귀촌 가구 증가율은 6.2%로 목표달성률은 12.4%임. 과거 귀농귀촌가구 통계는 '11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행정조사, '12~'14년까지 귀촌가구는 농식품의 행정조사, 귀농가구는 통계청 통계조사로 통계를 발표했으나, '15년 귀농귀촌가구 통계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명시된 귀농·귀촌인 정의에 따라 산출함
-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18)’의 성과지표는 은퇴자 교육기부 참여인원(명)으로, 대학생 동아리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학교에 안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터링을 위해 2014년까지 은퇴교원(교장, 교감 등)을 배치하다가 2015년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질제고 차원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직 교원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목표 미달성. 이에 따라 은퇴인력의 적극적인 교육기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교육기부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를 재설정하고, 은퇴인력의 개인교육기부단 참여자 수와 교육기부 활동 건수를 2016년 성과지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음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21)'의 성과지표는 모니터링 실시 건수(건)으로 목표 달성률은 51.8%임. 피점검대상기관인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하반기 지도점검에 대한 중복 점검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하반기 모니터링은 실시되지 않음

○ (예산 집행률) 비예산과제 및 예산 산출 불가 과제(3개)를 제외한 14개 과제는 90%이상의 예산집행률을 보였으며, 4개 과제는 90%미만의 예산집행률을 나타냄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의 성과지표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수 증가율(%)로 예산집행률은 55.1%임. 지원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집행률이 부진하였고, 지원금 요건완화(15.12월 시행령 개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률 증가에 따라 '16년 지원금 집행 실적제고 기대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개편(2-2)'의 성과지표는 당해연도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인원 수(명)로 예산집행률은 72.3%임. 60세 정년제와 연계하여 제도를 개편함(요건강화)에 따라 실적이 부진하였음. 장년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한 동 과제는 '16.1.1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16년까지만 지원함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8)'의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 소속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 비율(%)로 예산집행률은 73.5%임. 지원비율 하향조정 등에 따른 예산 집행 부진 발생
-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2-19)'의 성과지표는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인력풀 확대(명)으로 예산집행률은 0%임. 해당 예산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포털 'G-시니어'의 개발 및 개선 비용으로, '13년도 시스템 고도화 및 '14년도 인력풀 등록 연계시스템 개발 등을 집중 추진함에 따라 '15년도는 유지보수 수준에서 운영되어 예산이 절감되었음. 본 사업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참여 인력풀 확대 등 목표가 초과달성되었고,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G-시니어 시스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표 2-12〉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자 고용연장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수 증가율(%) ¹⁾	20.0	20.1	100.5	31,999	17,622	55.1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개편(2-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당해연도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인원 수(명))	13,000	11,960	92.0	48,058	34,727	72.3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2-3)	사업장 평균 정년연령(세)	59.6	59.8	100.3	3,000	2,986	99.5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2-4)	개정안 시행령 마련 ²⁾	-	입법기 도과로 계류법률안 자동폐기	0.0	비예산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2-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취업자 수(명)	23,000	54,748	238.0	17,638	16,336	92.6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2-6)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40.0	44.0	110.0	4,250	4,050	95.3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7)	4개 돌봄분야 일자리 합계(명)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 신생아, 장애인활동지원)	66,643	76,530	114.8	해당 없음 ³⁾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8)	사회적기업 소속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 비율(%)	26	30.8	118.5	81,792	60,089	73.5
	마을기업 활성화(2-9)	마을기업 육성사업 총 매출현황(억원)	803	1,367	170.2	17,400	16,858	96.9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0)	귀농·귀촌 가구증가율(%) ⁴⁾	50	6.2	12.4	24,519	24,519	100.0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1)	시니어창업 활성화 (시니어 창업교육 수요인원 대비 창·취업 성공 시니어 비율(%)	20	23.8	119.0	4,494	4,467	99.4
중·고령자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2)	분석물 다운로드 수(건)	35,400	48,631	137.4	2,014	2,014	100.0
		중소기업기술개발 역량확충 실적(건) ⁵⁾	58	124	213.8	1,500	1,500	100.0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2-13-①)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채용인원(명)	100	102	102.0	913	846	92.7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부, 2-13-②)	진로코치 선발 (전국 선발 인원 수(명))	17,000	51,273	301.6	비예산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4)	상인조직 역량강화 (퇴직 및 청년 인력 지원실적(명))	63	145	230.2	2,590	2,590	100.0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2-15)	대기업 전문인력 채용 지원자 수(명)	700	1,007	143.9	6,011	6,011	100.0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6)	사이버 멘토링에 가입한 50대 이상 여성멘토 수(명)	60	61	101.7	89	87	97.8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2-17)	사회참여 실습 연계율(%)	80	89.7	112.1	790	722	91.4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18)	은퇴자 교육기부 참여인원(명)	400	0	0.0	4,064	4,064	100.0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2-19)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인력풀 확대(명) ⁶⁾	36,000	55,207	153.4	81	0	0.0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2-20)	고령자 고용 강조주간 운영(기념식 실시)	기념식 실시	기념식 실시	100.0	533	533	100.0
		주요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건수	5건 이상 추진	5건 이상 추진				
		장년고용지원제도안 내 책자 발간	책자발간	책자발간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21)	모니터링 실시 건수(건)	10,000	5,176	51.8	비예산		

주: 1) (당해연도 수혜인원 - 전년도 수혜인원)/(전년도 수혜인원)×100
 2) '14년 당시 고령자고용촉진법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령 입법이 지연되었음
 3)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 산출 불가
 4) [(귀농·귀촌 가구수 - 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수) / 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수] X 100
 5) 전년도 퇴직과학기술자 지원 인원 수×0.8건
 6) (전년대비)×2: 누적인원기준

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소영역은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의 3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0개 과제 모두 100.0% 이상 목표달성
- (예산 집행률) 비예산과제(7개)를 제외한 1개 과제(2-26)의 예산은 전액 집행, 1개 과제(2-25)는 99.8%, 나머지 1개 과제(2-27)의 31.2%의 예산집행률을 보임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7)' 과제의 성과지표는 퇴직연금 가입율(%) 및 교육실시 횟수(회)로 퇴직연금 사업장 가입률 및 교육횟수에 대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 재정지원(2,200백만원) 관련 법안이 국회 미통과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어 예산집행률은 31.2%에 그침

<표 2-13>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2-22)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 및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제도평가 연구용역 실시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전문가포럼 (4회)	9	225.0	비예산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2-23)	홍보효과도 조사(점)	76.5	76.8	100.4	비예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추진 (과세자료 보유자 수 대비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수 비율(%)) ¹⁾	66	66.5	100.8	비예산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5)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수(만 명)	82	88	107.3	501,500	500,704	99.8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6)	연금보험 지원사업 지원액 증가율(%)	7.0	16.7	238.6	163,760	163,760	100.0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7)	퇴직연금 가입률(%)	16.4	16.7	101.8	3,241	1,012	31.2
		교육실시 횟수(회)	150	329.0	219.3			
	개인연금 활성화(2-28)	개인연금 활성화정책 마련	제고방안 마련	제고방안 마련	100.0	비예산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2-29)	노후준비 인식도	93.0	95.1	102.3	비예산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2-30)	금융상품자문업 도입방안 마련	도입방안 마련·발표	도입방안 마련·발표	100.0	비예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2-31)	고령층 특화 보험상품 개발	보험상품 출시	보험상품 출시	100.0	비예산		

주: 1) 보유자 및 신고자는 국제청 업종 코드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캐디,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임

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소영역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1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5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1개 과제의 일부 성과지표(2-36-②)의 목표달성률은 45.8%로 나타남

- ‘U-health 서비스 확충(2-36-②)’ 과제의 성과지표는 지원금액 10억원 당 특허건수(건)으로 목표달성률은 45.8%임. 본 과제는 '14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15년도는 사업 초기인만큼 출원 특허 대비 등록 특허가 비교적 낮으나, 향후에는 권리성, 기술성 등이 높은 특허를 전략적으로 등록,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확보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과제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특허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평가 및 관리가 요구됨

○ (예산 집행률) 비예산과제(2개)를 제외한 4개 과제는 90%이상 예산을 집행하였고, 그 중 1개 과제의 예산은 전액 집행됨

〈표 2-14〉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2-32)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만족도(점)	94	94.0	100.0	415	412	99.3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2-33)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수립	수립	100.0	비예산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2-34)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체감도(%)	65	66.3	102.0	196,442	166,664	100.0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35)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¹⁾	62	66.9	107.9	19,464	18,698	96.1
	U-health 서비스 확충(보건복지부, 2-36-①)	원격의료 참여자 만족도(%)	78.0	도서벽지 83%, 노인요양 시설 87.9%	109.6	350	348	99.4
		진료정보교류 인증체계구축	보고서	보고서	100.0	896	865	96.5
	U-health 서비스 확충(2-36-②)	지원금액 10억원 당 특허건수(건) ²⁾	1.53	0.70	45.8 ¹⁾	9,409	9,409	100.0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2-3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국회 제출	개정	100.0	비예산		

주: 1)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율(%), 실시지역, 추정환자 수 대비)=(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수 / 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외래실인원) × 100]

2) [(등록 X 0.6 X SMART 가중치)+출원 X 0.4]/지원예산(10억원당)

라.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소영역은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설계 강화의 1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개 과제로 100.0%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냄

○ (예산 집행률)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2-38)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1.0%임

〈표 2-15〉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설계 강화(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설계 강화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2-38)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15. 6.22. 공포 (12.23 시행)	100.0	1,890	1,720	91.0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 보장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소영역은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1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개 과제의 2개 성과지표로 100.0% 이상 목표달성
- (예산 집행률)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2-39)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8.2%임

<표 2-16>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2-39)	노인일자리 확대(개) (노인일자리 창출수 합)	337	337.0	114.5	689,762	677,088	98.2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80.5	80.5	102.1			

나.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소영역은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의 3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6개 과제 중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영역의 4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100.0%, 나머지 2개 과제는 목표치 대비 초과달성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2-44)’ 과제의 성과지표 경영이양목표면적 달성률(%)은 310.9%임

○ (예산 집행률) 총 6개 과제 중 비예산과제(3개)를 제외한 2개 과제의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고, 나머지 1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7.7%임

〈표 2-17〉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기초연금 내실화(2-40)	기초연금 지급(만명)	150만명	450만명	100.0	10,008,986	9,775,650	97.7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2-41)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가입 허용	법안개정 안 마련 여부	법안개정 안 마련	100.0	비예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시 계약 유지	시행령 개정 여부	시행령 개정	100.0	비예산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2-42)	국민연금제도 개선	세부지침 마련	급여업무 지침 개정('15. 5.20.)	100.0	비예산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2-43)	국민연금제도 개선	세부지침 마련	급여업무 지침 개정('15. 5.20.)	100.0	비예산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2-44)	경영이양목표면적 달성률(%) ¹⁾	100	310.9	310.9	58,998	58,998	100.0
	농지연금 활성화 (2-45)	농지연금 가입률(%) ²⁾	28.4	34.7	122.2	40,259	40,241	100.0

주: 1)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면적/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면적)×100

2) (연도말 유지건수/총 목표농가수)×100

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소영역은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의 5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1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100%, 7개 과제는 100%를 초과하여 목표달성을 하였고, 나머지 1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268.0%임

- ‘정신건강문제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2-49)’ 과제의 성과지표는 전년대비 정신건강 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로 목표달성률은 -268.0%로 매우 낮음. 이는 '13년, '14년 일반상담건수가 지자체합동평가 실적으로 포함되었으나, '15년은 지자체합동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적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합동평가 영향을 받는 '13년, '14년 실적을 제외한) '12년과 '15년 실적을 비교할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목표치(20%)를 상회함

○ (예산 집행률) 총 15개 과제 중 비예산 과제(8개)를 제외한 7개 과제는 9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그 중 3개 과제는 전액집행

〈표 2-18〉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46)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세부시행방안 마련)	100	100.0	100.0	비예산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2-47)	노인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지역 수	6.0	6.0	100.0	비예산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2-48)	보험료 공시제도 강화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마련	100.0	비예산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2-49)	전년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 ¹⁾	20.0	-53.6	-268.0	10,200	10,160	99.6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2-50)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수혜인원(명)	8,516	10,250	120.4	16,822	16,620	98.8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국가치매관리종합 계획 수립·추진 (2-51)	지역사회 치매조기검진률	10.6	17.5	165.1	45,346	45,346	100.0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2-52)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 (사례관리 대상자 수)	4,000	5,374	134.4	비예산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2-53)	장기요양 질 평가 체계 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개정 추진	고시개정 완료	100.0	비예산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2-54)	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100	300	300.0	비예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55)	인정자 중 치매환자(만명)	23.5	24.2	103.0	597,164	597,072	100.0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 운동 활성화 (2-56)	노인건강운동교실 ²⁾	249,192	270,335	108.5	비예산		
	농촌생활 활력 추진(2-57)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증가율(% ³⁾)	41.6	44.8	107.7	12,238	12,120	99.0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2-58)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개최 수	1	1	100.0	4,300	4,300	100.0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지도자 배치 인원	1,080	1,080	100.0	27,000	26,950	99.8
	광역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수	17	17	100.0	384	384	100.0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2-59)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적립금규모/14년 총급여비 ≥ 24%)	24	35.2	146.7	비예산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2-60)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개)	950	1,100	115.8	3,000	3,000	100.0

주: 1) (전년대비 상담건수 증가량 / 전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건수)×100
 2) 노인건강교실 강습실시 횟수(강습실시 횟수/ 강습목표 횟수)
 3) (2년차 실천율 - 사업전 실천율)/사업전 실천율×100

라.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소영역은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의 2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4개 과제 모두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그 중 1개 과제(2-61)의 두 번째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457.9%임
- (예산 집행률) 총 4개 과제 중 3개 과제의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고, 나머지 1개 과제인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2-61)’의 성과지표인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및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99.8%, 99.5%임

〈표 2-19〉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2-61)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노인자원봉사클럽 수(개))	1,700	1,831	107.7	4,376	4,366	99.8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수(개))	40	183	457.5	614	614	99.5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2-62)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횟수(회)	1,650	1,741	105.5	300	300	100.0
		원로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참가자 수(명)	6,650	6,338	95.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63)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7,500	7,778	103.7	2,700	2,700	100.0
		프로그램 수(개)	400	435	108.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2-64)	수혜자 수(명)	13,000	14,042	108.0	3,850	3,850	100.0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의 2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소영역)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소영역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조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의 2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7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완료 과제는 1개임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1개)와 완료 과제(1개)를 제외한 4개 과제는 전액 집행되었고, 1개 과제(2-68)의 예산집행률은 96.9%임

〈표 2-20〉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65)	노후 공공임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자금지원(억원)	8.5	8.7	102.4	48,100	48,100	100.0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66)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¹⁾	100	110	109.5	비예산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지원(2-67)	사업추진실적(개소)	71	77.0	108.5	8,400	8,400	100.0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2-68)	농촌생활만족도(점)	77.6	80.7	104.0	8,132	7,883	96.9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2-69)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지속 추진 ²⁾	완료과제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국민안전처, 2-70-①)	교통약자보행환경 여건 개선 ³⁾	14	14	100.0	61,400	61,400	100.0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경찰청, 2-70-②)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망률(명)	27.6	27.4	100.7	비예산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71)	고령자 교육 참여인원(만명)	200	209	104.5	2,424	2,424	100.0

주: 1) 목표치(8%, 5%)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 전체 임대주택 × 100

2) '14년 당시 완료과제였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4.12.31 공포)으로 사업종료

3) 보행환경 개선 실적/계획 × 100

나.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소영역은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학대 노인의 보호강화',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의 3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5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100.0% 이상 목표달성을 하였고, 당초 목표 미달 성 과제는 3개임

○ (예산 집행률) 총 5개 과제 중 3개 과제의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고, 나머지 비예산 과제(1개)를 제외한 1개 과제, '독거노인 보호 강화(2-72-①)'와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 강화(2-72-②)'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94.1%, 97.1%임

〈표 2-21〉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의 보호강화	독거노인 보호 강화(2-72-①)	수혜노인 수(천명)	250	317	126.8	207,494	195,181	94.1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 강화(2-72-②)	조손가족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90	92.5	102.8	6,000	5,824	97.1
	농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2-73)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가사도우미)고객만족도 (%) ¹⁾	91	85.0	93.4	1,449	1,449	100.0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2-74)	노인학대신고 건수 증가율(%) ²⁾	3	4	133.3	11,868	11,868	100.0
		학대피해노인 정서적 안정 비율(%) ³⁾	97.3	98.0	100.7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2-75)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명)	161	120.0	74.5	15	15	100.0
		효문화진흥원 설립 공정률(%) ⁴⁾	80.1	78.9	98.5	5,244	5,244	100.0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76)	우수 프로그램 포상 수(개)	17	16	94.1	비예산		

주: 1) 항목 만족지수(사업절차, 유용성 등) 및 체감 만족지수에 평가항목 중요도 가중치의 합산

2) [(14년 전체신고건수-'13년도 전체신고건수)/'13년도]×100

3) 우울감 감소노인 수/응급사례학대피해 노인 수×100

4) 누적투자율/총 사업비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 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의 총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소영역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의 2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8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목표달성률이 90.0% 이상이며 이 중 5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100.0% 이상임. 나머지 1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75.6%임. 해당과제의 부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92.5%로 매우 양호하나, 이 중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②)’의 경우 성과지표가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로 목표달성률은 84.1%임. 지방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중은 33.7%로 이 중 광역이 18.2%, 기초가 40.2%이지만, 5급 이상 관리직 자리는 기초의 경우 광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자치단체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낮아 질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과제의 성과지표는 ‘결혼이민여성 인턴취업자 고용유지율’로 목표달성률은 75.6%임. ’15년도 목표치는 결혼이민여성 인턴취업자 고용유지율의 실적 추이를 반영하여 ’14년도 실적 대비 0.2% 포인트 상향 설정한 것임. 그러나 집계방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용유지현황 조사시 기존의 전화조사 방식에서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조사방식으로 개선(’15년)함에 따라 실제 산출된 실적에 차이가 발생하여 목표달성 부진으로 평가됨

○ (예산 집행률) 총 8개 과제 중 비예산 과제 1개를 제외한 7개 과제 모두 90.0% 이상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며 이 중 4개 과제는 전액(100.0%) 집행됨

〈표 2-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공기업·대기업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실효성확보(3-1)	AA적용사업장의 여성고용률(%)	38.0	37.41	98.4	720	720	100.0
		AA적용사업장의 관리직 여성고용률(%)	17.2	19.4	112.6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①)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2.0	12.1	100.8	비예산		
	여성의 대표성 제고(3-2-②)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3.8	11.6	84.1	비예산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3-3)	여성교장·교감임용비율(%)	30.1	34.2	113.6	비예산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비율(%)	14.7	14.8	100.7	100	100	100.0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3-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수(명)	153,000	167,906	109.7	8,041	8,041	100.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점)	88	89	100.7	2,242	2,242	100.0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집합교육수료자인원(명)	11,730	13,550	115.5	6,606	6,606	100.0
		사이버·원격교육 수료자인원(명)	49,460	59,061	119.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①)	참여자 만족도(점)	85.0	86.0	101.2	856	854	99.8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②)	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점)	90.0	85.4	94.9	3,455	3,125	90.4
		참여자 수료율(%)	96.2	97.6	101.5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새일센터 이용자 취업자 수(명)	136,545	140,040	102.6	61,523	61,469	99.9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결혼이민여성 인턴취업자 고용유지율(%)	65.9	49.8	75.6	1,575	1,562	99.2	

나.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소영역은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7개 과제 모두 목표달성률은 100.0% 이상임.

-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적극유치(3-10)’ 과제의 성과지표(온라인 사증

발급시스템(HuNet Korea)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건수에 대한 목표달성률은 338.9%로 나타남. 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위해 '15.1월부터 정책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자비자 신청의 영향으로 실적이 급상승하게 되었기 때문임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 3개를 제외한 5개 과제 모두 예산집행률은 90.0% 이상이고, 이 중 2개 과제는 전액 예산 집행함

〈표 2-23〉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중국, CIS지역 재외동포 자격 체류자 수(명)	230,000	259,625	112.9	비예산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적극유치(3-10)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 (HuNet Korea)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건수(건)	85,000	288,096	338.9	비예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3-11)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수립	수립	100.0	6,792	6,335	93.3
		외국인력 상담센터 상담실적제고(건)	290,000 ¹⁾	351,778	121.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개소)	3,000	3,057	101.9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명)	3,600 ²⁾	3,873	107.6	비예산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국가 확대(국가수)	15	15	100.0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3-13-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천명)	18,000	18,741	104.1	78,038	77,643	99.5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3-13-②)	다문화 예비학교(개교)	100	100	100.0	2,800	2,800	100.0
		교원연수 참여인원(명)	26,000	29,745	114.4	410	410	100.0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3-14)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응답건수(건)	1,500,000	2,181,619	145.4	3,228	3,228	100.0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참여 학교수(개교)	345	345	100.0	90	90	100.0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학교수(개교)		265	408	154.0	210	210	100.0	

주: 1) '14년도에 출국만기보험 변경 등 제도변경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건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14년 상담건 수의 약 85%로 목표치를 설정함

2) '14년 최종 성실근로자 재입국 요건 충족자의 재입국신청률(62.7%)을 고려하여 '15년 중 성실근로자재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5,992명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 인원 중 일부는 연도 중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60%로 설정함

다.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소영역은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24개 과제 중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1개를 제외하고, 22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90.0% 이상이고, 이 중 20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100.0% 이상이며, 나머지 1개 과제(3-23)의 3개 지표 중 2개 지표 목표달성률은 각각 77.1%, 81.9%로 나타남.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23)’ 과제의 3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률이 미흡한 2개 지표는 각각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77.1%)’과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81.9%)’임. 첫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부정훈련 예방 강화 및 경기침체, 대기업 지원을 조정(60%→40%) 등으로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이 하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원격훈련 운영(평가시간 제한) 방법 변경, 부실훈련 예방을 위한 훈련생 업정 관리(모니터링) 등으로 만족도가 하락했기 때문임
- ‘현장감 있는 취업정보 제공(3-28)’ 과제는 우수 중소기업 및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등을 고려한 분야별 상위 1,000대 기업을 분기별로 재선정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어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 2개를 제외한 22개 과제 중 20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0.0% 이상이며 이 중 14개 과제는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고, 나머지 2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0.0% 이하임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3-19)’ 과제의 성과지표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개수’이며 예산집행률은 70.8%임. 이는 사업예산 목표 인원(570명) 대비 모집인원(507명)이 저조하고, 중도 탈락에 따른 멘티 역량개발 지원금(1인당 20~30만원) 미지급 등으로 예산 불용액 발생함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23)’ 과제의 3개 성과지표 중 1개 성과지표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의 예산집행률은 84.4%임. 경기침체, 훈련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훈련 수요 감소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함. 평가시간 제한 등 원격훈련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 부실훈련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 수행 등으로 훈련생을 엄정하게 관리함에 따라 참여자 만족도가 하락함
-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 제고(3-24)’, 과제의 3개 성과지표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의 예산집행률은 78.8%임. 예산집행 부진사유는 '15.6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훈련생 모집 및 훈련과정개설이 부진했기 때문임

〈표 2-24〉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3-16-①)	미래의 직업세계 책자 개발(회)	1	1	100.0	2,100	2,100	100.0
		진로 적성검사 이용 실적(만 건)	250	226	90.4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3-16-②)	직업심리검사개발검수및 직업정보·직업지도간행물 발간건수(건)	9	9	100.0	6,599	6,599	100.0
	학교 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3-17)	진로·취업지원프로그램수 혜 비율(%)	31.0	48.9	157.7	2,389	2,197	92.0
	특성하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3-18)	취업지원인력 채용 규모(명)	416	1,290	310.1	10,000	10,000	100.0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3-19)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개수(개소)	12	12	100.0	2490	1762	70.8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3-20)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명)	1,800	2,041	113.4	9,720	9,720	100.0
	기업 맞춤형반 확대(3-21)	기업 맞춤형반(개반)	580	663	114.3	28,600	28,600	100.0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3-22)	계좌발급 대비 참여율(%)	68.0	92.4	135.9	245,465	224,027	91.3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23)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¹⁾	31.4	24.2	77.1	462,835	390,794	84.4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83.0	68.0	81.9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만족도	82.0	85.8	104.6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 제고(3-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 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81.5	86.7	106.4	229,594	211,085	91.9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81.5	81.6	100.1	29,535	23,276	78.8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훈련 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82.5	95.6	115.9	5,109	5,044	98.7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3-25)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수(개소)	3,000	5,764	192.1	101,602	94,802	93.3
		〈산업현장교수지원〉 기업 수(개소)	1,300	1,531	121.5	12,102	12,102	100.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3-26)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력(명)	340	360	105.9	5,065	5,065	100.0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3-27)	WFK 봉사단 파견인원(명)	4,710	4,830	102.5	115,632	115,533	99.9
	현장감 있는 취업정보 제공(3-28)	해당 없음 ²⁾	해당 없음			비예산		
	벤처·창업체험프로그램도 입(창업인턴제) (3-29)	창업인턴 수요자 창업건수(건)	50	52	104.0	5,000	5,000	100.0
	창업보육센터 지원(3-30)	대학생 공동창업공간 조성 지원(누적, BI개수)	7	7	100.0	100	100	100.0
	맞춤특기병재 내실화 및 확대(3-31)	맞춤특기병제 기술훈련 추천 및 선발인원	1,000	1,017	101.7	비예산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3-32)	청년 가젤형기업 지원 수	200	209	104.5	3,050	3,050	100.0
성과보상기금 관련 세제혜택 확대(3-33)	가입자 수(명) (누적)	10,000	10,123	101.2	1,388	1,388	100.0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3-34)	전문/희소계열 분야 지원수	4	5	125.0	2,400	2,400	10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35)	지원대학의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수(개)	100	153	153.0	10,733	10,733	100.0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3-36)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 ³⁾	40.0	40.6	101.5	5,831	5,831	100.0
	평생학습계좌제 도입(3-37)	1)학습계좌 개설 인원수(명)	30,000	45,988	153.3	542	542	100.0
		2)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 평균 접속수(건)	4,300	4,352	101.2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3-38)	1)NCS 개발(개)	50	50	100.0	22,807	22,807	100.0
		2)新 자격설계(개)	17	17	100.0	5,236	5,236	100.0
		3)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개)	232	252	108.6	328	328	100.0
		4)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개)	15	15	100.0	2,706	2,706	100.0
		5) 특성화고 지원(개교)	3	3	100.0	2,100	2,100	100.0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3-39)	계약학과 학위 취득율(%) ⁴⁾	86.5	82.5	95.4	9,180	9,152	99.7	

주: 1)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재직근로자 직업훈련건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100
 2) 우수 중소기업 및 분야별(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상위 1,000대 기업을 분기별로 재선정하여 적시에 제공함
 3)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 (형식교육참여자치추정치+비형식교육참여자치추정치 - 동시참여자치추정치)/(만25세~만 64세 한국성인수) × 100
 4) 계약학과 학위 취득율=Σ(학위 취득자/참여자) × 100

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소영역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의 2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5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목표달성률이 100.0% 이상이고, 나머지 1개 과제는 목표달성률이 90.0% 미만임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43)’ 과제의 성과지표는 ‘사회심리재활만족도’이고 목표 달성률은 89.0%를 기록함.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설문조사 내용을 유사 조사 금지 요청에 따라 PCSI 모델에서 단순 만족도로 변경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하락하였기 때문임. 향후 고객접점의 친절도 향상 노력과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고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42)’의 3개 성과지표 중 ‘특수진강진단 비용 지원’의 목표달성률은 90.2%임.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① 검진수가 상승(3%)에 따라 '14년 대비 지원 근로자수 감소하였고(*예산은 '14년과 '15년 동일), ② '15년에 지원한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 중 검진 수가 높음*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되어 예산 한도 내에서 실시한 전체 지원 근로자수는 감소하

였기 때문임. `16년에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각각 목표 설정하여 전체 지원 근로자수를 증가토록 추진(공단 일선기관별 목표 부여, 유관기관 협조 및 홍보 강화 등)함

- (예산 집행률) 총 5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고, 1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0.0% 대 수준이며, 나머지 2개 과제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85.8%, 63.8%로 나타남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43)’ 과제의 성과지표의 예산집행률은 85.8%임. 예산집행 부진사유는 사업 중 재활스포츠와 멘토링프로그램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재활스포츠 주요 사업대상인 12급 이상 산재 장애인에 매년 감소하여 집행률이 하락하였으며(12급 이상: '13년 22,780명→'14년 20,974명→'15년 19,609명),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장시간 상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시간 이내로 상담 시간(활동비용 상한액: 20만원→5만원)을 조정했기 때문임. 개선을 위해 각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하고 부진 소속기관에 대한 컨설팅으로 활성화 유도할 필요
 -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44)’ 과제의 성과지표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로 예산 집행률은 63.8%임. 이는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15년 예산액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감률 적용으로 전년대비 49.0% 증액 편성되어 예산 집행률이 하락하였고('14년 맞춤형 훈련이 폐지 되었으나 예산 편성시 미반영), 훈련비용 지급기준을 직업능력개발법상 HRD-Net 기준으로 정비하여 1인당 평균 집행액은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25〉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3-40)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	34.8	40.8	117.2	81,500	81,500	100.0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41)	취약계층(외국인·여성·고령) 교육지원 실적(명)	100,000	162,322	162.3	667	667	10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42)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7,000	8,176	116.8	2,867	2,873	100.2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70,000	63,131	90.2	4,532	4,528	99.9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770	760	98.7	770	760	98.7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43)	사회심리재활만족도(%)	82.5	73.4	89.0	2,694	2,312	85.8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44)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53.9	56.8	101.2	23,441	14,965	63.8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중영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의 총 3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소영역은 ‘교육분야 제도개선’의 1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완료과제 1개(3-45)를 제외한 2개 과제 중 1개 과제의 목표달성률은 92.8% 나머지 1개 과제의 2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은 각각 88.0%, 84.8%로 나타남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47)’ 과제는 2개 성과지표(‘학교시설 적정규모(88.0%)’와 ‘학교시설 적정규모(84.8%)’)로 평가됨. 첫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일부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소극적 추진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임. 개선방안으로 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적극적 추진 유도를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 및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함(2015.12.31.). 두 번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부진사유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강화 및 중앙투자심사 강화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 승인 건수 감소했기 때문임. 투자심사 승인률은 ‘13년 71.3%, ‘14년 54.3%, ‘15년 37.0%으로 감소하였고, ‘15년 전체 승인률(37.0%)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신설대체이전 사업 승인률(54.3%)은 높음

○ (예산 집행률) 완료과제 1개를 제외한 2개 과제 모두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2-26〉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교육분야 제도개선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마련(3-45)	내용부재	과제완료(2014)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학부교육선도대 학육성사업) (3-46)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55	51.0	92.8	59,400	59,400	100.0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47)	학교시설 적정규모(개교)	50	44.00	88.0	175,000	175,000	100.0
		학교시설 적정규모(%)	64	55.30	84.8			

나.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소영역은 ‘주택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의 2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3개 과제 모두 목표 달성률은 100.0% 이상으로 나타남

○ (예산 집행률) 총 3개 과제 모두 비예산 과제임

〈표 2-27〉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주택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3-48)	2015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100	100.0	100.0	비예산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3-49)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공급	100	100.0	100.0	비예산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50)	(해외, 대체투자액/ 금융부문 기금투자액)×100	26	28.6	110.0	비예산		

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소영역은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의 1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해당영역은 1개 과제로 구성되며 목표 달성률은 100.0% 으로 나타남

○ (예산 집행률) 해당영역의 1개 과제는 비예산 과제임

〈표 2-28〉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51)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보완여부	15년 상반기 보고서 작성 완료	15년 상반기 보고서 작성완료	100.0	비예산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의 총 2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됨

〔그림 2-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소영역은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6개 과제 모두 목표 달성률은 100.0% 이상으로 나타남

○ (예산 집행률) 비예산 과제 3개를 제외한 3개 과제 모두 예산은 전액 집행함

〈표 2-29〉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사용성평가 시스템개발·운영(3-52)	사용성 평가 실시(개)	3	3	100.0	1,465	1,465	100.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3-53)	고령친화제품실태조사	1	1	100.0	비예산(과제 3-52에 포함)		
		고령친화제품 개발연구	6	6	100.0	4,000	4,000	100.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3-54)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표준화(종)	16	24	150.0	비예산		
	고령친화산업 국가 간 표준화 협력강화(3-55)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56	62	110.7	비예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3-56)	제품·서비스표준화대 수(개)	2	2	100.0	비예산(과제 3-52에 포함)		
	화장품관련 수출지원(3-57)	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 수 연간 화장품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건)	3 41.7	3.0 62.2	100.0 149.2	7,802 10,750	7,802 10,750	100.0 100.0

나.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 ‘국내·외 시장 활성화’ 소영역은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의 2개 세부영역으로 구성

○ (목표 달성률) 총 3개 과제 모두 목표 달성률은 100.0% 이상으로 나타남

○ (예산 집행률) 총 3개 과제 모두 비예산 과제임

〈표 2-30〉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

세부영역	과제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집행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률 (%)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3-58)	유공자(기업) 발굴(건)	12	12	100.0	비예산(과제 3-52에 포함)		
		지역사회밀착형 체험관 운영(개소)	5	9	180.0	비예산(과제 3-52에 포함)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9)	체험관 참관객수(명)	166,600	224,999	135.1	비예산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3-60)	수출정보 DB 구축 건수(건)	100	168	168.0	비예산(과제 3-52에 포함)		
		해외진출협의체 운영(회)	4	4	100.0	비예산(과제 3-52에 포함)		

제4절 소결

1. 목표달성도 평가

가. 총괄

- 2015년도 전체 평가대상 과제(234개, 완료 및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11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 수는 188개로 84.3%를 차지
 - 총 205개 과제가 목표의 90% 이상 달성(91.9%)
 - 17개(7.6%) 과제는 목표의 90~100% 미만 달성
 - 목표달성도가 50~90% 미만인 과제는 12개(5.4%)이며, 목표달성도가 50% 미만 과제는 6개(2.7%)임

〈표 2-31〉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분야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4 (1.8)	2 (0.9)	2 (0.9)	10 (4.5)	17 (7.6)	188 (84.3)	223 (100.0)	11
저출산 분야	1 (1.1)	1 (1.1)	1 (1.1)	4 (4.4)	9 (10.0)	74 (82.2)	90 (100.0)	8
고령사회 분야	3 (4.0)	1 (1.3)	1 (1.3)	2 (2.7)	3 (4.0)	65 (86.7)	75 (100.0)	1
성장동력 분야	- -	- -	- -	4 (6.9)	5 (8.6)	49 (84.5)	58 (100.0)	2

- 주: 1) 저출산 분야 기 종료 등 과제: 기 종료과제는 4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가 4개임
 2) 고령사회 분야 기 종료 등 과제: 기 종료과제는 1개, 성과지표 없는 과제는 없음
 3) 성장동력 분야 기 종료 등 과제: 기 종료 과제 1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 1개임
 4)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5)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13-①, 2-13-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6)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5년도 목표달성도는 고령사회 분야,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당초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한 과제는 고령사회 분야의 경우 평가대상 75개 과제 중 65개(86.7%),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평가대상 58개 과제 중 49개(84.5%), 저출산 분야의 경우 평가대상 90개 과제 중 74개(82.2%)로 나타남
 - 당초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과제의 비율은 성장동력 분야 93.1%, 저출산 분야

92.0%, 고령사회 분야 90.7% 순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과제는 고령사회분야 4개(5.3%), 저출산 분야 2개(2.2%), 성장동력 분야는 없음

나. 분야별 목표달성도

(1) 저출산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저출산 분야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90.9%,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84.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76.7% 순임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96.0%,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95.4%,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88.3% 순임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4.5%이고,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2.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은 해당사항 없음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100.0%,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88.9%,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83.3%임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85.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78.9%,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7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70.0% 순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과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는 모두 100.0%,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소영역)’ 91.7%,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57.1% 순임

〈표 2-32〉 2015년도 저출산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저출산 분야	1 (1.1)	1 (1.1)	1 (1.1)	4 (4.4)	9 (10.0)	74 (82.2)	90 (100.0)	8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 (4.5)	-	-	-	1 (4.5)	20 (90.9)	22 (100.0)	-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 (16.7)	-	-	-	-	5 (83.3)	6 (100.0)	3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	-	-	-	7 (100.0)	7 (100.0)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	-	-	1 (11.1)	8 (88.9)	9 (100.0)	2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1 (2.3)	1 (2.3)	3 (7.0)	5 (11.6)	33 (76.7)	43 (100.0)	-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	-	1 (14.3)	-	6 (85.7)	7 (100.0)	-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1 (10.0)	-	1 (10.0)	1 (10.0)	7 (70.0)	10 (100.0)	1
2-3.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	-	-	-	2 (28.6)	5 (71.4)	7 (100.0)	1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1 (5.3)	1 (5.3)	2 (10.5)	15 (78.9)	19 (100.0)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	-	1 (4.0)	3 (12.0)	21 (84.0)	25 (100.0)	-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	-	-	-	4 (100.0)	4 (100.0)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	-	-	3 (42.9)	4 (57.1)	7 (100.0)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	-	1 (8.3)	-	11 (91.7)	12 (100.0)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	-	-	2 (100.0)	2 (100.0)	1

주: 1) 기 종료과제는 4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가 4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1-86-①, 1-86-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평균치임

4)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별 목표달성도

○ 저출산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0% 미만인 과제는 7개(90개 과제 중 7.7%)로 나타남¹⁾

- 0.0% 달성 과제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1~50% 달성 과제는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 50~70% 달성 과제는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1)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2장 1절 내용 참조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 90~100% 미만 달성 과제는 9개로 총 90개 과제 중 10.0%를 차지함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유치원 평가 내실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휴먼 네트워크 확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표 2-33〉 2015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1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1-5)
1~50% 미만	1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1-39)
50~70% 미만	1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1-55)
70~90% 미만	4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31)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1-41)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1-71)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1-85-①, 1-85-②)
90~100% 미만	9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1-22)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1-44)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1-47-①, 1-47-②) -양육수당 지원 확대(1-48) -유치원 평가 내실화(1-59)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1-60) -휴먼 네트워크 확대(1-78)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1)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83)
100% 이상	74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 수당의 단계적 인상(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1-4)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1-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9)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1-10) -시간제 근무 활성화(1-11)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1-12)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강화(1-13) -스마트 워크 도입 및 확산(1-14) -육아연계형 스마트 워크 센터 모델개발(1-15)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1-1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1-1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1-18)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 마련 지원(1-19)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1-21)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1-23)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1-26) -대체인력뱅크 구축 지원(1-27)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1-28) -미입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1-29)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행복주택 공급)(1-30)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1-32)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1-33)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1-34)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1-35)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1-36)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1-37)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8)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42) -영유아 건강관리(1-4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1-45) -보육교육비 지원확대(1-46) -임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1-49) -돌짜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50)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2)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4)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1-56)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7)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8)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1-61) -실수요 계층 입소 우선순위 부여(1-62)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3)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65) -방과 후 아이돌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66)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1-67)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8)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1-69)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1-7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72)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1-73)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1-74)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1-75) -학교 밖 청소년 지원(1-76)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1-77)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1-79)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8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1-82) -아동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1-84)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1-86-①), (1-86-②)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7)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 확충(1-88)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1-89)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1-90)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1-91)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지원강화(1-92)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3-①, 1-93-②, 1-93-③)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94)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 중재(1-95)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6) -청소년정책 15년 시행계획 수립(1-97)

주: 1) 기 종료과제는 4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가 4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1-86-①, 1-86-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2) 고령사회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고령사회 분야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96.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84.2%,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72.7% 순으로 나타남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96.2%,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90.9%,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86.8% 순임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7.9%,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3.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100.0%,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소영역)’ 100.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83.3%,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76.2% 순임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일자리 사업 내실화(소영역)’,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이 각각 100.0%,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93.3%로 나타남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 100.0%,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40.0% 순으로 나타남

□ 과제별 목표달성도

- 고령사회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 90% 미만인 과제는 7개(75개 과제 중 9.3%)로 나타남²⁾
 - 0% 달성 과제는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2)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2장 2절 내용 참조

- 1~50% 미만 달성과제는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 50~70% 미만 달성과제는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U-health 서비스 확충>,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 90~100% 미만 달성과제는 3개로 75개 과제 중 4.0%를 차지함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농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 복지 우수사례 개발>

〈표 2-34〉 2015년도 고령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고령사회 분야	3 (4.0)	1 (1.3)	1 (1.3)	2 (2.7)	3 (4.0)	65 (86.7)	75 (100.0)	1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 (5.3)	1 (2.6)	1 (2.6)	1 (2.6)	1 (2.6)	32 (84.2)	38 (100.0)	-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2 (9.5)	1 (4.8)	1 (4.8)	-	1 (4.8)	16 (76.2)	21 (100.0)	-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	-	-	-	10 (100.0)	10 (100.0)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	-	1 (16.7)	-	5 (83.3)	6 (100.0)	-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	-	-	-	-	1 (100.0)	1 (100.0)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3.8)	-	-	-	-	25 (96.2)	26 (100.0)	-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	-	-	-	-	1 (100.0)	1 (100.0)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	-	-	6 (100.0)	6 (100.0)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1 (6.7)	-	-	-	-	14 (93.3)	15 (100.0)	-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	-	-	-	4 (100.0)	4 (100.0)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	1 (9.1)	2 (18.2)	8 (72.7)	11 (100.0)	1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	-	-	-	-	6 (100.0)	6 (100.0)	1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	-	1 (20.0)	2 (40.0)	2 (40.0)	5 (100.0)	-

주: 1) 고령사회 분야 과제는 시행계획상 총 76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13-①, 2-13-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4)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영역'의 목표달성도가 마이너스인 과제는 0%에 포함함

5)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2-35〉 2015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3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2-4)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18)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2-49)
1~50% 미만	1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0)
50~70% 미만	1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21)
70~90% 미만	2	-U-health 서비스 확충(2-36-①, 2-36-②)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2-75)
90~100% 미만	3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선(2-2) -농어촌 가사도우미(2-73)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76)
100% 이상	65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2-3)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2-5)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2-6)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7)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8) -마을기업 활성화(2-9)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1)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2)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2-13-①, 2-13-②)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4)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2-15)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6)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2-17)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2-19)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2-20)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2-2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2-23)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4)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5)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6)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7) -개인연금 활성화(2-28)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2-29)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2-30)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2-31)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2-32)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2-34)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35)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2-37)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2-38)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2-39) -기초연금 내실화(2-40) -주택연금제도 활성화(2-41)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2-42) -연기연금제도 활성화(2-4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2-44) -농지연금 활성화(2-45)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46)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2-47)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48)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보건소 의치(틀니)사업(2-50)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2-51) -지역밀착형 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2-52)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2-53)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2-54)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55) -노인 운동 활성화(2-56) -농촌생활 활력 추진(2-57)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2-58)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2-59)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2-60)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2-61)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2-62)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63) -고령자의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2-64)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65)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66)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지원(2-67)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2-68)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2-70-①, 2-70-②)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71) -독거노인 보호 강화(2-72-①, 2-72-②) -노인학대예방 인프라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2-74)

주: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2)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13-①, 2-13-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이 평균치임

(3) 성장동력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 분야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00.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83.7%,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66.7% 순으로 나타남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00.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93.0%,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이 각각 83.4% 순임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는 없음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100.0%, ‘순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87.0%,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80.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62.5% 순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소영역)’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이 각각 100.0%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소영역)’은 해당 과제 없음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동 영역 내 모든 소영역 과제의 목표달성도는 100% 이상임

〈표 2-36〉 2015년도 성장동력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성장동력 분야	-	-	-	4 (6.9)	5 (8.6)	49 (84.5)	58 (100.0)	2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	-	3 (7.0)	4 (9.3)	36 (83.7)	43 (100.0)	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	-	1 (12.5)	2 (25.0)	5 (62.5)	8 (100.0)	-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	-	-	-	-	7 (100.0)	7 (100.0)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	-	1 (4.3)	2 (8.7)	20 (87.0)	23 (100.0)	1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	-	1 (20.0)	-	4 (80.0)	5 (100.0)	-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	-	1 (16.7)	1 (16.7)	4 (66.7)	6 (100.0)	1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	-	1 (50.0)	1 (50.0)	-	2 (100.0)	1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	-	-	3 (100.0)	3 (100.0)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	-	-	-	1 (100.0)	1 (100.0)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	-	9 (100.0)	9 (100.0)	-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	-	-	-	6 (100.0)	6 (100.0)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	-	3 (100.0)	3 (100.0)	-

주: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2)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3-2-①, 3-2-②)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3)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별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4개(58개 과제 중 6.9%)로 나타남³⁾
 -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임
- 90~100% 미만 달성과제는 5개로 총 58개 과제 중 8.6%를 차지함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①), 여성의 대표성 제고(3-2-②)>,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①, 3-6-②)>,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3-16-①, 3-16-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3-46)>

〈표 2-37〉 2015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	-
1~50% 미만	-	-
50~70% 미만	-	-
70~90% 미만	4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23)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43)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47)
90~100% 미만	5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①), 여성의 대표성 제고(3-2-②)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①, 3-6-②)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3-16-①, 3-16-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3-39)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3-46)
100% 이상	49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3-1)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3-3)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3-4)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3-10)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3-11)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3-13-①),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3-13-②)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3-14)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학교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3-17)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3-18)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3-19)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3-20)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3-22)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3-24)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3-25)

3)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2장 3절 내용 참조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3-26)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3-27) -현정감 있는 취업정보 제공(3-28) -벤처·창업 체험프로그램 도입(3-29) -창업보육센터 지원(3-30)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3-31)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3-32) -성과보상기금 관련 세제혜택 확대(3-33)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34)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35)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3-36) -평생학습계좌제 도입(3-37)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3-38)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3-40)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41)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42)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44)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3-48)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3-49)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50)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51)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3-52)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3-53)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3-54) -고령친화산업 국가간 표준화 협력강화(3-55)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시제도 확대(3-56)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3-57)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3-58)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9)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3-60)

주: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2)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3-2-①, 3-2-②)에는 목표달성률 계산시 개별 달성률의 합을 평균치임

2. 예산 평가

가. 예산집행률

- 전체 평가대상 과제 중 예산사업은 160개, 비예산사업은 67개임
 - 예산사업 중 100% 이상 예산을 집행한 과제는 85개로 53.5%를 차지하며, 90% 이상을 집행한 과제는 총 142개로 88.7%를 차지
 - 예산집행률이 50~90% 미만인 과제는 16개(10.1%), 50% 미만인 과제는 2개(1.3%)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예산사업 기준)이 100.0% 이상인 과제의 비율은 성장동력 분야 62.8%, 저출산 분야 55.2%, 고령사회 분야 46.0% 순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과제는 성장동력 분야 90.7%, 고령사회 분야 90.0%, 저출산 분야 86.5%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고령사회 분야 2개(4.0%)이고, 저출산 분야와 성장동력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8〉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단위: 과제 수, %)

분야	예산집행률						비예산사업	기 종료 등 과제
	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2 (1.3)	6 (3.8)	10 (6.3)	55 (34.4)	87 (54.4)	160 (100.0)	67	7
저출산 분야	0 0.0	4 (6.0)	5 (7.5)	21 (31.3)	37 (55.2)	67 (100.0)	27	4
고령사회 분야	2 (4.0)	1 (2.0)	2 (4.0)	22 (44.0)	23 (46.0)	50 (100.0)	24	2
성장동력 분야	0 0.0	1 (2.3)	3 (7.0)	12 (27.9)	27 (62.8)	43 (100.0)	16	1

주: 1)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2)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3)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저출산 분야

□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 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63.6%,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47.8%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45.5%, 순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없음

○ 예산집행률이 50~70% 미만인 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내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1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2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1개 과제로 총 4개 과제가 해당됨

○ 예산집행률이 70~90% 미만인 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내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1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1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1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내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지원(소영역)’ 1개,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1개 과제로 총 5개 과제임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과제는 전체 과제 중 86.5%(58개)로 나타남

〈표 2-39〉 2015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 수, %)

중소영역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0%	1~50%미 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저출산 분야	-	-	4	5	21	37	67	27	4
	-	-	6.0	7.5	31.3	55.2	100.0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	1	1	4	5	11	13	3
	-	-	9.1	9.1	36.4	45.5	100.0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	-	-	1	1	2	4	2	3
	-	-	-	25.0	25.0	50.0	100.0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	-	-	3	1	4	3	-
	-	-	-	-	75.0	25.0	100.0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	1	-	-	2	3	8	-
	-	-	33.3	-	-	66.7	100.0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	3	2	7	21	33	12	-
	-	-	9.1	6.1	21.2	63.6	100.0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	-	-	1	1	2	5	-
	-	-	-	-	50.0	50.0	100.0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	2	1	2	6	11	-	-
	-	-	18.2	9.1	18.2	54.5	100.0		
2-3. 출산양육비용 지원 확대	-	-	-	-	-	5	5	3	-
	-	-	-	-	-	100.0	100.0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1	1	4	9	15	4	-
	-	-	6.7	6.7	26.7	60.0	100.0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	-	2	10	11	23	2	1
	-	-	-	8.7	43.5	47.8	100.0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	-	-	2	2	4	-	-
	-	-	-	-	50.0	50.0	100.0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	-	1	2	4	7	-	-
	-	-	-	14.3	28.6	57.1	100.0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	-	1	6	5	12	-	-
	-	-	-	8.3	50.0	41.7	100.0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	-	-	-	-	2	1
	-	-	-	-	-	-	-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고령사회 분야

□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 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77.8%,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53.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30.8% 순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2개(4.0%), 50~70% 미만인 과제는 1개(2.0%), 70~90% 미만인 과제는 2개(4.0%)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내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이 해당됨

〈표 2-40〉 2015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 수, %)

중소영역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고령사회 분야	1 (2.0)	1 (2.0)	1 (2.0)	2 (4.0)	22 (44.0)	23 (46.0)	50 (100.0)	24	2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 (3.8)	1 (3.8)	1 (3.8)	2 (7.7)	13 (50.0)	8 (30.8)	26 (100.0)	12	-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5.6)	-	1 (5.6)	2 (11.1)	8 (44.4)	6 (33.3)	18 (100.0)	2	1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1 (33.3)	-	-	1 (33.3)	1 (33.4)	3 (100.0)	7	-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	-	-	3 (75.0)	1 (25.0)	4 (100.0)	2	-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	-	-	-	1 (100.0)	-	1 (100.0)	-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	-	7 (46.7)	8 (53.3)	15 (100.0)	11	-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	-	-	-	1 (100.0)	-	1 (100.0)	-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	-	1 (33.3)	2 (66.7)	3 (100.0)	3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	-	4 (57.1)	3 (42.9)	7 (100.0)	8	-
2-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 제공	-	-	-	-	1 (25.0)	3 (75.0)	4 (100.0)	-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	-	2 (22.2)	7 (77.8)	9 (100.0)	2	1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	-	-	-	1 (20.0)	4 (80.0)	5 (100.0)	1	1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	-	-	1 (25.0)	3 (75.0)	4 (100.0)	1	-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1-1)' 내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는 중·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산출이 불가

5)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성장동력 분야

□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 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는 각각 100.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57.9% 순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없음

○ 예산집행률이 50~70% 미만인 과제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1개 과제임

○ 예산집행률이 70~90% 미만인 과제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내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2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1개로 총 3개 과제임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과제는 전체 과제 중 90.7%(39개)로 나타남

〈표 2-41〉 2015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 수, %)

중소영역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성장동력 분야	-	-	1	3	12	27	43	16	1
	-	-	(2.3)	(7.0)	(27.9)	(62.8)	(100.0)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	1	3	12	22	38	6	-
	-	-	(2.6)	(7.9)	(31.6)	(57.9)	(100.0)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	-	-	3	4	7	1	-
	-	-	-	-	(42.9)	(57.1)	(100.0)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	-	-	-	2	2	4	3	-
	-	-	-	-	(50.0)	(50.0)	(100.0)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	-	2	6	14	22	2	-
	-	-	-	(9.1)	(27.3)	(63.6)	(100.0)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	1	1	1	2	5	-	-
	-	-	(20.0)	(20.0)	(20.0)	(40.0)	(100.0)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	-	-	-	2	2	4	1
	-	-	-	-	-	(100.0)	(100.0)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	-	-	-	2	2	-	1
	-	-	-	-	-	(100.0)	(100.0)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	-	-	-	-	3	-
	-	-	-	-	-	-	-		
2-3.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	-	-	-	-	-	1	-
	-	-	-	-	-	-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	-	3	3	6	-
	-	-	-	-	-	(100.0)	(100.0)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	-	-	-	3	3	3	-
	-	-	-	-	-	(100.0)	(100.0)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	-	-	-	3	-
	-	-	-	-	-	-	-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과제별 예산

(1) 저출산 분야

-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은 총 8.6조원으로 저출산 분야 총 예산의 57.9% 차지
 - 다음으로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약 1.9조원(12.8%),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약 1.1조원(7.1%),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약 0.7조원(5.0%), 휴가휴직제도 확대 개선 약 0.5조원(3.6%),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 약 0.5조원(3.3%) 등으로 나타남
 - 전체 예산 중 상위 7개 과제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1.2%로 예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42〉 2015년도 저출산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저출산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86,281.31	57.94	57.94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19,128.01	12.84	70.78
3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조성(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제공)	10,622.41	7.13	77.91
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7,443.93	5.00	82.91
5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5,351.27	3.59	86.50
6	임신·출산비용지원확대(난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4,944.65	3.32	89.82
7	소질과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등)	2,059.58	1.38	91.21
8	수요자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시간연장형,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1,773.21	1.19	92.40
9	가족친화직장·사회환경조성(직장보육시설, 가족친화)	1,531.76	1.03	93.43
10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1,430.47	0.96	94.39
11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228.29	0.82	95.21
12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평가인증, 공공형등)	938.26	0.63	95.84
13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812.25	0.55	96.39
14	아동청소년의 종합적발달지원, 취약계층아동휴먼네트워크형성	742.36	0.50	96.88
15	아동학대예방보호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736.00	0.49	97.38
16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720.47	0.48	97.86
17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680.83	0.46	98.32
18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567.28	0.38	98.70
19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492.94	0.33	99.03
2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462.67	0.31	99.34
21	위기가동·청소년자립지원확대	327.52	0.22	99.56
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216.46	0.15	99.71
23	임신·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강화	211.90	0.14	99.85
24	아동·청소년생활안전강화	205.53	0.14	99.99
25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18.00	0.01	100.00
	계	148,927.36	100.00	

주: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

(2) 고령사회 분야

-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무연금 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기초(노령)연금)’에 총 10.0조원이 투입되어 고령사회 분야 총 예산 중 77.0% 차지
-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0.68조원(5.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0.66조원(5.1%),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0.59조원(4.6%),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0.21조원(1.7%),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0.19조원(1.5%) 등
- 전체 예산 중 상위 4개 과제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2.0%로 예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43〉 2015년도 고령사회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고령사회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100,089.86	76.96	76.96
2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6,897.62	5.30	82.26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6,652.60	5.11	87.37
4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5,971.64	4.59	91.97
5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2,149.43	1.65	93.62
6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971.98	1.52	95.13
7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1,282.05	0.99	96.12
8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992.57	0.76	96.88
9	고령자고용연장	830.57	0.64	97.52
10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646.32	0.50	98.02
11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638.24	0.49	98.51
12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453.46	0.35	98.86
13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439.22	0.34	99.20
14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270.22	0.21	99.40
15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18.88	0.17	99.57
16	중·고령자인력전문성활용제고	180.52	0.14	99.71
17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118.68	0.09	99.80
18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65.50	0.05	99.85
19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52.93	0.04	99.89
20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52.59	0.04	99.93
21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32.41	0.02	99.96
22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30.00	0.02	99.98
23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18.90	0.01	100.00
24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5.33	0.00	100.00
	계	130,061.52	100.00	

주: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

(3) 성장동력 분야

□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에 1.34조원이 투입되어 성장동력 분야 총 예산 중 68.0% 차지

○ 다음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0.23조원(11.8%),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903.4억(4.6%),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847.8억원(4.3%),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674.1억원(3.4%) 등으로 나타남

○ 전체 예산 중 상위 5개 과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2.1%로 예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44〉 2015년도 성장동력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성장동력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13,493.68	68.02	68.02
2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344.00	11.82	79.83
3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903.36	4.55	84.38
4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847.76	4.27	88.66
5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674.09	3.40	92.06
6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618.63	3.12	95.17
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61.35	1.32	96.49
8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240.17	1.21	97.70
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210.88	1.06	98.77
10	적극적 여성고용정책강화	177.09	0.89	99.66
1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67.92	0.34	100.00
	계	19,838.93	100.00	

주: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

제 3 장

핵심과제 평가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제4절 소결

3

핵심과제 평가 <<

□ 본 절에서는 45개의 핵심과제(저출산분야 18개, 고령사회분야 17개, 성장동력분야 10개)를 평가함

○ 핵심과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2011~2015년)동안의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치와 달성률을 시계열로 제시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됨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 내 3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를 <표 3-1>에서 제시함

<표 3-1> 저출산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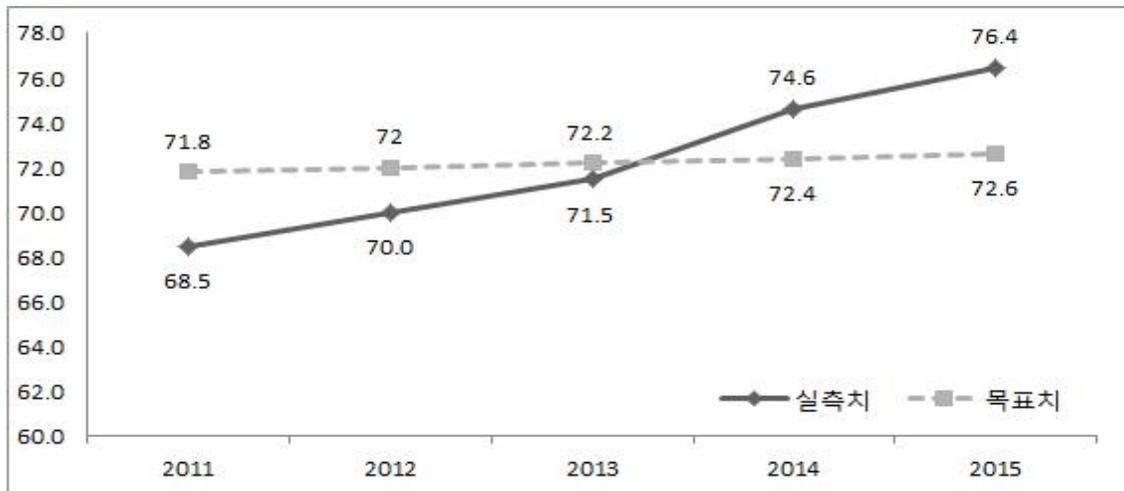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 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청구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	-산후 회복기간이 더 필요한 쌍둥이 산모의 출산휴가 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 강화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소영역)

□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68.5%)대비 7.9% 포인트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72.6%) 대비 초과달성(105.2%)
 - 관련 세부과제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대체 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 등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한편, 본 과제의 당해연도 목표치는 2014년 실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1]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주: 1) 성과지표 산식 =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수 ÷ 휴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 × 100
 2)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년 후에 같은 사업장에 고용 유지된 근로자 수입
 3) 휴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근로자 수입
 자료: 고용보험 전산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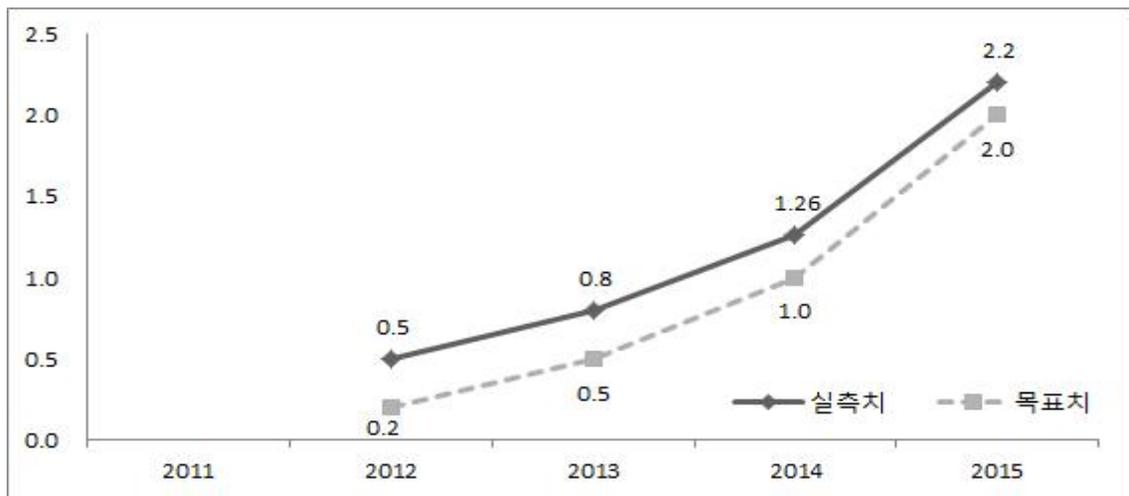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은 2012년 0.5%에서 2015년 2.2%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1.7% 포인트 증가함
 - ※ 동과제의 2011년 목표치는 ‘제도 도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2011.9.22.)하여 과제 목표를 달성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를 지급하였고(11.9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였으며(12.8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60%에

서 근로시간 단축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14.10월)함

○ 당해연도 목표치(2.0%) 대비 초과달성(108.9%)

-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주: 성과지표 산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 산전후휴가자수 × 100
 자료: 고용보험 전산망

나.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 유연근로제 확산

○ ‘행정기관 유연근로제 이용률’은 2011년 5.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1년 대비 13.5% 포인트 증가한 18.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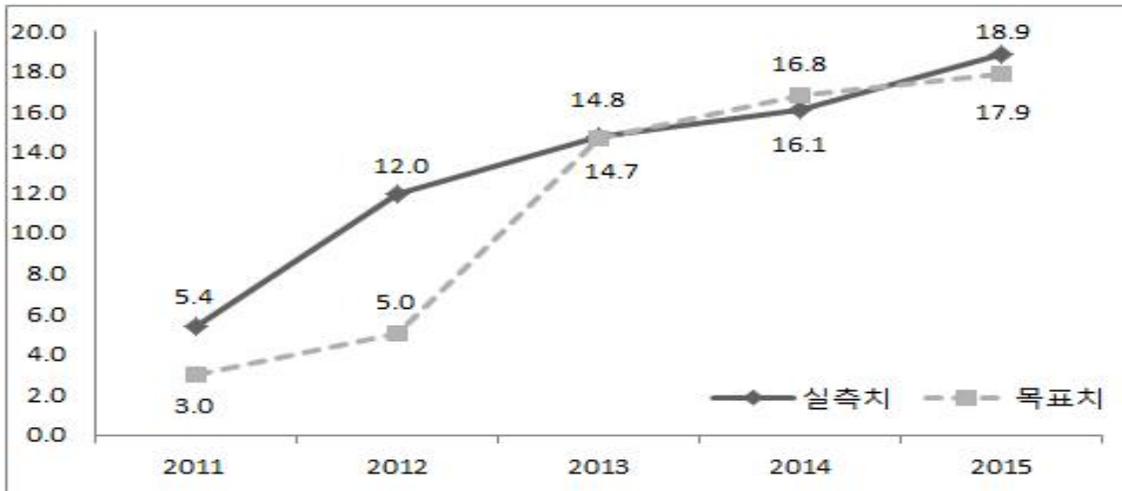
○ 당해연도 목표치(17.9%) 대비 초과달성(105.6%)

- 이는 ‘유연근로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로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 개발’, ‘유연근로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과제 세부정책이 수행된 결과로 평가 가능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시 별도 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무시간 확대 및 시간선택제 전환시 대체인력 채용 간소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 내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공공부문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하여 인사혁신지수에 유연근로제 지표 신설 및 평가하고, 유연근로제 워크숍 추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유연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자 간담회 등 개최

[그림 3-3] 유연근로제 확산 핵심성과지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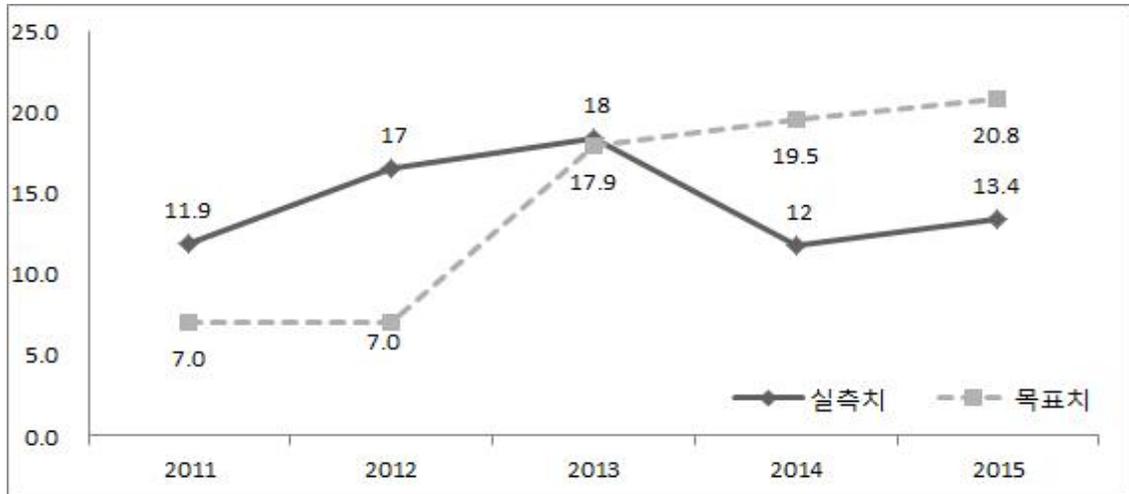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행정기관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 ÷ 대상인원 × 100
 자료: 인사혁신처 내부자료

다.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은 2011년 11.9%에서 2013년 18.4%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11.8%로 다소 감소한 후 2015년 13.4%로 증가
- 당해연도 목표치(20.8%)의 64.4% 달성
 -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2014년 성과지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
 - 2015년도 목표치는 2014년 실적이 고려되지 않아 과도하게 설정되어 목표 미달성에 영향
 -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를 위해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홍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임

[그림 3-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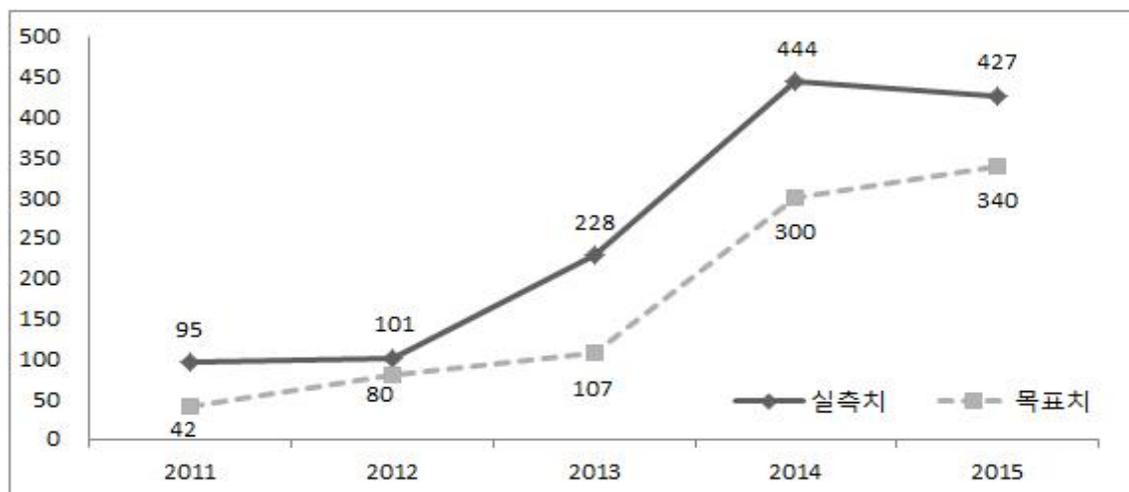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당해연도 설치 개소 수 ÷ 전년도 총 개소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는 2011년 95개소에서 2012년 101개소로 완만한 증가를 보였고, 2012년에서 2014년 동안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343개소 증가한 444개소까지 늘어났으며, 2015년은 427개소로 다소 감소
- 당해연도 목표치(340개소) 대비 초과달성(125.6%)
 - 이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등의 세부과제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사)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15년도 가족친화인증 선정 결과)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중영역 내 4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기본과제를 <표 3-2>에서 제시함

<표 3-2> 저출산 분야: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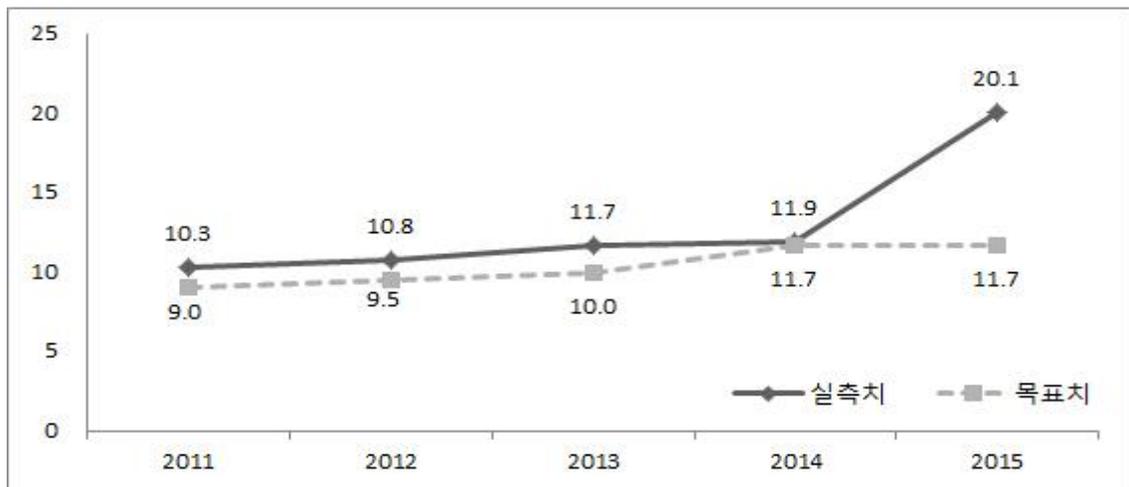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 -미입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
	-	-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	-	-양육수당 지원 확대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실 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은 2011년 10.3%에서 2014년 11.9%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 20.1%로 급증하여 2011년 대비 9.8% 포인트 증가함
- 당해연도 목표치(11.7%) 대비 초과달성(172.0%)
 - 이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 등의 세부과제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15년 8.8만호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하고 6.4만호에 대해 사업 승인하였으며, 2.8만호는 착공 완료함
 - 국민임대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고 5년·10년 임대의 15%는 특별 공급함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등 금리를 인하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성과추진

[그림 3-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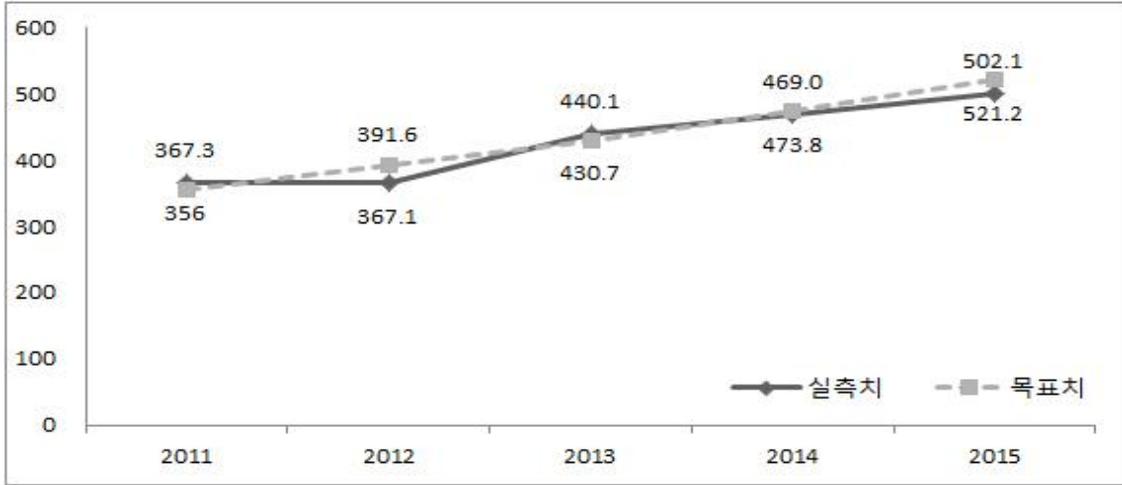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특별공급+임대주택+전세임대) ÷ 연간초혼 건수 × 10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은 2011년 367,300명에서 2014년까지 469,0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502,100명으로 나타나 2011년 대비 134,800명 증가
- 당해연도 목표치(521,200%) 대비 96.3% 달성
 - 이는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등의 세부과제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핵심성과지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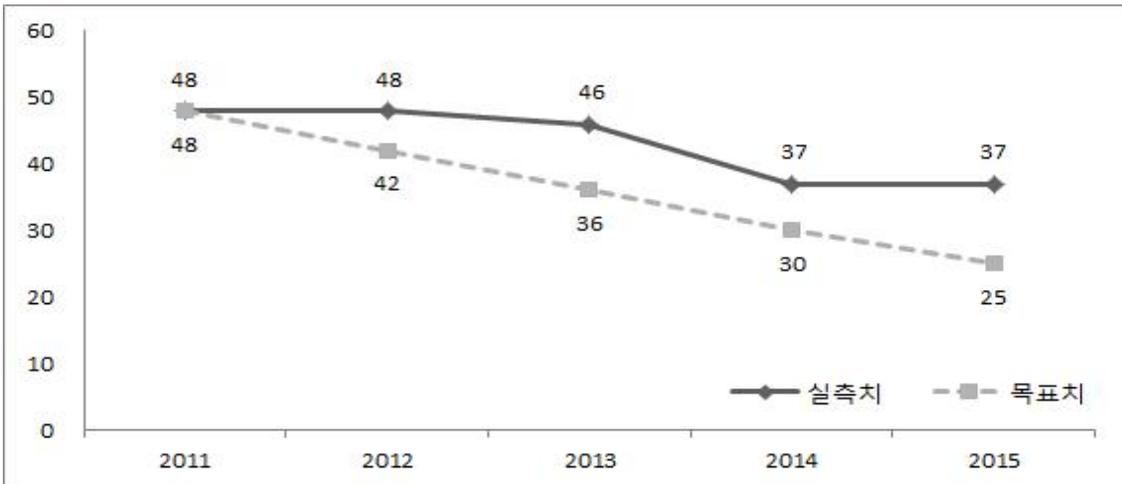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보고서

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는 2011년 48개소에서 2014년 37개소까지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2014년과 동일한 37개소로 변동 없음
- 당해연도 목표치(25.0%) 대비 52.0% 달성
 - 분만취약지는 구조적으로 반드시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되어야만 분만취약지의 해소가 가능하므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5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조정 필요 있음

[그림 3-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 지역 수(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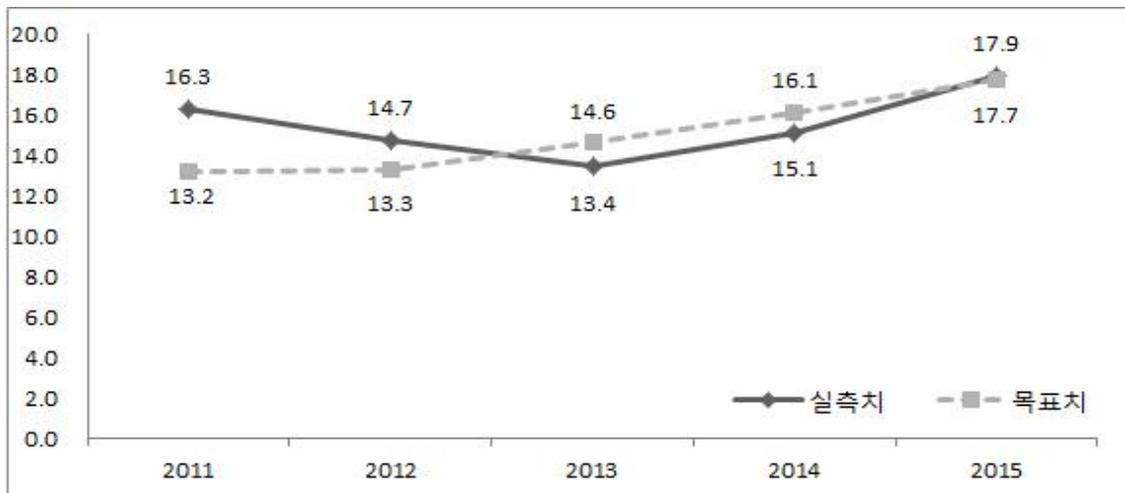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은 2011년 16.3%에서 2013년 13.4%까지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은 17.9%로 나타나, 당해연도 목표치(17.7%) 대비 초과달성(101.1%)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 기준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에서 65%로 조정하여 수혜인원을 확대하였고, 결제방식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여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편의성을 도모함

[그림 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핵심성과지표: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주: 성과지표 산식 = 연간수혜자 수 ÷ 연간 출생아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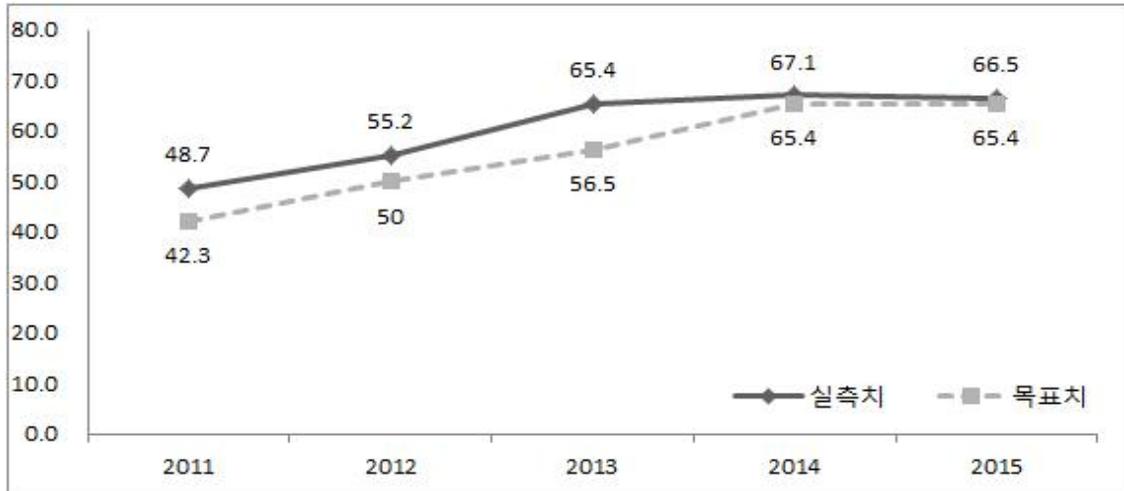
다.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율’은 2011년 48.7%에서 2014년 67.1%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66.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목표치(65.4%) 대비 초과달성(101.7%)

- 이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등의 세부과제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속 지원함

[그림 3-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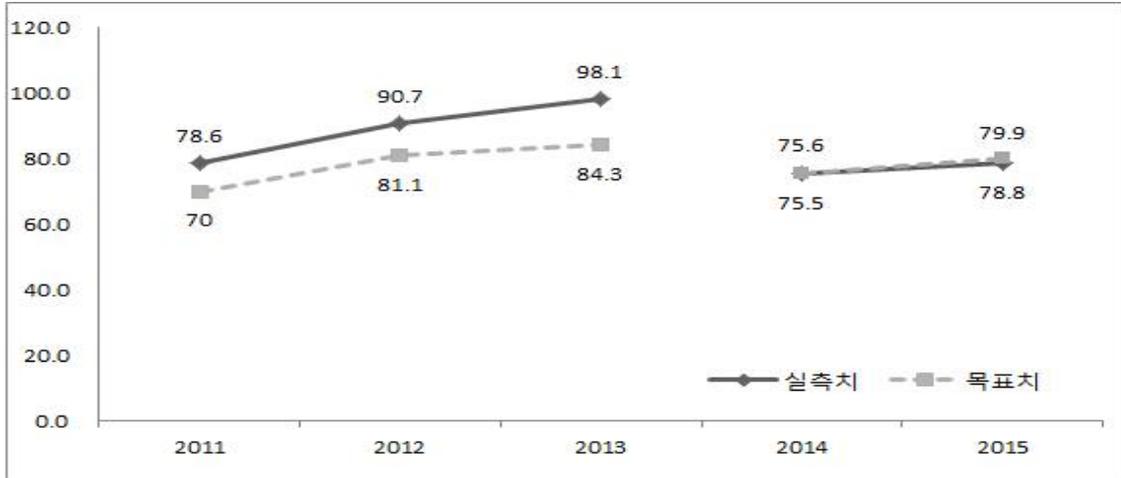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영유아보육비·교육비수혜자÷0~5세 아동 수×100
 자료: 보육통합시스템(15.12월 말), 교육통계(15.4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민간육아시설 서비스개선 과제의 핵심성과지표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에서 2014년부터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유지율’로 변경됨.
-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은 2011년 78.6%에서 2013년 98.1%까지 증가하여, 2011년 대비 19.5% 포인트 상승함. 한편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은 2014년 75.6%에서 2015년 78.8%로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목표치(78.6%) 대비 98.6% 달성
 - 이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등의 세부과제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의무평가를 예상하여 목표치를 상회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국회미통과로 목표 미달성함. 현재 의무평가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평가인증제 하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15년 중 어린이집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확인 점검을 확대하였고, 수요자 중심 평가를 위한 부모만족도조사 문항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강화에 노력

[그림 3-11]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핵심성과지표: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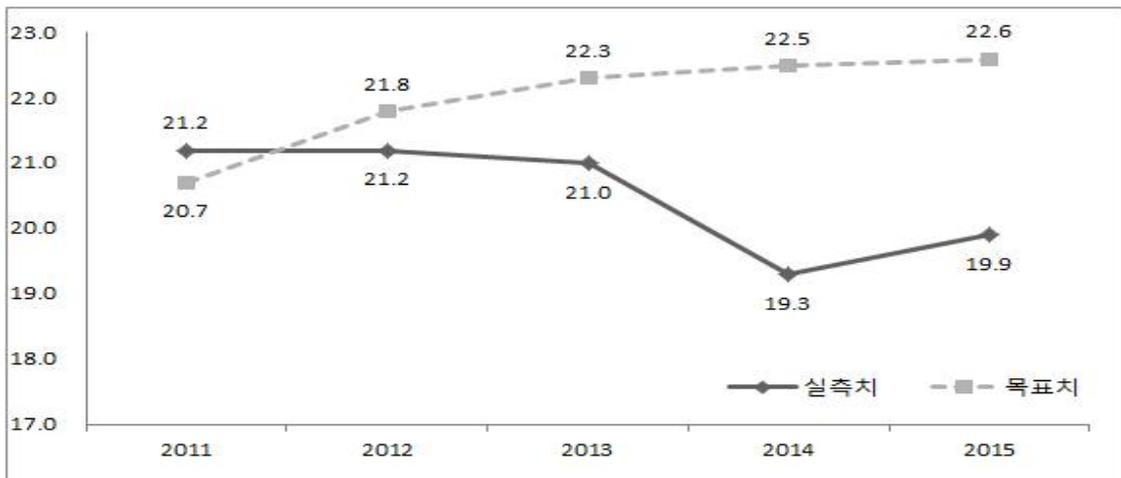


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핵심성과지표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 100)이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 100)로 변경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통계

□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은 2011년 21.2%에서 2014년 19.3%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19.9%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2011년 대비 1.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당해연도 목표치(22.6%) 대비 87.9% 달성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연장 이용 아동이 '14년 16,432명에서 '15년 15,47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목표치 부진. 향후 양질의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할 필요 있음

[그림 3-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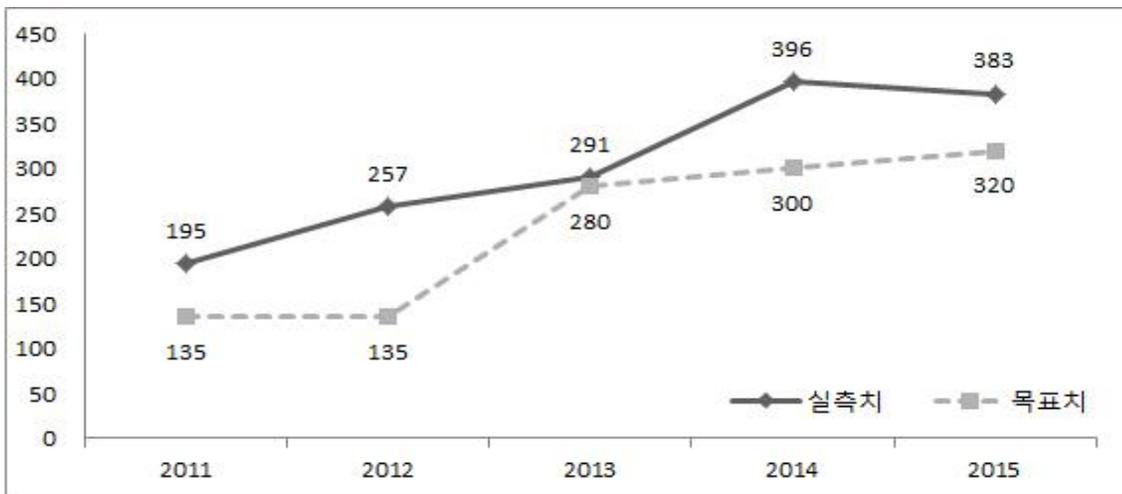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돌봄 유치원 수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 ÷ (전체 유치원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부자료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는 2011년 195만 건에서 2014년 396만 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383만 건으로 다소 감소함. 2011년 대비 2015년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는 188만 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320만 건) 대비 초과달성(119.7%)
-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 활성화’ 등 세부과제 등의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동 과제의 2015년도 목표치 320만 건은 2014년도 실적 396만 건보다 76만 건이 낮아 목표치 설정 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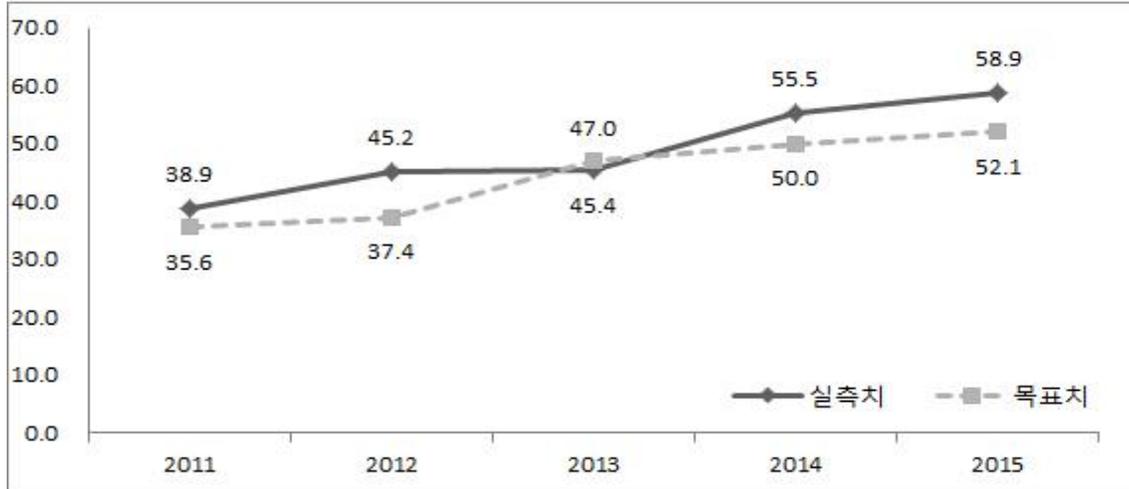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2011년 38.9%에서 2015년 58.9%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2011년 대비 2015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20.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당해연도 목표치(52.1%) 대비 초과달성(113.0%)
- 이는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동 과제의 2015년도 목표치 52.1%는 2014년도 실적 55.5%보다 3.4% 포인트 낮아 목표치 설정 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4]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주: 성과지표 산식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초등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방과후 돌봄 필요아동 수×100
 자료: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15.12.31.기준)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영역 내 3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기본과제를 <표 3-3>에서 제시함

<표 3-3> 저출산 분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휴먼네트워크 확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확대(여성가족부/교육부)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국민안전처/교육부)
	-	-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 확충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청소년정책 14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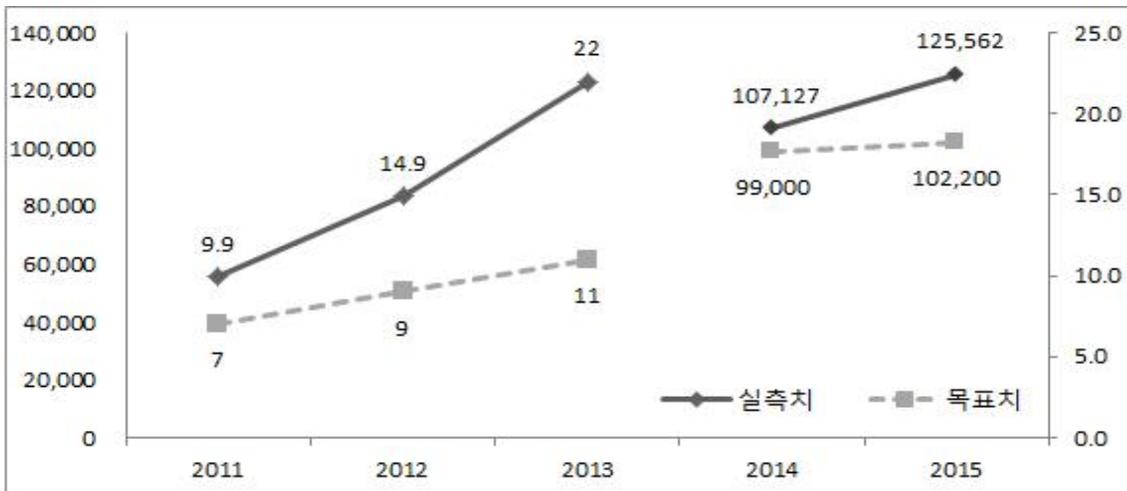
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동 과제의 핵심성과지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드림스타트 수혜율’이었고, 2014년부터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로 변경됨. ‘드림스타트 수혜율’은 2011년 9.9%에서 2013년 22.0%로 12.1% 포인트 증가하였고,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는 2014년 107,127명에서 2015년 125,562명으로 18,435명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02,200명) 대비 초과달성(122.9%)

- 이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라는 세부과제의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2015년도 목표치 102,200명은 2014년도 실적 107,127명보다 4,927명 낮은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시 전년도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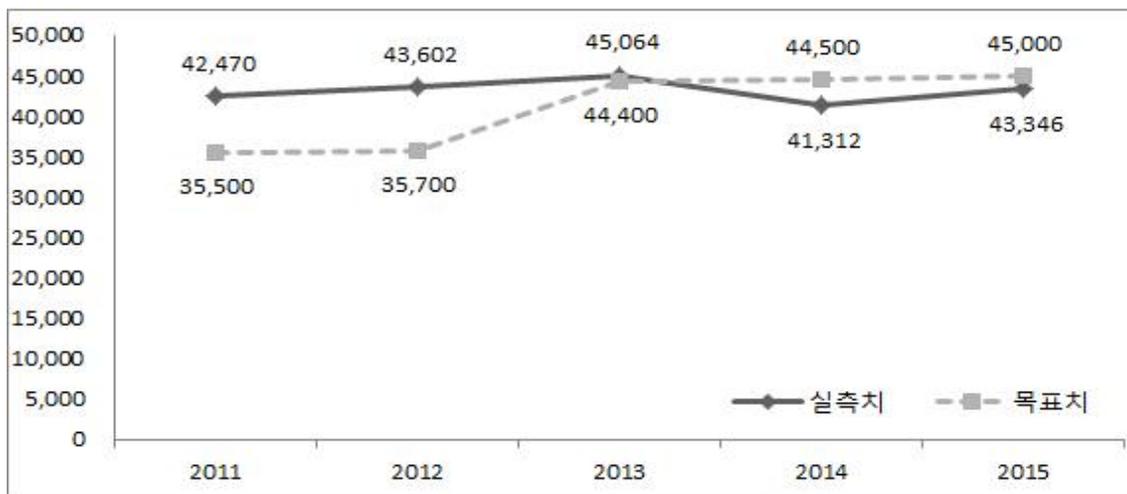
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핵심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수혜율(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 ÷ 취약계층 아동 수 × 100)이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 수로 변경됨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15.12.31.기준)

나.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는 2011년 42,470천명에서 2013년 45,064천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4년 41,312천명으로 급감하였고, 2015년에는 43,346천명으로 2012년 실적 수준 정도까지 증가함
- 당해연도 목표치(45,000천명) 대비 96.3% 달성
 -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기존(‘11~’13년) 증가추세가 꺾이며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증가하여 실적을 일부 만회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3-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성과지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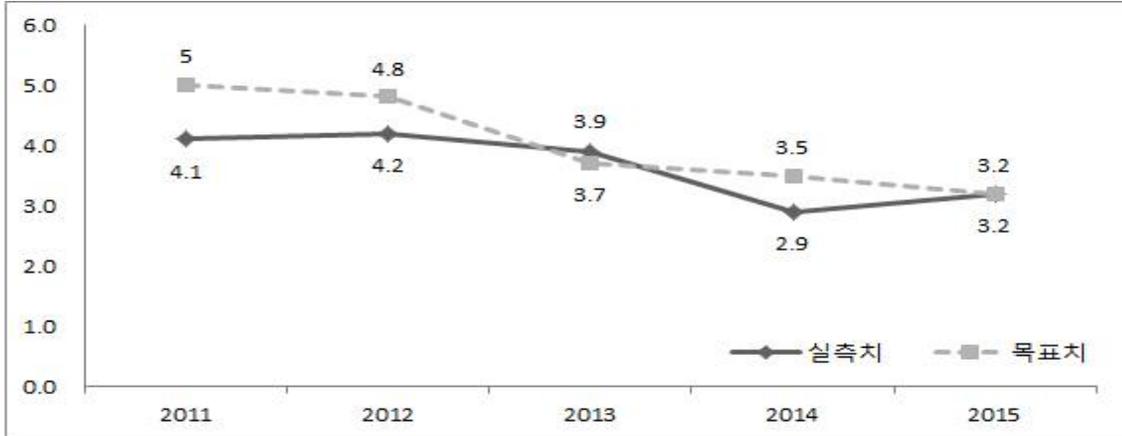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연간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다.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2011년 4.1%에서 2014년 2.9%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소 증가한 3.2%로 당해연도 목표치(3.2%)의 100.0% 달성
 - 아동이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대처하는 참여형 체험콘텐츠 및 교구를 개발하고, 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보완하는 등 아동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

[그림 3-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성과지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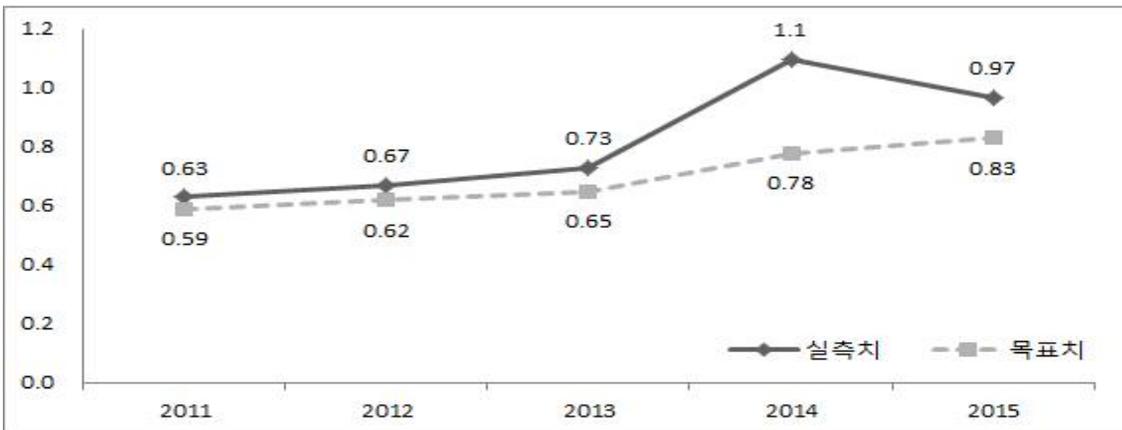


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0~14세 아동 사망자 수 ÷ 0~14세 아동 수) × 100,000 (14세 이하 아동 중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의 수로 질병, 자살, 타살로 인한 사망은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통계청(2015), '사망원인 통계'

□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2011년 0.63%에서 2013년 0.73%로 완만한 증가를 보였고, 2014년 1.1%까지 급증하였으나 2015년에는 0.97%로 다소 감소함
 - 증가추세의 원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고, 피해아동의 사법적 보호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 당해연도 목표치 0.83% 대비 초과달성(116.9%)
 - 그러나 2015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2014년 이미 초과달성한 것으로 향후 목표치 설정 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함

[그림 3-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주: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 (0~17세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0~17세 아동 수) × 1000, 학대피해아동은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가아동학대정보화시스템, 통계청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내 4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를 <표 3-4>에서 제시함

<표 3-4>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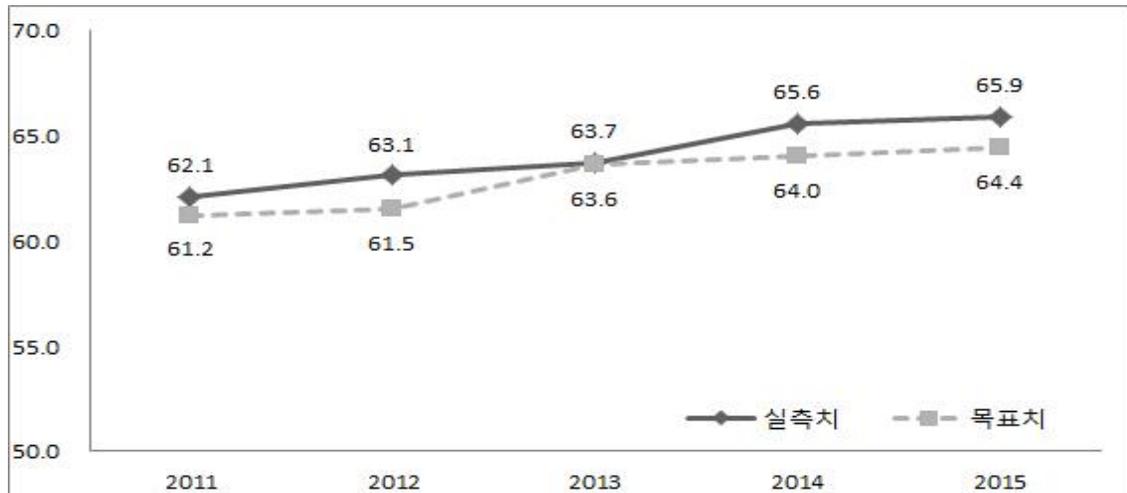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 -지역공동체(마을기업)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률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개인연금 활성화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 -고령층 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 확충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조성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

가.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 고령자 고용연장

- ‘고령자(55세~64세 취업자 수) 고용률’은 2011년 62.1%에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며 2015년 65.9%로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64.4%) 대비 초과달성(102.3%)
- 관련 세부과제로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한편, 본 과제의 당해연도 목표치는 2014년 실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19]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성과지표: 고령자(55~6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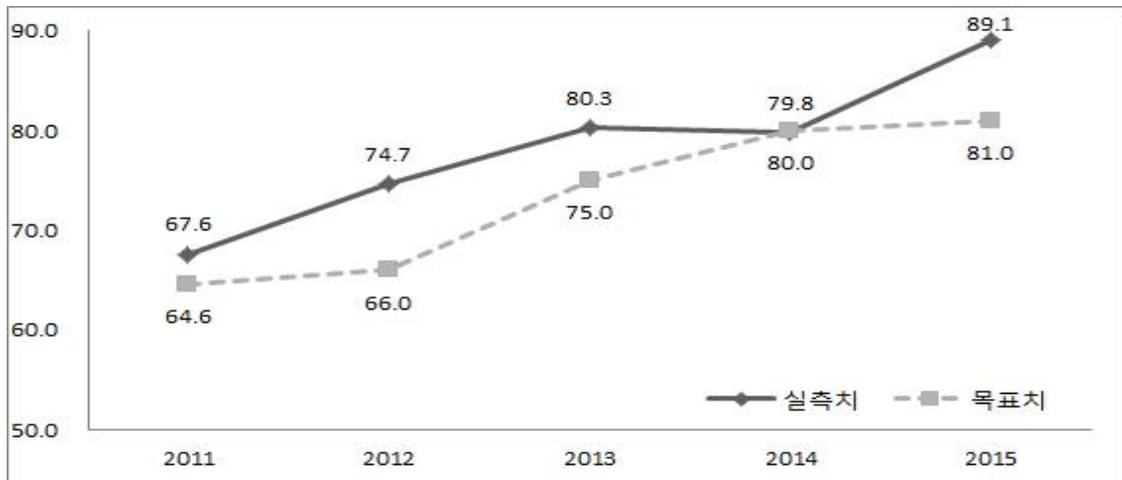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55~64세 고용자 수 ÷ 55~64세 인구 수)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 67.6%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79.8%로 감소한 후 2015년 89.1%로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81.0%) 대비 초과달성(110.0%)
- 관련 세부과제로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2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성과지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주: 성과지표 산식 =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자 ÷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자 수) ×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자료 및 워크넷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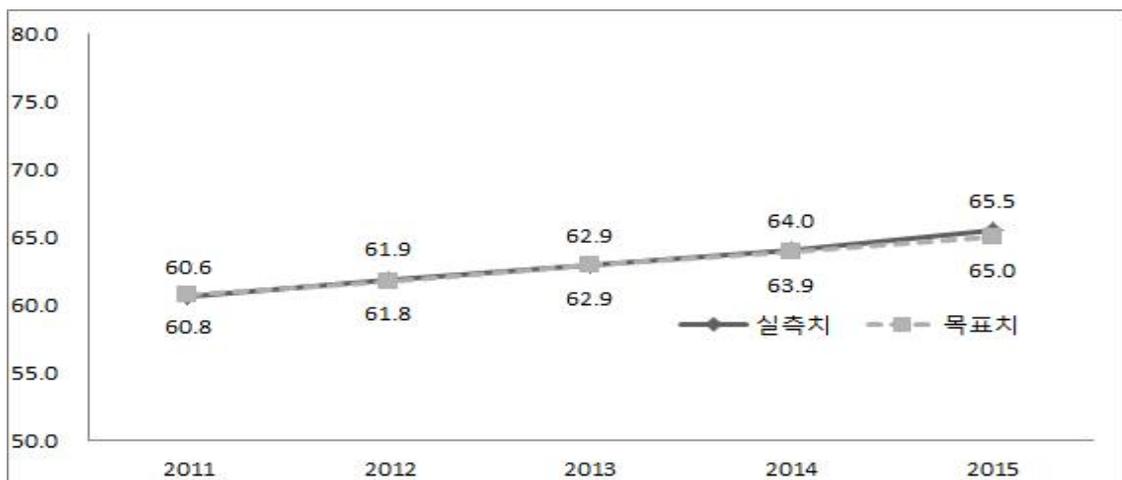
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1년 60.6%에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며 2015년 65.5%로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65.0%) 대비 초과달성(100.8%)

- 관련 세부과제로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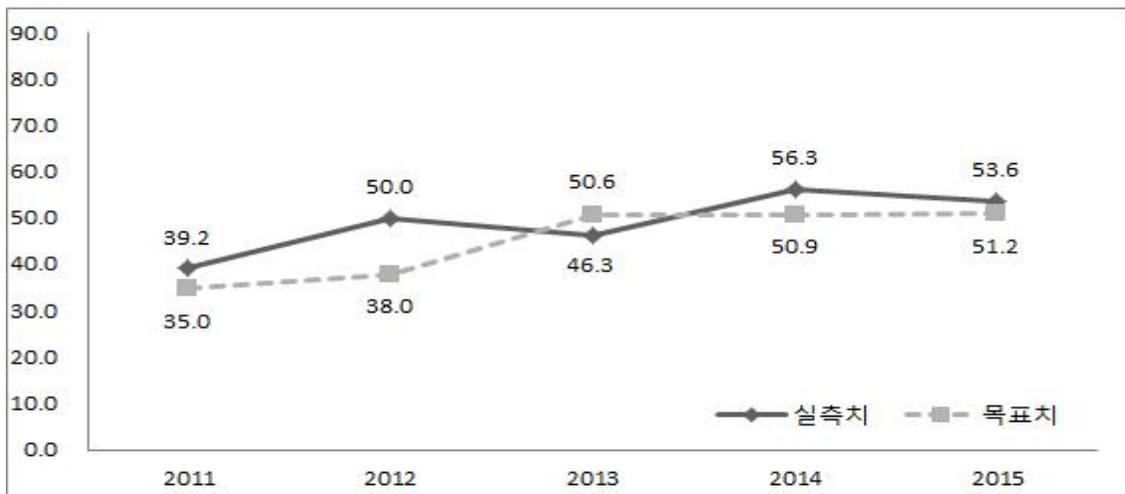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국민연금가입자 수 ÷ 18~59세 인구 수) ×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1년부터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5년은 당해연도 목표치(51.2%) 대비 초과달성(104.7%)

- 관련 세부과제로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한편, 본 과제의 당해연도 목표치는 2014년 실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2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성과지표: 퇴직연금 가입률(%)



주: 성과지표 산식 = (상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자 수 ÷ 상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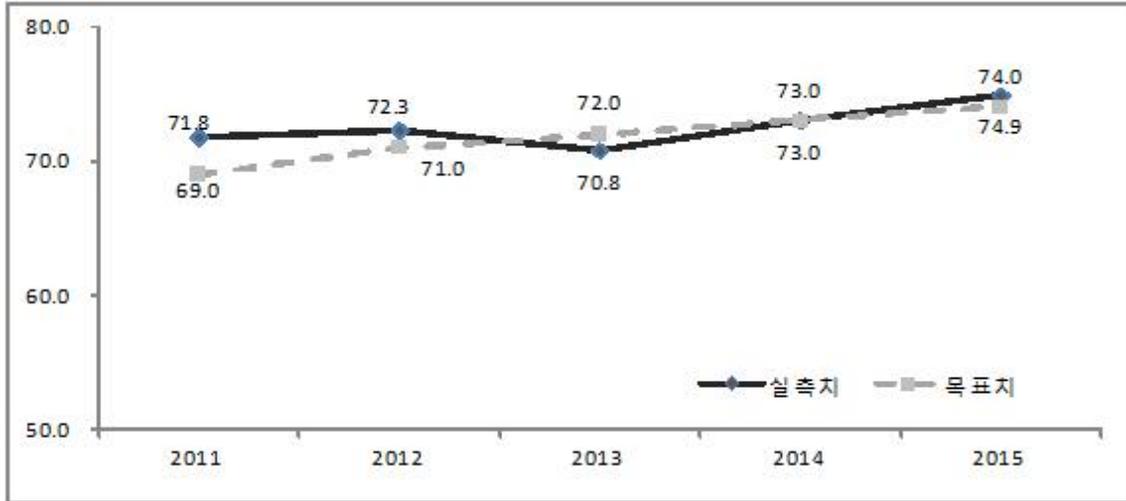
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3년을 제외하고 2011년 71.8%에서 2015년 74.9%로 증가하였고, 2015년은 당해연도 목표치(74.0%) 대비 초과달성(101.2%)

- 관련 세부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등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23]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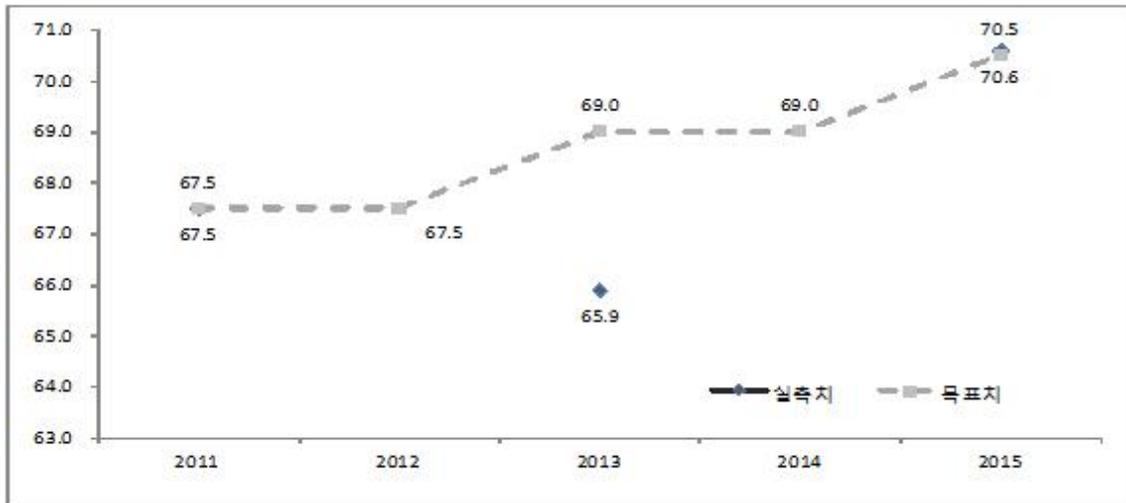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건강검진 수검자 ÷ 건강검진대상자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라.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

□ 노후설계 기반 조성

-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은 2011년 67.5%에서 2013년 65.9%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70.6%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70.5%) 대비 초과달성(100.1%)
- 2012년, 2014년 실적은 기준 자료(통계청 사회조사)가 격년으로 산출되어 부재함

[그림 3-24] 노후설계 기반 조성 핵심성과지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주: 성과지표 산식 = (50대 이상 노후준비응답자 ÷ 조사대상자 중 50대 이상 수) × 1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중영역 내 4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를 <표 3-5>에서 제시함

<표 3-5> 고령사회 분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 수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농지연금 활성화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노인운동 활성화 -농촌생활 활력 추진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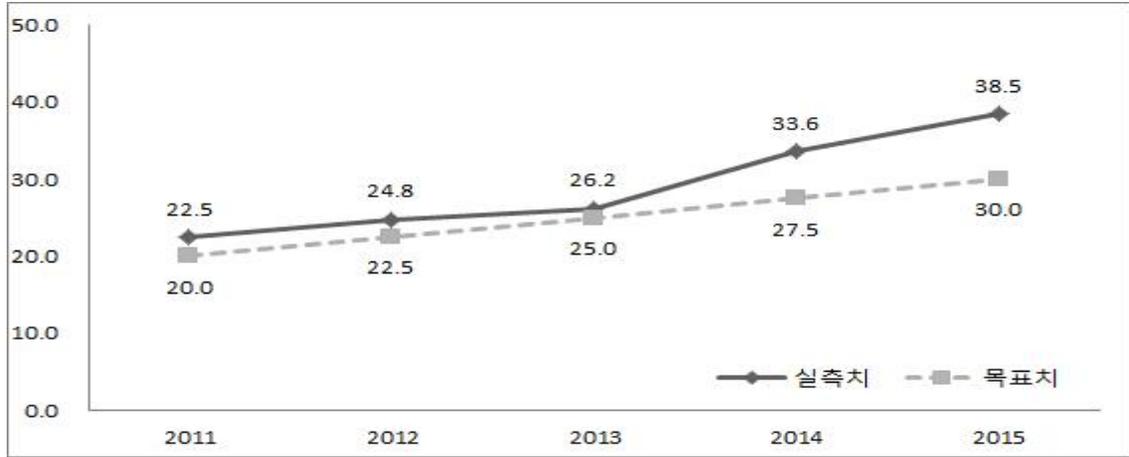
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노인일자리 창출 수’은 2011년 22.5만명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2013년 26.2만명에서 2015년 38.5만명으로 급증함. 2011년 대비 2015년 노인일자리 창출 수는 16만 명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0만 명) 대비 초과달성(128.7%)

- 관련 세부과제로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동 과제의 2015년도 목표치 30만 명은 2014년도 실적 33.6만 명보다 3만6천 명이 낮아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 수(만명)



주: 성과지표 산식 = 노인일자리 창출 수(공공분야+민간분야)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새누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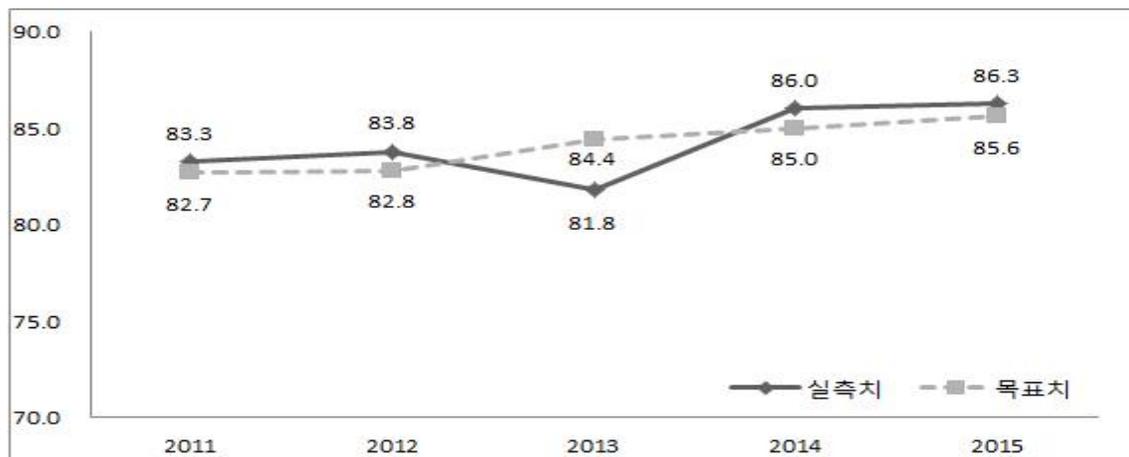
나.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공적소득보장률’은 2011년 83.3%에서 다소 증가하다가 2013년 81.3%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86.0%까지 증가하였고 2015년은 목표달성률은 86.3%로 당해연도 목표치(85.6%) 대비 초과달성(100.8%)

- 관련 세부과제로 ‘기초(노령)연금 내실화’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한편, 본 과제의 당해연도 목표치는 2014년 실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26]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공적 소득보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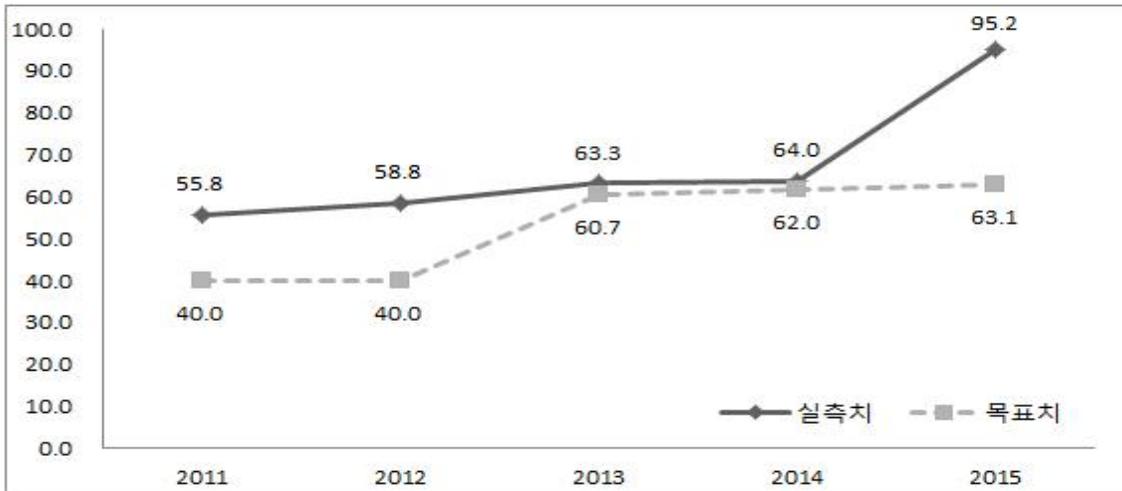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기초연금+공적연금 수급자-기초연금과 공적연금 중복수급자)÷65세 이상 노인인구×100
 자료: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및 국군재정관리단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는 2011년 55.8%에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64.0%에서 2015년 95.2%로 급증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3.1%) 대비 초과달성(151.0%)
 - 관련 세부과제로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한편, 본 과제의 당해연도 목표치는 2014년 실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2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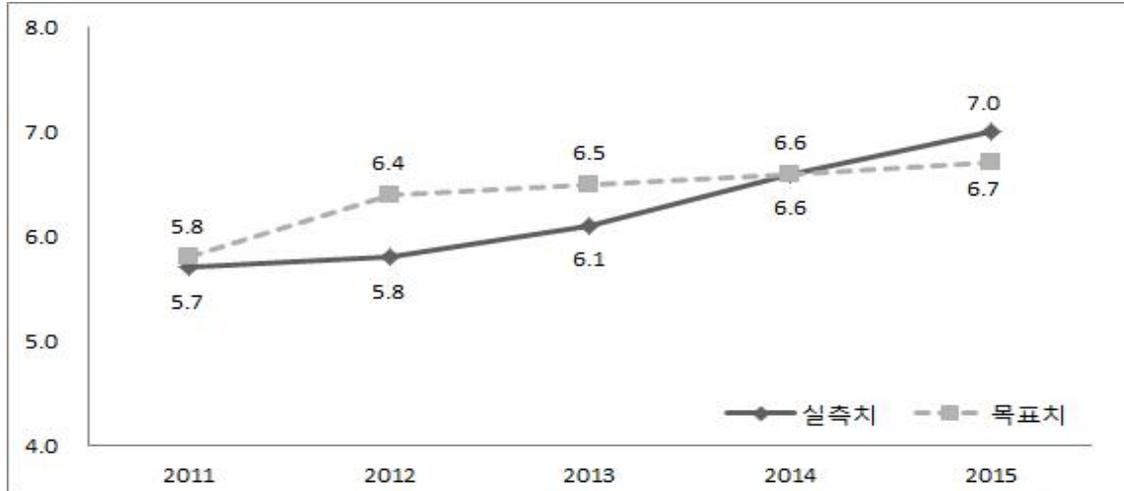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4년도 상·하반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실적 보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은 2011년 5.7%에서 2015년 7.0%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며, 당해연도 목표치(6.7%) 대비 초과달성(104.5%)
 - 관련 세부과제로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추진’,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2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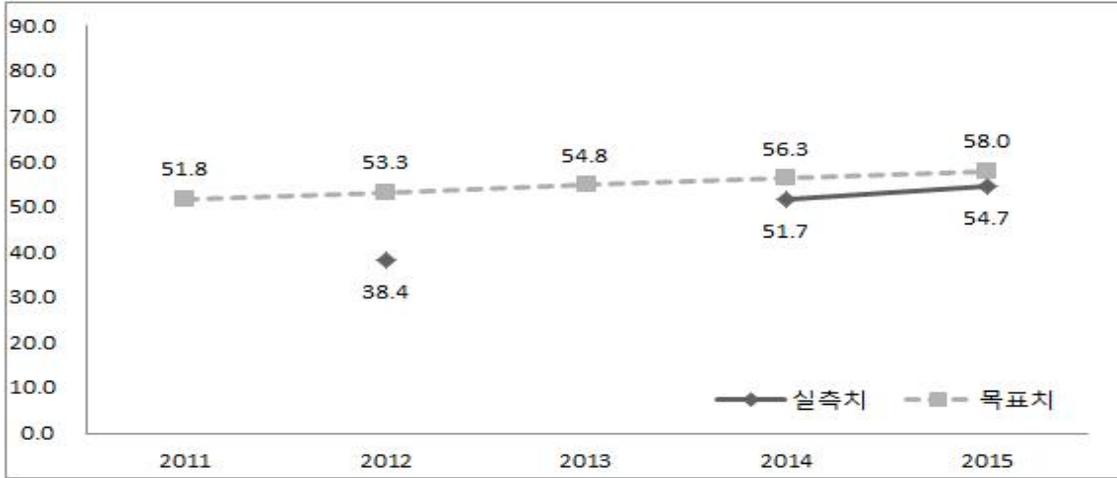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노인장기요양 등급확정자(1-5등급) ÷ 노인인구 × 100

자료: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2년 38.4%에서 2014년 51.7%로 급증하였고 2015년 54.7%로 증가
 - 2011년과 2013년도는 ‘국민생활체육 참여 및 국민체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실적이 부재
- 당해연도 목표치(58.0%)의 94.3% 달성
 - 2015년도 60세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51.5%)은 2014년 실적보다 6.5% 상향하여 58%의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 전년대비 3.3%증가해 10세 이상 전국민 증가율(1.2%)보다 2.1%나 크게 증가했음에도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률은 94.3%에 그침
 - ‘건강상의 문제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2014년(26.5%) 대비 4.95% 증가한 31.45%(2015년)로 나타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로 참여율 목표치 미달성. 신체적 허약 등 건강상의 문제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노인 대상 프로그램 및 지도자 배치 확대, 신체나이 및 건강상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목표달성률 제고 기대
 - 관련 세부과제로 ‘노인운동 활성화’, ‘농촌생활 활력 추진’,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2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주: 성과지표 산식 = (생활체육참여 60세 이상 인구 ÷ 60세 이상 인구) ×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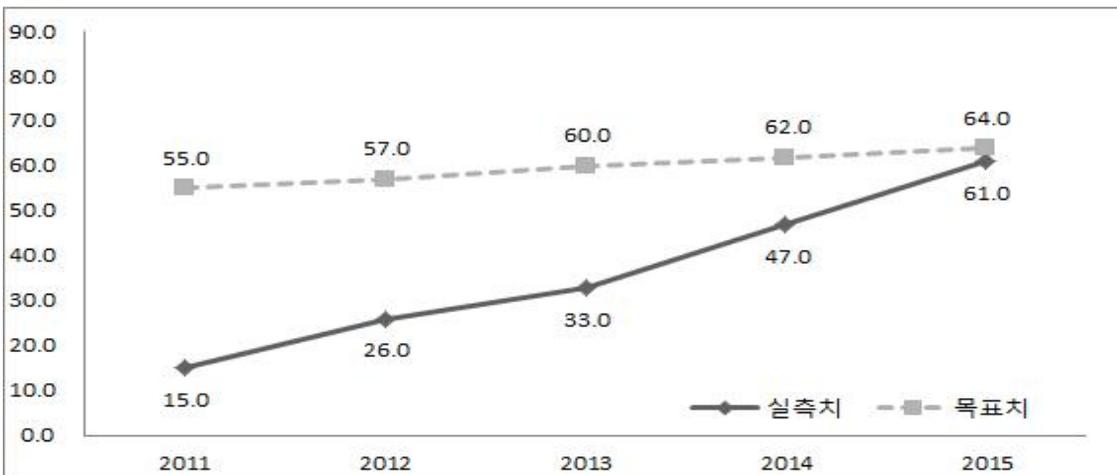
라.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소영역)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2011년 15,000명에서 매년 급증하여 2015년 61,000명으로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64,000명)의 95.3% 달성

- 관련 세부과제로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3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천명)



주: 1) 성과지표 산식 = 사회복지분야 65세 이상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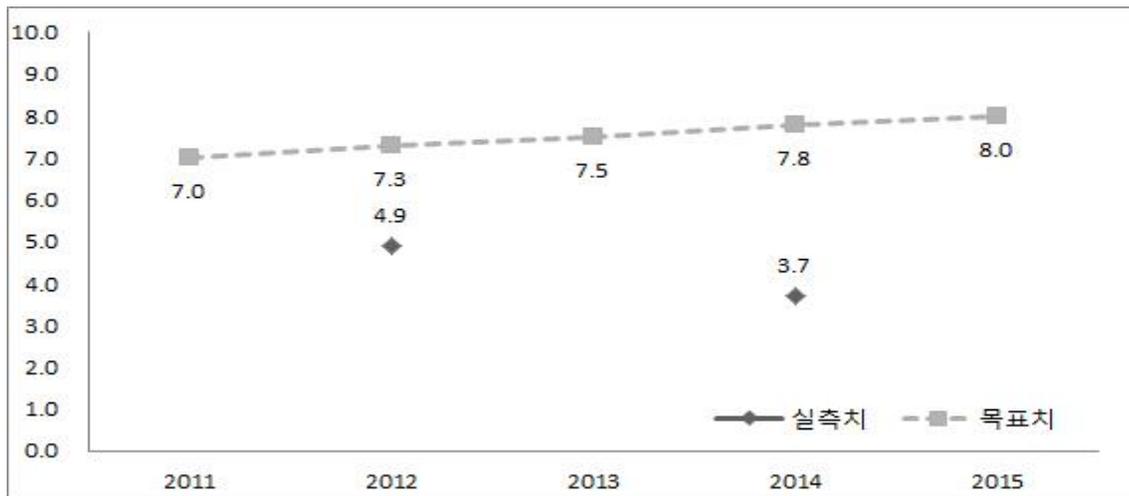
2) 해당산식에 맞는 수치 산출의 불가로 노인자원봉사클럽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누적) 명시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추진실적 종합보고서상 노인자원봉사자 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의 근거자료인 「문화향수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는 격년마다 실시하므로 현재 2016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진행 중임. 이에 따라 2015년도 실적은 부재함

[그림 3-3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해당연도)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내 2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를 <표 3-6>에서 제시함

<표 3-6> 고령사회 분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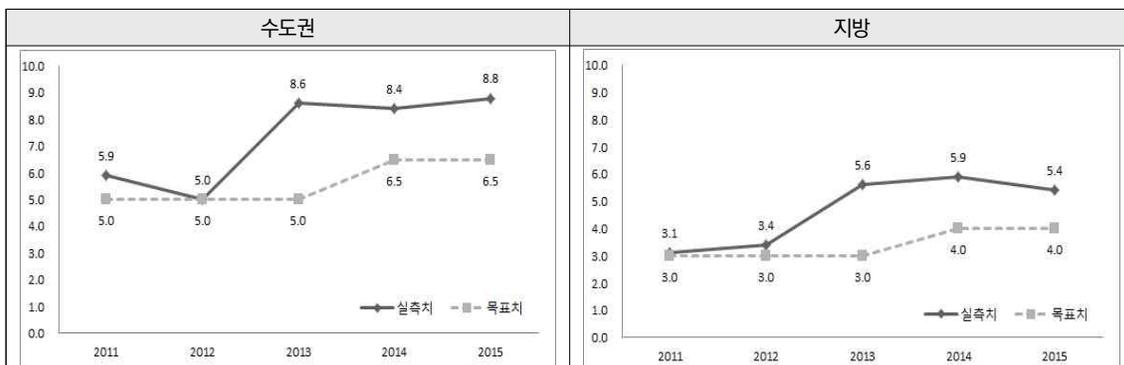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 (총임대주택 대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교통사망률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독거노인 보호 강화 -농어촌 가사도우미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어건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는 수도권의 경우 2011년 5.9%에서 2012년 5.0%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8.6%로 급증하였고, 2014년 8.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 8.4%에서 2015년 8.8%로 증가함. 지방의 경우 2011년 3.1%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5.9%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5.4%로 감소함
- 수도권과 지방 모두 당해연도 목표치(수도권 6.5%, 지방 4.0%)를 초과달성함(수도권 135.4%, 지방 135.0%)
 - 관련 세부과제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동 과제의 당해연도 목표치 수도권 8.8%, 지방 4.0%는 2014년도 실적 8.4%, 5.9%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3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성과지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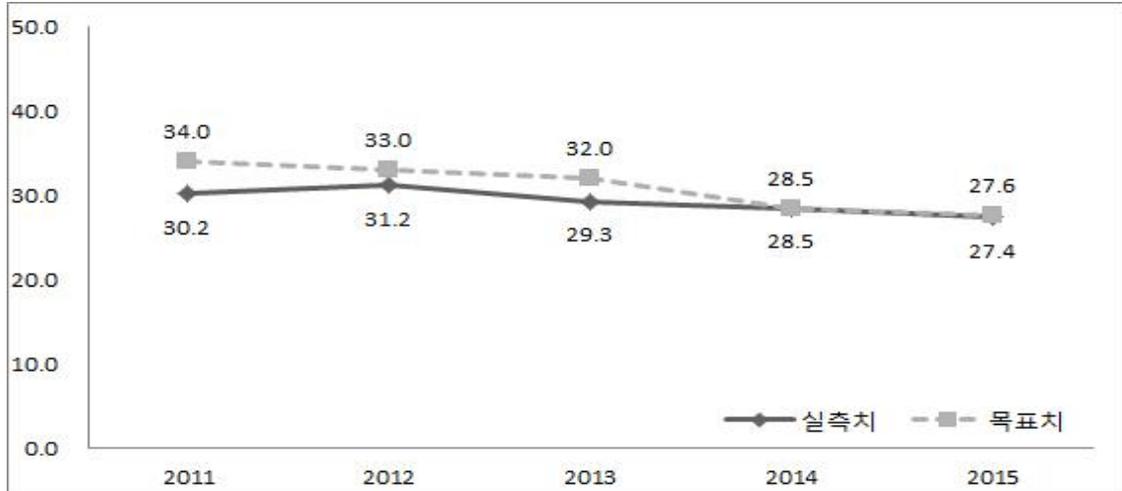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고령자용 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 ÷ 장기공공(국민,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 × 10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 명당)’은 2011년 30.2%에서 2012년 31.2%로 증가하다가 2015년 27.4%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7.6%) 대비 초과달성(100.7%)
 - 관련 세부과제로 ‘고령자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 한편, 본 과제의 당해연도 목표치는 2014년 실적치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 설정시 전년도 성과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 명당)



주: 성과지표 산식 =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 65세 이상 노인 수 × 10만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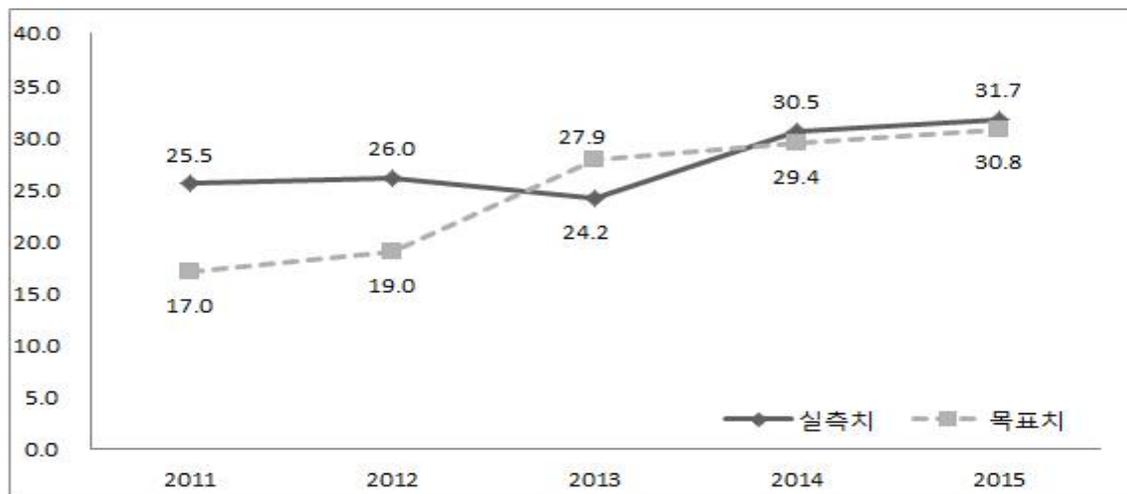
나.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소영역)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는 2011년 25.5%에서 2012년 26.0%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3년 24.2%로 5년 중 최저 실적이었으나 2014년 30.5%에서 2015년 31.7%로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6.2만 명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0.8) 대비 초과달성(102.9%)

- 관련 세부과제로 ‘독거노인 보호 강화’, ‘농어촌 가사도우미’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3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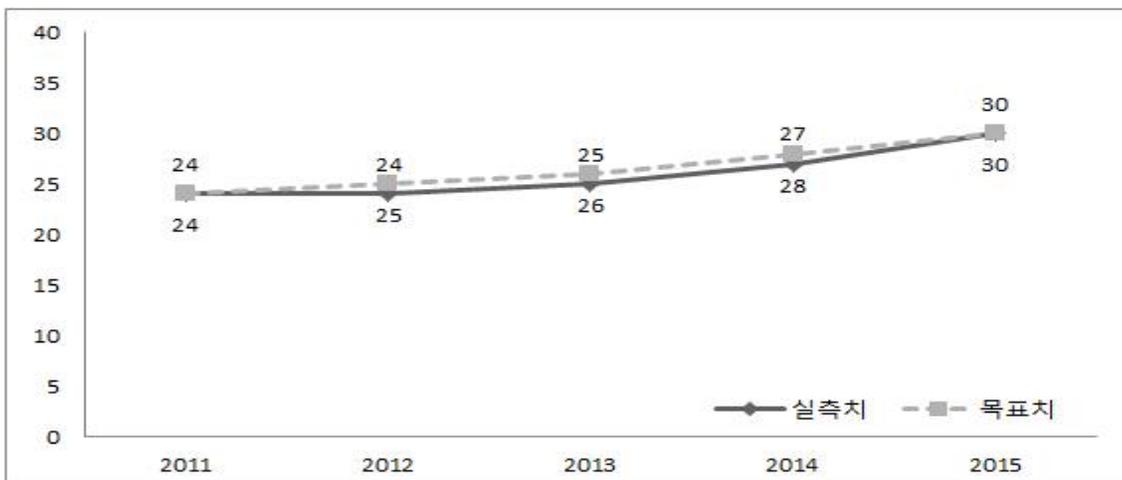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취약노인지원시스템, 바우처시스템전산실적)

□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는 2011년 24개소에서 2015년 30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30개소) 100.0% 달성
 - 관련 세부과제로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의 과제가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3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내 4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를 <표 3-7>에서 제시함

<표 3-7> 성장동력 분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기본과제
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학교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특성화고 취업진로 지원 강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산학협력 증점교수 및 사업체 우수강사 채용 -기업 맞춤형반 확대
	-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 제고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현장감 있는 취업정보 제공 -벤처·창업 체험프로그램 도입(창업인턴제) -창업보육센터 지원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성과보상기금 관련 세제혜택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및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 지표는 공식적 절차 및 요청에 의하여 변경된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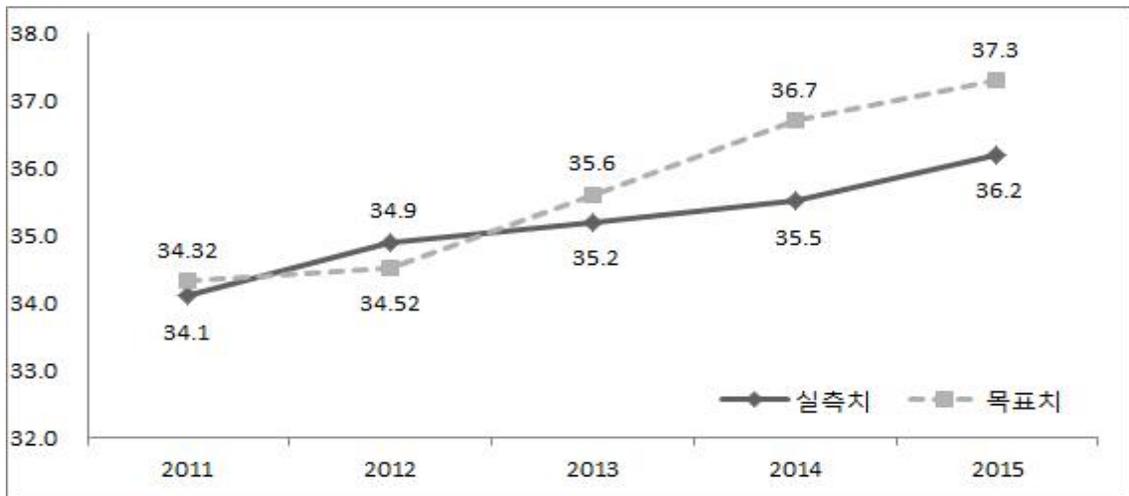
* 기존 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은 2011년 34.1%에서 2015년 37.4%로 당해연도 목표치(37.3%) 대비 100.3% 달성함
 - 관련 세부과제인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의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AA제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13.5월) 하였고,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근거 신설(14.12월)함

[그림 3-3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주: 성과지표 산식 = 사업장별 여성고용률(%)의 합/사업장 수×100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여 기업별 여성고용률 평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기존 성과지표 산식은 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근로자 수÷AA제도적용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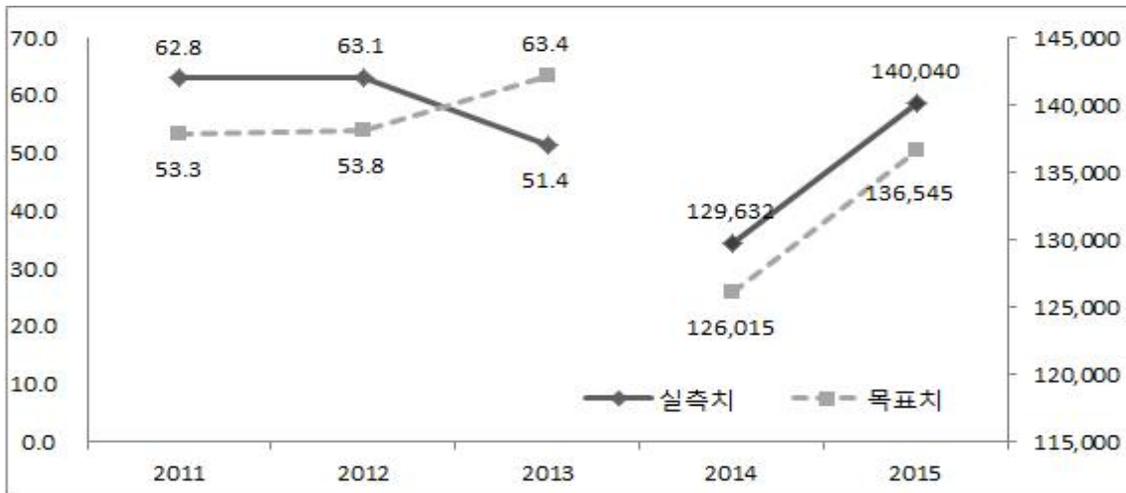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AA전문위원회, 2015.1월~12월 평균)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 동 과제의 핵심성과지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이었고, 2014년부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로 변경됨. 2011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은 62.8%에서 2012년 63.1%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 51.4%로 크게 감소하여 2011년 대비 11.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2014년 129,632명에서 2015년 140,040명으로 10,408명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36,545명) 대비 초과달성(102.6%)

- 관련 세부과제인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의 수행 성과로 평가 가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이 '13년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당시 워크넷과의 시스템 통합으로 중복 수치가 제외되었고, 취업연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12년 대비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핵심성과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명)



주: 동 과제의 핵심성과지표는 일자리 시스템 통합 등 변화된 정책여건으로 인해 1회 지표변경을 하여, '11~13년은 이전 지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에 대한 실적을 제시함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전산망, e새일시스템)

나.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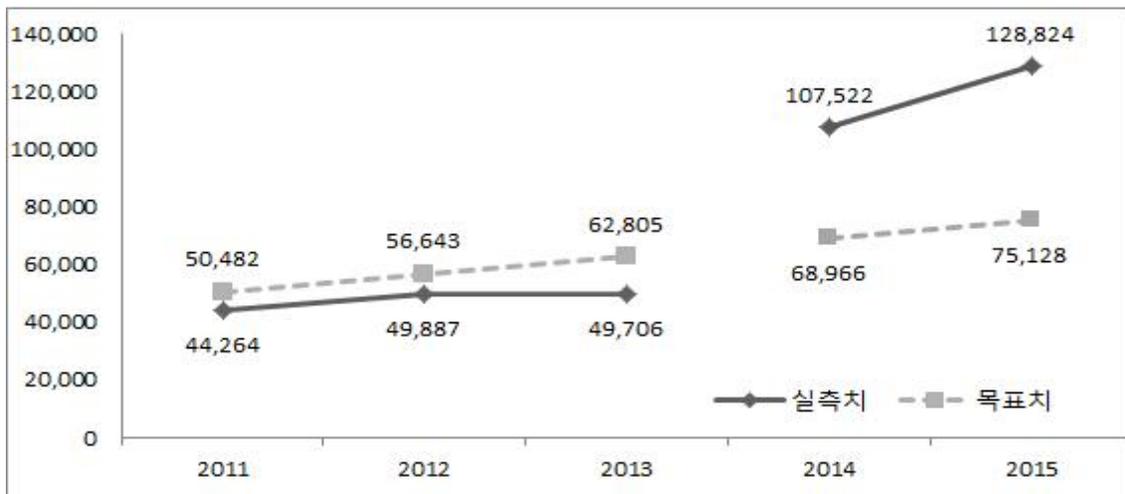
□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동 과제의 핵심성과지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 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였고, 2014년부터는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규모'로 변경됨.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는 2011년 44,264명에서 2013년 49,706명으로 2011년 대비 5,442명 증가함.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규모'는 2014년 107,522명에서 2015년 128,824명으로 21,302명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75,128명) 대비 초과달성(171.5%)

- 관련세부과제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의 수행성과로 평가 가능

- 외국동포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14년 외국국적 동포가 자유롭게 모국을 방문하도록 허용하였고, 재외동포(F-4)자격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동포 대상 기초 법·제도의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추가함

[그림 3-3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핵심성과지표: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 (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규모(명)



주: 동 과제의 핵심성과지표는 재외동포로 전환된 인력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1회 지표변경을 하여 '11~'13년은 이전 지표(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 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에 대한 실적을 제시함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월보, 출입국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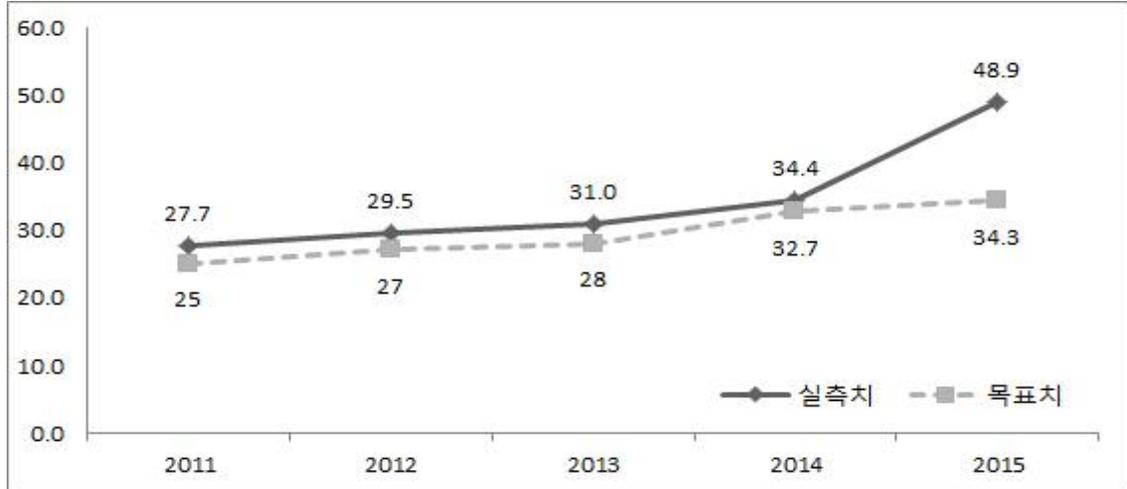
다.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은 2011년 27.7%에서 2015년 48.9%로 꾸준히 증가함. 특히 2014년 34.0%에서 2015년 48.9%로 14.9% 포인트 급증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4.3%) 대비 초과달성(142.6%)

- 관련세부과제인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강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사업체 우수강사 채용', '기업 맞춤형반 확대'의 수행성과로 평가 가능
-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콘텐츠 제공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진로지도 활성화를 위한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각 급학교, 취업알선기관 등에 대한 진로 교육 서비스를 강화시킴

[그림 3-3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핵심성과지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주: 성과지표 산식 = 프로그램 참여자수/재학생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참여율’은 2011년 32.4%에서 2014년 43.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40.6%로 다소 감소하여 2011년 대비 8.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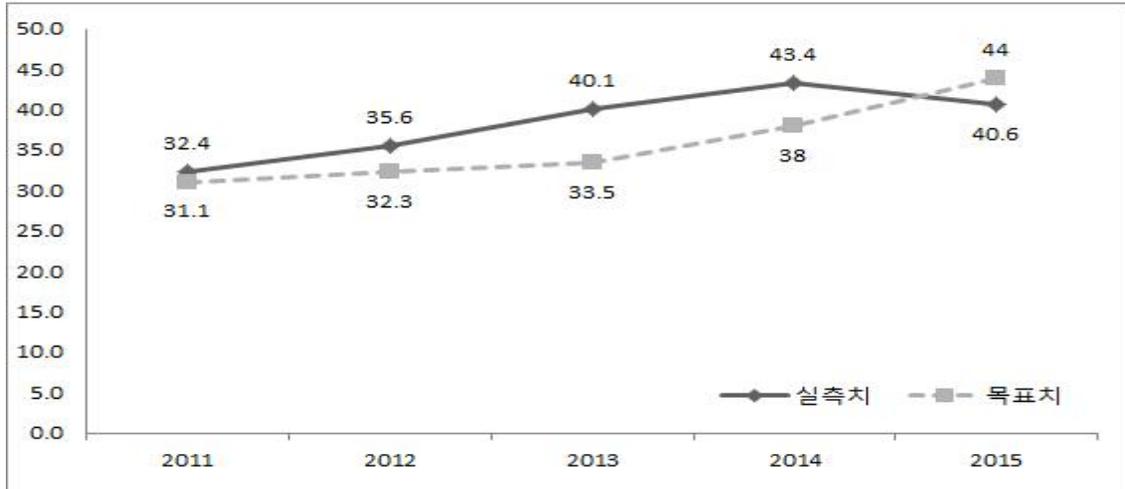
○ 당해연도 목표치(44.0%) 대비 92.3% 달성

- 전국 평생학습주민참여율 측정 시 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1년 주기) 및 2013년 OECD PIAAC조사(10년 주기) 결과에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합 산출한 결과, 실적치는 45.3%, 달성률은 102.9%가 되었음. 그러나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PIAAC조사결과를 '14년과 '15년에도 동일가중치를 부여하여 결과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동 성과지표의 결과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고,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와 PIAAC 조사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PIAAC 조사결과를 제외하고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만을 반영한 결과임

*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13) 28.0%, ('14) 36.8%

[그림 3-4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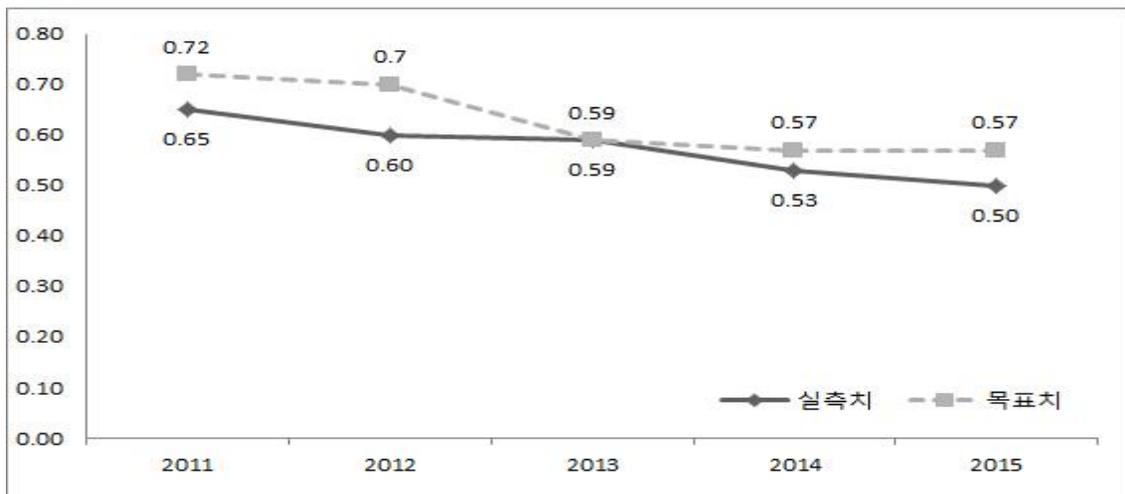


주: 성과지표 산식 =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자 ÷ 25~64세 성인 × 100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2014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산업재해율’은 2011년 0.65%에서 2015년 0.50%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대비 0.15% 포인트 감소하였고, 당해연도 목표치(0.57%) 대비 초과달성(112.0%)
- 관련세부과제인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의 수행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주: 1) 성과지표 산식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2) 재해자 수는 '15.1~1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된 재해자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수(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중영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소영역별 핵심과제, 핵심 성과지표, 관련과제는 <표 3-8>에서 제시함

<표 3-8> 성장동력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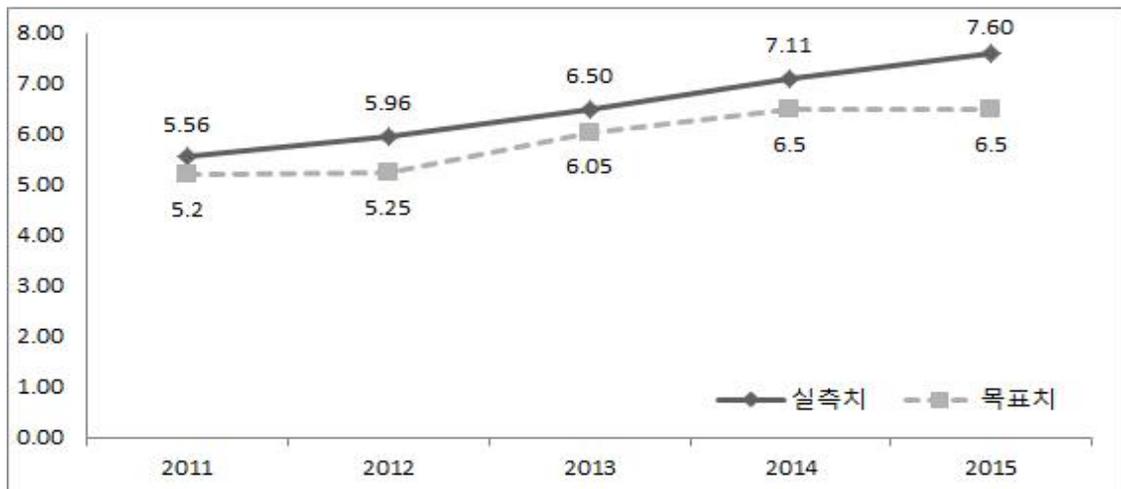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 개선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 금융분야 제도 개선

-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는 2011년 5.6년에서 2015년 7.6년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0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당해연도 목표치(6.5년) 대비 초과달성(116.9%)

[그림 3-42] 금융분야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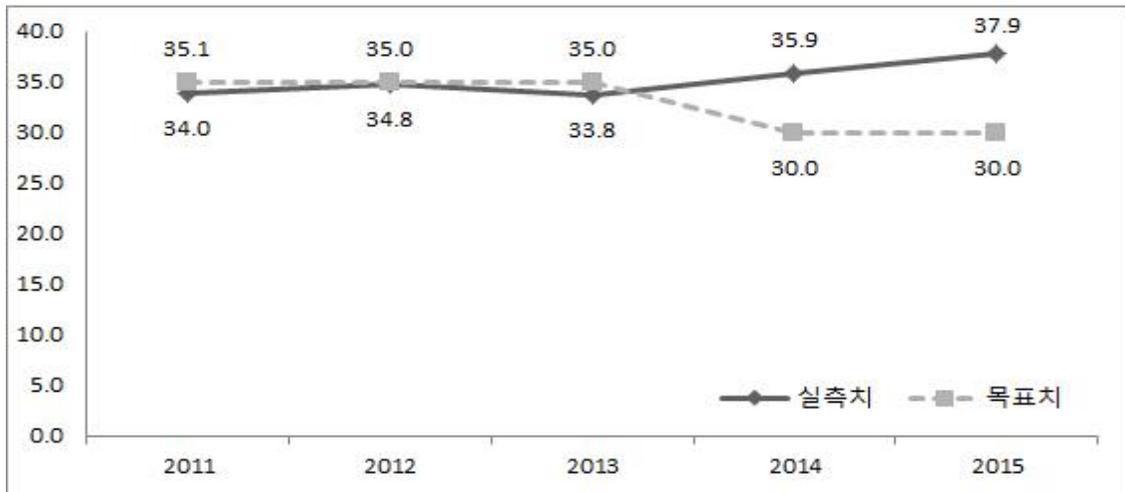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2011년 34.0%에서 증가추세를 이어가다가 2013년 33.8%로 감소하였으나 이 후 2015년 37.9%까지 꾸준히 증가함. 2011년 대비 2015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3.9% 포인트 증가함

○ 당해연도 목표치(30.0%) 대비 73.7% 달성

- 경기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결과 국가채무 비중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타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채무 증가속도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는 '07년 28.7%에서 '15년 37.9%로 9.2% 포인트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07년 74.5%에서'14년115.5%로 41.0% 포인트증가함.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포괄하는 (가칭)재정건전화법 제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유사중복 통폐합 등 비효율낭비사업을 차단하는 등 노력을 강화함

[그림 3-4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성과지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영역 내 3개의 소영역별로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기본과제를 <표 3-9>에서 제시함

〈표 3-9〉 성장동력 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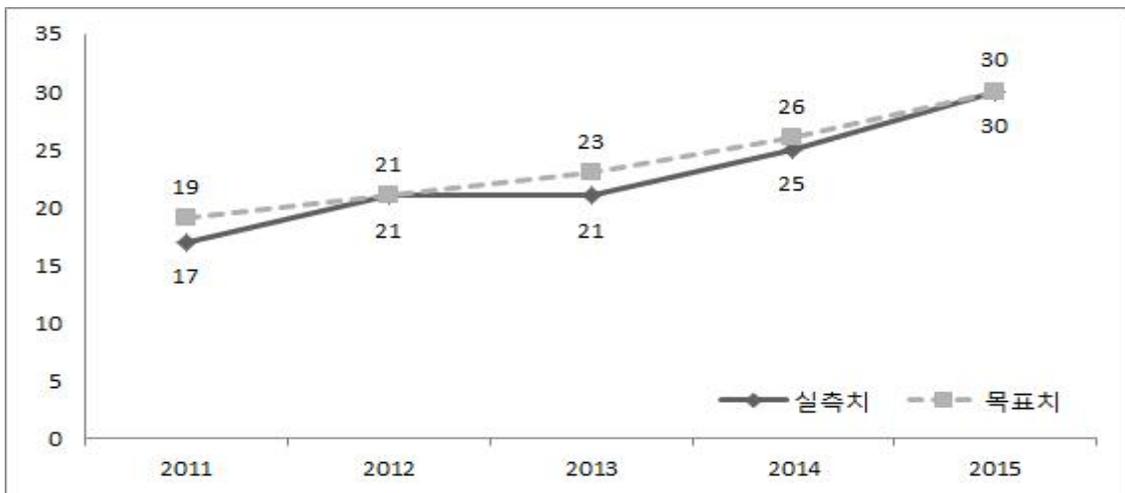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국가간 표준화 협력강화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화장품 관련 수출 지원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	-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

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소영역)

□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는 2011년 17개에서 2015년 30개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11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0개)의 100.0% 달성함
 -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위한 품목 기준을 개발 및 보급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 평균매출액 증가에 기여함

[그림 3-44]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핵심성과지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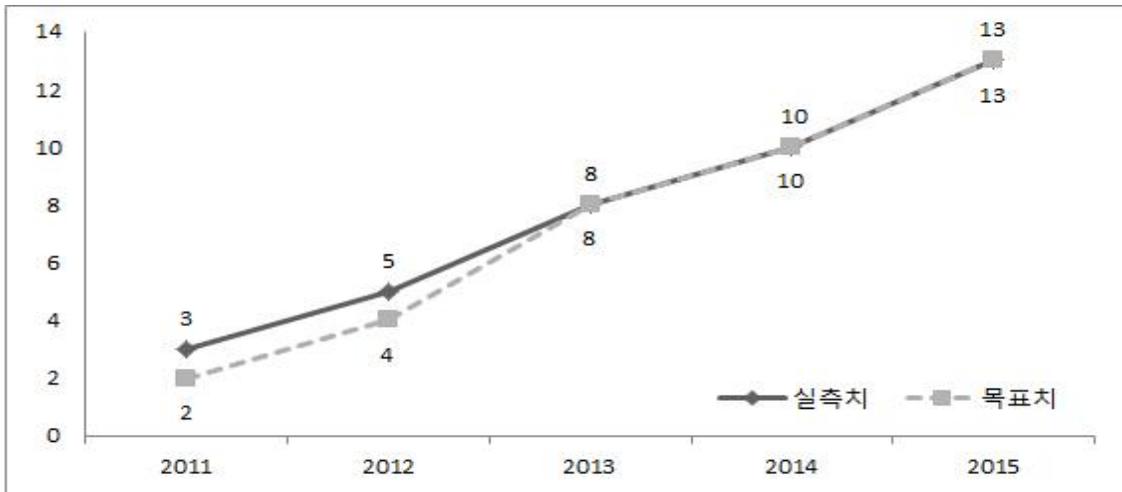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 국내 수요기반 확충

-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는 2011년 3개소에서 2015년 13개소로 10개소가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13개소) 100.0% 달성
 - ‘지원센터 수’의 양적 목표치는 원활히 달성하였으나, 질적 보완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지원센터의 기능이 고령친화용품의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강화 필요

[그림 3-45]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성과지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4절 소결

1. 총괄

- 2015년도 핵심과제(44개, 기 종료 등 과제 1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 수는 33개로 75.0%를 차지
 - 총 40개 과제가 목표의 90% 이상 달성(90.9%)
 - 7개(15.9%) 과제는 목표의 90~100% 미만 달성
 - 목표달성도가 50~90% 미만인 과제는 4개(9.0%)이며, 목표달성도가 50% 미만 과제는 없음

〈표 3-10〉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핵심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

분야	목표달성도							기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 -	- -	2 (4.5)	2 (4.5)	6 (13.6)	34 (77.3)	44 (100.0)	1
저출산 분야	- -	- -	2 (11.1)	1 (5.6)	3 (16.7)	12 (66.7)	18 (100.0)	-
고령사회 분야	- -	- -	- -	- -	2 (12.5)	14 (87.5)	16 (100.0)	1
성장동력 분야	- -	- -	- -	1 (10.0)	1 (10.0)	8 (80.0)	10 (100.0)	-

주: 1) 고령사회 분야 기종료 등 과제: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과제는 실적 산출 불가로 목표달성률 산출에 미포함
2) 비율의 경우 반올림한 값으로 각 분류의 합이 소계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015년도 핵심과제의 목표달성도는 고령사회 분야,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당초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한 과제는 고령사회 분야의 경우 16개 과제 중 14개 (87.5%),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10개 과제 중 8개(80.0%), 저출산 분야의 경우 18개 과제 중 12개(66.7%)로 나타남

- 당초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과제의 비율은 고령사회 분야 100.0%, 성장동력 분야 90.0%, 저출산 분야 83.4%순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50~90% 미만인 과제는 성장동력 분야 1개(10.0%), 저출산 분야 3개 (16.7%)로 나타남

2. 분야별 목표달성도

가.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18개 중 66.7%인 12개 과제가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 미달성 과제는 '일가정양립 일상화'(중영역)와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중영역),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가족친화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에 1개 과제,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에 1개 과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에 2개 과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에 1개 과제,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에 1개 과제 해당

- 목표 미달성 과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64.6%),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96.3%),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52.0%), 민간육아시설서비스 개선(98.6%),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87.9%),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96.3%)임

〈표 3-11〉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목표달성도(%)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	72.6	76.4	105.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2.0	2.2	108.9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로제 이용률(%))	17.9	18.9	105.6
	가족친화직장·사회환경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20.8	13.4	64.4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		340.0	427.0	125.6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11.7	20.1	172.0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521.2	502.1	96.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수(개소))	25	37	52.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7.7	17.9	101.1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65.4	66.5	101.7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민간육아시설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유지율(%))	79.9	78.8	98.6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22.6	19.9	87.9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320.0	383.0	119.7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52.1	58.9	113.0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드림스타드 수혜아동수)	102,200	125,562	122.9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45,000	43,346	96.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명, 10만명 당))	3.2	3.2	100.0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83	0.97	116.9

주: 목표달성과제는 음영으로 표시함

나.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16개 중 87.5%인 14개 과제가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⁴⁾

○ '15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는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94.3%),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95.3%) 2개 과제로 모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에 포함됨

- 노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의 경우, 동 지표의 실적 근거가 되는 ‘「문화향수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격년(짝수연도)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출 불가

〈표 3-12〉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목표달성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64.4	65.9	102.3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81.0	89.1	110.0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가입률(%))	65.0	65.5	100.8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률(%))	51.2	53.6	104.7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세 ~ 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74.0	74.9	101.2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70.5	70.6	100.1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수(만명))	30.0	38.5	128.7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85.6	86.3	100.8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천명))	63.1	95.2	151.0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7	7.0	104.5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58	54.7	94.3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천명))	64	61	95.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수도권) 6.5	수도권(8.8)	135.4
		(지방) 4.0	지방(5.4)	135.0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망률(명))	27.6	27.4	100.7	
	노인 권리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30.8	31.7	102.9
		학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	30	30	100.0

주: 목표달성과제는 음영으로 표시함

4) 실적 산출 불가로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과제 미포함

다.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10개 중 80.0%인 8개 과제가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5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들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92.3%)과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73.7%)임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의 경우 100%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으나, 9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과제의 성과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과 관련하여, OECD 국가 평균 채무율은 '07년 74.5%에서 '14년 115.5%로 41.0% 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채무율은 28.7%에서 37.9%('15년)로 9.2% 포인트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속도는 낮은 수준으로 국제비교 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됨

〈표 3-13〉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목표달성도(%)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37.3	37.4	100.3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명))	136,545	140,040	102.6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75,128	128,824	171.5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신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34.3	48.9	142.6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44.0	40.6	92.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0.57	0.50	112.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6.5	7.6	116.9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0이하	37.9	73.7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개))	30	30	100.0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13	13	100.0	

주: 목표달성과제는 음영으로 표시함

제 4 장

심층평가

제1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고운맘 카드) 평가

제2절 육아휴직제도 평가

제3절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 평가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평가

제5절 노인 장기요양사업 정책 평가

제1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고운맘 카드) 평가

1. 연구개요

가. 분석 대상

□ 광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고운맘 카드; 현 국민행복카드 사업),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대상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 협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 협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모든 임신부 대상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고운맘 카드; 현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의미함
- 해당 사업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임
- 지원 방식은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조산원의 경우는 분만입원 진료 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지정 요양기관 중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상병에 한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한약 처방 등)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있어서 바우처로 지불하는 방식임
- 지원 금액은 임신 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70만원)이며 이용 기간은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임

〈표 4-1〉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의 지원 금액

시행시기	지원액
2008.12.1부터	20만원
2010.4.1부터	30만원
2011.4.1부터	40만원
2012.4.1부터	50만원
2012.7.1부터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주: 보건복지부(201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관련 법령

- 본 보고서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기간인 2011년~2015년 동안의 협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고운맘 카드; 현 국민행복카드)을 평가하고자 함

나. 분석 자료 및 방법

- 질적 분석을 통해 해당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문헌 검토, 정책 대상자인 2011년~2015년에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임산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함
- 양적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2009년, 2015년)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한 계량분석 실시

2. 선행연구

- 협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인 고운맘 카드를 평가한 선행연구는 5편이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기간인 2011년~2015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총 2편임. 그러나 실제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해당 정책을 평가한 연구는 부재함(표 4-2 참조)
 -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평가 지표는 정책의 성과 목표치, 정책의 인지도, 경험률, 만족도 및 선호도, 출산 및 출산율, 출산 계획 및 출산 의사로 요약됨
 - 본 심층 분석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기간인 2011년~2015년 동안 해당 정책을 경험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 및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임

〈표 4-2〉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 평가 연구

저자	제목	연구방법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	* 20-60대 남녀(800명),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300명) 대상 설문조사 분석 * 기술통계분석
김경미 외(2010)	세계주요국가 저출산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 국가별 정책 현황 * 이론적 고찰 방법 *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군집분석
이삼식 외(2010)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연구	*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활용한 통계 분석: -시계열 접근(TFR:1990~2009) -횡단면적 접근(시군구 TFR) -미시적 접근(기대자녀수 2009)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활용한 회귀분석 -출산계획을 종속변수로하는 로짓모형
정용관 외(2012)	결혼·출산·육아 지원사업 군 심층평가	* 선행연구 검토,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성평가 및 통계분석을 통한 계량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평가한 2011~2014년 「성과평가 보고서」의 평가내용과 2015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중영역의 4가지 소영역 중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소영역의 세부영역으로서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가 있었고,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라는 세부영역 안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라는 목표 하에 평가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라는 소영역 내의 과제로서 2012년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기존 50만원에서 다태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하고, 2013년 4월부터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러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완료된 과제임
 - 2011년 성과 평가 결과 2011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선우덕 외, 2012)
 - 2012년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여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이삼식 외, 2013)
 - 2013년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1일 사용한도 폐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대한 관련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여 100.0%의 목표달성률을 보임(이삼식 외 2014)
 -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수립된 목표가 달성되어 제도의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의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의 부담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2012, 2013, 2014년)’ 결과 ‘과거 2~3년 전에 비해 임신·

출산 의료비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1.9%(2012년), 21.8%(2013년), 22.6%(2014년)으로 나타남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 심층평가

가. 심층평가 방법

□ 양적 연구 방법: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 분석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고운맘 카드)이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와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 분석 자료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2009년, 2015년)' 원자료
- 분석 대상은 정책 비대상자와 최근 정책 대상자로 다음과 같음

〈표 4-3〉 임신·출산 진료비 정책 심층평가 분석대상

영역	출산 시기
정책 비대상자(통제 집단)	2007.11~2008.10
정책 대상자(실험 집단)	2015.1~2015.조사시점

□ 질적 연구 방법: 심층 면접 조사

○ 조사 대상은 2011년~2015년 동안 임신 및 출산한 여성 및 산부인과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임

○ 조사 내용은 정책 대상자가 느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 및 개선 사항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느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체감도 및 향후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나. 심층평가 I: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의 최종 목표는 출산이나 정책이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작용함. 이에 따라 정책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시간에 개인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변수에 대한 대안적 변수(proxy)인 추가 출산 의향에

해당 정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방법 및 주요 변수

○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 분석 자료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2009년, 2015년)' 원자료를 활용함

○ 종속변수는 추가 출산 의향

○ 통제변수는 출산 결과 및 산전 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의 개인적 특성인 모연령 (Feldman 등, 2007), 교육수준(Delbaere 등, 2007), 소득(Singh & Yu, 1996),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산모의 산과적 특성인 출산력(자녀수: Haaga, 1989), 유산 및 사산 여부 등임

○ 주요 독립변수는 정책 대상자 여부임

- 정책이 도입된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시행되기 1년 전부터 시기적으로 향후 시행될 정책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2008년 10월까지 출산한 여성을 통제집단으로 함
- 정책대상자인 2015년 1년간 출산한 여성을 실험집단으로 함

○ 제시된 변수를 사용한 이항 로지스틱 모형(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함

$$\log \frac{p}{1-p} = \beta_0 + \beta_1 Policy$$

$$\log \frac{p}{1-p} = \beta_0 + \beta_1 Policy + \beta_2 X$$

P =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확률

$1-P$ =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확률

$Policy$: 정책대상자 여부

X : 기타 모든 통제 변수

□ 기술 통계 분석 결과

○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분석 대상 전체 산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책 대상자 분석 대상을 정책 대상 여부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4 참조). 통계적 유의도는 카이제곱 검정과 F검증을 활용함.

〈표 4-4〉 정책 대상여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만원)

특성		정책 비대상자	정책 대상자	χ^2/F
연령	35세 미만	356 (85.8)	294 (63.6)	55.895***
	35세 이상	59 (14.2)	168 (36.4)	
교육수준	고졸이하	164 (40.7)	107 (23.2)	31.564***
	전문대학	95 (23.6)	128 (27.7)	
	대학교이상	144 (35.7)	227 (49.1)	
소득수준		314.2 (152.2)	463.2 (271.3)	31.817***

*** p<.001
 주: 결측값 제외

- 모연령에 있어서는 정책 비대상자 중 14.2%가 고령 산모인 것에 비해 정책 대상자의 경우는 36.4%가 고령 산모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이는 정책 대상자는 정책 비대상자보다 출산 시기가 최근이며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임
- 교육수준은 정책 비대상자보다 정책 대상자의 교육 수준이 높음. 정책 비대상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비율이 35.7%인 반면, 정책 대상자는 49.1%로 나타남
- 가구소득은 정책 비대상자의 평균가구소득이 314.2만원인 것에 비해 정책 대상자는 46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대상자의 가구소득이 보다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분석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 분만방법, 유산 및 사산 경험 여부, 출산력(자녀수)과 같은 산과적 특성에 대한 정책 대상자와 정책 비대상자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4-5〉에서 제시함
- 분만 방법에 있어서는 정책 대상자와 정책 비대상자 모두 약 60% 내외로 자연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4-5〉 정책 대상여부별 산과적 특성

(단위: 명, %)

특성		정책 비대상자	정책 대상자	χ^2
분만방법	자연분만	267 (64.3)	268 (58.0)	3.681
	제왕절개	148 (35.7)	194 (42.0)	
유산사산 경험 여부	없음	293 (70.6)	383 (82.9)	18.716***
	있음	122 (29.4)	79 (17.1)	
자녀수	1명	214 (51.6)	274 (59.3)	5.519
	2명	163 (39.0)	148 (32.0)	
	3명이상	39 (9.4)	40 (8.7)	

*** p<.001

- 유산 및 사산 경험 여부는 유산 및 사산의 경험이 있는 정책 비대상자의 경우가 정책 대상자보다 12.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자녀수에 있어서는 정책 대상자가 정책 비대상자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회귀 분석 결과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의 제시된 중요한 목표는 출산의욕의 고취임
 - 이에 따라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대상자인 것이 정책 비대상자인 것에 비해 추가출산 의향을 갖도록 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분석함
- 추가 출산 의향에 있어서 정책 대상자와 정책 비대상자의 차이는 [그림 4-1]에서 제시함
 - 정책 대상여부별 추가출산 의향을 살펴본 결과, 정책 비대상자의 경우 30.4%(126명)가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대상자의 경우는 35.4%(163명)가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정책 대상여부별 추가 출산 의향

(단위: %)

35.4

30.4

정책 비대상자

정책 대상자

-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 지원 금액에 따른 정책 대상자와 정책 비대상자라는 차이가 추가 출산 의향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모형은 다음의 <표 4-6>에서 제시함

〈표 4-6〉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정식: 추가 출산 의향

<p>(식I)</p> $\log \frac{p}{1-p} = \beta_0 + \beta_1 Policy$ <p>(식II)</p> $\log \frac{p}{1-p} = \beta_0 + \beta_1 Policy + \beta_2 X$ <p>P =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확률 $1-P$ =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확률</p>

- 추가 출산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식은 정책 대상자집단 (Policy)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고, 모의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구 소득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분만방법, 유산 및 사산 경험 여부, 자녀수 등 산과적인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는 함수로 가정함.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식은 상수항과 정책 대상자 여부 및 정책 지원액에 따라 구분된 정책 대상자 및 정책 비대상자와 관련된 변수만을 포함하는 단순 식(restricted model: 식I)과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식(full model, unrestricted model: 식II)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함
- 추가 출산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7〉에서 제시함
 -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모형계수 전체테스트(omnibus test of model coefficients)결과, 모형 I과 모형 II모두 상수항만 포함한 모형(null model)에 비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모형의 설명력의 경우 Nagelkerke R square 값은 작게 나타났으나 선형회귀분석의 경우와 다르게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모형을 평가할 때 해당 값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홍세희, 2005),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다소 낮다는 한계가 있음
- 분석결과, 정책 대상자 여부라는 요인과 추가 출산 의향과의 단순한 인과 관계만을 분석한 모형 I에서는 비록 유의확률이 0.117로 낮으나 정책 대상자 되는 것은 추가출산 의향이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산과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 정책 대상자 여부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지에 대해 분석한 모형 II를 살펴보면, 정책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책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이 추가 출산 의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모연령이 고령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추가출산 의향)

	모형 I			모형 II		
	회귀계수	(S.E.)	유의확률	회귀계수	(S.E.)	유의확률
정책 대상여부(비대상)						
대상자	.227	.145	.117	.235	.188	.210
모연령(비고령)						
고령				-0.952	.232	.000
교육수준						
전문대학				-0.431	.213	.043
대학교 재학				-0.493	.211	.019
월평균가구소득				-.220	.159	.167
분만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048	.173	.783
유산 및 사산 경험(없음)						
있음				.103	.219	.637
자녀수(1명)						
2명				-3.632	.730	.000
3명				-1.316	.747	.078
N	863			863		
2Log-Likelihood	1108.496			846.303		
χ^2	2.471			247.167(p< .001)		
Nagelkerke R ²	.004			.347		

-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평가한 결과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으나, 영향력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이 추가 출산 의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다. 심층평가 II: 정책 대상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평가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 정책 대상자: 2010~2015년 동안 임신 및 출산한 여성
-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산부인과 관련 의사 및 간호사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도입

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응답할 수 있는 2008년 이전의 경력이 있는 의료진만을 대상

○ 면담조사 내용

- 정책 대상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도움정도, 체감도),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평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
-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책 체감도, 향후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

□ 정책 대상자 심층 면접 결과

○ 정책에 대한 인지도

- 정책 대상자는 모두 지원을 받아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음. 이는 임신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 초진 시 안내를 받기 때문임. 일부 대상자는 주변에 정책을 경험한 산모를 통해 인지하기도 함
-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안내지를 보고나서 신청을 했어요.”
- “언니가 (중략) (고운맘카드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전 알고는 있었어요.”

○ 만족도

-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다만, 진료비에 비해 지원금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함
-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을 경험하면서 임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느낀다고 응답하기도 함
- “카드를 딱 받는 순간, 나 이제 임신부구나... (중략) 임신부로서의 정체성?...이게 약간 확인 시켜주는 거 같아요. (문화행사에) 임신부 할인이 있더라고요. (중략) 임신부수첩이 나 또는 고운맘카드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 “처음에 아이 가졌을 때는 ‘아, 30만원이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마음이 제가 이렇게 음... 되니까 50만원 갖고는... 2000만원에 5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일단은 순간 ‘좋다.’ 일단은 ‘좋다.’ 조금이든 많은 좋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솔직히 기대도 안했는데, 그걸 준다고 하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좋긴 했어요. 근데 음...다 써서, ‘아, 다 썼네? 끝이네?’”
- “도움이 된 것도 있는데 확실히 많이 좀 부족하기는 한 거 같아요.”
- “50만원으로 다 채워졌으면 뭔가 느낌이 달랐을 텐데, 50만원을 주나 그 전에 20, 30만원을 주나 여전히 내 돈은 들어가니까 어차피 부족해요.”

○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평가

- 도움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으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의 평가를 낮게 함

- “저는 도움은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던. 도움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출산장려에는 모르겠어요.”
- “이거 때문에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정책 개선방안

- (홍보) “홍보부분이 사실은 가장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 미리 알았으면 계획을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 텐데.”
- (비용의 확대) “이게 출산장려 이런 정책이라면 솔직히 교육까지는 힘들고,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몸조리하는 기간 산후도우미나 조리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을 나름 지원을 다 해주면 그래도 좀.”
- (비용의 확대) “조금만 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 (비용의 확대 방식) “(초음파 검사) 보험이 적용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비용의 확대 방식) “병원에서도 급여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꿔주셔야죠.”
- (카드 발급처의 확대)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이런 식으로...접근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 요약하면, 인지도에 있어서 정책 대상자는 모두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지원을 받았으나 임신 및 출산 전에 알게 되는 것에는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임신·출산 의료비 전체를 감안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처를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의료 서비스 제공자 면접 결과

○ 정책 체감도

- 일부 의료진은 정책 도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
- 체감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정책 시행 전에 비해 검사 비용에 대한 문의 더 나아가 불만이 감소
 - 정책 시행 전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높은 선택적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임
 - 산전 진찰을 보다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받으려는 자세가 관찰됨
- 체감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지원액을 기준으로 검사비용을 맞추고자 일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

○ 정책 개선방안

-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임신 초기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이를 위해 지원금을 상향조성하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지원 확대) 진료비 지원은 출산 후 총 비용에 상응하는 충분한 액수가 되어야 함. 즉, 산전진찰비와 분만비용,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을 포함하는 액수가 되어야 함
- (산전 검사 지침의 표준화) 산전검사지침이 표준화되어 진료비로 사용하게 될 때만 적용
- (산전과 산후 구분하여 지원) 산전과 산후를 구별하여 지원하게 되면 불필요한 산전검사를 피할 수 있음
- (접근도 향상) 지원정책이 신청절차 없이 대상만 된다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4. 소결

가. 결론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평가한 2011~2014년 「성과평가 보고서」의 평가내용 및 2015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
- 2012년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다태아의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하고, 2013년 4월부터 이용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제2차 저출산·고령사의 기본계획 상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완료된 과제로 평가됨
-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비록 통계적 유의 수준은 매우 낮으나 정책은 추가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술통계에 있어서 정책 비대상자의 경우 30.4%(126명)가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대상자의 경우는 35.4%(163명)가 추가 출산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정책 대상자 여부라는 요인과 추가 출산 의향과의 단순한 인과 관계만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비록 유의확률이 낮으나 정책이 추가출산 의향이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산과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 정책 대상자 여부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지에 대해 분석한 모형에서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책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이 추가 출산 의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 심층 면접 결과 정책 대상자는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많이 언급하였음
- 그러나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효과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지원 비용의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전관리 지침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

나. 제언

- 출산 지원 정책으로서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인지도 제고
 - 정책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 더 나아가 국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 필요
- 이용의 편의성 증대
 - 임신부 등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 지원 비용의 확대
 - 산전진찰비, 분만, 산후조리비용을 고려한 지원 금액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
- 적합한 의료 이용과 지원
 - 산전관리 지침의 표준화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비용이 공개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제2절 육아휴직제도 평가

1. 연구개요

가. 분석 대상

- 본 절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라는 중영역 내의 핵심과제인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함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의 하나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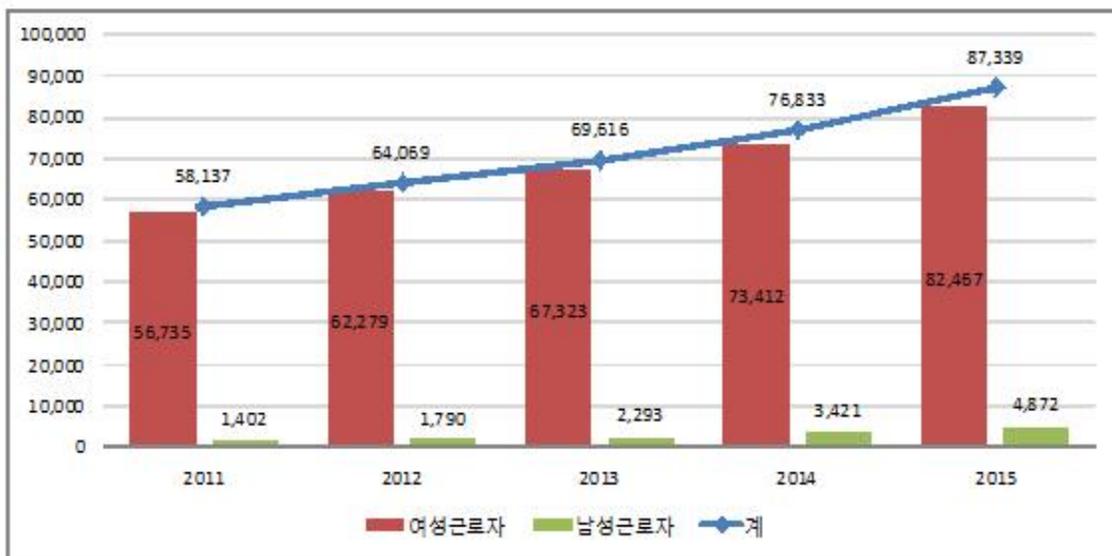
-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무급제로 도입됨
 - 2011년 1월부터 상한액 월 100만 원과 하한액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 임금의 40% 지원됨
 - 출산 후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동일 직장 복귀 6개월 후 지급됨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

□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간인 2011년~2015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수와 남성근로자수는 [그림 4-2]에서 제시함
-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1년 대비 29,202명이 증가함. 또한 증가 속도에 있어서도 증가하고 있음
- 비록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미한 실정임

[그림 4-2] 육아휴직이용 현황

(단위: 명)



자료: 고용보험 DB자료

나. 분석 자료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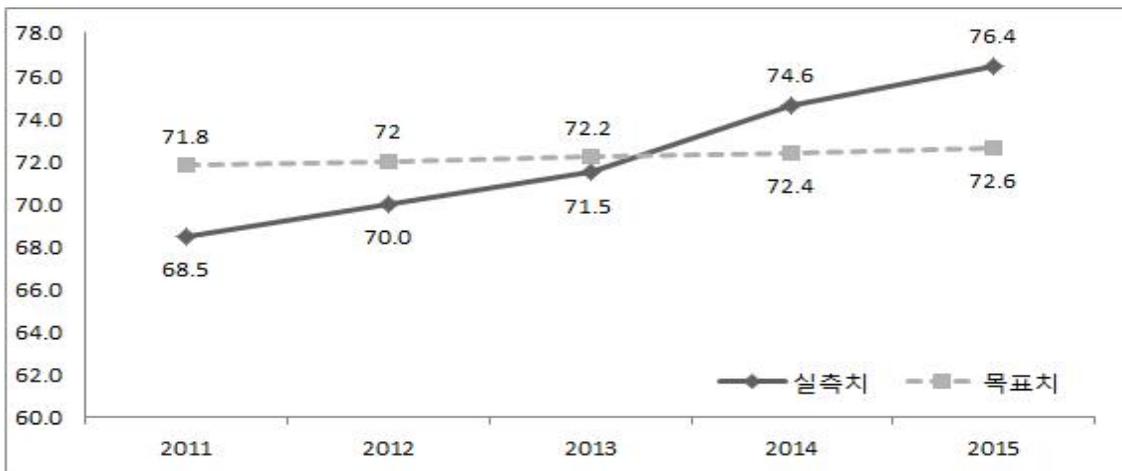
- 질적 분석을 통해 해당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 육아휴직제도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 검토, 2011년~2015년에 육아휴직제도를 이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사 관련 담당자 대상의 심층 면접조사
- 양적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2015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육아휴직사용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분석 실시

2. 선행연구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의 육아휴직제도를 평가한 2011~2014년 성과평가 보고서의 평가내용과 2015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이라는 소영역 내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이라는 세부영역의 과제임
 - 포함하고 있는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 수당의 단계적 인상(1-2, 고용노동부)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1-3, 고용노동부) **【완료 과제】**
 -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에 있어서는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015년 74.6%로 당초목표치(72.3%)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 수당의 단계적 인상에 대해서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인원이 5,039명(2014년), 6,602명(2015년)으로 목표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3년 12월 국회 통과('14.1월 시행)하여 완료된 과제임
 - 육아휴직 관련 핵심 성과 지표 평가 결과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이라는 소영역 내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의 성과 지표는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임
- 해당 지표에 대한 지난 5년간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음

[그림 4-3]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주: 성과지표 산식 =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수 ÷ 휴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이용의 수월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2012, 2013, 2014년)’ 결과 ‘과거 2~3년 전에 비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해졌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8.8%(2013년), 29.9%(2014년)으로 나타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2011~2015년)동안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표 4-8 참조)

<표 4-8> 육아휴직제도 평가 연구

저자	제목	연구방법
김정호(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 - 육아휴직 이용률에 대한 분석 - 육아휴직의 노동시장복귀율, 여성고용률에 대한 평가 - OLS, 토빗, 선형확률모형 활용
장지연·윤자영·신현구(2013)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효과 강화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	*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 - 모성보호제도의 여성고용률에 대한 효과성 평가 - OLS 선형확률모형 활용
윤자영(2014)	모성보호제도의 고용효과	

- 육아휴직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한 김정호(2012)의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여성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는 출산율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함
- 모성보호제도(특히 2007년 육아휴직 급여액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제도 변화와 2011년 육아휴직급여 정책에서 정률제로의 개편)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성을 평가한 장지연 외(2013)와 윤자영(2014)의 연구에서는 2011년 정률제 전환 후 고용감소폭이 적게 나타났으나, 동일 직장 유지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이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모성보호제의 정책 목표가 달성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지음

3. 육아휴직제도 심층평가

가. 심층평가 방법

- 양적 연구 방법: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귀분석
 - 분석 내용
 - 2011년~2015년 동안 육아휴직제도 이용여부와 추가 출산 의향과의 관계
 -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여부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와 영향력의 크기
 -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 분석 자료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2015년)’ 원자료
 - 분석 대상은 2011년~2015년 동안의 육아휴직 이용자와 비이용자 및 2011년~2015년 출산한 여성근로자
- 질적 연구 방법: 심층 면접 조사
 - 조사 대상은 정책대상자인 2010년~2015년 동안 육아휴직 대상자(육아휴직 이용자와 육아휴직 비이용자) 및 공공기관, 기업의 인사 관련 담당자임
 - 조사 내용은 정책 대상자가 느끼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및 만족도, 육아휴직 이용 및 비이용의 이유,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의 욕구 및 개선 사항, 공공기관, 기업의 인사 관련 담당자가 느끼는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문화,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나. 심층평가 I: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제도의 최종 목표는 출산임. 그러나 정책이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작용하며 정책이 인식의 변화에서 출산이라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시간 또한 개인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와 출산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출산이라는 변수를 대신하여 추가 출산 의향을 대체변수(proxy variable)로 설정하여 2011년~2015년 간 육아휴직을 이용 또는 이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육아휴직 이용이 추가 출산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함

□ 회귀분석 방법 및 주요 변수

○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

- 분석 자료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2015년)’ 원자료를 활용함
- 자료 구조 변환: 출산 이벤트를 기준으로 패널구조형식으로 전환하여 분석함

○ 종속변수는 추가 출산 의향

○ 통제변수는 출산 당시 모연령,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으로 출산 이벤트 당시의 가구소득 변수가 없으므로 가구소득 대신 자산 변수를 모형에 반영), 출산 당시 직종 및 종사상 지위, 직장유형, 자녀수입

○ 주요 독립변수는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임

- 2011년~2015년 사이 출산 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를 통제집단으로 함
- 2011년~2015년 사이 출산 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를 실험집단으로 함

○ 제시된 변수를 사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모형(b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함

$$\log \frac{p}{1-p} = \beta_0 + \beta_1 Policy + \beta_2 X$$

P =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확률

$1-P$ = 향후 출산 계획이 없는 확률

$Policy$: 육아휴직제도 이용여부

X : 기타 모든 통제 변수

□ 기술 통계 분석 결과

○ 분석 대상 전체 산모의 특성별 추가 출산 의향 여부를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9 참조)

- 모연령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즉 고령 산모일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가 높음
- 자산에 있어서는 자산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의 경우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종에 있어서는 서비스직(27.3%)이 가장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가 많고, 판매직(19.0%)의 경우가 가장 추가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남
-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상용근로자(22.0%)가 임시일용근로자(20.0%)에 비해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유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우가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 출산 의향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4-9〉 분석 대상자 특성별 추가 출산 의향 여부

(단위: %, 명)

		추가출산 의향 있음	추가출산 의향 없음	합계(N(%))	
출산당시 모 연령	20대	36.1	63.9	460	100.0
	30대	17.0	83.0	2,684	100.0
	40대	6.4	93.6	365	100.0
	1분위	18.1	81.9	792	100.0
자산 분위	2분위	21.3	78.7	850	100.0
	3분위	18.5	81.5	758	100.0
	4분위	17.9	82.1	642	100.0
	5분위	14.3	85.7	458	100.0
	1명	41.8	58.2	1,131	100.0
자녀수	2명	8.5	91.5	1,822	100.0
	3명이상	3.2	96.8	555	100.0
	관리 전문직	21.7	78.3	550	100.0
직종	서비스직	27.3	72.7	147	100.0
	판매직	19.0	81.0	85	100.0
	기타	21.3	78.7	72	100.0
	사무직	20.6	79.4	577	100.0
	상용근로자	22.0	78.0	1,098	100.0
종사상지위	임시일용근로자	20.0	80.0	179	100.0
	공공부문	21.6	78.4	253	100.0
직장유형	민간부문	21.7	78.3	1,178	100.0
	이용	19.3	80.7	396	100.0
육아휴직여부	미이용	20.7	79.3	875	100.0

□ 회귀 분석 결과

○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 육아휴직제도 이용자와 육아휴직제도 비이용자가 되는 것의 차이가 추가 출산 의향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결과는 <표 4-10>에서 제시함

○ 모형의 적합성 및 설명력

-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모형계수 전체테스트(omnibus test of model coefficients)결과, 상수항만 포함한 모형(null model)에 비해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모형의 설명력의 경우 Nagelkerke R square 값은 .267로 비교적 작게 나타났으나 선형 회귀분석의 경우와 다르게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모형을 평가할 때 해당 값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홍세희, 2005),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다소 낮은 수준임

○ 유의미한 회귀 계수

- 자녀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판매직인 경우에 추가 출산 의향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짐
- 육아휴직의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났으나, 영향력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이 추가 출산 의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할 수 있음.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함시키지 못한 생략된 많은 요인(omitted variables)의 설명력이 육아휴직 이용여부보다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용여부가 추가 출산 의향에 있어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추가 출산 의향)

	육아휴직 이용 효과 모형			
	회귀계수	(S.E.)	유의확률	Exp(B)
육아휴직제도(미이용)				
이용	.102	.182	.576	1.107
모연령	.203	.235	.389	1.224
연령제곱	-.005	.004	.189	.995
자산 분포(1분위)				
2분위	.049	.306	.872	1.050
3분위	.343	.277	.216	1.409
4분위	.358	.275	.194	1.430
5분위	.483	.276	.080	1.621
자녀수(1명)				
2명	3.100	.574	.000	22.208
3명이상	1.221	.582	.036	3.392
당시 직종(관리전문직)				
서비스직	.293	.181	.105	1.340
판매직	.573	.258	.026	1.774
기타	.356	.344	.301	1.428
사무직	.419	.377	.267	1.520

	육아휴직 이용 효과 모형			
	회귀계수	(S.E.)	유의확률	Exp(B)
직장 유형(공공부문)				
민간부문	.088	.240	.715	1.092
N		4209		
2Log-Likelihood		1037.372		
χ^2		235.3(p < .0001)		
Nagelkerke R ²		.267		

다. 심층평가 II: 정책 대상자 및 인사 관련 담당자의 정책 평가

□ 연구방법

○ 연구 대상

- 정책 대상자: 2011년~2015년 동안 육아휴직을 이용 또는 이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 인사담당자: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인사 관련 담당자

○ 면담조사 내용

- 정책 대상자: 정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도움정도, 체감도), 육아휴직 이용 또는 비이용의 이유,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있어서의 욕구 및 개선 사항
- 인사담당자: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문화, 향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정책 대상자 심층 면접 결과

○ 정책에 대한 인지도

- 대체로 회사에서 규정으로 제시하여 제도의 존재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사용 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이 공통적임
- “주변 선배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았고, 실제 사용 시에는 인트라넷의 제도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가이드에 자격요건, 사용기간 및 방법, 처우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직 시점에 인사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원 부서 복귀와 타 부서 전배 등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고를 수 있습니다. 100% 원하는 데로 갈 수는 없으나, 복직은 보장됩니다.”
- “사내 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알게 되었고...”
- “뉴스 등 언론을 통해 입사 전부터 알고 있었고, 회사 내 사규 등을 스스로 조사해서 자세한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홍보하고 있지는 않아요.”

○ 만족도

- 심층 면접 참여자들은 대체로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용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나 대체로 동료 및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그러한 점을 제외하면 만족한다고 응답함

- “임신과 출산 시의 평가체계, 이것이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쓰기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육아휴직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복직을 했는데, 이런 결정에는 진급을 앞둔 시점에 진급고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였습니다. 휴직기간은 근무일에 들어가지 않지만,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일에 계산이 되고, 그러면 약 90일 간의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고과를 받습니다. 고과를 주는 사람의 논리는 해당기간 업무 공백을 채운 사람과 동일 선상에서 고과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고, 저는 총량을 기준으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과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죠.”
- “임신을 앞둔 기혼 직원들에게 모두들 시기를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년초에 임신하게 되면 그 해 고과는 잘 받기가 쉽지 않고, 진급 시점에 고과 계산 시 휴직한 해의 고과는 전년도 고과와 동일하게 혹은 휴직 전/후 년도의 평균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생활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계획보다도 고과계획부터 세워야합니다.”
- “누군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기존에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분배해서 추가로 업무를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제도 사용을 권장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사실 업무 동료로서는 휴직 사용이 그다지 반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보다는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인수인계 및 숙련시키는데 소요되는 공수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시점에는 원 부서 복귀를 보통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2년 정도의 단기 대체 인력 사용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복직 시점에 그 대체 인력은 또 어디론가 보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 “회사 내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어서 다행이고, 가정 살림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제외하면 굉장히 만족합니다.(중략)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 “대체인력에 대한 수급이 제때 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시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예전과 달리 자녀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육아휴직제도 비이용의 이유

- 대체 인력 수급과 육아휴직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과 인사상의 불이익의 발생 가능성으로 이용하지 않음
- “대체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하게 되면 아직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외부에 맡기는 것

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돌 정도가 되면 분리불안이 형성될 시기라서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나면 괴로울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상의 불이익은 있죠.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되고 계약직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안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그게 사용한다고 100프로 무조건 너는 재계약 안 해줘 이걸 아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인력을 줄인다 이러면 1순위가 되는 거죠... (중략) 저희 같은 경우 2년 전에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한번, 구조조정을 한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게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휴직자한테 제일 많이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편하죠, 관리자입장에서는, 이미 휴직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 정책 개선방안

- (분할 사용 횟수) “현재 1회 분할 사용 가능한데,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만큼 분할 사용 횟수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의 공정성 보장) “임신과 출산으로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 배제되거나, 피해보지 않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신청의 편리성)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신청 시, 1회 방문은 꼭 필요한데 그 1회 방문도 아기가 어린 시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인증방법을 통해서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수급) “육아휴직 지원금 요청 후에 처리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용 기간의 확대) “특히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육아휴직제도는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3년간 지급하고 1년간 인정하는 근무경력(호봉)도 3년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 (이용 기간의 확대) “적어도 24개월~36개월은 보장해 주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평균발달사항에 비추어 보면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한 연령이 되어야 남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은 너무 짧아요.”
- (육아휴직제도 이용의 양성평등)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은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육아휴직만 강조되면 여성인력의 취업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거나 강제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대체 인력 등에 관한 비용 지원)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해를 주고, 직장동료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육아휴직자에게 인간적으로 악감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한 정부보조와 대체인력 고용의 강제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 (대체 인력 등에 관한 비용 지원)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직 후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제도보다 아이를 복직 후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복직 후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분명 필요해요. 저는 그보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육아휴직으로 온전히 육아에 전념하고 1년, 혹은 2년 후에 복직한다해도, 그 이후가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워킹맘들이 일을 포기하게되는 시점이 아마 육아휴직 중은 아닐 거예요. 복직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렵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Work & Life Balance를 찾기 어려워 기껏 쌓아놓은 경력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 아이를 내가 필요한 시간에 보육해 줄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요약하면, 인지도에 있어서 정책 대상자는 모두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까지는 회사 및 동료에게 주는 피해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사용한 경우 불편한 점도 있으나 대체로 만족함.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 사항부터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에 관한 개선사항, 복직 후 보육시설의 확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선 사항이 도출됨.

□ 인사 담당자 면접 결과

○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문화

- 육아휴직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업무’의 단절로 인한 본인 및 회사의 부담 때문임
 - 다른 인사 담당자의 경우도, 많은 직원들은 육아휴직 시 회사나 동료에게 피해가 가므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함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은 경력직을 별도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력 운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육아휴직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배치하면 그 직원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해야 함. 또는 대체 인력이 휴직자의 업무를 완벽히 대체한다면 반대로 휴직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므로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애로가 많음
-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는 사람은 시작과 끝이 구분되는 프로젝트성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자임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퇴사나 휴식 후 이직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음

○ 정책 개선방안

- 노동 수급의 유연성을 무시한 육아휴직 추진 유도는 기업의 곤란함을 가중시킴
- 육아휴직보다는 육아단축 근무기간을 설정하여 급여를 적게 받는 대신 노동력 단절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보임
-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일자리가 보장된 직군의 사람들만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는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 직장 근처에 보육시설을 늘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

4. 소결

가. 결론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평가한 2011~2014년 「성과평가 보고서」의 평가내용 및 2015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검토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를 도입하였고,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 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목표치를 달성함
 - 육아휴직 관련 핵심 성과 지표인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의 경우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음
 -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이용의 수월성에 관한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과거 2~3년 전에 비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육아휴직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여부가 추가 출산 의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심층 면접 결과 정책 대상자는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으나 정책 이용자 및 인사담당자 모두 사용에 있어서의 불편한 점을 많이 언급하며, 특히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필요한 시간에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나. 제언

- 육아휴직 이용의 사각지대 개선
 -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의 취업자의 이용 보장
-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성 증대
 - 육아휴직 기간 연자에 따른 분할 사용 횟수의 증가 필요
 - 육아휴직 지원금 요청 후 수급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의 공정성 보장
 - 육아휴직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및 보상 체계에서의 배제 등 인사상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 육아휴직의 확대
 -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의 이용 기간이 확대되고 소득 대체율이 확대될 필요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이용이 장려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 대체 인력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회사 측의 비용 지원의 확대 필요
 - 노동 수급의 유연성을 반영한 비용 지원
 - 대안적으로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 고려

제3절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정책 평가

1. 연구개요

가. 분석 대상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정책은 결혼 촉진과 출산율 제고가 목적
 - 주거비용 부담과 접근 가능한 주택부족 같은 주거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포기하려는 젊은 층에게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이들의 결혼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
- 정책효과의 측면에서 주거부담 경감 지원이 없었다면 주거비 부담이나 주거불안(한 곳에 머무는 거주기간 등)을 더 크게 느꼈거나, 혹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신혼부부의 출산율 유도할 수 있어야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은“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행복주택 공급 등
 - 이 가운데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임대 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부 관련규정을 2012년에 개정하여 지속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이에 관한 평가는 분석에서 제외⁵⁾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정책의 효과를 심층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두 가지 목적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과 출산율 제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
 - 첫째,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들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이들의 주거마련과 안정에 기여하는지 정성적으로 분석
 - 둘째,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계량 분석을 통해 추정
- 본 절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서만 정성적·정량적 심층평가를 실시

나. 분석 자료 및 방법

- 정책성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위해,
 - 결혼 및 출산과 주거에 관한 선행연구 문헌 검토, 정책 수혜자인 신혼부부와 정책 집행자, 금융권 주택대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실시
 - 주택자금지원 성과 분석을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패널 자료)를 이용한 기초분석 등으로 계량분석의 한계를 보완
- 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량분석하기 위해,
 -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1~2014),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2014~2015),⁶⁾ 행복

5) 미임대 주택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3개월 전까지 공급 물량의 20% 이상이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수량적 목표치 제시에 한계가 있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던 점을 감안

주택 공급관련 자료, 행복주택 입주자 현황자료 자료 일부를 이용

2. 선행연구

가. 학술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분석하거나 완화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흡한 실정
 -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신혼부부란 특정 대상층을 연구대상으로 놓기 보다는 여성과 결혼, 출산 그리고 주거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 따라서 신혼부부의 주거문제와 주거부담, 저출산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결혼·출산과 주거형태, 결혼과 저출산 등의 관계를 분석한 몇몇 연구에 불과한 실정
- 신혼부부 주거부담과 저출산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연구로는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를 분석한 박준오(2014), 주거형태와 결혼·출산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이삼식·최효진(2012)이 있음
 - 이들 연구는 주거 부담 경감이나 출산율 제고를 다루기보다는 결혼·출산·혼인력과 주거면적,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같은 주거실태와 결혼연령, 결혼차수 그리고 총 출생아 수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어 주거 부담과의 직접적 분석은 다소 미흡
-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간의 관계를 결혼차수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박준오(2014)에 의하면,⁷⁾
 -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주거문제와 결혼지연, 총 출생아 수가 서로 상관성이 있고, 결혼 5년차 미만의 경우 무상 연립 및 다세대, 무상 단독주택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총출생아수가 많으며, 월세 단독주택 거주자는 출생아수가 적은 것으로,
 - 그리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주거면적이 82㎡(24.85평형) 이상인 경우 총출생아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세나 월세, 이동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총 출생아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삼식 외(2012)의 월세, 무상, 자가, 전세의 순으로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는 차이
 - 그 원인은 자가 마련에 투입되는 높은 주택가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기혼여성의 경우, 주택마련 과정이 최종자녀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향은 전

6)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때널조사)는 표본설계 문제 등으로 국가통계로 승인받지 못하고 2014년, 2015년 조사를 끝으로 중단되었음

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자료)와 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박준오, 2014, “제3장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 『2014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II권』, 통계청 통계개발원, pp.50~86)

월세 거주자와 주거 면적이 작을수록 전세금 상환부담과 과밀공간으로 인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음

- 결혼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로 여성의 결혼 만혼화와 저출산을 다룬 김혜영 외(2010)의 연구는 평균혼인연령 상승으로 나타나는 결혼 지체와 회피가 출산율 약화의 원인이라 보고,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여성의 결혼기피 및 지체의 주원인을 심층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
 - 분석결과, 개인 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 후 떠안게 되는 부담, 경제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대부분은 높은 결혼의향과 출산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혼지원정책으로는 주택마련 지원, 일-가정 양립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더 유효함을 제시
- 선행연구 검토 결과, 주택정책을 통한 결혼 장려와 저출산 극복 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확인
 -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택가격(주거비)과 주택점유형태(자가, 차가 등) 결정, 그리고 결혼 시기 지연과 저출산이 관련이 있을 것이란 시사점의 제공과 더불어 주거문제와 저출산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음
 - 더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비 외에 지원되고 있는 주거면적, 주택의 입지(site), 집과 직장간의 이동거리를 줄여 육아에 전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혼 부부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

나.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이하 『성과평가 보고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서 상의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내용에 대한 2011~2014년 『성과평가 보고서』의 평가내용과 2015년 실적을 간략히 검토함

1) 『성과평가 보고서(2011~2014년)』의 평가 내용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내용과 방법은 3개 지원정책인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행복주택 공급 등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측정 및 평가를 실시
- 『성과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실적평가와 심층평가는 성과지표로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적 달성율을 통해 평가
 - 주택구입 및 전월세가격 상승 등의 결혼준비 비용 증가가 만혼(晩婚)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며,

- 이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분야 대책의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성과를 측정
-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실적을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산식[(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부부 전세임대+신혼부부 임대주택)/연간초혼건수*100]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로 성과를 측정⁸⁾

2) 실적평가 결과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
- 주요 정책적 성과로 제시된 소득 등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한 지원 내용 및 수혜대상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기존 주택자금 지원이 소득기준이 엄격해 많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저소득 가구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문제를 해소
 - 맞벌이 신혼부부 등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정책수혜를 볼 수 있도록 소득요건 및 무주택요건 완화
 - 주택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금지원 금리 및 규모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 것을 정책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
 - 제도개선 내용으로 지원기준 완화를 담은 업무매뉴얼 개선(2011년, 2013년), 주택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자격요건 상향조정(2011년 3000만원 → 2014년 6000만원), 지원금액 한도 및 금리 조정, 무주택요건 완화(2011년, 2014년) 등
- 『성과평가 보고서』는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확대 정책에 대해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 소득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혼부부가구의 경제력을 감안,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발생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와 조기출산을 유도하자는 취지
 - 2011년 관계기관 간 협의로 지원방안 결정 후, 2012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3개월 전까지 공급물량의 20% 이상이 임대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지

8) 본 절에서도 주택자금 지원, 기존주택 등은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서만 계량분석을 실시

원하는 방안을 결정

- 이에 맞는 추진성과 지표로 제시된 관련규정 개정, 개정된 제도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측정 및 평가
 -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모집 가능(2011년) → 미임대 국민임대 발생 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2012년 3월)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2012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련규정을 개정한 이후, 미임대 발생 물량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구의 우선 입주를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는 정책목표 달성측면에서 2012년 관련규정 마련 후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입주 시행 및 우선 지원을 지속하고 있어 당초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

-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인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
 - 공급물량 중 8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우선 공급
- 추진성과 측정 지표인 행복주택 공급률 목표치 대비 실적치로 성과 평가
 - 2015년 행복주택 3만8000호 공급으로 당초목표 100.0% 달성
- 『성과평가 보고서』는 정책목표 달성측면에서 2014년 행복주택 공급을 시작한 첫 해부터 목표치를 소폭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후보지 발굴 및 사업지구 확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 홍보활동 전개 등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핵심과제) 관리의 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에 대한 평가를 실적평가와 마찬가지로 목표치 대비 실적치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그림 4-4 참조)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이루어진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은 2011~2015년의 기간 동안 매년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

[그림 4-4]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주: 성과지표 산식 = (특별공급+임대주택+전세임대) ÷ 연간초혼 건수 × 10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성과평가보고서, 각 년도에서 재인용

- 2011년 10.3%(목표치 9.0%), 2012년 10.8%(9.5%), 2013년 11.7%(10.0%), 2014년 11.9%(11.7%), 2015년 20.1%(11.7%)로 지원비율 실적치가 매년 증가하여 매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
- 이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지원이 지속되고,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주택을 공급한 결과라고 평가

<표 4-11>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목표치(조정목표치)	9.0	9.5	10.0	11.7	11.7
실측치	10.3	10.8	11.7	11.9	20.1

주: 1) 산식=[(특별공급+임대주택+전세임대) ÷ 연간초혼건수] × 100

- 『성과평가 보고서』는 정책목표 달성측면에서 성과목표 달성률을 통해 성과가 모두 100%이상의 달성률을 보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3.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정책 심층평가

가. 심층평가 방법

- 심층평가는 신혼부부가구 주거부담 경감정책의 실질적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적·계량적 분석방법으로 실시

- 설문조사 및 면담자료를 이용한 정성적 자료와 계량모형을 활용한 실증적 자료는 각 주거부담 경감정책의 특성에 맞게 활용
- 그러나 정책성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계량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출산)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강도)을 측정하는 한계효과 추정을 통해 가능하나 자료 이용의 한계와 설명변수의 성격(터미변수이거나 연속변수)으로 인해 오히려 한계효과 추정이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음

□ 심층평가 자료

- 신혼부부가구 대상 주택자금 지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2014년, 2015년) 자료와 가계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를 활용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과 주택지원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급 자료와 신혼부부주거실태(2015년), 그리고 행복주택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구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자료를 병행 사용

□ 심층평가 중 행복주택 공급의 정책효과는 일반 공급현황과 행복주택 공급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분석

나. 신혼부부가구 대상 주택자금 지원

1) 신혼부부가구의 대출상품 이용 경험과 개선요구 사항

- 국토교통부의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결혼당시 약 36%는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및 용자를 받았고, 주택자금 대출상품 이용 경험 가구는 48.6%
 - 1~2년차보다 3년차 이상이 이용경험이 더 많았고, 신혼부부가구의 78.2%는 향후 주택자금 대출상품 이용을 계획
- 2015년 조사에서도 신혼부부 88.3%가 내 집 마련 또는 전세,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용자
 - 용자는 86%가 제1금융권에서, 10.3%는 제2금융권을 이용
 - 용자액은 1억 원 미만이 약 80%(5천만 원 미만 42.7%, 5000~1억 원 37.3%)
- 대출상품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는,
 - 신청자격 완화(44.8%), 대출기준금리 인하(37.9%), 신청가능 대상주택 규모 확대

(7.3%), 대출한도 확대(6.3%), 대출기간 연장(2.3%) 등을 요구

2) 주택자금 지원 이용실태: 금융기관 가계대출 담당자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 면담조사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수도권 소재 은행의 가계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대출 빈도, 대출상품의 경쟁력,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조사

○ 은행 가계대출 담당자 면담조사 결과

-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인지도는 높았으나 대출자격과 금리 측면에서 시중은행보다 경쟁력이 뒤지고,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실제 이용 빈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택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대출실행 빈도

“젊은 층의 경우 인터넷을 보고 상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지원정책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에 관한 상담은 70~80%가 전세자금에 관한 것이고, 구입에 관한 것은 10~20% 수준이다. 그러나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 주택대출 상품의 경쟁력

“젊은 면담자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에 대해 금리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한도 3억원 이하 기준 때문에 지방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대출이 기대만큼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 대출상품과 기금 대출 상품의 금리 차이가 0.3~0.5% 포인트가 난다. 전세주택 가격 기준과 금리를 감안할 때, 기금 상품보다는 은행상품을 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8~3.8%인 반면, 시중은행의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은 2.6~3.2%(개인의 신용에 따라 최저 2.52~최고 4.0%) 수준이다.”

-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출실행과 시중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는 이유는 전세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데 3억 이하 주택이 많지 않다.”

“젊은 층은 3%의 기금 대출 금리도 높다고 생각한다. 기금을 활용한 주택자금지원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고, 연소득 6천만원 기준은 폐지하거나,

유지한다면 7~80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한시적 금리인하(‘16년의 경우 11월말까지 접수신청자에게 0.5% 포인트 금리인하 적용) 등 혜택이 주어지면 구입자금 대출이 늘어날 것이다.”

- 신혼부부대상 주택자금 지원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가격 등 신청기준 요건 완화, 대출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고, 일차적으로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과 주거 만족도 분석

1) 신혼부부가구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현황

- 행복주택사업 추진현황
 - 2015년 말 현재 행복주택사업은 전국 104개 지구 6만4071호의 공급이 추진 중
 - 경기도가 2만6568호로 전체 공급물량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6355호, 인천 5724호, 충남 5512호, 경남 4236호 순으로 공급
 - 사업단계별로는 사업승인이 완료된 물량이 3만3025호, 착공 완료된 물량이 2만8064호이며 2016년 현재 입주가 완료된 사업은 서울 8479호가 있음
-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공급현황
 - 2015~2016년 사이 3차에 걸쳐 13개 지구 4386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신혼부부 공급은 9개 지구 1078호로 전체 물량의 24.6% 차지
 - 지역별로는 서울 445호, 대구 372호, 경기 253호의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졌고,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대구가 34.2%, 서울 31.7%, 경기 17.4% 순
 - 신혼부부공급의 청약경쟁률은 9개 지구에서 평균 6.7:1로 서울가좌역이 114.61: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
 - 신혼부부 공급의 공급면적별로 청약경쟁률은 30㎡ 이하가 평균 1.1:1을 기록한 반면 30㎡ 초과 45㎡ 이하의 경우 10.2:1의 경쟁률을 기록

9) 서울 내곡 87호, 서울천왕7 374호, 서울강일11 346호, 서울삼전지구 40호

〈표 4-12〉 지역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현황(2015~2016)

(단위: 호)

구분	공급량	신혼부부 공급량	신혼부부 공급량 비율
서울	1,405	445	31.7%
대구	1,088	372	34.2%
인천	140	0	0.0%
경기	1,458	253	17.4%
충북	295	8	2.7%
계	4,386	1,078	24.6%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실태 분석

□ 분석 자료 및 분석 내용

- 주거실태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토교통부의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
 -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는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패널조사(2015년 2702명을 대상으로 조사)
- 행복주택 정책대상이 되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주택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136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
 - 분석범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으로 구분

□ 분석결과 I: 결혼 전 희망 주택유형과 실제 거주주택유형 및 주택의 크기(방)

- 혼인 1년 차 가구에 대해 결혼 전 희망했던 신혼집 유형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가 77.2%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 12.0%, 단독 8.6%의 순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아파트 선호(84.9%)가 수도권 (72.1%)보다 더 높았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도 아파트가 48.8%로 가장 많았으나 결혼 전 희망 했던 아파트 비중과는 큰 차이
 - 희망 주택유형에 비해 실제로는 연립/다세대(29.2%)와 단독주택(20.2%)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음
- 거주 희망주택과 실제 거주 주택유형 간의 차이로 신혼부부가구의 50% 이상은 주거 불만족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

〈표 4-13〉 결혼 전 희망했던 주택유형(혼인 1년차)

(단위: %)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계
수도권	7.7	72.1	18.0	2.2	100.0
비수도권	10.0	84.9	3.1	2.0	100.0
계	8.6	77.2	12.0	2.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표 4-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계
수도권	18.6	44.5	35.2	1.8	100.0
비수도권	22.4	55.2	20.5	1.9	100.0
계	20.2	48.8	29.2	1.8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신혼부부가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수는 2.5개

- 방 3개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52.3%, 방 2개는 44.8% 반면, 1개나 4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각 1.7%와 1.2%

〈표 4-15〉 신혼부부가구의 사용방수

(단위: %, 개)

구분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평균
수도권	1.1	45.6	52.2	1.0	100.0	2.5
비수도권	2.4	43.7	52.4	1.5	100.0	2.5
계	1.7	44.8	52.3	1.2	100.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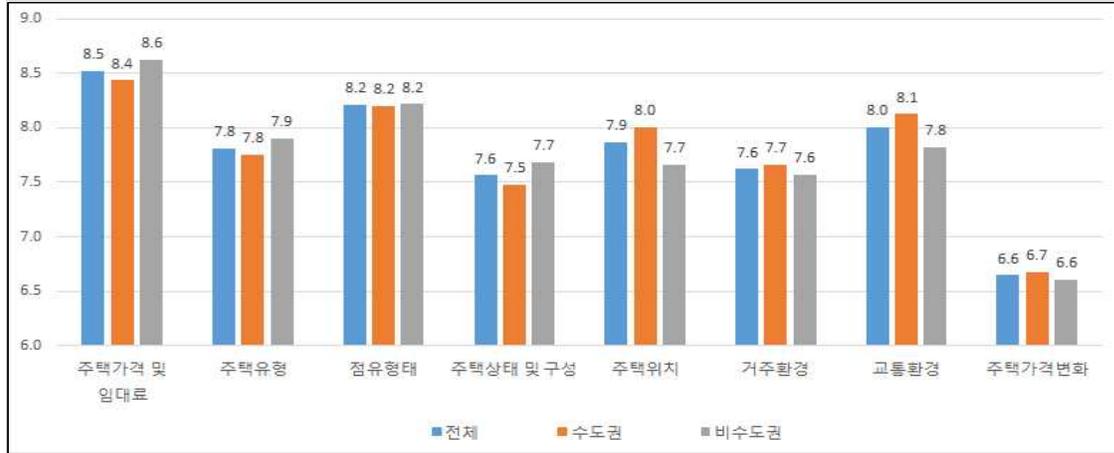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분석결과 II: 신혼부부가 주택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혼부부가구는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가격 및 임대료(8.5점¹⁰⁾)를 가장 크게 고려
 - 다음으로 점유형태(8.2점), 교통환경(8.0점), 직장과의 거리 등 주택위치(7.9점)의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

10) 리커트 10점 척도로 측정

[그림 4-5] 거주지 선택시 고려사항(10점 척도 평균)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신혼부부가구의 30.3%는 임대료 상승 때문에 부정기적·비자발적으로 이사
 - 다음으로 직장 변동 19.4%, 집주인의 퇴거요청 17.3%, 생활자금 부족 10.9%의 순
 - 임대료 상승 외에 수도권은 집주인 퇴거요청(20.5%), 직장 변동(15.7%), 임차방법 변경(반전세나 월세 등, 14.6%)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 비수도권은 직장 변동(27.0%), 생활자금 부담(24.7%), 집주인의 퇴거 요청(10.6%) 때문에 부정기적·비자발적인 이사 발생

<표 4-16> 부정기적·비자발적 이사 이유

(단위 : %)

구분	임대료 상승	임차방법 변경	집주인 퇴거 요청	재개발, 재건축 등	대출금 상환 부담	생활 자금 부담	직장 변동	기타	계
수도권	30.1	14.6	20.5	8.7	6.1	4.3	15.7	0.0	100.0
비수도권	30.7	0.0	10.6	4.3	0.0	24.7	27.0	2.6	100.0
계	30.3	9.9	17.3	7.3	4.1	10.9	19.4	0.9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분석결과 III: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입주 의향

- 신혼부부가구의 94.5%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인지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20.3%), 어느 정도 알고 있다(42.4%), 들어본 정도(31.8%)

〈표 4-17〉 공공임대주택 인지도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들어본 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자세히 알고 있음	계
수도권	5.1	25.9	47.1	22.0	100.0
비수도권	6.2	40.5	35.6	17.7	100.0
계	5.6	31.8	42.4	20.3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신혼부부가구의 56.1%(2014년 52.3%)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의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

- 지역별로 입주의향이 있는 가구 비중은 수도권 56.6%, 비수도권 55.4%
- 입주하려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75.0%)와 적은 임대료 상승 부담(20.3%) 때문이라고 응답
-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서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응답이,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상승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1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저렴한 임대료	임대료 상승 부담 적음	세금부담 없음	부동산으로 재산증식 어려움	계
수도권	72.2	22.6	4.1	1.1	100.0
비수도권	79.2	16.7	2.9	1.2	100.0
계	75.0	20.3	3.6	1.1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반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39.2%)이 가장 많았고 작은 주택규모(23.2%)와 낮은 시설수준(14.1%), 나쁜 입지(10.7%)도 원인이라고 응답

○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필요한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 신혼부부가 공동임대주택 거주 시 필요한 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69.5%(수도권 72.1%가 선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소공원 11.3%, 상가 8.7% 순

〈표 4-19〉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필요한 시설(1순위)

(단위: %)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소공원	운동 시설	상가	도서관	소형 영화관	카페	기타	계
수도권	72.1	11.2	7.3	6.1	2.4	0.1	0.3	0.5	100.0
비수도권	65.8	11.3	6.3	12.4	2.7	0.7	0.2	0.4	100.0
계	69.5	11.3	6.9	8.7	2.5	0.4	0.3	0.5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분석결과 IV: 가장 선호하는 지원정책과 출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신혼부부 관련 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주택마련 지원

-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신혼부부가구는 주택마련 지원(50.8%)을 육아 지원(41.3%) 보다 더 선호하였으나, 지역별로는 차이. 수도권은 주택마련 정책을 반면, 비수도권은 육아지원 정책을 더 선호

〈표 4-20〉 신혼부부 관련 정책 선호도(1순위)

(단위 : %)

구분	육아지원	주택마련	생활안정	계
수도권	37.5	54.3	8.2	100.0
비수도권	46.8	45.8	7.4	100.0
계	41.3	50.8	7.9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주택마련 지원(37.4%),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안정적 직장환경(36.4%),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13.4%)라고 응답

〈표 4-21〉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주택마련 지원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안정적 직장환경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탁아시설 공급 확대	육아·탁아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계
수도권	41.1	37.3	11.5	7.7	2.4	100.0
비수도권	31.9	35.1	16.2	13.2	3.6	100.0
계	37.4	36.4	13.4	9.9	2.9	100.0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 분석 결과 V: 행복주택 거주 만족도(행복주택 입주자 및 관계자 면담결과를 중심으로)

○ 면담조사 내용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가구원수(나이, 자녀수, 자녀나이), 결혼연차, 취업여부, 정책 인지방법, 주거비 부담 수준(임대료 포함), 정책에 대한 체감수준(만족도), 출산계획(6월 이내, 6~1년 이내, 1~2년 이내, 2년 이후), 출산과 관련해 연계할 요구 및 기타 건의 사항 등을 조사

○ 행복주택 거주 신혼부부가구 및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 신혼부부 주택지원(행복주택 공급) 제도는 이사시기에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사항을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청약통장 가입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

- 면담조사 결과,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인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양호한 거주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또한 출산 장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원룸 형태나 29㎡의 작은 주택은 출산에 도움은 못되고 단지 숙박시설로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주택 입주 동기

“경제적 요인, 양호한 거주 환경 등으로 행복주택을 선택하게 됐다. 대출금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심지어 단독주택까지도 서울에서는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다른 임대주택은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상이 안됐다. 현장 방문해보니 기대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적은 돈으로 최상의 환경에서 온 것으로 생각한다.”
- 주거비 부담(임대료), 주거환경 및 거주 만족도

“월임대료 수준은 적정하다. 현재 최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다고 느낀다. (다른 가구는)전세보증금은 조금 낮아 임대료를 좀 더 내고 있지만, 임대료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거주지로서의 주변 환경이 양호하고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어 만족스럽다. 임대료 역시 주변보다 저렴해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 크기와 방 개수(원룸형)가 적어 아쉽다.”
- 출산 계획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

“1~2년내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¹¹⁾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이 작아 오히려 출산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일지구의 경우) 원룸형의 작은 평형(29㎡)이어서 아이 출산하면 이사를 가거나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거나,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거주하기에는 집이 협소하고, 부모 공간도 없는 실정이어서 잠만 자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집 평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집 크기가 20평형(약 60㎡) 내외로 최소 방 2개가 있는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신혼초기 무자녀와 1자녀에서 2자녀 가구가 될 경우 더 큰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 관리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1) 면담자(3인) 중 2인은 1~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을 그리고 다른 한 가구는 6년 이후 더 큰 집으로 옮겨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월임대료에는 월세 외에 관리비가 포함된다. 관리비의 증가는 신혼부부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늘린다. 현재 행복주택은 단지규모가 작은 데 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경로당,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은 필수 시설로 되어있어 이를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비 부담이 발생하여 가계에 주거비 부담을 주게 된다. 작은 단지의 경우, 주민의 일정 부분 부담과 함께 정책적 배려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규모가 큰 행복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가구원 증가 시 인근의 다른 행복주택으로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기자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

라.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모형 및 변수설정

- 분석 자료는 “2015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이용
 - 무주택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
- 분석모형
 -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이항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을 통해 행복주택 정책의 효과를 분석
 -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는 출산계획에 관한 조사항목으로 ‘자녀를 (더)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다’, ‘자녀를 (더) 갖지 않을 계획이다’ 등 3가지 응답항목을 구성하고 있음
- 분석모형은 출산계획의 구체성에 따른 종속변수의 설정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성
 - <모형 1>은 출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선택에 있어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성
 - <모형 2>는 출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가구와 출산계획은 있지만 이를 미루고 있는 가구의 선택에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성

〈표 4-22〉 분석모형의 유형 및 종속변수 설정

구분	종속변수 설정
모형1	1=‘자녀를 (더)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0=나머지 응답
모형2	1=‘자녀를 (더)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0=‘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다.’

○ 설명변수의 설정

- 설명변수로는 여성 배우자 근로여부, 현재 자녀수, 사용방수, 보육환경 만족도, 가구소득, 주거비, 거주지역 변수를 포함
- 주거비는 2015년 12월 기준 전월세전환율¹²⁾ 6.9%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전환임대료를 적용

〈표 4-23〉 설명변수 설정

변수명	종속변수 설정
여성 배우자 근로여부	1=일하고 있음 0=일하고 있지 않음
현재 자녀수	조사 시점 현재 자녀수, 단위 명
사용방수	현재 주택 사용방수, 단위 개
보육환경 만족도	1=만족 0=불만족
가구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실수령액 기준), 단위 만원
주거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주거비, 단위 만원
거주지역	1=수도권 0=비수도권

2) 분석 결과

① 〈모형 1〉의 추정 결과

- 설정된 설명변수가 모두 가구의 출산계획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주거와 관련하여 사용방수는 출산계획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보육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은 출산계획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의 경우 출산계획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혼부부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낮을수록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란 것을 시사
- 여성 배우자 근로여부와 현재 자녀수는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가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

12) 한국감정원 공표 자료

〈표 4-24〉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모형 1)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Standardized Estimate
상수	0.0793	0.3617	0.0480	0.8265	
여성 배우자 근로여부	-0.6399	0.1662	14.8296	0.0001	-0.1749
현재 자녀수	-1.8777	0.1250	225.8270	<.0001	-0.7742
사용방수	0.2385	0.1179	4.0926	0.0431	0.0725
보육환경 만족도	0.3298	0.1552	4.5165	0.0336	0.0766
가구소득	0.0015	0.0005	8.0804	0.0045	0.1123
주거비	-0.0148	0.0056	7.0251	0.0080	-0.1072
거주지역	-0.6029	0.1346	20.0600	<.0001	-0.1601
N	1534				
R-Square	0.2296				
Max-rescaled R-Square	0.3235				
Likelihood Ratio	<.0001				
Score	<.0001				
Wald	<.0001				

② 〈모형 2〉의 추정 결과

- 설정된 설명변수 중 보육환경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환경 만족도의 경우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결과를 보임
- 설명변수 중 여성 배우자 근로여부, 현재자녀수, 주거비는 신혼부부가구가 미루어 두었던 출산계획을 구체화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반면, 사용방수, 보육환경만족도, 가구소득은 출산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5〉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모형 2)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Standardized Estimate
상수	-0.0506	0.4092	0.0153	0.9017	
여성 배우자 근로여부	-0.6006	0.1853	10.5030	0.0012	-0.1652
현재 자녀수	-0.9998	0.1482	45.5073	<.0001	-0.3121
사용방수	0.3003	0.1284	5.4673	0.0194	0.0926
보육환경 만족도	0.3034	0.1691	3.2199	0.0727	0.0698
가구소득	0.0014	0.0006	4.6713	0.0307	0.1040
주거비	-0.0123	0.0057	4.6545	0.0310	-0.0879
거주지역	-0.4870	0.1493	10.6412	0.0011	-0.1305
N	883				
R-Square	0.0851				
Max-rescaled R-Square	0.1137				
Likelihood Ratio	<.0001				
Score	<.0001				
Wald	<.0001				

3) 시사점

- 주거부담 경감정책은 신혼부부가구의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2015년 시행계획으로 추진한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 공급) 정책은 신혼부부가구의 주거 안정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주거비가 출산계획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주택이 신혼부부가구에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고,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16년부터 공급되고 있는 신혼부부특화단지의 경우 신혼부부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특화된 시설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추론이 가능

4. 소결

- 젊은층의 ‘주거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면담조사와 실증분석 등을 통해 확인
 - 이는 주택정책의 한 축을 활용해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5년도 시행계획 중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정책은 출산과 관련해 모든 신혼부부 계층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이란 평가가 가능함
 - 주거지원이 없어도 출산을 선택했을 신혼부부, 출산계획이 없던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계획은 있지만 출산을 미루고 있었던 신혼부부 모두에게 주거부담 경감정책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출산을 미루어 왔던 가구가 출산계획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주택자금 지원이나 행복주택이 출산을 유인하는 정책적 역할을 하더라도 부채와 임대주택이라는 성격상 대출금 상환부담, 높은 주택가격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작은 주택 규모 등으로 인해 조기에 가시적인 저출산 극복의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정책의 효과를 확산하고 신혼부부가구의 출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행복주택의 크기와 공급량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 신혼부부가구 중 일부에 불과한 현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노력(주택공급 확대, 자격조건 완화 지속 등)이 필요함
- 또한, 신혼부부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이 당장의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전방위적인 대응은 계속해 나가야 함
 - 주택정책을 통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젊은 층 유입과 지역 슬럼화 방지, 유아 및 신혼부부 관련업종 성장, 지역 활력 제고 등 행복주택 공급이 가지는 지역적·미학적 긍정효과와 주변지역 전세가격 안정도 기대됨
 -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 노력으로 성과를 거둘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신혼부부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유형인 아파트에서 장기거주와 가구원수 증가에도 걱정이 없는 적정 규모의(24평형 내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 마지막으로 금융제약과 자격 요건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함. 전세가격과 지원한도, 소득 기준 상향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안 강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4절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평가

1. 연구개요

□ 분석목적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일자리사업 체계화를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본래 노인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년기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년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음
- 노인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초점은 크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와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닌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제2차 기본계획 중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충, 질적 고도화, 그리고 사업의 체계화이며,
 -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닌 고유목적으로 보충적 소득보장, 사회참여 기회제공, 건강증진에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공급의 충분성을 평가하고자 함

□ 분석내용 및 방법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특성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 제공기관, 제공인력, 사업내용 등의 변화 분석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상의 노인일자리사업 실적변화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기존 문헌에서 발표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이행계획 달성도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통계자료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노인일자리사업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기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 노인실태조사(2014년) 자료 분석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참여노인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2. 선행연구

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현황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률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는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확대로 구분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에 관한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창출수이며, 2011년 22만 개에서 2015년 38만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목표 달성률도 매년 110% 수준으로 초과 달성함
 -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장에 관한 성과지표는 참여노인의 만족도 수준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4.0점을 목표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2013년까지는 목표에 다소 미달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목표치(4.0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화에 관한 성과지표는 직능·직장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정수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통폐합 및 민간분야 일자리 기능강화로 제시되었으며, 일자리사업 체계화 과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됨

- 직능·직장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정수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0개와 27개로 당초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성과지표 중의 하나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통폐합 및 민간분야 일자리 기능강화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사업평가, 인식개선 등) 내용이며 연 1회씩 진행한 것으로 보고됨

〈표 4-26〉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률

성과지표		2011			2012			2013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수 합	200,000개	225,497개	112.7	220천개	248천개	112.7	230천개	262천개	113.9
	참여노인 만족도(5점척도)	4.0점 이상	3.9	97.5	4.0점 이상	3.8	95.0	4.0점 이상	3.8	95.0
일자리사업 체계화	직능·직장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정수	15개	20개	133.3	10개	27개	270.0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통폐합 및 민간분야 일자리 기능강화	1회	1회	100.0	1회	1회	100.0	1회	1회	100.0

성과지표		2014			2015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수 합	310천개	336천개	108.4	337.0	386.0	114.5
	참여노인 만족도(5점척도)	4.0점	4.02	100.5	80.5	82.2	102.1
일자리사업 체계화	2014년 및 2015년 해당과제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 연도별 집행예산 및 집행률

-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액은 2011년 3,408억원에서 2015년 약 6,77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은 99%~100%를 달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98.2%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 4-27〉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예산

구분	2011(억원)	2012(억원)	2013(억원)	2014(백만원)	2015(백만원)
예산액	3,438	3,441	4,791	580,980	689,762
집행액	3,408	3,441	4,791	576,389	677,088
집행률	99.1	100.0	100.0	99.2	98.2

주: 1) 2011, 2012년: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과제 예산이며, 일자리 사업 체계화 과제는 비예산 사업임
 2) 2013년: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4,698억원 및 일자리사업 체계화 93억의 합계임
 3) 2014, 2015년: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예산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나.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관련 연구결과

-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다룬 연구는 김영선과 강은나(2011), 이석원 외(2015), 이석원 외(2016)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주로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김영선과 강은나(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 제3차년도와 제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 효과성을 분석함
 - 노인의 일자리사업의 건강 효과성은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그리고 보건의료비 지출의 세 가지 측면을 분석
 -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정신건강(우울감)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이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지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 조사 자료, 새누리시스템 자료,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료비 명세서 자료를 결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이석원 외, 2015)
 -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컸으며, 80대 참여노인이 다른 연령층 노인에 비해 의료비 절감효과가 컸으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노인집단에서도 의료비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남성, 고연령, 저학력 집단과 같은 건강에 취약한 집단에서 의료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한 부가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검증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유형 및 참여동기에 따른 보건의료효과, 즉 의료기관 이용실적(의료비, 요양기간, 입내원 기간)을 분석함(이석원 외, 2016)
 - 참여동기와 관련해서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보건의료 효과가 가장 컸으며, 건강유지를 위해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의 보건의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일자리 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익형 사업 참여자의 보건의료 효과가 컸으며, 인력파견형은 보건의료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을 선발하고 일자리에 배정할 때 참여노인의 참여동기 등을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박영미 외, 2016)과 성공적 노화(강소량, 김병수, 2016)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봄

○ 박영미 외(2016)의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함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은 공공분야(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와 민간분야(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노인의 삶의 질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감으로 구성함
- 교육형이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지형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소랑과 김병수(2016)는 한국복지패널 제8차와 제9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분석과 삼중차이분석을 통해 검증함

- 삶의 질은 신체적 변인(보건의료비,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 변인(우울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변인(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으로 구분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이중 및 삼중 차이 추정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함
- 삼중차이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도시노인이 농촌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은 반면,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즉, 수요자의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사업유형의 차별화를 제안(예, 농촌의 경우, 건강증진형, 도시는 사회적관계증진형)

□ 선행연구 검토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건강증진 특히 의료비 감소효과가 있음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이 신체적 기능(보건의료비,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 기능(우울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능(가족관계 만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음

3. 노인일자리사업 심층평가

가. 현황 분석

□ 사업배경

○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대책이나 늘어난 비근로시간에 대한 시간활용에 대한 준비없이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겪는 소득부족이나 사회활동 참여기회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이 도입
- 노인일자리사업은 10년 넘게 수행되어오면서 사업참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 2015년에는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에 다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재변경되었음
 - 사업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소득보충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내용¹³⁾

- 2015년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¹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활동, 취업활동, 창업활동, 경력유지활동으로 구분됨
- 공익활동은 다시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나뉘며, 전국형은 취약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활동, 생활상태 점검 등을 수행함
 - 참여기간은 연중(12개월)과 9개월로 구분되며, 월 30시간 이상(일6시간 초과 불가) 활동하게 됨
- 공익활동 중 지역형¹⁵⁾은 노인의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학습지도, 공공기관 업무지원 등 지역사회 활성화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으로 30개 표준 프로그램 중 지자체가 선택하여 추진함
 -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 장애인 돌봄지원, 1-3세대 강사파견, 숲생태 해설, 보육교사도우미 등이 해당됨
 - 연 9개월 참여하며, 활동내용에 따라 월 30-35시간 참여(일6시간 초과 불가)
- 취업활동(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에 파견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활동임
 - 일회성 파견사업으로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있으며, 지속파견

13) 보고서 작성시점은 2016년이지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제2차 기본계획의 마지막년도인 2015년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14) 2015년 공식 사업명칭은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지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사용한 사업명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을 사용함

15) 2014년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사업의 일부

사업은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등이 있음

○ 창업활동(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또는 전문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을 발생하여 운영하는 활동임

- 공동작업형으로는 쇼핑백 제작, 제품포장, 콩 재배 등이 있으며, 제조판매형은 카페나 매점 운영, 아파트 택배사업, 지하철 택배 사업 등이 있음

□ 참여노인

○ 사업별 참여자 선정기준

- 연령: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자(취업 및 창업형은 만 60세 이상)
- 건강: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준
- 세대주 형태: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은 제외)
- 담당자의 상담의견: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연도별 참여자 현황

-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25,411명이 참여한 이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85,963명이 참여함
- 전체 노인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2011년 4.0%에서 2015년 5.7%로 매년 증가함

[그림 4-6]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주: 2013년과 2015년 실적은 추경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수행기관 및 인력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2011년 1,214개소에서 2015년 1,228개소로 5년간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사업단수는 2011년 5,014개에서 2015년 7,091개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수행기관은 2015년 기준, 노인복지관(19.0%), 대한노인회(16.1%), 종합사회복지관(14.9%), 지자체(14.1%), 노인복지센터(12.5%), 시니어클럽(10.4%), 지역문화원(1.4%) 등임
 - 기관당 관리하는 참여노인수는 2011년 평균 185.7명에서 2015년 314.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8〉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관수	1,214	1,219	1,221	1,220	1,228
사업단수	5,014	5,513	5,909	6,438	7,091
기관당 참여자수	185.7	203.8	214.2	275.8	314.3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2,000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4년에는 2,276명, 2015년 2,472명으로 증가함
- 5년간 전담인력은 1.2배 증가한 반면 참여노인은 1.8배 증가하여 참여노인 증가율에 비해 전담인력 증가율이 미치지 못함. 이로 인해 전담인력 1명당 참여자수는 2011년 116.6명에서 2015년 156.1명으로 늘어남

〈표 4-29〉 2011~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담인력	1,933	1,742	1,987	2,276	2,472
전담인력 1명당 참여자수	116.6	142.6	131.7	147.8	156.1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방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표 4-3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 중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내용

영역	구분	세부내용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가. 양적 확대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나. 질적 고도화	공공분야 일자리	-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운영 - 근로강도 및 근로형태에 다양화, 급여 차등지급 추진
		민간분야 일자리	- 노인 적합성, 수익성,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확대/재편 - 인턴십 프로그램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형 개발·보급 -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지원
다. 일자리사업 체계화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민간분야 일자리 품질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확대 - 직능, 직장 시니어클럽 확대: 시범사업 추진, 유형별 사업모델 개발 추진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성과관리 방식 개선, 민간취업 기능 강화		

1) 양적 확대

□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공분야 일자리(공익활동 및 재능나눔)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194,480개에서 2015년에 305,140개로 약 1.6배 증가함
-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노인인구 증가율 1.2배보다 높은 수치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4-31〉 2011~2015년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창출현황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실적	194,480	217,710	227,439	269,244	305,140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p.86)

□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 민간분야 일자리(취업활동, 창업활동 등)는 2011년 25,866개에서 2015년 32,619개로 약 7,000여개 증가함. 그러나 전체 노인일자리 실적 대비 민간일자리 비중은 2011년 11.7%에서 2015년 9.7%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민간분야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치는 지난 5년간 증가하였으나 공공분야 일자리 증가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고, 전체 노인일자리 대비 비중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일자리의 확대수준은 담보상태라 할 수 있음

-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의 한계 중의 하나는 참여노인이 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참여노인에 대한 최저시급,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업단 당 약 50~100에 이르는 노인이 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로 편입되면서 산재보험료율 증가,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불이익 발생 등으로 인해 민간일자리사업 참여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음
 - 예를 들면, 아파트 택배사업의 경우 한 개 당 단가가 400-500원이며, 어르신들의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시간당 최소 12개, 4시간 근무라면 약 50개를 배달해야 함. 그러나 어르신이 하루 50개를 배달하려면 하루 8-1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등 활동량과 최저시급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도 있음
 -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단에는 평균 50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노인 50명을 근로자로 적용이 되면서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수가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하면서 사업수행기관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참여노인이 기관의 근로자로 편입되면서 기존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 수가 100명이 넘게 되면서 각종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며, 직원들도 대출이나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직업교육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
 - 현장에서는 민간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근로자의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인식이 부족하여 최근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등 상당부분 위험요소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표 4-32〉 2011~2015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현황

(단위: 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실적	25,866	25,539	28,082	30,278	32,619
전체 일자리 대비 민간일자리 비중(%)	11.7	10.5	11.0	10.1	9.7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p.86.

2) 질적 고도화

□ 공공분야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제고와 근로형태 다양화, 급여 차등화 추진

○ 사회적으로 가치 높은 일자리 창출

- 사회적으로 가치높은 일자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순노무에 가까운 사업을 축소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세대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자리 등을 확대를 위해 초등학교급식도우미, CCTV 상시관제, 노노케어 등의 아이টে

발굴하여 운영함

○ 근로형태 다양화 및 급여 차등화

- 기존 9개월 사업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어왔던 공공일자리의 근로기간은 사업에 따라 12개월(노노케어), 9개월, 6개월(재능나눔활동) 등으로 세분화
- 급여 차등화와 관련하여 기존에 사업에 관계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월 10만원(월 10시간 이상 근무) 지원되는 재능나눔활동이 2014년부터 도입

□ 민간분야 일자리는 노인 적합성, 수익성,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의 확대 및 재편하고,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지원

○ 인턴십 프로그램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모형 개발 및 보급¹⁶⁾

-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즉,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은 노인이 직장에 곧바로 투입되기 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새로운 직장과 업무에 적응하고 훈련받을 시간적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인력파견형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조건으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 가능
- 시니어인턴십은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구분되며, 인턴형은 참여노인 1인당 최대 6개월간, 약정 월급의 50%(최대 45만원)을 지원하며, 연수형은 노인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함
- 시니어인턴십 2011년 3,643명의 참여로 시작하였으나 2015년에는 6,176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시니어인턴십 참여노인의 높은 계속고용률, 노인 근로역량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 노인신규직종 개발에 도움 등의 성과를 보임
 - 시니어인턴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 노인의 근로역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혹은 우려가 있었으나, 노인들이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타 계층에 비해 이직의도도 낮아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에도 도움이 됨에 따라 노인 근로자 채용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 부산의 관광호텔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룸메이드 직종에 시니어인턴을 채용했으나 노인의 업무적응력, 성실성 등이 확인되면서 조식관리원, 주차관리원, 시설관리원 등으로 채용 직종을 확대한 사례도 발견됨

1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 2016.05.31.),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6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지침' 참고

〈표 4-33〉 시니어인턴십 사업추진 실적

(기준: 2015.12.31.)

구분	목표 일자리	누적 참여자	목표 달성률	참여 완료자	참여 완료율	1인당 월평균 소득(원)
2011	3,000	3,643	121.4	2,951	81.0	639,953
2012	3,550	3,612	101.7	2,985	82.6	860,646
2013	4,600	4,500	97.8	3,956	87.9	813,079
2014	5,000	5,103	102.1	4,410	86.4	794,537
2015	5,900	6,176	104.7	5,282	85.5	873,086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에게 부합하는 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에서 다수의 고령자(최소 30명)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의 설립과 운영 지원¹⁷⁾
-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은 설립단계에서 사업당 최대 3억원 이내(직능형은 최대 8천만원 이내) 지원을 하며, 운영단계에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 교육, 홍보를 지원함
- 고령자친화기업은 2011년 9개소에서 2015년 21개로 증가하였으며, 고령자친화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2011년 913명에서 2012년 1,1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716명이 종사하였음
- 고령자친화기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근로조건은 개선되어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011년 743,117원에서 2015년 879,52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평균 재직기간도 2011년 87.7일에서 2015년 192.8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인터뷰 결과,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근로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자)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되는 장점이 있음. 또한, 노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직종으로 기업이 설립되고 근무시간도 노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노인적합형 민간기업 모델로 지난 5년간 운영되어 옴

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go.kr, 2016.10.12.) 참고

〈표 4-34〉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추진 실적

(기준: 2015.12.31.)

구분	지원예산 (천원)	대응투자 (천원)	기업수	목표 일자리	60세이상 창출실적	1인당	
						월평균 소득(원)	평균재직기간(일)
2011	1,750,000	1,743,000	9	700	913	743,117	87.7
2012	3,000,000	3,630,000	15	750	1,126	724,038	88.2
2013	4,752,000	5,120,000	20	1,000	1,118	732,585	120.6
2014	5,538,000	5,538,000	21	1,000	721	791,934	143.5
2015	5,678,500	4,143,917	21	1,250	716	879,520	192.8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p.80.

3) 사업의 체계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민간분야 일자리 품질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 지난 5년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민간 일자리 증진을 위해 관련 연구,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어왔음
 -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실태 및 기업의 노인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분석 I, II,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릴 창출 모델 개발을 위한 CSV 사례 연구, 시니어 직능클럽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 노인일자리 전문가포럼, 고령사회전문가포럼 등 운영

□ 시니어클럽 확대

- 시니어클럽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분류됨
-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즉, 시니어클럽의 확대는 노인을 위한 민간일자리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전국 시니어클럽은 2015년 현재 시니어클럽은 126개로 2011년 이후 21개소가 증가함
 - 시니어클럽은 시군구 및 시도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즉, 시니어클럽의 지정은 광역단위에서 결정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광역 단위에서는 부산이 16개소로 시니어클럽수가 가장 많으며, 반면 인천 1개소, 울산 2개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 도 단위에서는 경기 16개소, 전북 13개소로 시니어클럽 운영수가 많지만, 전남과 충남은 각각 4개소와 5개소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음(2015년 기준)
- 지역내 노인인구수 비율과 민간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시니어클럽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어 지역간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향후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시니어클럽 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4-35〉 2011~2015년 시니어클럽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니어클럽(개)	95	104	115	121	126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도별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직능 및 직장 시니어클럽 확대

- 시니어직능클럽은 퇴직노인의 경력, 전문지식, 전문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자원봉사, 교육 영역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퇴직자에게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한 민간기업, 공기업, 퇴직자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함
- 주요 지원내용은 첫해에는 기관당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년도에는 성과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항목은 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 운영비, 사업개발비, 자원봉사활동비, 교육비 등이며, 시니어직능클럽 관리자 인건비로 일부 사용가능하나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
- 시니어직능클럽은 2011년 7개에서 2015년 49개로 증가함. 연도별 지정개수를 보면 지정개수는 2011년 7개에서 2013년 13개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8개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시니어직능클럽은 시니어들이 퇴직 이전의 경력과 재능을 퇴직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득을 위한 일자리, 재능기부와 같은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 실적은 2011년 272명이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4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¹⁸⁾
 - 2015년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3억 가량 축소되었으나 참여자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015년 179만원 정도로 나타남

18) 일자리 참여실적은 시니어직능클럽 관리 대상(지정 후 3년 관리) 기관에서 창출한 실적을 의미함. 예를 들면, 2015년 일자리 참여자수 465명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지정된 31개 시니어직능클럽에서 창출한 일자리수를 의미함

〈표 4-36〉 연도별 시니어직능클럽 지정개수 및 창출 목표 실적

(기준: 2015.12.31.)

구분	지원예산 (천원)	직능클럽 지정수	목표 일자리	일자리 창출		1인당 월평균 소득(원)
				참여자수	달성률(%)	
2011	700,000	7	300	272	90.7	1,083,000
2012	875,000	11	400	408	102.0	1,021,000
2013	875,000	13	400	459	114.7	1,169,574
2014	875,000	10	400	476	119.0	1,319,436
2015	512,000	8	600	465	77.5	1,789,368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2015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p.83.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성과관리 방식 개선 및 민간취업 강화

- 연도별 시행계획에서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성과관리 방식이나 민간취업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과제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안에서 관리되지 못함

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충분성 및 고유목적 달성에 관한 평가

- 노인일자리사업의 공급의 충분성은 노인일자리 사업 공급량 대비 수요량으로 측정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는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분석함
- 분석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하거나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분석을 실시함

1) 수요-공급의 충분성

-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 대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4.3% 인데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률은 18.2%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는 공급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미취업인 노인 중에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4.2%로 2014년 노인인구 기준으로 63만여개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대비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유가 소득보충(생계비 마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활동을 확대시켜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따른 제공기관 및 인력보강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참여 희망자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징은 여성, 고령, 초등학교 이하 학력,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이 높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특징은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60대 참여희망률도 높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도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60대, 남성,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이 참여가능한 일자리, 활동 마련이 요구됨

〈표 4-3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및 참여희망노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
성별		
남	30.7	46.0
여	69.3	54.0
합계	100.0	100.0
연령대		
65-69세	19.9	38.3
70-74세	36.7	33.5
75세 이상	43.5	28.2
합계	100.0	100.0
학력		
글자모름	8.7	6.2
글자해독	24.6	22.1
초등학교	40.5	32.8
중학교	11.7	13.7
고등학교	13.1	19.9
전문대 이상	1.4	5.3
합계	100.0	100.0
기초연금 수급여부		
예	93.7	74.8
아니오	6.3	25.2
합계	100.0	100.0

주: 노인일자리 참여자 428명,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 1,876명을 분석함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2) 보충적 소득보장

□ 보충적 소득보장

- 인터뷰 결과,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지원받는 20만원 혹은 시장형 일자리를 통해 얻게 되는 20만원 이상의 수입은 노인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받은 20만원으로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청년, 중년기에 지출이 많지 않았던 의료비 지출이 노년기에 급증하게 되지만, 추가소득이 없는 경우 의료비가 가계의 큰 부담임. 인터뷰 결과, 노인일자리참여노인의 상당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받는 활동비(또는 근로소득)을 의료비에 보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건강한 편이어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는 인터뷰 참여노인은 시장형 일자리를 통해 받고 있는 23만원 정도를 여가활동비(노래교실 회비, 친교모임 등)에 사용하고 있음

3) 사회참여기회 확대

□ 사회참여 만족 증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기타 임시·일용직 근로노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영역별로 비교분석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임시·일용직 근로노인에 비해 낮음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가능(부록표 참조)
-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노동시장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인에 비해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한 다양한 활동 및 교육참여, 참여자간의 관계 형성, 지역사회 정보 습득 등과 같은 일자리 사업 참여 이외의 부가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와 연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38〉 삶의 영역별 만족도

구분	임시·일용직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t	전체 근로노인
전체(명)	605	428	-	2970
건강	3.17	2.91	4.587***	3.07(.92)
경제	2.46	2.25	3.803***	2.62(.87)
배우자 관계	3.81	3.63	2.920**	3.75(.67)
자녀 관계 만족	3.58	3.65	-1.321	3.71(.75)
사회, 여가, 문화활동	3.01	3.22	-3.824***	3.16(.85)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3.47	3.56	-1.967	3.58(.71)

주: 5점 척도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사회적 관계망 확대

- 이소정(2013)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관계(가족, 친척 등)보다 공식적 사회관계(친구, 이웃)의 빈도와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함철호와 오혜연(2010)의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라 분석대상자의 사회적 관계 크기(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의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관계 빈도와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이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인터뷰 결과, 시니어클럽 등 기관을 통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2회 정도의 간담회와 식사, 나들이 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함

4) 건강증진 및 시간활용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집 밖의 외부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인터뷰 참여 노인 중 한명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에는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 집에서 혼자 지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집 밖에 나와 활동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졌다고 함
 - 또 다른 참여노인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늦게 일어나고 운동도 안하게 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면서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음

4. 소결

가. 결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일반적 성과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 이차자료 분석, 전문가 및 이용노인 인터뷰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보장,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 관계 증진, 건강한 생활 유지, 그리고 노년기 시간활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성과
 - 노인일자리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목표달성률과 예산집행률은 95%에서 114.5%로 매년 계획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해왔다고 볼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확대와 관련하여 공공일자리는 확대되어왔으나 민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에 비해 크지 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노인일자리의 질적 고도화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2011~2016)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공일자리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근로형태 다양화나 급여 차등화 등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이용노인들이 체감할 수준은 아님
-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는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등과 같은 새로운 노인 일자리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해오고 있음
 - 지난 5년간(2011~2015) 새로운 민간분야 일자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운영 노하우 등을 쌓으면서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민간일자리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사업체계화와 관련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포럼 등을 운영해왔으며, 제한적이지만 시니어클럽, 시니어직능클럽 등을 확대하여 민간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음

나. 제언

- 노인인구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창출수 배정
 -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지자체 혹은 사업수행기관에 배정할 때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음
 - 지자체에 따라 노인인구가 3만명도 안되는 지자체와 노인인구 10만명인 자치단체와의 노인일자리 배정 일자리 수가 비슷한 경우 발생
 - 2016년부터 시장형 사업으로 변경된 학교급식도우미나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은 지역 사회 내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사업실적이 달라짐. 지역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가 3개밖에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역내 초등학교가 30개 넘는 지역도 있어 실적 달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각 수행기관에 배정할 때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목표치 배정 필요
- 민간일자리 참여기관의 노동(관계)법 적용 완화 방안 마련
 - 민간일자리 참여노인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운영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시급, 퇴직금 등 보장과 함께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의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됨

□ 노인직업교육 확대

- 공익활동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혹은 숙련도를 갖춘 노인인력풀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노인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훈련이 지원되어야 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수요에 맞춰 역량있는 노인을 배치하고, 역량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맞춤형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취업교육센터 역할 강화 및 평생교육기관이나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수행기관 및 전담인력의 확대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가능한 기관은 상당수 수행기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수행기관과 인력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매년 확대해오는데 현장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노인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공공+민간)는 약 16만명이나 증가한데 반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1,214개소에서 1,228개소로 14개소만 증가하고, 전담인력은 1,933명에서 2,472명으로 539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공익활동 일자리 창출수 목표를 '16년 30.2만개에서 '20년 44.2만개로(매년 3.5만개 증가) 상정
- 향후 계획한 공익활동 일자릴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수행기관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행기관보다는 전담인력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남
 - 수행기관 확보는 아직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관심있는 NGO나 지역사회기관 등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전담인력이 예산 및 참여노인 관리(1명당 156명 노인 관리) 이외의 참여노인 교육, 사업홍보, 수요처 관리, 신규사업 개발,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향후 공익활동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담인력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제5절 노인장기요양사업 정책 평가

1. 연구개요

□ 분석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2008년 도입되었으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과제의 평가 초점은 크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제2차 기본계획의 노인장기요양 내실화에서는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주요 추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 분석내용 및 방법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특성 분석
 -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규모, 제공기관, 제공인력 등의 변화 분석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실적변화 검토
- 선행연구 검토
 - 기존 문헌에서 발표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이행계획 달성도 분석
 -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과제 목표의 수행도 평가
 - 과제목표별 기존 성과평가보고서, 기존 문헌, 관련 법령 등 검토
 - 학계 및 현장전문가 대상 서면조사 실시

2. 선행연구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성과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통한 이용노인의 변화와 가족부양자의 변화로 구분 가능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 선행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한 이용노인의 건강변화를 건강상태 호전, 장기요양 등급유지율, 재가서비스 이용유지율, 의료기관 이용횟수 감소, 의료비 감소 등으로 측정
 - 가족부양자의 변화로는 신체적 부양부담 감소, 심리적 부양부담 감소, 가족관계 개선, 사회활동 기회 증가, 경제활동 기회증가, 전반적인 삶의 증가 등으로 제시가능(이석민, 원시연, 2012; 김찬우, 2013)

가. 이용노인의 변화¹⁹⁾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를 이용노인의 장기요양등급 유지율과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유지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화는 악화, 유지, 또는 개선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로 동일 등급유지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등급이 악화되지 않고 현 등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성과로 보고자 함
 - 1등급 유지율을 보면, 2008년 ~2010년까지 신규로 1등급을 받은 자가 그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갱신 시점에서 다시 1등급을 유지하는 비율은 2008년 69.8%, 2009년 64.6%, 2010년 66.6%로 나머지 30%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망이나 전원(예, 요양병원 입원) 등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등급의 경우, 신규 2등급 받은 이후 최초 갱신시점에서 2등급을 유지하는 비중은 50% 초반대로 나머지 50%는 악화(1등급으로 이동) 또는 개선(3등급으로 이동)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개선보다는 악화로의 이동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3등급 유지율은 약 80%로 1등급이나 2등급에 비해 3등급 유지율이 가장 높음
 - 종합하면, 3등급의 등급유지율이 가장 높아 장기요양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수급노인에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2등급은 약 50%의 등급유지율을 보여 등급 유지율이 가장 낮음. 그리고 최중증인 1등급자는 2등급보다는 등급유지율이 높은 60% 중후반을 보이

19) 이용노인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전우덕 외(2016) p.130~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함

고 있음. 2등급의 경우, ‘악화’로의 등급전환율과 ‘개선’으로의 등급전환율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1등급과 2등급 수급노인의 등급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4-39〉 연도별 신규등급 인정자의 최초 갱신결과 동일등급 유지자 분포

(단위: %)

최초 등급 인정 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08년	69.8	53.1	77.1
2009년	64.6	53.1	81.6
2010년	66.6	56.0	83.4

주: 이는 신규 등급자가 최초로 발생한 등급 갱신연도에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비율임.
 자료: 선우덕 외(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6.
 원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자료 분석

나. 가족부양자의 변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관계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연구에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민기채, 2011)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7년 자료와 2009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 이후의 변화를 본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가족관계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해석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양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양부담(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요양환경 변화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며, 사회활동 증가, 경제활동 기회증가 등은 상대적은 낮은 수준의 성과로 제시됨(이석민, 2012)
 - 2010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실시
 -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양환경 변화, 부양부담 감소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사회활동 기회 증가, 건강상태 변화도 유의하게 나타남
 - 그러나 경제활동 기회증가는 서비스 만족도와 관련없는 것은 나타남
 -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양부담 감소가 가장 높고, 사회활동증가, 요양환경 변화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이석민과 원시연(2012)의 연구에서도 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

인 성과로서의 사회경제활동 기회증가나 삶의 질 향상에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고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성과에 관한 김찬우(2013)의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수발자의 삶의 질, 수발부담, 만족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급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
 - 그러나 사회적 성과측정에 있어 빈도분석, 기술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가 부양가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가족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부양부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명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차적인 성과 혹은 중장기적인 성과로 가족부양자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나 가족관계 만족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참여는 돌봐야 하는 노부모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역량 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가족관계 만족 역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독립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층평가

가. 현황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52개 항목)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 인지, 간호 등의 상태를 조사하고, 인증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최중증)에서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 등급을 결정하게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95점 미만, 3등급은 60점~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 중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제출자로 구분
 - 2008년 도입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등급내 및 등급외 포함)는 21만여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4.2%에 해당되었으며, 2015년에 인정자는 46만명을 넘어 전체 노인 인구 대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0〉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인구 대비 ¹⁾	5.7	5.8	6.1	6.6	7.0
1등급	41,326(12.7)	38,262(11.2)	37,283(9.9)	37,665(8.9)	37,291(8.0)
2등급	72,640(22.4)	70,619(20.7)	71,824(19.0)	72,100(17.0)	71,260(15.2)
3등급	210,446(64.9)	232,907(68.1)	269,386(71.2)	170,329(40.1)	176,336(37.7)
4등급	-	-	-	134,032(31.6)	162,763(34.8)
5등급	-	-	-	10,456(2.5)	19,472(4.2)
합계	324,412(100.0)	341,788(100.0)	378,493(100.0)	424,572(100.0)	467,752(100.0)

주: 1) 각 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임
 - 재가급여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뉨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 시설)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음
 - 2011년 14,918개소였던 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18,002개소로 약 4,000개소 증가함
 - 재가시설은 2011년 10,857개소에서 2015년 12,917개소로 약 1.19배 증가한 반면, 입소시설은 2011년 4,061개소에서 2015년 5,085개소로 약 1.25배 증가함

〈표 4-41〉 장기요양기관 변화추이

(단위: 개소,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재가시설	10,857(72.8)	10,730(71.3)	11,056(70.64)	11,672(70.6)	12,917(71.8)
입소시설	4,061(27.2)	4,326(28.2)	4,648(29.6)	4,871(29.4)	5,085(28.2)
계	14,918(100.0)	15,056(100.0)	15,704(100.0)	16,543(100.0)	18,002(100.0)

주: 1)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2) 급여종류별 중복이 제외된 값이며, 입소시설 수는 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의 합산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 장기요양급여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양사에 의해 제공되며, 제공인력은 2011년 250,863명에서 2015년 324,946명으로 74,083명 증가하였음
-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인력의 90.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대비 사회복지사(127.0%)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간호조무사 55.3%, 영양사 34.8%, 물리(작업)치료사 27.6%, 요양보호사 26.7% 등으로 증가

〈표 4-42〉 장기요양인력 변화추이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사회복지사	6,133	6,751	7,506	11,298	13,923
의사(촉탁의 포함)	1,081	1,142	1,233	1,324	1,415
간호사	2,838	2,735	2,627	2,683	2,719
간호조무사	5,859	6,560	7,552	8,241	9,099
치과위생사	7	7	4	5	4
물리(작업)치료사	1,530	1,626	1,740	1,813	1,952
요양보호사	232,639	233,459	252,663	266,538	294,788
영양사	776	835	918	987	1,046
계	250,863	253,115	274,243	292,889	324,9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액은 2011년 2조 9,691억원에서 2015년 4조 5,226억원으로 급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률은 2011년 87.2%에서 2015년 88.0%로 증가 추세

〈표 4-43〉 장기요양보험료 급여비 지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급여비(억원)	29,691	31,256	35,234	39,849	45,226
공단부담금(억원)	25,882	27,177	30,830	34,981	39,816
공단부담률(%)	87.2	86.9	87.5	87.8	88.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따른 기본계획 이행 평가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과제에는 예방적 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2013년부터는 ‘지역밀착형 포괄지역케어 시스템 추진’으로 변경),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2013년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로 명칭 변경),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 네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예방적 서비스 공급 강화: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시범사업 모형개발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모형 개발 및 운영
 -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도입, 교육과정 개선, 장기요양기관 평가
 -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재가관리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강화 등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등급 체계개편 등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과제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 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사업의 추진실적이 97.0%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4 참고)

□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시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관련 집행예산은 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예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직무교육,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사업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지난 5년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예산은 최소 920만원(2014년)에서 최대 5,971억원(2015년)으로 나타남 (표 4-45 참고)

<표 4-44> 2011~2015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성과지표 및 달성률

사업명	2011				2012				2013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예방적 서비스 공급량 강화	시범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모형개발 및 실시	모형개발 및 실시	100.0	보호자-축탁의 전달체계 마련	지침 마련	지침 마련	100.0	-	-	-	-
	지역사회 자원연계 모형개발	모형개발	모형개발	100.0	자원연계 사업지침 마련	지침 마련	지침 마련	100.0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역사회 연계	사례관리 실적	100.0
품질향상 서비스 제공	직무교육 도입	직무교육 계획마련	직무교육 계획마련	100.0	교육과정 및 고시제정	100%	100%	100.0	교육과정 마련	100%	100%	100.0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평가완료기관수	장기요양평가기관 90% 이상	95%	105.6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평가완료기관수	90%	91.1%	101.2	장기요양(입소)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 개정	고시 개정	100.0
장기요양수급실서 확립	재가관리전 자관리시스템 도입 (참여기관수/대상자가기관수)* 100	50%	91%	182.0	법률 개정	법률개정완료	개정법안 국회제출('12.9)	100.0	법률 개정	법개정	법개정	100.0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구축 완료	구축 완료	100.0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검토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	33만명	32만명	97.0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	90%	90%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	90%	90.2%	100.2
사업명	2014				2015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 추진	지역자원연계 실적	3,000	3,918	130.6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	4,000	5,374	134.4				
장기요양서비스 질제고	장기요양평가방법 등 고시개정	개정	개정	100.0	장기요양 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 개정	고시 개정	완료				
장기요양보험수급실서 확립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개정	개정	100.0	부담청구 신고금 상향 조정	100	300	300.0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치매등급 도입여부	도입	도입	100.0	인정자 중 치매환자 (만명)	23.5	24.2	103.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표 4-45> 2011~2015년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집행예산

구분	2011(억원)	2012(억원)	2013(억원)	2014(백만원)	2015(백만원)
예산액	5,777	4,879.82	5,416.6	920	597,164
집행액	5,751	4,879.63	5,408.6	870	597,072
집행률	99.5	100.0	99.9	94.7	99.9

주: 1) 2011년: 직무교육 도입(1,168억원),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예산 합계임. 다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2) 2012년: 보호자-축탁의 전달체계마련 및 지역사회연계 사업지침 마련예산,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예산의 합계임
 3) 2013년: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예산의 합계임
 4) 2014년: 지역사회자원연계 예산임
 5) 2015년: 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 예산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다. 2011~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이행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의 주요 방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구분	세부내용
가.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 요양-의료서비스간 적극적 연계를 위한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 시설입소 방지 및 재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추진
나.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지원 - 임상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발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시범적용
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수급자 가구에 전자태그 부착, 요양보호사 핸드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시, 종료 시간 전송 - 청구 건에 대한 전산 심사기능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자료 점검하여 부당행위 차단 - 장기요양기관 교육 지속 실시: 부당유형별 사례교육, 신설 기관 교육 강화 -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1)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²⁰⁾

□ 요양-의료서비스간 적극적 연계를 위한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 2011년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 촉탁의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파악하고, 요양-의료서비스간 적극적 연계 관련하여 시범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2012년 보호자 촉탁의 전달체계 지침(요양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입소 방지 및 재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추진

- 2011년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방안’ 연구용역 실시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모형개발
- 2012년 자원연계 사업지침 등 마련
- 2013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은 전국 8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10,128명(중복 포함), 사례관리 대상자수는 2,700명
- 2014년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은 전국 1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대상자수는 21,289명, 사례관리 3,918명 발굴

□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세부과제 추진에서는 전담주치의 도입 대신 촉탁의 제도운영을

20) 연도별(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내용을 주로 참고함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제가 진행되었으며,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추진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것을 볼 수 있음

2)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지원²¹⁾
 - 2011년. 직무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기관에는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 인센티브 부여
 - 2011년. 보수교육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교재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교재 배포 등
 - 2013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원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 가능
 - 2014년.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실시('14.7~8)
- 임상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발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시범적용
 - 2011년. 기존의 신청기관에 한하였던 장기요양기관 평가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의무화 및 평가결과 공개
 - 2012년. 평가등급은 A 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이며, 평가결과 공개는 급여종류별 평균점수 및 대분류 영역별 평균점수 공개
 - 2013년. 평가등급은 A 등급 10%, B등급 10%, C등급 50%, D등급 20%, E등급 10%으로 변경
 - 종사자 처우 등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급여제공 프로세스를 반영
 - 평가거부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거부'로 표기하고 명단을 별도 공개
 - 가산금은 상위 10%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부담금 3% 지급, 상위 11~20%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2% 지급, 직전 평가기관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 지급
 - 2014년. 평가등급은 A 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30%, E등급 10%으로 변경하고, 등급별 평균점수 및 커트라인 점수 공개
 - 2015년. 평가결과를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 평가결과 공개: 절대평가 등급, 대분류 영역별 수준, 시설 규모별 대분류 영역 평균점수, 등급별 평균점수 및 커트라인 점수 등

21) 연도별(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내용을 주로 참고함

- 가산금은 평가결과 A등급 기관 중 시설규모별 상위 20% 범위 내 기관만 지급, 시설규모 별로 상위 10% 기관은 평가 직전년도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2%, 상위 10% 초과~20%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 지급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로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

3)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수급자 가구에 전자태그 부착, 요양보호사 핸드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개시, 종료시간 전송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 개선
 - 2011년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41개 시군구에서 본 사업 시행. 실시간 전송내역에 대한 청구심사 교육 및 장애대응 요령 등에 관련 교육 실시, 전체 방문서비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1년 11월 10월 기준, 전체 방문급여 수급자의 93.2%가 참여(이삼식 외, 2012, p.160)
- 청구 건에 대한 전산 심사기능 강화하고, 주기적인 현지조사 등을 통한 부당행위 차단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급여 청구건에 대해 현지심사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5년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 및 부당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정영진, 2016)
 -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장기요양기관은 774개소이며, 부당청구 금액은 23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적발된 기관은 1,028개소 중 774개소 약 73.5%에 이르며, 입소시설이 310개소로, 재가시설은 464개소임
 - 적발 유형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종사자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 위반(시설), 방문목욕 제공기준 위반(재가) 등으로 나타남

〈표 4-46〉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현지조사 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수 (조사기관수 대비 적발기관수 비율)	조사기관 청구금액	부당금액(%)	기관당 부당금액
계	1,028	774(75.3)	541,546	23,501(4.3)	30
입소시설	452	301(68.6%)	288,807	16,329(5.7)	53
재가시설	576	464(80.6%)	252,739	7,172(2.8)	15

원자료: 2015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2016년,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정영진(2016), p.344의 <4-2>의 내용임

- 장기요양기관 교육 지속 실시
 - 2013년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완료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 2013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개정: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불가
 - 2014년 2월 과징금 부과 및 납부,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4)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2011년 이후 장기요양등급 인정점수 하향 조정 및 치매 노인을 포괄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력을 지속해옴
 - 2011년에는 치매가점제도를 시행 하여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질병이나 치매가 있는 자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 개별요양인점수를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조정
 - 2012년에는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최소 55점 이상에서 최소 53점 이상으로 조정한데 이어 2013년에는 최저 등급인 3등급 인정기준을 최소 51점까지 하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함
 - 2014년에는 치매특별등급시설과 함께 장기요양인정등급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적용
 -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등급의 A~C
-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는 약 32.4만명에서 46.7만명으로 약 14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2011년 5.7%에서 2015년 7.0%까지 증가함

〈표 4-4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인구 대비 ¹⁾	5.7	5.8	6.1	6.6	7.0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	324,412(100.0)	341,788(100.0)	378,493(100.0)	424,572(100.0)	467,752(100.0)

주: 1) 각 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5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라. 전문가 서면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목적: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용 중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영역의 추진정도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조사대상: 장기요양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요청하였으며, 17명 중 12명이 응답
- 조사기간: 2016. 11. 10. ~ 11.16.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세부과제별 전문가 평가 결과

-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 요양-의료서비스간 연계를 위해 촉탁의 제도 중심의 과제진행의 적절성은 3.33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촉탁의 제도 개선이 요양-의료서비스 연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연계사업의 추진 적절성은 3.33점으로 보통수준이었으나, 지역사회연계사업이 예방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예방적 서비스로서의 도움 정도 2.33점)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의 역량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조정과 자격관리체계 구축사업 진행의 적절성은 3.33점인 반면 교육과정과 조정과 자격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보임
 -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지난 5년간의 사업수행 내용의 적절성은 3.67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체계 변화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된 정도는 2.92점으로 보통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함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 장기요양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 전자태그 부착, 주기적으로 자료 점검하여

부당행위 차단 등의 노력의 적절성은 3.5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이 실제로 장기요양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도는 3.67점으로 적절성과 추진성과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2011년 32만여명에서 2015년 46만여명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의 적절성 평가는 3.65점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세부 과제내용이나 진행의 적절성은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각 세부과제가 해당 영역의 목적달성에 기여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됨

○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강화와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세부과제 추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33점 ~3.67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각 세부과제가 예방적 서비스 혹은 품질높은 서비스에 기여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보임(2.33점 ~ 2.92점)

- 기관평가 의무화, 절대평가 전환 등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업내용의 적절성이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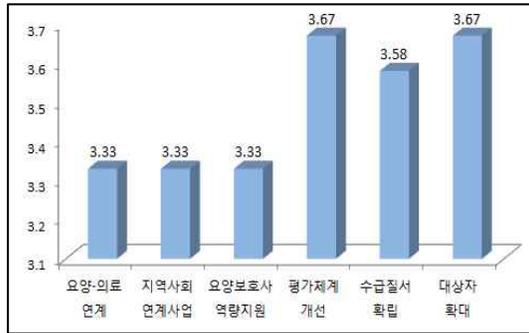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세부 과제 진행의 적절성과 개선정도는 3.6점 내외로 다른 세부과제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4-4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세부 과제별 전문가 평가(N=12)

영역구분	세부구분	세부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요양-의료 서비스간 연계	축탁의 제도 개선 중심의 과제진행의 적절성	2.0	5.0	3.33	0.98
		축탁의 제도 개선이 요양-의료서비스 연계에 도움 정도	1.0	4.0	2.42	1.16
	요양-치료-지역 사회서비스 연계	지역사회연계사업 중시의 과제진행의 적절성	2.0	5.0	3.33	1.15
		지역사회연계사업이 예방적 서비스로의 도움 정도	1.0	4.0	2.33	0.89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역량지원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4.0	3.33	0.78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변화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정도	2.0	4.0	2.67	0.78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기관평가 의무화, 절대평가 전환, 평가결과 공개 등의 적절성	1.0	5.0	3.67	0.98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정도	1.0	4.0	2.92	0.90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절성	현지조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의 개선 정도	2.0	4.0	3.58	0.67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절성	2.0	4.0	3.67	0.6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수준의 적절성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수준의 적절성	2.0	5.0	3.67	0.78

주: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함

[그림 4-7] 세부과제 내용의 적절성(N=12)



[그림 4-8] 세부과제의 추진성과(N=12)



□ 영역별 성과 및 지속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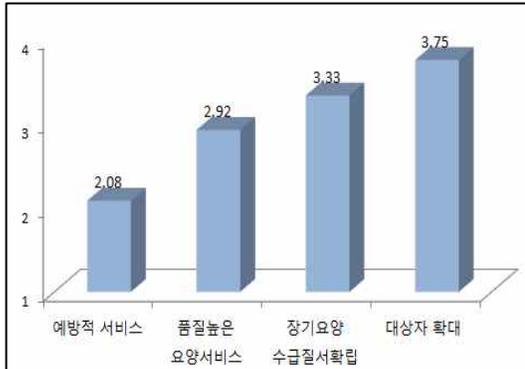
- 지난 5년간 각 영역별 긍정적 변화 정도를 보면, 장기요양대상자 확대가 3.75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장기요양수급질서 확립 3.33점,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공급 3.33점,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2.08점 순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은 예방적 서비스 공급 강화가 4.75점, 품질높은 4.67점을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장기요양수급질서 확립의 필요성도 4.00점으로 높은 편임. 그러나 장기요양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3.75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임

<표 4-49> 지난 5년간(2011-2015) 긍정적 변화 정도 및 지속추진의 필요성(N=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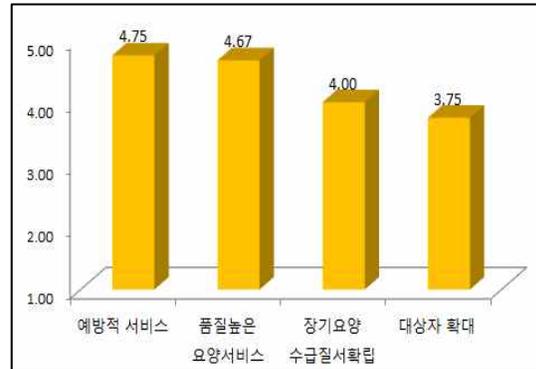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긍정적 변화 정도 ¹⁾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1.0	4.0	2.08	0.90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공급	2.0	4.0	2.92	0.79
	장기요양수급질서 확립	2.0	4.0	3.33	0.78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3.0	4.0	3.75	0.45
지속추진의 필요성 ²⁾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4.0	5.0	4.75	0.45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공급	4.0	5.0	4.67	0.49
	장기요양수급질서 확립	3.0	5.0	4.00	0.60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2.0	5.0	3.75	0.87

주: 1)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함(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2)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질문함(전혀 필요하지 않다=1 ~ 매우 필요하다=5)

[그림 4-9] 지난 5년간 긍정적 변화 정도(N=12)



[그림 4-10] 지속추진 필요성(N=12)



4. 소결

가. 결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일반적 성과

- 이용노인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는 3등급 인정노인의 등급유지율 및 재가급여 이용유지율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에 일차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참여 기회 증진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성과

-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영역의 네 가지 영역별 세부 내용이나 진행의 적절성은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나, 각 세부과제가 해당 영역의 목적을 달성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과 대상자 확대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과제추진 성과부분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이 가장 긍정적인 개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와 품질높은 영양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적어 향후에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수급질서 확립은 지난 5년간 긍정적인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나. 제언

□ 노인장기요양제도 내 의료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변경하고(2015년 기준,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 비중 78.0%), 간호행위의 범위를 재점검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수행 가능한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서비스를 강화하여 재가서비스 이용노인의 건강지원 도모
 - 복지용구 제외 다섯 가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서비스 이용률은 2.3%인 반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률은 68.4%에 이릅니다(2015년 기준)

□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현재의 이용지원체계로는 이용노인과 가족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용지원보다는 인정조사 업무 중심의 업무 구조, 이용지원 인력의 한계, 욕구조사 결과의 낮은 활용도, 형식적인 최초 상담 등
- 장기요양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도입
 - 케어매니지먼트는 ‘초기 상담, 욕구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 및 연결,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의미
 -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고려가능한 방안: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강화, 중앙의 케어매니지먼트 담당조직 신설, 지자체 혹은 지역 공공기관에 케어매니저 파견방식, 지자체 혹은 지역의 공공기관에 케어매니지먼트 업무 위탁 등

□ 장기요양기관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 현재의 장기요양기관평가는 기존의 규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제는 부족한 실정임
- 서비스 질 평가 영역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티브 강화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유도

- 인구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이질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급여)의 다양화 추진
 - 24시간방문요양서비스, 재활서비스, 복지용구의 확대 등

제 5 장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종합평가

제1절 저출산 분야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제3절 성장동력 분야

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종합평가

제1절 저출산 분야

1. 개요

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영역)의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1.3 미만의 초저출산수준으로 지속하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출생아 수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
-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위협요소로 작용
 -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주어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전망
 -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저축·투자·소비 위축 등에 따라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출산율 회복에는 미흡한 상황
- 이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영역)의 주요 성과 및 한계를 바탕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계
 -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집중적 개입이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
 -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된 경향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정부의 역할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 제고에 한계
 - 이에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 저출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지속적인 홍보로 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고자 함

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분야)의 추진방향

□ 정책목표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추진목표로 함
- 향후 5년간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다음 세 분야(중영역)에서 세부과제를 추진
 - 일-가정 양립 일상화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정책방향

- 부모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 친화적 제도개선과 사회문화 조성
-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
-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영역)의 실적 종합평가

- 지난 10년간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적극 투자
 - 그 결과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환경과 더불어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 지속되었으나,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등 ‘1.08 쇼크(2005)’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고 1.2명 수준으로 회복한 측면이 있음

□ 기본과제

- 저출산분야의 전체 기본과제 중 연도별 90% 이상 목표 달성한 과제는 89.0%(2014)~96.4%(2012, 2013)로 추진실적이 매우 좋음
-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의 경우 90% 이상 목표 달성한 세부과제는 첫 해인 2011년에 전체 과제수의 85.3%로 낮았으며, 그 후 88.2~100.0%로 비교적 목표달성도가 높았음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의 경우 90% 이상 목표달성한 세부과제는 연도별로 86.3%(2014)~97.5%(2013)로 비교적 높았음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의 경우 90% 이상 목표달성한 세부과제는 연도별로 전체의 91.2%(2011)~100.0%(2013)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

〈표 5-1〉 저출산 분야 연도별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 추진실적

(단위: %, 개)

저출산 분야 중영역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 과제	핵심 과제								
저출산 전 분야	90.0	100.0	96.4	94.4	96.4	94.4	89.0	83.3	92.2	83.3
일-가정의 양립 일상화	85.3	100.0	100.0	100.0	88.2	100.0	90.4	80.0	95.4	80.0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92.4	100.0	94.9	88.9	97.6	88.9	86.3	77.8	88.3	77.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구성	91.2	100.0	96.0	100.0	100.0	100.0	92.3	100.0	96.0	100.0

주: 1)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개의 기본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 시 지표별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값으로 산출함

2)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개의 기본과제가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1-47-①, 1-47-②), 목표달성률 계산 시 세부과제별 목표달성률 합 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

□ 핵심과제

- 핵심과제는 일-가정 양립 일상화에서 5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서 9개,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서 4개, 총 18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저출산 분야의 핵심과제의 성취도²²⁾는 94.7%(2014) ~100.0%(2011)로 기본과제의 성취도보다 훨씬 높음
- 3대 중영역별로 연도별 핵심과제의 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인 것은

22) 성취도는 과제별 성취도의 산술평균으로 성취도가 100.0%를 넘을 경우에는 100.0%로 계상하여 산출함

2014년으로 3대 중영역별 성취도가 91.2%~98.2%로 가장 낮았으며, 2011년의 성취도는 모두 100.0%에 해당됨

○ 핵심과제의 연도별 목표 성취도(표 5-2 참조)

- 최종연도(2015)의 성취도가 목표치에 미달되는 핵심과제 수는 전체 18개 과제 중 6개 과제임. 특히, 직장 어린이집 설치 증가율은 성취도가 64.4% 불과하였으며,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37개소)는 목표치(25개소)의 약 50%를 웃돌고 있음

○ 중 영역별 핵심과제 중 목표치에 미달된 과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영역
 -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의 실측치(13.4%)는 목표치(20.8%) 64.4%달성.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중의 하나인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표 5-2〉 핵심과제의 18개 성과지표별 연도별 실적

핵심과제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2015 목표치	2015 달성률 (%)
	2011	2012	2013	2014	2015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68.5	70.0	71.5	74.5	76.4	72.6	10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도입	0.5	0.8	1.2	2.2	2.0	108.9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5.4	12.0	14.8	16.1	18.9	17.9	105.6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11.9	16.5	18.4	11.8	13.4	20.8	64.4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	95	101	288	444	427	340	125.6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10.3	10.8	11.7	11.9	20.1	11.7	172.0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367.3	367.1	440.1	469.0	502.1	521.2	96.3
임신분만 취약 지역수(개소)	48	48	46	37	37	25	52.0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6.3	14.7	13.4	15.1	17.9	17.7	101.1
보육교육비 지원율(%)	43.1	55.2	65.4	67.1	66.5	65.4	101.7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78.6	90.7	98.1	75.6	78.8	79.9	98.6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21.2	21.2	21.0	19.3	19.9	22.6	87.9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만건)	195	257	291	396	383	320	119.7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38.9	45.2	45.4	55.5	58.9	52.1	113.0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9.9	14.9	22.0	107000	125562	102200	122.9
청소년시설 이용청소년 수(천명)	42470	43602	45064	41312	43346	45000	96.3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4.1	4.2	3.9	2.9	3.2	3.2	100.0
학대해아동 보호율(%)	0.63	0.67	0.73	1.10	0.97	0.83	116.9

주: 연도별 실적과 2015년 목표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

-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2015)’의 경우 목표는 52만명이나, 실측치는 50만명으로 목표치에 미달.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녀양육의 수월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예비부부부터 자녀출산 부부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은 목표치 79.9%에 비하여 실측치는 78.8%로 낮은 편임. 보육을 위한 시설은 기본조건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전 시설의 평가와 인증이 완료되어야 할 것임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2015)’은 목표치(22.6%)보다 훨씬 낮은 19.9%. 모의 직장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보육기관이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함. 보육시간의 다양성이 필요한 사안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영역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2015)’의 실측치 43,346명은 목표치(45,000명)의 96.3%였음. 청소년의 건전성 신장과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항임. 목표치 자체도 전 청소년이 대상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예산집행 실적

- 비예산 과제를 제외하면, 과제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표 5-3 참조)은 84.7%(2011)~88.9(2013)로 비교적 높은 편임. 연도별로 예산집행율이 약 85%~90% 미만의 수준에서 유지됨

〈표 5-3〉 저출산 분야 연도별 90% 이상 예산 집행 과제 추진실적

(단위: 개, %)

중영역	연도별 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저출산 분야	50 (84.7)	52 (88.1)	56 (88.9)	56 (84.9)	58 (86.5)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5 (55.6)	6 (66.7)	8 (88.9)	8 (80.0)	9 (81.9)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25 (86.2)	25 (89.3)	28 (87.5)	25 (78.1)	28 (84.8)
아동·청소년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0 (95.2)	21 (94.9)	20 (90.9)	23 (95.9)	21 (91.3)
예산총액(억원)	76,589	111,114	138,380	144,889	148,927

주: 기 종료과제 및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는 제외함
 자료: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

- 저출산분야의 예산 총액은 2011년의 7.7조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4.8조원으로 약 두 배가 되었음. 보육비 증액이 이루어진 2012년과 2013년에 급증하였으며, 그 후 꾸

준히 증가함

-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의 90% 이상 집행한 과제수가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산집행이 90% 미만인 과제가 여전히 총 과제수의 10%를 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과제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분야) 추진에 대한 종합논의

가. 성과

-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 마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 동안 도입 및 확대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2011년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 2012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2014년 아빠의 달 도입(1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 동안 도입 다양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여건 확충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 동안 도입 및 확대된 제도는 다음과 같음
 - 고운맘카드 지원 확대: 2011년 40만원 → 2012년 50만원
 -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31개 지역)
 - 2013년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및 확대
 - 2015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도입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
 - 보육통계(보건복지부, 각연도)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991,310명(2011)에서 1,438,151명(2015)으로, 양육수당 수혜 아동 수는 89,756명(2011)에서 1,009,346명(2015)으로 증가
 - 보육·교육비 지원율은 48.7%(2011)에서 66.5%(2015)로 증가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정책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 일반국민의 보육비용 부담 인식은 59.1%(2004)에서 33.5%(2012)로 감소, 경제적 부담 완화 인식(매우 그렇다+그렇다)은 전문가의 경우 88.0%, 일반국민은 86.9%로 높음
 - 또한, 어린이집 이용비용 만족도는 67.25점(2004)에서 72.80점(2012)로 높아졌고, 보육비용 지원정책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포함하여 12.9%(2009)에서 53.3%(2012)로 높아졌음(서문희·이혜민, 2014)
 - 그러나 부모의 근로행태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미흡
 - 보육서비스 제공시간과 부모의 근로시간 간의 격차로 인해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추가적인 사적 양육 부담 발생(서문희 외, 2014)
 - 자녀양육에 있어서 비취업모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가 부재(윤희숙·김인경, 2013)
 -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낮은 만족도, 국공립·직장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여전히 발생(김은설 외, 2016)
-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인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계획을 통해 방송·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림으로써 국민 의식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전체의 홍보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민간과의 협력 홍보로 범사회적 운영으로 확산하였으며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하고자 함
 - (관점) 저출산이 초래할 심각성을 강조하는 ‘국가적·애국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적·감상적’ 방향의 긍정적 가치관 조성
 - (구체적인 가치관 확산 목표) 가족 및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생명존중의식 제고, 양성평등 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인식과 환경변화에 주력
- 민간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범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종교계, 경제계, 고용계, 여성계, 교육계 등 사회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함
-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정책연계 강화하고자 함
-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에 지자체 참여 및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 보완·발전
 - 저출산 정책 성과평가제도의 확립·강화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나. 한계

- 제2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로 여전히 초저출산 수준
 -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연도 2005년의 합계출산율을 1.35로 기대하고, 2020년에 1.7을 기대하였으나 제3차 기본계획의 목표(2020)가 1.5임

- 제2차 기본계획(저출산 분야)의 목표가 '점진적 출산율 회복'으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내포함

-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간(Tempo)의 효과'인 만혼과 긴 터울, '양(Quantum)의 효과'인 비혼, 출산기피, 난임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었음

- 저출산대책은 출산율 회복에 초점을 맞춘 과제 중심으로 수행하고, 대응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복지, 의료, 교육, 고용 등)에 집중하는 것에 한계를 보임
 - 예를 들면, 만혼의 원인인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인구정책의 과제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공급은 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의 접근이라는 문화적 한계와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라는 제도적 한계로 일·가정양립 정착 미흡
 -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 2015년 현재 전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OECD 국가(34개국) 평균(1,732시간)과 비교 시 매우 높은 수준
 -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나, 여성중심 접근이 중심이 됨. 맞벌이 가구의 가정관리에 대한 요일 평균 시간은 남편의 경우 28분, 아내의 경우 2시간 38분으로 나타났고,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 대한 요일 평균 시간은 남편의 경우 13분, 아내의 경우 35분으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의 격차가 큼(통계청, 2015a)
 - 또한,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정책인 육아휴직은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2014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이용은 전체의 60%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이용은 40%에 불과함(한국고용정보원, 2015)

- 결혼 지원정책은 주거분야 일부 대책(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에 한정됨
 - 결혼을 위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음

- 저출산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강은나 외, 2015)에 따르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미혼남녀(만 20~39세)의 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기혼남녀(만 20~54세)는 3.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언론과 정부와 민간 홍보채널, 학교와 사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인식과 사회문화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는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와 사회인구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인구교육연구와 전문강사 양성 이 담보 상태이며 2006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던 ‘인구교육실태조사’가 2016년도에 예산관계로 중단된 상태임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제도(2011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지원제도(2013년),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제도(2015년) 등 다양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제도가 도입되었고,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등의 제도가 확대되어 의료비의 보장성이 확대되었음에도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의 증가²³⁾로 의료비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이정재 외, 2016), 난임부부의 치료 및 회복에 필요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수준(황나미, 2016)
-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미흡한 상태임
 -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약화
 -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남성은 60.8%, 여성은 39.7%로 나타남(이삼식 외, 2015). 이는 2009년 조사에서 남녀 각각 69.8%, 63.2%로 응답(이삼식 외, 2009)한 것과 비교하여 남성은 9.0%p, 여성은 무려 2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5년 남성 39.9%, 여성 28.4%로 2009년 각각 84.1%, 81.8%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함
-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연계에 있어서 한계 발생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시책의 대행 역할에 치중하는 실정임. 중앙·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이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연계·조정기능 강화 필요

23) 고위험 산모에 속하는 35세 이상 산모는 전체 산모의 18.7%('11)에서 23.9%('15)로 증가하였으며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출생)는 전체 출생아의 6.0%('11)에서 7.09%('15)로 증가하였고, 저체중아(2,500g 미만)는 전체 출생아의 5.2%('11)에서 5.79%('15)로 증가함.

-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며 재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달성을 위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총3개의 중영역, 11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속한 세부 과제를 저출산대책으로 채택하여 집중적인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사업의 채택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사실상 부재함
 - 예를 들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과제에서는 정부의 예산규모와 민간보육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한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진행하였으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해당 과제의 필요성, 효과의 정도,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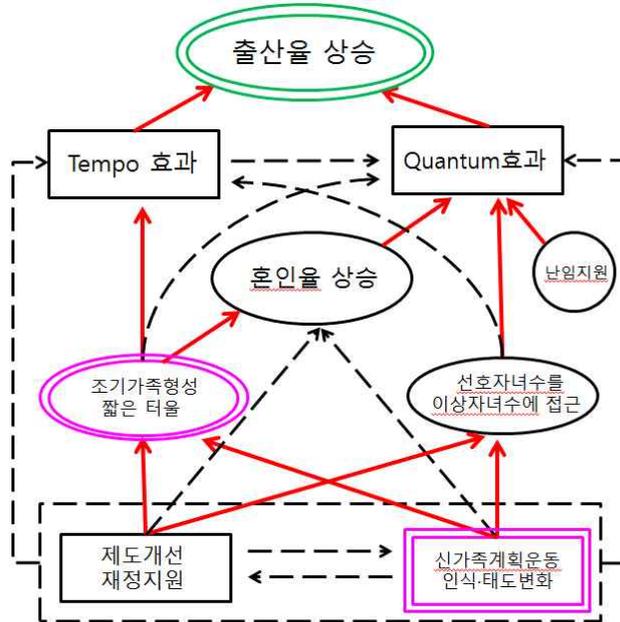
- 제2차 기본계획 추진기간(2011~2015) 중에 저출산대책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총 60조 5천억원임. 제1차 기본계획(19조 7천억원)보다 3배 이상 증액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늘려오던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제도를 2013년에 완성하면서 전체 예산의 약 85%가 영유아 보육에 집중되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4. 제언

가. 출산율 회복의 메커니즘

-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간(Tempo) 효과’와 ‘양(Quantum) 효과’(그림 5-1 참조)
- 시간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과 출산시기임
 -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출산이 혼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혼시기가 출산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결혼 후 첫 출산을 하는 시기 또는, 초산 후 두 번째 출산을 하는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한편, 양의 효과는 출산이 주로 혼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혼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최근 늘어나는 난임도 주요 요인이 됨. 가장 큰 변수는 기혼여성의 출산자녀 수가 몇이나 하는 것임

[그림 5-1]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그림 5-1]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시간의 효과와 양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가능함

- 시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시기를 앞당겨야 하고, 결혼 후 첫 출산과 그 후의 터울이 줄어야 함
- 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배우율이 높아야 하며, 난임을 예방하고, 의학 및 심리학적 치료를 통하여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 여성의 이상 자녀수는 1980년대 이래 2.3~2.5명 수준을 유지(김승권 외, 2012)하고 있으나 기혼부인의 희망 자녀수는 2012년에 1.5명으로 그 차이가 약 한 명임. 이 차이를 감소시키는 정도가 출산율 상승을 결정하는 척도가 됨

나. 출산율 회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의 효과와 양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에 14.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금액의 약 85%가 보육에 집중되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출되었음

□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양의 효과를 높이는데 투입하였지만 제2차 기본계획이 끝난 지금까지

도 합계출산율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음

○ 2015년 여성 초혼연령(30.0세)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2.3년이나 늦어지면서 시간의 효과는 낮아짐(통계청, 2006 & 2016)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결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취업, 주거, 결혼비용 등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한편, 양의 효과를 늘리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지원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정부의 대안인 제도개선이나 재정지원은 결혼을 수월하게 하고, 출산과 보육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부모됨)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야함

○ 국민의 인식과 태도변화는 전 국민대상 국민운동이 확산될 때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됨

○ 정부의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출산율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변화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것임

다. 저출산 대책 개선 방안

1) 저출산 대책과 대응정책의 구분 및 투자의 집중

□ 인구정책과 대응정책의 과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인구정책에 집중투자를 간과할 수 있음

○ 즉,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에서는 일부 과제(예, 청년실업, 방과후 학교 등)를 제외하면 노동정책, 교육정책 그 자체로서 기획하고 추진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포함될 경우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만혼, 비혼, 낮은 자녀관, 성 평등가치 등)에 대처하는 집중 투자와 대응정책의 연계로 주어진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필요함

2) 국민운동으로 승화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한 사회 각계

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의 역할을 체계화

□ 전 국민대상 홍보·교육과 실천운동이 필요

○ 민간·지역·정부의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각 계의 적극 참여가 필요

- 기업의 경우 '출산'은 내수를 늘리고, 장래 양질의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종교계에서는 교리에 따라 선남선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룬다는 가르침을 강조함으로써 교세의 확장과 진리의 실천을 기대한다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가 변화하고, 생명존중과 친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학교와 사회인구교육의 강화

- 결혼과 부모됨은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선택하는 과제이므로 친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필수임
- 특히, 인구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10년 후 주역이 현재의 고등학생이고, 20년 후의 주역은 초등학생임. 가치관형성과정의 청소년 대상 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함

3) 연구기능의 강화와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 과제 선택과 평가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

- 출산율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저출산 대책의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분석하고, 예산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제시되어야 함
- 저출산대책을 위한 과제들 중에서 대부분은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단순히 중요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 포함된 경우임. 과제 채택과 평가를 위한 사전 충분한 연구는 주어진 자원의 편중을 막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 전문연구기관의 설립과 연구의 체계화

- 연구분야의 강화는 주어진 여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필수요인임. 연구기능을 높이기 위해 인구 및 인구정책이 전문화된 연구기관의 설립과 인재확보가 전제 되어야 함

4) 사업총괄 중앙조직의 강화와 전문가 양성

□ 사업조직의 중요성과 한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모든 부처가 직접 참여하고 있음. 기본계획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고용부의 청년고용, 국토부의 주거지원, 여가부의 가족지원, 교육부의 초등돌봄 등을 비롯하여 인사, 예산, 안전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기존업무를 기본계획에 연계하여 개편하거나 출산율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처의 업무에 우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제한된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나 확대를 위한 예산의 우선배정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실태임. 더욱이 기본계획수립단계나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저출산 대책의 한계로 작용
- 행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고, 민간, 지역, 정부가 모두 주체가 되어 협력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강력한 조직과 리더십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 기능 강화

- 중앙정부 전 부처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체제가 필요함. 강력한 리더십을 담은 조직의 운영으로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을 아우를 필요가 있음²⁴⁾

□ 중앙 및 지방조직의 과제담당 인구정책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 필요

- 2000년대 초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인구정책의 전문가 양성은 미흡했으며, 담당자의 수시이동으로 전문성의 축적을 기대할 수 없음. 인구변동을 이해하고,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인구정책 담당자가 필요함

5) 출산·양육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도입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

- 전 아동 보육제도가 완성되었으나 ‘믿고 맡길 곳’의 부족, ‘보육서비스 시간과 근로시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어려운 점 등 여전히 존재
- 일-가정 양립의 제도는 확립되었으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실제 제도의 이용이 불가능

24) 일본은 현재 합계출산율 1.42명을 단계적으로 높여 인구 1억명을 지키기 위하여 2015년 9월에 “1억 총활약상”(장관)을 신설하고, 사무국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내각 수준에서 강력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난임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늘었으나 저소득층 중심이고, 2~3회로 지원횟수 제한, 근로중의 시술로 근무부담 가중 등의 애로와 부담은 여전히 남음
-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조사연구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추진하고 과제의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관련 대상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인구정책과제의 채택과 투자는 보편적 적용이 가능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함(예, 난임시술지원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와 금액의 차이 수용 등)

제2절 고령사회 분야

1. 개요

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고령사회 영역)의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사회로 전환을 경험 중임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5년 12.8%에서 2026년 20%, 2037년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통계청, 2016)
 -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5세 이상 후기노인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1년 10.0%, 2027년 11.2%, 2050년 21.8%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 및 경제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질적 저하,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급증하는 노인인구 대비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함
-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2000년 이후에서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맞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수립됨
- 제1차 기본계획(고령사회 영역)의 주요 성과(대한민국정부, 2011)
 - 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
 - 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05.5월)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05.9월)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 ‘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총 15.8조원(국비, 지방비, 기금 포함)을 투입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
 - 기초노령연금법(‘07년), 퇴직연금(‘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08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08년) 제정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적 큰 틀을 구축,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속적인 홍보로 고령화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제1차 기본계획(고령사회 영역)의 한계(대한민국정부, 2011)
 -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되어왔다는 평가를 받음. 고령화 분야는 주로 기초연금에 집중하였고, 주택, 교통, 사회참여 등의 정책이 각 부문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
 -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정부의 역할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고령자 고용 활성화가 중요함에도 조기퇴직 관행은 유지되고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나. 제2차 기본계획(고령사회 영역)의 추진방향

- 정책목표
 - 장기적으로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활력있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지향
 - 제1차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에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을 추진목표로 함

- 향후 5년간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다음 세 분야(중영역)에서 총 78개 기본과제를 추진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이러한 접근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정책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와 정책범위를 소득과 건강보장 중심에서 주거보장과 노후설계 등으로 확장하여 포괄하는 접근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음. 이는 전반적인 고령사회 대응 시스템 구축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정책방향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 사회 각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 구축
 - 노동기회 제공, 연금제도 내실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후 설계서비스 지원 등
-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및 부작용 최소화
 - 노인일자리 확대, 의료보장 내실화와 의료비지출 적정화 병행, 자원봉사 활성화 등 활동적·생산적 사회구성원으로서 고령자의 역할 수행 지원
-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
 -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마련
-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속 추진
 - 정부의 홍보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협력 홍보 추진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고령사회 영역)의 실적 종합평가

□ 기본과제 추진실적

- 고령사회분야 기본과제의 목표달성 정도(전체 사업 중 90% 이상 목표달성 사업 비율)는 전 기간에 87%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전체적으로 2012년 88.1%, 2013년 89.5%, 2014년 87.5%였으며, 2011년과 2015년은 90.0% 이상 높게 나타남.
- 모든 중영역에서도 2014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의 경우, 2014년 77.5%를 제외하면 전

기간 80% 이상으로 나타남.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90% 이상임(2011년 100%).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의 경우, 전 기간 80% 이상으로 나타남(2014년 100%).

□ 핵심과제 추진실적

- 고령사회분야 핵심과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에서 6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에서 7개,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서 4개, 총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2011년 2개 과제, 2014년 1개 과제는 미평가 대상이었음.
- 고령사회 분야의 핵심과제의 목표달성 정도(전체 사업 중 90% 이상 목표달성 사업 비율)는 '13년에 76.5%를 제외하고는 전 기간에 86%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됨.
- 중영역별로 목표달성 정도를 비교해 보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이 57.1%(13), 71.4%(14)으로 부진하였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이 전 기간 100.0%으로 매우 우수하였음.

〈표 5-4〉 고령사회 분야 연도별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 추진실적

(단위: %, 개)

고령사회 분야 중영역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 과제	핵심 과제								
고령사회 전 분야	93.0	86.7	88.1	93.2	89.5	76.5	87.5	87.6	90.7	100.0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92.0	100.0	81.4	100.0	86.0	100.0	77.5	100.0	86.8	100.0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00.0	88.9	96.7	82.4	96.8	57.1	96.4	71.4	96.2	100.0*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85.7	100.0	90.1	99.0	84.6	75.0	100.0	100.0	90.9	100.0

주: 1)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개의 기본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 시 지표별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값으로 산출함

2)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개의 기본과제가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예: 2-13-①, 2-13-②), 목표달성률 계산 시 세부과제별 목표달성률 합의를 평균값으로 산출함

* 고령사회분야 핵심과제 총 17개 중 실적이 없는 지표(2011년 2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내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2014년 1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내 노후설계 기반 조성, 2015년 1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내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는 제외됨

자료: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

□ 예산집행 실적

- 비예산 과제를 제외하면, 과제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달성률은 2011년 82.2%에서 2015년 87.8%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고령사회 분야의 예산 총액은 2011년의 5.5조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0조원으로 약 2.3배가 되었음.
- 예산총액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한 과제수의 비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주목할 현상임. 이는 관련 예산의 시의성 있는 집행과 고령사회 정책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예산집행율이 90% 미만인 과제가 여전히 총 과제의 10%를 상회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보다 높은 정확성이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의 경우 예산 대비 90% 이상 집행 달성률이 67.7%(’13)~81.7%(’15)로 다른 중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함.

〈표 5-6〉 고령사회 분야 연도별 90% 이상 예산 집행 과제 추진실적

(단위: 개, %)

고령사회 분야 중영역	연도별 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고령사회 분야	45 (82.2)	56 (85.7)	59 (81.3)	53 (88.7)	45 (90.0)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21 (71.4)	30 (76.7)	31 (67.7)	27 (77.7)	21 (80.8)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7 (94.1)	19 (94.8)	21 (100.0)	17 (100.0)	15 (100.0)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85.7)	7 (100.0)	7 (85.7)	9 (100.0)	9 (100.0)
예산총액(억원)	55,444	63,641	71,828	98,493	130,061

주: 기 종료과제 및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는 제외함
 자료: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

3. 고령사회 분야 과제 추진에 대한 종합논의

가. 성과

□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기초노령연금(현재 기초연금) 등을 바탕으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 국민연금 수급자²⁵⁾는 '11년 3,025,209명에서 '15년 3,844,121명으로 약 81만명이 증

25)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

가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1년 3,818천명(노인인구 대비 67.0%)에서 2015년 4,495천명(노인인구 대비 66.4%)임

-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액은 노후의 소득단절을 보완하는데 아직 부족하여 2015년 월평균 연금급여액은 337,560원으로 10~20만원 수급자 비중이 29.7%로 가장 높음(국민연금공단, 2016)

○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과 같은 노후소득 보완방안 마련

-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1년 3,283천명에서 '15년 5,904천명으로 약 262만명이 증가하였으며(고용노동부, 2015),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1년 7,286명에서 '15년 29,120명으로 약 4배 증가함(한국주택금융공사, 2017)

□ 노년기 건강지원 강화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 노인 틀니('12), 임플란트('14) 급여 및 대상자 확대 등 노인 질병특성을 감안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 * ('14) 만 75세 이상 → ('15) 만 70세 이상 → ('16) 만 65세 이상
- 국가 건강검진 확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25개 보건소) 등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치매노인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통해 노인돌봄의 사회화 기반 마련

-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10), 치매관리법 제정('12) 등으로 치매 예방-발견-치료-돌봄 등 치매환자 보호체계 구축
- 장기요양보험 도입('08) 및 대상자 확대('12, '13),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등급 신설('14) 등 노인 및 가족 부담 경감
 - * 장기요양수급자 : ('11) 32만명 → ('13) 38만명 → ('15) 47만명

□ 고령자 문화여가 참여 확대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통한 문화여가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노인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역사회내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 민간 휘트니스 센터 등을 통한 건강 및 문화여가 활동에 참여

- 노인 친목(사교)단체 참여율 ('04) 33.5% → ('11) 37.4% → ('14) 43.3%(노인실태조사, 2014)
- 노인평생교육 참여율 ('04) 4.8% → ('11) 6.7% → ('14) 13.7%(노인실태조사, 2014)

나. 한계

□ 노인빈곤 완화대책 효과 미흡

-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 기초연금의 도입,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지급시 중위소득개념 적용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확대되고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48.5%, 2013년 49.6%, 2014년 48.8%를 보여주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²⁶⁾
 - 2014년 기준 호주 25.7%, 멕시코 25.6, 이스라엘 22.6%, 미국 21.0%, 헝가리 8.6%, 핀란드 6.6%, 네덜란드 2.2%(OECD, 2016)
- 지난 10년간 공적연금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 사각지대 여전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경우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서 제외될 우려 높음
- 주택 및 농지연금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가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고 실질적인 가입자 수도 저조하여 실질적인 노년기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미흡

□ 임종까지 건강한 삶 보장 미흡

- 우리나라 평균수명(81.8세)과 건강수명(73세)의 격차는 8.8년으로 약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임종에 이름²⁷⁾
- 노년기 연명 치료에 생애의료비의 1/3 지출하는 등 후기노년기에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부족

□ 노년기 정신건강 대응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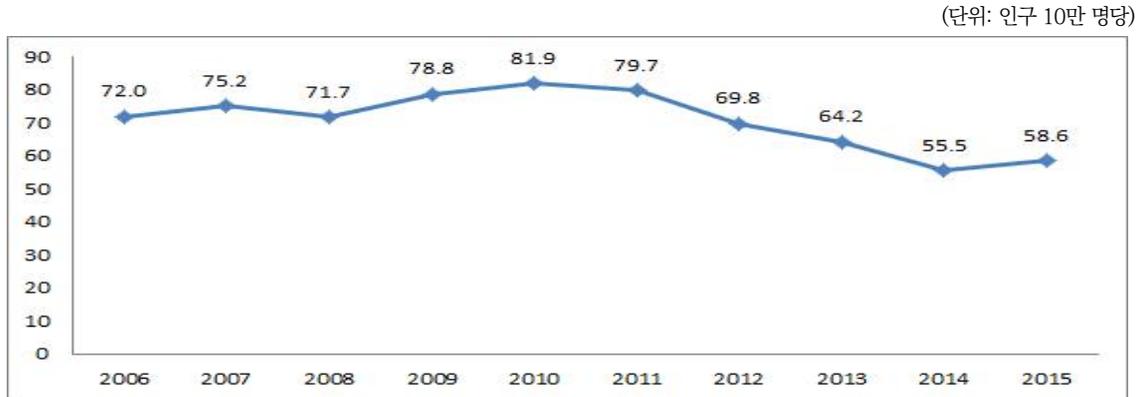
-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으로 나타나 OECD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며(대한민국 정부, 2015), 노인의 약 33%가 우울의심군으로 보고되고 있음(노인실태조사, 2014)
 - 프랑스와 일본의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1명, 핀란드 16.2명, 미국 14.3명임
- 노인의 신체적 불건강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확대되어 오고 있지만, 노인우울이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

26) 출처: 노인의 상대적빈곤율: OECD(2016), Poverty rate(indicator). doi:10.1787/Ofe1315d-en(Accessed on 28December 2016).

27) 출처: 1)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OECD Health data(<https://data.oecd.org/healthstat/life-expectancy-at-birth.htm>, 2016.12.13. 인출)

2)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a (years)):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5

[그림 5-2]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



자료: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통계표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각 년도)

□ 노인의 주거 불안

- 가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에 적합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미흡함. 다양한 방식의 노후주거모델의 공급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 미진한 실정임

□ 노인 노동력의 저활용 문제

- 우리나라 중고령자(55~79세)의 약 61.0%는 일을 할 의향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5b)
- 고령층의 높은 취업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고용 인센티브정책 등 고령인구 고용촉진 정책은 여전히 미흡함

□ 고령자친화도시 및 고령사회 인식 저조

- 고령자의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외출 시 불편함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음(2014년 노인실태조사)
 - 2014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29,349명 중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 11,667명(자살 포함)으로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39.8%에 이룸(통계청, 2015b)
- 가정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사회분위기 조성 노력 필요

4. 제언

□ 노인빈곤을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상대적 빈곤을

은 2014년 48.8%로 심각한 상황(OECD, 2016). 1,2차 기본계획의 추진에도 빈곤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정책적 접근 기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정책의 유연한 연동을 통해 실질적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함

□ 노인자살률 완화

- 노인자살률은 빈곤과 역할상실, 소외감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자살률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임.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여가 및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어야 함. 또한 노인자살예방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혁신이 요구됨

□ 노인주거안정

-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주거비용임. 따라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보장 효과를 가져 올 것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노인전용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 더하여서 기존 주택소유 노인들에게는 주택연금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노인노동력 활용

- 고령인구 고용촉진 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사회적으로 청년실업도 문제이나 청년노동시장과 고령자노동시장이 차별적이어 고령인구 고용촉진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고령자고용 인센티브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 고령사회대책 추진인프라 확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을 집행기능을 가진 중앙부처 조직의 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임. 현재의 위원회 조직구조에서는 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나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별도의 중앙부처 조직구조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 가능함
 -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추진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 고령사회 및 노화에 대한 포괄적 전문연구 지원
 - 관련 법령정비
 -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민간기관 참여유도 및 활동지원 등

□ 고령자친화도시 및 고령사회 인식개선

- 인구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통합을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증장기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야 함. 노인도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함. 이는 노인상대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함
- 사회 전체적으로도 고령자친화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생활에서 노인이 차별받거나 고령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교통수단이나 공공편의시설, 관공서 등을 이용할 때 노인이나 장애인이 상대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임

제3절 성장동력 분야

1. 개요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의 성장동력분야는 출산율제고와 고령화문제에 치중되어 사회총체적 구조변화 대응에 부족했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사회 각 분야별 선제적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선제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동력 질적 저하에 대비한 잠재인력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
 -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미래인구구조변화를 국가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는 적극적 대응분야를 제시
 -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의 확대 및 육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포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개 분야 중 성장동력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책과제규모 및 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예산비중은 다소 감소
 - 성장동력분야는 지난 5년간 전체 평가대상과제에서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과제의 규모 및 비중은 다소 증가
 - 평가과제 변화: 58개, 25.1% (2011)→ 60개, 25.6% (2015)
 - 예산규모는 2011년 1.5조에서 2015년 2.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평가사업에서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0.5%에서 6.8%로 감소

- 성장동력분야는 2015년의 경우 중앙부처 전체 3개분야 시행과제 234개 중 60개로 25.6%를, 총 예산 29.6조원 중 2조원으로 6.8%를 차지

〈표 5-7〉 성장동력분야 평가과제 및 예산 변화:2011~2015

연도	평가과제		예산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11	58 개	25.1 %	1.5 조원	10.5 %
2012	62 개	25.3 %	1.5 조원	-
2013	58 개	23.6 %	1.7 조원	7.5 %
2014	57 개	22.7 %	1.7 조원	6.6 %
2015	60 개	25.6 %	2.0 조원	6.8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각 년도

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적 종합평가

□ 기본과제

- 2011~2015년간 평가결과에 의하면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의 과제에서 목표 100%를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조사
 - 지난 5년간 총 70개의 세부성과지표 중 100%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59개 과제로 전체 과제의 84.3%를 차지
 - 소영역 중 100%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 인력 활용’으로 총 13개의 과제 모두가 100%이상의 목표를 달성
 - 소영역중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손실방지’분야는 총 7개의 과제 중 4개과제인 57.1% 만이 100%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3과제는 목표 미달성
 - 2011~2015년간 평가결과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세부성과 지표에서 100%미만의 낮은 달성률을 보인 부분 중 가장 저조한 지표들은 고용관련 지표 들로 구성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장동력분야 중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는 교육분야 제도 개선을 제외한 주택 및 금융분야제도 개선에 있어서 계획 대비 대부분 10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기록
 - 지난 5년간 성과지표 “금융부문 기금투자액에서의 해외 대체투자액 비중”을 포함하는 금

용분야개선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2011~2015년간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총 7개의 세부과제 중 5개 과제에서 실제치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과제들 교육분야제도개선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중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초·중등 교육분야의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적정 규모 관리가 요구됨
- 2011~2015년간 재정분야제도개선은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보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증가하여 목표달성률이 73.7%에 그쳐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노력 강화가 요구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해당되는 5개 세부영역의 총 13개의 성과지표는 최종적으로 모두 100%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여 매우 양호
-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는 국제적 (ISO)으로나 국내(KS)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재활보조기구의 표준화와 단체표준화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의 표준화 개발노력이 요구됨

〈표 5-8〉 성장동력분야 연도별 90% 이상 목표달성 과제 추진실적

(단위: %, 개)

성장동력 분야 중영역	2011		2012		2013		2014		2015	
	기본 과제	핵심 과제								
성장동력 전 분야	91.1	80.0	93.3	90.0	96.5	60.0	98.1	90.0	93.1	90.0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 력 제고	93.1	83.3	93.7	83.3	93.5	66.7	100.0	100.0	93.0	100.0
인구구조 변화 에 대응한 경제 사회 제도개선	87.5	100.0	91.6	100.0	100.0	100.0	100.0	50.0	83.4	50.0
고령친화산업 육성	87.5	50.0	93.8	100.0	100.0	0.0	90.0	100.0	100.0	100.0

주: 1)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개의 기본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 시 지표별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값으로 산출함

2) 2012년에서 2015년까지 1개의 기본과제가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예: 3-2-①, 3-2-②), 목표달성률 계산 시 세부과제별 목표달성률 합을 평균값으로 산출함

자료: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

□ 핵심과제

- 2015년 목표를 기준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마지막해인 2015년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6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었던 2011년을 시점으로 2015년까지 각 핵심과제의 실적치를 보면 꾸준히 수치가 향상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해당 중영역 중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한 핵심과제는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분야로 나타남
 - 핵심과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의 성과지표는 2011~2013까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로 2015년 목표치가 55.3%였으나, 2014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수(명)”로 성과지표가 변경되고 목표치도 136,545명으로 변경

〈표 5-9〉 핵심과제의 10개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2015 목표치	2015 달성률(%)
	2011	2012	2013	2014	2015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34.1	34.52	35.2	35.5	37.4	37.3	100.3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62.8	63.1	51.4	129,632	140,040	136,545	102.6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	44,264	49,887	49,706	107,522	128,824	75,128	171.5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27.7	29.5	31	34	48.9	34.3	142.6
평생학습참여율	32.4	36	40	43	40.6	44.0	92.3
산업재해율	0.65	0.59	0.59	0.53	0.50	0.57	112.3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5.56	5.96	6.5	7.11	7.6	6.5	116.9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4	34.8	33.8	35.9	37.9	30.0	73.7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17	21	21	25	30	30	100.0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3	5	8	10	13	13	100.0

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 및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 지표는 공식적 절차 및 요청에 의하여 변경된 지표임

* 기준 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 달성률은 2015목표 대비 실적(%)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는 2013년까지 기준 취업률(%)목표치를 적용하였으며, 2014~2015년은 취업자 수로 목표치를 변경

- 핵심과제 ‘외국국적 동포활용 및 우수인력유치’의 성과지표는 2011~2013까지는 ‘전문

외국인력(C-4, E-1~E-7) 체류외국인 수 합계'에서 2014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하여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F-4-14, F-4-27)를 추가하여 계산

- 핵심과제 '산업재해율(%)'은 다른 핵심과제와 같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양호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나, 2015년 목표치가 전년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성과 달성률의 과다측정을 야기하였음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에 있어서 지난 5년간 2개의 핵심과제 중 국고채평균잔존만기(년)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
 -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 기간은 2011년 5.56년에서 2015년 7.6년으로 2.04년 증가하여 재정안정성 확보와 대외신임도 제고 효과가 기대
 -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2011년 34%에서 2015년 37.9%로 오히려 목표치(30%)와 비교 시 더욱 부진함. 특히, 공기업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재정여건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 고령친화산업육성(중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핵심과제의 목표치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핵심과제에 대한 산업분야의 적극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참관객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00%이상의 초과성과를 달성함.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는 고령친화용품의 대중화와 보급화 그리고 산업의 잠재수요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예산집행 실적

- 비예산 과제를 제외하면, 과제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달성률은 85.7%(2012년)~97.0%(2013년)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성장동력 분야의 예산 총액은 2011년의 1.1조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2조원으로 약 2배가 되었음
- 특히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은 다른 중영역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율이 90% 미만인 과제가 여전히 총 과제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영역의 예산편성시 보다 높은 정확성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5-10〉 성장동력 분야 연도별 90% 이상 예산 집행 과제 추진실적

(단위: 개, %)

성장동력 분야 중영역	연도별 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장동력 분야	34 (94.1)	36 (85.7)	34 (97.0)	39 (89.7)	39 (90.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23 (91.3)	29 (86.2)	27 (96.3)	32 (90.7)	34 (89.5)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4 (100.0)	3 (100.0)	3 (100.0)	3 (100.0)	2 (100.0)
고령친화산업 육성	7 (100.0)	4 (100.0)	4 (100.0)	4 (75.0)	3 (100.0)
예산총액(억원)	11,828	15,266	17,175	17,213	19,839

주: 기 종료과제 및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는 제외함
 자료: 연도별 성과평가 보고서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종합논의

가. 성과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성장동력분야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 비해 사회구조변화와 기업의 적극적 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지표의 성과 향상을 견인
 - 고령화시대 잠재인력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향상된 것으로 조사됨
 - 15~64세 여성들만을 포함하는 OECD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에서 2015년 57.9%로 3.0% 포인트 상승
 - 잠재인력활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양적 측면 관점에서 질적 측면도 지속적으로 평가에 포함시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 경쟁력제고를 추진
 - 외국인력활용의 경우 취업자격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의 비율을 포함시켜 인적자원의 질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가족으로 지원사업을 확대·적용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
 - 우수제품지정품목지정 및 지역사회밀착형 전시 체험관의 확대 등의 사업은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제도는 고령소비자들이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켜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저변 확대에 기여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은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고령소비자 및 가족들의 잠재수요를 확대시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역할을 수행

나. 한계

□ 사회구조적 환경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해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AA제도를 통한 여성고용확대와 여성경제활동참여 과제는 대상 기업의 범위확대 및 양성평등임금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가 병행되지 않아 정책추진의 실효성이 약화

-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AA제도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1%에만 적용되고 있어 여성고용확대라는 정책의 목표를 확보하는데 제도적인 한계에 직면
- 향후 적용범위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산업계 전반에 여성고용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비록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향상되었으나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시 낮은 수준임

- 2014년 기준 OECD평균 62.0%, 일본 66%, 미국 67.1%에 비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7.0%)은 아직도 낮은 수준²⁸⁾

○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OECD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남성 근로자의 임금 대비 낮은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으로 지적

〈표 5-11〉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2013년 기준

OECD평균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5	18	19	8	20	14	13	27	37	17	18

자료: OECD(2015). Employment Outlook

- 우리나라는 OECD 주요회원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커서 여성은 남성보다 37% 정도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조사

28) OECD에서 사용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인구를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여성들을 포함 따라서, OECD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만 15세 이상 여성경제활동참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경우 종사상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
- 일부 지표들은 기본계획 초기단계와는 다르게 변경되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약화시켜 사업추진의 진정성을 감소시킴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제고(중영역)분야에서의 사용된 ‘취업자격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초기 기본계획과 이후 연간계획의 지표설정이 변경
- 2011~2013년까지는 합법체류자 중 취업자격체류 외국인 중 E1~E7에 해당되는 대상자 규모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체류외국인 중 외국 국적 동포 우수인력 (F-4-14, F-4-27) 및 전문 외국인력(C-4, E-1~E-7)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변경시켜 목표달성률을 확보
 - 실제적으로 기존 초기지표(E1~E7)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자격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규모는 2011년 대비 2015년 오히려 감소
 -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규모(명)변화 ; 44,264명(2011) → 42,767명(2015)
 - 합법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전문인력 비율(%)변화; 8.2%(2011) → 7.6%(2015)
 - 특히, 기존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절반이 회화지도, 예술흥행지원과 같은 서비스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 또는 기술지도 등 전문직업인력의 비중은 낮은 수준
 - 2014년 10월 기준 기업부가가치 창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특정활동 종사인력은 전체 전문외국인력의 38%, 기술지도 등의 인력비중은 2% 미만에 불과(이철희, 정선영, 2015)
- 외국 전문인력 및 가족들이 한국에서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전문인력 규모가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외국 전문인력은 전체 외국인 평균에 비해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
 - 외국인 전문인력 중 3년 미만 체류비중이 전체의 66.2%, 5년 이상은 17.9%에 불과한 실정(전해영, 2014)
 - 전문인력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한국 정착 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 전문인력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 확충, 비자 연장 절차 간소화, 영어 인프라 확충, 체류여건 개선 등이 요구
- 제2차 기본계획의 성장동력분야 과제들은 기존 정부부처의 다양한 업무를 저출산·고령화라는

주제로 결합·실행하여 개별 성과달성률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성장동력분야’ 전체성과가 얼마나 확보되었는가에 대한 단기·중·장기 평가지표는 없는 실정

- 3개의 중영역과 234개의 시행과제가 각 과제별로는 높은 목표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하지만, 각 시행과제가 100%이상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로 하는 성장동력 분야의 성과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
 - 각 과제별 개별 목표성과지표와 전체과제의 목표성과지표를 분리, 설정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간의 다년간 과제이므로 중영역 또는 대영역에서의 정책목표는 하나의 목표 설정보다는 중·장기 목표 설정도 요구
- 성장동력분야의 성과는 저출산분야와 고령화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각 분야들이 개별화·분절화되어 있어 성과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예를 들면 고령친화산업육성의 ‘고령친화제품 개발연구’는 ‘고령층의 소득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필요성이 증가하고 상품화도 가능
 - 현재의 실적평가제도는 개별과제의 목표달성률만을 측정하는 한계성을 내포
 - 현재의 성과측정방법을 과제중심의 목표달성률보다는 각 분야의 여러 과제들을 사회문제해결 중심으로 융합하여 변화(impact)중심으로 전환
 - 과제 중심의 성과측정이 갖는 모순을 해결하고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방법

4. 제언

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해결을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여성고용확대정책은 고용률 또는 취업률과 같은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기업문화 및 양성평등과 같은 고용의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는 지원정책이 요구
 - 여성의 교육률과 고용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교육률은 OECD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OECD 하위권에 속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 및 기업문화조성방향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풍토가 필요

- 또한 한국의 남성·여성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확대를 유도
- 외국우수인력확대정책은 우수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상의 보완보다는 생활여건조성확보측면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변화가 요구
 - 우수외국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력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여건, 교육여건, 생활여건 등의 장기체류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
 - 또한 사회문화 및 근무환경 시스템을 선진국기준에 맞추어 우수 외국인력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산업재해를 감소와 더불어 재해노동자의 신속한 직장복귀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잠재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 산업재해를 경험한 노동자가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통해 직장복귀를 향상뿐만 아니라 원 직장 복귀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

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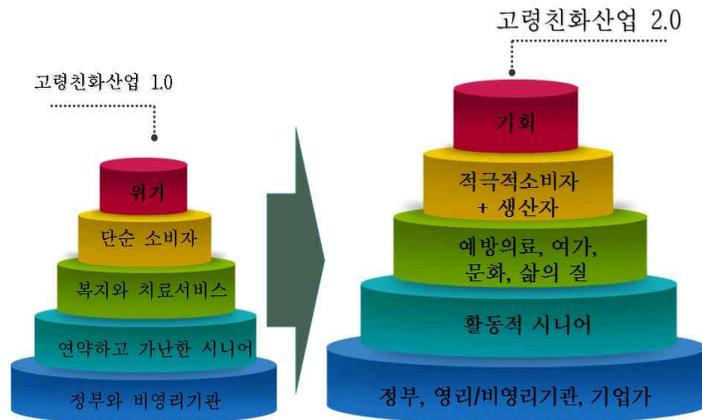
-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개선 중 학교시설 적정규모 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과 도시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농어촌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 학생규모에 의한 일률적인 통폐합보다는 인근 학교와의 거리 등 지리적 여건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능 등을 고려한 지역기반 다각적 측면을 고려
 - 도시로의 전출학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학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친화적 학교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도시의 경우 통폐합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설립·재배치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적극적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 현재 교육, 주택, 금융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제사회제도 개선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현재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사업에 포함되고 있지 않으나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최근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행정당국의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 측면에 크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다. 고령친화산업육성(중영역)

- 수요 자극과 민간사업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적 협력 체계 마련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기반의 고령친화산업 거버넌스 확립방안이 요구
 - 최근 고령친화산업은 요양과 복지중심의 고령친화산업 1.0에서 활동적 노후를 위한 여가, 문화, 삶의 질 관련 고령친화산업 2.0으로 변화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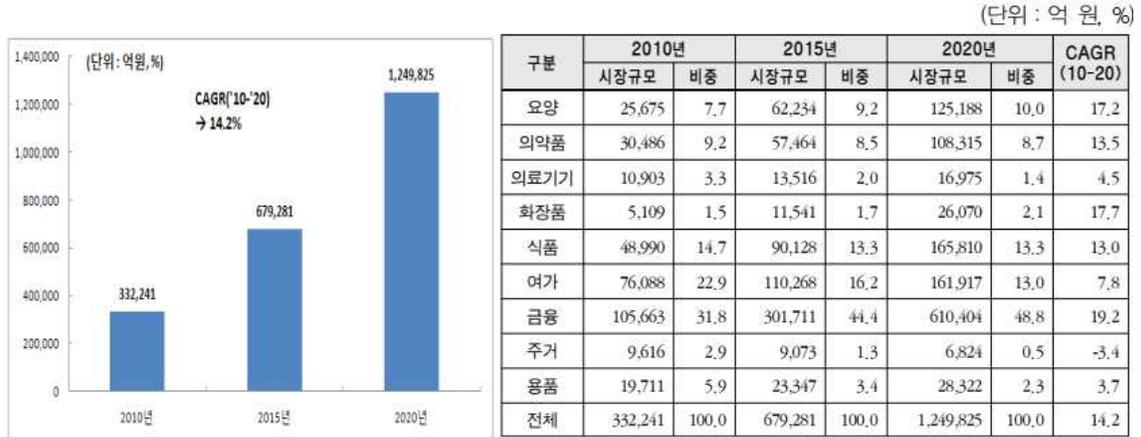
[그림 5-3] 고령친화산업의 환경변화



- 하지만,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
 - 고령친화산업 중 요양은 2015년 현재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9.2%에 불과하고, 여가와 금융이 각각 16.2%, 44.4%로 요양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지난 10년간 고령친화산업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개발 및 실행,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동력화가 더디게 진행
 - 유사정책에 대한 조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킬 필요

- 산업환경이 최근 모바일 기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학제 간 융합 R&D의 육성이 요구

〈표 5-12〉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전망과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자료: 보건산업진흥원(2012).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 최근 건강이 허약한 노인을 위한 요양에서 액티브한 노인을 포함하는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산업관점에서 육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요구
 - 고령친화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연구개발 수준이 낮아 전 산업을 컨트롤하여 산업고령친화산업 R&D 지원 및 산업화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
 -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산·학 융합 연구 확대와 기초·원천연구들의 고령친화산업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연속지원 시스템이 필요
 - 일본 후생성에 설치한 ‘실버서비스 진흥 지도실’과 같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
 - 실버산업 발전과 관련된 통합적 조정을 담당하되, 관련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의 누수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정부정책과 민간 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협회의 설립을 활성화
 - 수요의 진작과 공급 역량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
-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실효성 확보노력이 필요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5조에서 언급한 ‘소비자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여 공급자위주의 고령친화산업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필요
 - 미국의 경우 고령자를 보호하는 법률인 「고령자 안전법」(Safety of Seniors Act), 「사기판매에 대항하는 고령자법(SCAMSA: Senior Citizens Against Marketing Scams Act, 18U.S.C. 325~327)」 등이 이 있어 55세 이상 연령자에 대한 사기행위 등에 대해 강화된 형량을 규정
-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DB구축 등을 포함시켜 실버산업의 분류체계 정비 및 통계조사의 용이성을 확보
 -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친화 제품·서비스의 다양성, 외국의 수요 및 공급 동향, 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유망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
 - 실버산업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고령친화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실버세대에 적합한 기능성 콘텐츠 생산을 촉진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여 고령친화 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
- 고령화 관련기술(Geron-technology)을 기존의 고령친화산업들과 연계하고, 성장동력의 새로운 분야로 추가하여 고령친화기술 개발 활성화 및 활용을 유도
 - 모바일기기, 클라우드, IoT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치료와 동시에 예방을 중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시장의 확대가능성이 증대
 - 작은 동작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촉각(haptic)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실버 세대용 기능성 콘텐츠 개발에 인센티브 제공
- 지역기반 기업과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이 실버 콘텐츠 서비스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고령친화산업의 지역별 특화를 위한 조정을 실행
 - 광역 지역 내에서도 시장 수요의 세분화를 고려하여 소지역 단위로 특화 품목을 선정함으로써 창업 실패 가능성을 축소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실효성확보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의 내실화
 - 고령친화산업진흥법내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여 기존 재활산업 및 의료산업과의 차별성을 확보
 - 그러나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한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구체적 수립도 진행이 미흡한 상황
 -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진도관리

강화

- 비즈니스 가치사슬 단계(연구개발, 인·허가, 제조, 유통, 마케팅, 판매, 수출 등)별로 산업체의 요구를 판별하여 과제화
- 다학제 간 정보교류를 기반으로 전문조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도록 조치

제 6 장

결론 및 개선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성과지표 개선 방안

제3절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6

결론 및 개선방안 <<

제1절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및 2015년도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개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계인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집중적 개입이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을 극복하고자 보육시스템 개선, 일가정 양립정책 등 맞벌이 자녀양육 가정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중영역)의 경우 기본과제와 핵심과제 실적 평가 결과, 2011년부터 목표 달성 정도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해당되는 22개 기본과제 중 21개의 과제에서 9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고 5개 핵심과제 중 4개의 과제는 10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는 등 높게 평가됨
 -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2011년부터 매년 증가됨.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수도 2011년 95개소에서 2015년 427개소로 증가됨. 이러한 이용도의 증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증가를 의미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핵심과제 9개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95.0%(2014년)~100.4%(2015년)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본과제 목표달성률은 2014년~2015년을 제외하고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영역(중영역)에 있어서 4개 핵심과제의 목표달성률은 96%를 상회하고 2011년~2012년에는 100%로 나타났으며, 기본과제의 목표달성률은 5년간 90%를 상회함
- 이러한 성과는 실제로 해당 정책의 만족도(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침
 -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조사 결과, 보육, 육아교육 지원 정책인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의 인지율은 87.1%~95.1%로 나타났고 도움 정도에 있어서도 5점(매우 도움) 만점에 평균 약 4점(다소 도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경우 인지율은 유연근무제(59.6%)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8.6%), 직장어린이집(88.4%)을 제외한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92.3%~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정책 수혜자가 체감하는 도움 정도는 평균 4.17점~4.72점으로 높게 나타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사회 분야의 한계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정책 부족, 기초연금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된 정책 수행,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 부족 등이 제시되었고, 베이비붐 세대 특성에 맞는 정책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후생활설계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를 고령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고용문제, 그리고 건강 및 여가준비를 위한 사전적인 정책이 도입되어 운영됨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의 핵심과제 6개의 추진실적은 5년 내내 100.0%를 달성하였으며, 기본과제 추진실적은 2014년 77.5%를 제외하고 모두 8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보임

- 기초연금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 치우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확대,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노인돌봄 강화 등과 같이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음

-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2011년 62.1% → 2013년 64.3% → 2015년 65.9%로 매년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 핵심과제 7개의 연도별 목표달성률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본과제 목표달성률은 5년 내내 9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후건강과 관련해서는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 대상자 및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에 기여함

- 2011년 32만명(전체 노인대비 5.7%)에서 2015년 46.7만명(전체 노인 대비 7.0%)으로 증가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57.2개로 OECD 평균 49.2개보다 높아 장기요양대상자의 시설(병원)보호를 위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임.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서 핵심과제 추진실적은 2012년과 2015년 90% 수준이

었으나, 나머지 연도에서는 100%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기본과제에서도 2011년도와 2013년도 각각 2개 과제²⁹⁾에서만 90% 미만의 목표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성장동력의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2015년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6개 핵심과제 중 5개 과제가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고, 2015년까지 각 핵심과제의 실적치를 보면 꾸준히 수치가 향상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며, 해당 영역 기본과제의 대부분은 목표달성률이 100%를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를 달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에 있어서 2개의 핵심과제 중 국고채평균잔존만기(년)는 2015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기본과제에서는 교육분야 제도 개선을 제외한 주택 및 금융분야제도 개선에 있어서 대부분 100% 이상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함
 - 고령친화산업육성(중영역)의 경우 2개의 핵심과제에 있어서 2011년을 제외하고는 핵심과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과제의 경우 2011~2015년간 재정분야제도 개선은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보안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였음

- 이러한 성과를 종합해볼 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의 성과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이 평가절하될 수 있음
 - 무엇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로 여전히 초저출산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 존재함
 - 2015년 현재 전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고 수준(2,113시간)
 - 2015년 미혼남녀의 7.8%만이 과거에 비해 최근 결혼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강은나 외, 2015)
 -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GDP대비 보육비 및 교육비 공적지출은 2014년 총공적지출의 0.8%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나타남
 - 중고령자의 근로환경과 조건이 열악함
 -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오래 근로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은

29) 2011년도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과제, 그리고 2013년도 효문화 정착 효행여건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과제임

퇴하는 연령과 실제은퇴 연령간의 차이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OECD, 2015).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한국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혹은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하여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일을 해야만 한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우세함

- 우리나라 남성의 공식은퇴연령은 61.0세이지만 실제은퇴연령은 72.9세로 은퇴 이후 11.9년을 노동시장에서 더 일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9.6년(공식은퇴 61.0세, 실질은퇴 61.0세)을 더 일하고 있음
- OECD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64.6세이며, 일본의 실질은퇴연령은 69.3세, 미국 65.9세, 호주 65.3세, 스웨덴 65.2세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에서는 실질 은퇴연령이 65세 전후로 나타남

○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및 인프라는 확대되었으나,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요양병원 병상은 33.5개, 시설침상 23.7개로 OECD 국가 평균(요양병원 병상 4.1개, 시설침상 45.3개)에 비해 요양병원 침상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됨(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123.)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있어서 미흡함

- 노인 교통사고 및 노인 보행자 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 26,483건이 발생하여 1,724명이 사망, 27,999명 부상을 입었으며, 2014년에는 33,170건의 노인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815명 사망, 35,35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부터 2014년간 연평균 노인교통사고 발생율은 6.5% 증가, 사망자는 0.9% 증가, 부상자는 6.6% 증가 (도로교통공단, 2015a)
-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한국이 29.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12.7명, 일본 8.7명, 이탈리아 8.0명 순임(도로교통공단, 2015b)
- 노인학대신고건수는 2011년 8,603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3천여건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노인학대 판정 사례수는 2011년 3,441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약 400여건 증가

○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정책인 육아휴직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이용은 40%에 불과(한국고용정보원, 2015)
-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과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이라는 과제의 실적은 목표치에 미달
- 2015년 국민인식조사(강은나 외, 2015)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체감

도를 1점(전혀 변화되지 않음)~5점(매우 변화됨)으로 환산했을 때 ‘필요 시 자녀를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항목은 2.4점으로 보통 미만의 평가를 받아 맞벌이 가구의 수요에 대응하여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간만큼 맡기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함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안에 포함되는 비율은 아직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 2015년 말 현재,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는 26.3%로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국민연금공단, 2016, p.19),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5년 기준 53.6%로 아직 미진한 실정임(고용노동부, 2016)³⁰⁾
-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 다양한 민간부분의 참여가 미흡하였음

- 마을기업 활성화,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민간부분의 참여를 도모하였으나, 전반적인 정책 수행에 있어 다양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여전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음

○ 성장동력 분야에 있어서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2011년 31.6%에서 2015년 37.9%로 6.3% 포인트 증가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출산율 회복 목표를 일본의 예(1억명 지키기 위한 합계출산율 1.7 유지 목표)와 같이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함
- 정책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책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가구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육지원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가정 양립제도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함
 -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중고령자의 근로환경과 조건을 감안하여 향후 공식적인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 중고

3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 통계(2015년 12월말 기준)

령자의 근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있음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학대나 자기방임 등과 같은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해결을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베이비 붐 세대가 2020년부터 65세에 진입하여 향후 20년간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노년부양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을 감안하여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정·관계, 언론계, 종교계, 교육계 등을 아우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국적 노력을 경주할 때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국민 전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지역·정부의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각 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은 이어지는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제2절 성과지표 개선방안

- 본 절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활용하여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핵심과제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는 전문가에 의해 설정되고 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하는 절차를 가지게 됨에 따라 본 절에서는 기본과제 성과지표에 한하여 평가를 하고자 함

1. 성과지표 평가

가. 성과지표 평가 방법

- 전문가 조사의 개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과제의 성과지표 평가를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 인구학, 사회학, 사회복지·정책학, 가족학, 보건학, 경제학,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총 79명)

- 저출산 분야 35명, 고령사회 분야 23명, 성장동력 분야 21명

○ 조사방법 및 기간: 온라인 조사(2016.8.12.~2016.8.22.)

□ 조사결과를 활용한 평가방법

○ 평가 기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과제의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시간 내 달성 가능성을 포함한 SMART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유용성과 평가체계 개선 방안 도출하고자 함
- Doran(1981)은 성과 관리의 목적(goal)과 세부목표(objectives)를 정하는 기준으로 SMART 원칙을 제시하였고, Bogue(2005)의 경우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의 전략으로서 SMART 원칙을 제시함
- SMART 원칙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성과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고 활용됨(최정아, 2014; 김영록, 2013)

* SMART 분석 방법을 활용한 성과지표의 평가기준

- 지표의 구체성(specific)
- 지표의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지표의 달성 가능성(attainable)
- 지표의 과제목표와의 관련성(relevant)
- 지표의 시간 내 달성 가능성(time-bounded)

-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세부과제 중 조사시점까지 사업이 종료되거나 목표치가 부재인 지표를 제외하고 총 234개 과제 중 218개 과제의 성과지표에 대해 SMART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조사함

○ 평가점수 산출

- 평가 대상 218개 과제 지표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의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
-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 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으로 평가
- 이를 통해 각 성과지표의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

나. 성과지표 평가 결과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 평가 87개 과제의 107개 성과지표 및 저출산 분야 전체 성과지표의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1〉 저출산 분야 성과지표별 평가척도 평균점수

(단위: 개, 점)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성과지표 합계	107	107	107	107	107
3점 미만	1	7	0	7	0
3점	60	60	48	87	90
4점 이상	46	40	59	13	17
최고점	4.6	4.4	4.6	4.3	4.3
최저점	2.8	2.6	3.1	2.5	3.0
평균	3.9	3.7	4.0	3.5	3.7

주: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 전반적으로 측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순으로 낮아짐
-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구체성은 최대 4.6점에서 최소 2.8점까지 분포하며 구체적(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107개 중 46개, 60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나머지 1개의 성과지표(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는 다소 추상적(2.0점)으로 평가됨
- 과제와의 관련성은 최대 4.4점에서 최소 2.6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관련(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107개 중 40개이고, 60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나머지 7개 성과지표는 다소 무관(2.0점)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성과지표는 휴먼 네트워크 확대, 아동·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활성화(수혜 청소년 수, 자원봉사 참여인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CCTV 설치율),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인 것으로 나타남
- 측정 가능성은 최대 4.6점에서 최소 3.1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가능(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107개 중 59개이고, 나머지 48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최대 4.3점에서 최소 2.5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적절(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107개 중 13개이고, 나머지 87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나머지 7개는 다소 부적절(2점)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성과지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휴먼 네트워크 확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성범죄자 재범 방지 조치 강화인 것으로 나타남
- 시간 내 달성 가능성은 최대 4.3점에서 최소 3.0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가능(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108개 중 17개이고, 나머지 91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 저출산 분야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결과는 3.9점(저출산 분야 전체 평균의 단순평균, 최고4.4~최저3.0)으로 보통 이상이며, 세부영역별 성과지표 평가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3.9점), 일·가정 양립 일상화(3.8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3.4점)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가정 양립 일상화 영역에 있어서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4.2점), 육아휴직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4.2점)의 성과지표는 4개 항목에서 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성과지표는 5개 영역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일·가정 양립 일상화 영역에 있어서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은 보통(3.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3.5점 미만인 성과지표는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3.2점),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3.4점)인 것으로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는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만 다소 부적절(2.9점)한 것으로 평가됨

〈표 6-2〉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5.7월)	4.2 (0.7)	4.4 (0.7)	4.3 (0.9)	4.2 (0.8)	3.7 (1.0)	4.2
육아휴직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5.7월)	4.2 (1.0)	4.4 (0.7)	4.4 (0.9)	4.1 (0.9)	3.7 (0.8)	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 /출산전후 휴가자수×100	4.3 (0.7)	4.3 (0.8)	4.4 (0.8)	3.6 (1.0)	3.6 (0.9)	4.0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안 국회 통과	3.9 (0.9)	3.9 (1.0)	4.0 (1.0)	3.8 (0.9)	3.3 (1.2)	3.8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	가족돌봄휴직 실행상황 점검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3.6 (1.2)	3.7 (1.2)	3.5 (1.2)	3.2 (1.2)	3.3 (1.1)	3.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고용보험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고시개정(15.1월)	4.0 (1.1)	4.3 (1.1)	3.9 (1.1)	3.8 (1.1)	3.5 (1.0)	3.9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유연근무제 이용률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대상인원×100	3.9 (1.1)	3.9 (0.9)	4.1 (0.9)	3.6 (1.1)	3.5 (1.1)	3.8
시간제 근무 활성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 목표 달성률	4.1 (1.1)	3.9 (1.0)	4.5 (0.7)	3.8 (1.1)	3.8 (1.0)	4.0
단시간 근무제 일자리 확산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자원인원	3.6 (1.4)	3.7 (1.2)	4.0 (1.2)	3.3 (1.2)	3.5 (1.1)	3.6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강화	유연한 근무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워크 및 대체인력뱅크 설치 개수	3.4 (1.2)	3.7 (1.2)	3.9 (1.2)	3.0 (1.3)	3.5 (1.2)	3.5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스마트워크 센터 이용률 *스마트워크센터 연간 이용률 = Σ(이용자수/(운영일수×센터좌석수))	3.7 (1.2)	3.4 (1.1)	3.9 (1.1)	3.4 (1.1)	3.3 (1.0)	3.5
육아연계형 스마트 워크 센터 모델개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사업장 수	3.6 (1.2)	3.5 (1.2)	3.8 (1.2)	3.1 (1.3)	3.4 (1.2)	3.5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컨설팅 기업 수	3.4 (1.3)	3.5 (1.3)	3.6 (1.3)	3.0 (1.2)	3.5 (1.2)	3.4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1) 직장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4.2 (1.1)	4.1 (1.1)	4.3 (1.0)	3.7 (1.2)	3.7 (1.2)	4.0
	2) 민간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수	4.5 (0.7)	4.3 (0.9)	4.4 (0.8)	3.7 (1.1)	3.7 (1.1)	4.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4.2 (1.0)	4.1 (1.1)	4.3 (0.9)	3.5 (1.3)	4.1 (1.1)	4.0
	2)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	3.6 (1.3)	3.9 (1.1)	3.8 (1.2)	2.9 (1.2)	3.8 (1.1)	3.6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 마련 지원	1) 가족친화 포럼 활동 횟수	3.3 (1.2)	3.4 (1.2)	3.9 (1.2)	3.0 (1.2)	3.8 (1.2)	3.5
	2)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횟수	3.4 (1.2)	3.4 (1.1)	3.8 (1.2)	3.1 (1.0)	3.7 (1.2)	3.5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센티브 추가 제공 건수	3.7 (1.1)	3.4 (0.9)	3.9 (1.1)	3.0 (0.9)	3.7 (1.1)	3.5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가족친화인증 신청기업 수	3.7 (1.3)	3.7 (1.2)	4.0 (1.0)	3.3 (1.0)	3.5 (1.1)	3.7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매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시간 통계	4.2 (0.9)	4.2 (1.0)	3.9 (1.1)	3.5 (1.2)	3.2 (1.2)	3.8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가족 사랑의 날 시행률	3.1 (1.4)	3.1 (1.3)	3.7 (1.2)	3.0 (1.4)	3.2 (1.4)	3.2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개정	4.3 (0.9)	4.2 (0.9)	4.3 (0.8)	4.0 (1.1)	4.0 (1.0)	4.1
대체인력뱅크 구축 지원	중랑행정7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비율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자 수/육아휴직 이용 공무원 수) ×100	4.2 (1.0)	3.9 (0.9)	4.4 (0.7)	3.7 (1.1)	3.9 (0.9)	4.0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역역)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영역에 있어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의 2개 성과지표는 4.4점으로 저출산 분야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당해년도 수혜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9개 성과지표는 5개 항목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영역에 있어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이 영역의 성과지표는 모두 보통(3.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3.5점 미만인 성과지표는 결혼준비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프로그램(작은혼인식 서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인 것으로 나타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성과지표의 구체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3점 미만으로 다소 추상적이고 목표치 설정이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향후에는 당해 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규모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된 '총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6-3〉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	4.0 (1.1)	4.2 (0.8)	4.3 (0.7)	3.6 (1.3)	4.1 (0.9)	4.0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신혼부부 우선입주 시행 여부	4.3 (0.9)	4.4 (0.6)	4.3 (0.7)	4.1 (1.0)	4.1 (1.0)	4.2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률 *(사업승인호수/목표호수)×100	4.4 (0.7)	4.4 (0.8)	4.4 (0.7)	4.1 (0.9)	3.9 (0.9)	4.2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시설사업 기본 계획 및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계획 대비 실적	4.1 (0.8)	4.0 (0.9)	4.2 (0.8)	3.5 (1.2)	3.8 (0.9)	3.9
	실행협약 체결 및 착공 *협약 체결 및 착공 계획 대비 실적	4.0 (1.0)	3.9 (1.0)	4.1 (1.0)	3.5 (1.2)	3.8 (0.9)	3.9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기혼자 가구 장학금 우대 시행사업	3.8 (1.1)	3.5 (1.1)	4.0 (0.9)	3.3 (1.2)	3.7 (1.0)	3.7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결혼준비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프로그램	1) 공공시설 예약장 개방	4.1 (1.1)	3.5 (1.2)	4.0 (1.0)	3.6 (1.1)	3.8 (1.0)	3.8
	2) 예비부부 교육인원 *건강센터 및 시민단체 교육인원	3.6 (1.2)	3.3 (1.1)	3.8 (1.1)	3.2 (1.2)	3.6 (1.1)	3.5
	3) 작은혼인식 서명	3.4 (1.4)	3.1 (1.4)	3.8 (1.2)	3.1 (1.2)	3.6 (1.1)	3.4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전년 대비 3%증	3.6 (1.2)	3.2 (1.2)	3.8 (1.2)	3.2 (1.2)	3.5 (1.1)	3.5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분만산부인과 누적설치 개소 수	4.4 (0.8)	4.1 (1.1)	4.5 (0.7)	3.9 (1.0)	3.9 (1.0)	4.2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	계획 대비 실제 설치 병상 수 비율 *(실제 설치 병상 수/ 계획 설치 병상 수)×100	4.4 (0.7)	4.1 (0.8)	4.4 (0.7)	3.8 (0.8)	4.0 (0.8)	4.2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	4.5 (0.7)	4.4 (0.9)	4.5 (0.8)	4.1 (1.0)	4.1 (1.0)	4.3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영유아 완전 접종률 *(기본접종 3종(B형간염3차, DTaP3차, 폴리오3차) 완전접종자수/접종대상자수)×100	4.5 (0.7)	4.3 (1.0)	4.6 (0.8)	4.2 (1.0)	4.3 (0.9)	4.4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고위험임산부 수혜자 수 *25,670명(고위험임산부 추계)* 82.2%(소득기준(월평균 가구소득 150%)*80%(신청률)*1/2(하반기 시행)=8,440명	4.6 (0.6)	4.4 (0.9)	4.5 (0.7)	4.3 (0.9)	4.2 (0.8)	4.4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1~3급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을 반영하여 '12년 실적대비(81.5%, 575/793명) 약 7% 증가한 지원율 80%로 목표치 설정	4.4 (0.8)	4.1 (1.1)	4.4 (0.8)	4.1 (0.9)	3.9 (1.0)	4.2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14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3.9 (1.2)	3.6 (1.1)	4.1 (1.0)	3.5 (1.1)	3.7 (1.0)	3.8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PKU)환아 장애 예방률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없는 PKU환아수/PKU환아수)*100	4.4 (0.9)	4.2 (1.1)	4.2 (0.9)	4.1 (0.9)	4.1 (0.8)	4.2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해당년도 수혜받은 모든 대상자 수 *14년 이월대상자수+15년 대 상자수	4.5 (0.9)	4.3 (1.0)	4.5 (0.8)	4.2 (1.0)	4.2 (0.8)	4.3
	사업참여자 만족도 점수	3.9 (1.1)	3.9 (1.3)	4.0 (1.0)	3.7 (1.1)	3.8 (1.1)	3.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연간 수혜자수/연간출생아수×100	4.4 (0.7)	4.3 (1.0)	4.4 (0.7)	4.0 (1.0)	4.1 (0.8)	4.2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보육료 지원 만족도	3.7 (1.1)	4.1 (0.9)	4.0 (1.0)	3.4 (0.9)	3.8 (0.9)	3.8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3-5세 누리과정 연수 교사 수	4.0 (0.9)	3.7 (1.0)	4.1 (0.9)	3.4 (0.9)	3.7 (1.0)	3.8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만3-5세아 취원율 *취원아 수/취원대상아 수×100	4.3 (0.9)	4.1 (1.1)	4.2 (0.9)	3.7 (1.0)	3.9 (1.0)	4.0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3.9 (1.1)	3.8 (1.2)	4.0 (1.0)	3.4 (1.1)	3.8 (1.0)	3.8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국내입양비율 *국내입양아 수/ (국내입양아수+ 국외 입양아수)×100	4.1 (0.8)	3.8 (1.0)	4.2 (1.0)	3.5 (1.0)	3.7 (0.9)	3.8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가구 장학금 우대 시행사업 건수	4.1 (1.0)	3.8 (1.3)	4.1 (1.1)	3.3 (1.3)	4.0 (1.0)	3.9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업무매뉴얼 개정	3.8 (1.3)	4.0 (1.1)	4.1 (0.9)	3.6 (1.3)	4.1 (1.0)	3.9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 여부	2.8 (1.3)	3.0 (1.4)	3.4 (1.3)	2.5 (1.2)	3.4 (1.3)	3.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 수	4.4 (0.8)	4.4 (1.0)	4.5 (0.9)	3.5 (1.3)	4.0 (1.0)	4.2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4.3 (0.8)	4.3 (1.0)	4.3 (0.8)	3.6 (1.2)	4.0 (0.9)	4.1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평가인증율 *평가인증통과시설(누계)/전체어 린이집	4.0 (1.2)	3.9 (1.1)	4.2 (0.8)	3.6 (1.0)	3.9 (0.9)	3.9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4.2 (0.9)	4.1 (1.0)	4.3 (0.8)	3.7 (0.9)	3.9 (0.9)	4.1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보수교육이수인원 *시·도별 보수교육 인원 및 온라인보수교육 인원	3.9 (1.0)	3.7 (1.1)	4.1 (0.8)	3.4 (0.9)	3.8 (0.9)	3.8
유치원 평가 내실화	유치원 평가 내실화 *(3년 주가내 매년 평가실시 유치원 수/총유치원 수)×100	3.7 (1.1)	3.7 (1.1)	3.9 (0.9)	3.4 (0.9)	3.6 (0.9)	3.7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시간 연장, 휴일, 24시 어린이집 수	4.3 (0.9)	4.3 (0.9)	4.4 (0.7)	3.9 (0.9)	3.9 (1.0)	4.2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전체 유치원)×100	4.2 (0.8)	4.3 (0.9)	4.4 (0.7)	4.0 (0.9)	4.1 (0.9)	4.2
실수요 계층 입소 우선순위 부여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 대한 시설보육 서비스 강화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 수립	3.8 (1.2)	4.1 (0.9)	3.7 (1.0)	3.7 (0.9)	3.8 (0.9)	3.8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실시 *제공기관 지정 수	4.1 (1.1)	4.0 (1.0)	4.1 (1.0)	3.6 (1.0)	3.9 (1.0)	3.9
이웃 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1)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	4.0 (1.1)	3.9 (1.1)	4.0 (1.0)	3.6 (1.0)	3.7 (1.0)	3.8
	2) 이용자수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이용 연인원	4.1 (1.1)	4.0 (1.1)	4.1 (1.0)	3.8 (1.0)	3.8 (1.0)	4.0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1) 아이돌봄서비스이용 가구 수 *월별 시간제·종일제 실이용 가 구 수 합계	4.1 (1.0)	4.3 (0.9)	4.3 (0.9)	3.8 (1.0)	3.8 (1.0)	4.1
	2)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이용자 만족도+아이돌보 미활동만족도(각 만족도 합산 평균)	3.8 (1.0)	3.9 (0.9)	3.9 (0.9)	3.4 (0.9)	3.7 (1.0)	3.8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 수 *(만 6세 이상) 실이용아동 수	4.3 (0.8)	4.4 (0.7)	4.3 (0.8)	3.6 (1.0)	3.9 (0.9)	4.1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종일제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만 1세 이하) 실이용아동 수	4.2 (1.1)	4.1 (1.1)	4.2 (1.1)	3.6 (1.2)	3.8 (1.0)	4.0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수혜율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 /방과후 돌봄필요 아동 수×100	4.1 (0.9)	4.2 (0.8)	4.1 (0.9)	3.6 (1.0)	3.8 (0.9)	4.0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1) 초등돌봄 교실 수	4.3 (0.8)	4.2 (0.9)	4.4 (0.7)	3.8 (1.0)	4.0 (0.8)	4.1
	2) 학부모 만족도	3.8 (1.0)	4.0 (0.9)	4.0 (0.9)	3.6 (0.9)	3.7 (0.9)	3.8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	4.1 (0.8)	4.0 (1.0)	4.1 (0.9)	3.5 (0.9)	3.8 (0.9)	3.9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3.7 (1.2)	3.3 (1.3)	3.9 (1.2)	3.4 (1.0)	3.4 (1.1)	3.5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역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에 있어서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최고점은 3.7점으로 저출산영역의 두 영역(4.4점, 4.2점)에 비해 낮은 편임. 최고점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안전한 어린이교통환경 조성(사업의 국비 집행률,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인 것으로 나타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은 전반적으로 4 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으나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구체성과 목표달성가능성에서 4.1점의 평가를 받음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아동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사업비의 국비 집행률)의 성과지표는 측정가능성에 있어서 다소 가능(4 점)한 것으로 평가됨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있어서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과지표는 3.0점으로 일·가정양립 일상화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수혜 청소년 수, 자원봉사 참여인원),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CCTV 설치율,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지원) 성과지표는 과제와의 관련성이 다소 무관(2.0점)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의 성과지표는 목표치 설정이 다소 부적절(2.0점)한 것으로 평가됨
- 휴먼 네트워크 확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과지표는 과제와의 관련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모두 3.0점 미만으로 평가됨

〈표 6-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 *(드림스타트 수혜아동 수/취약 계층아동 수)×100	3.9 (1.0)	3.9 (1.0)	4.0 (1.0)	3.2 (0.9)	3.6 (1.0)	3.7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 의 위기수준변화정도	3.5 (1.1)	3.4 (1.2)	3.5 (1.0)	3.1 (0.9)	3.3 (0.9)	3.4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퇴소아동 자립률 *(취업자+대학진학자)/퇴소아동 수×100	3.8 (1.1)	3.4 (1.3)	3.9 (1.1)	3.3 (1.0)	3.3 (0.9)	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3.6 (1.2)	3.5 (1.2)	3.5 (1.1)	3.1 (1.1)	3.3 (1.0)	3.4
휴먼 네트워크 확대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협력기관 수	3.2 (1.2)	2.9 (1.2)	3.5 (1.1)	2.8 (1.0)	3.0 (1.0)	3.1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연인원) *50천명×800개소=40,000천 명 (800개소: '15.12 기준 청소년수련 시설 추정수)	3.7 (1.2)	3.2 (1.4)	3.7 (1.2)	2.9 (1.2)	3.3 (1.1)	3.4
아동·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동과 동아리활동활성화	1)동아리 지원사업 수혜 청소년 수 *14년 목표 대비 3% 상향 설정	3.6 (1.3)	2.9 (1.3)	3.6 (1.2)	3.0 (1.1)	3.3 (1.1)	3.3
	2)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인원 *13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5% 상향	3.4 (1.3)	2.8 (1.3)	3.6 (1.3)	3.0 (1.2)	3.3 (1.2)	3.2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만족도 *국제교류 파견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의 평균값	3.2 (1.4)	2.6 (1.3)	3.4 (1.2)	2.8 (1.2)	3.1 (1.1)	3.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 리카드) 지원	문화바우처 이용자 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와 기획 사업 참여자 수의 합계	3.5 (1.3)	3.1 (1.5)	3.6 (1.1)	2.8 (1.3)	3.3 (1.1)	3.3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1)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3.4 (1.2)	3.0 (1.2)	3.6 (1.0)	3.2 (1.2)	3.5 (1.0)	3.3
	2) 참여자 수혜율 *(수료인원/참여인원)×100	3.7 (1.2)	3.1 (1.3)	3.9 (1.0)	3.3 (1.2)	3.5 (1.0)	3.5
아동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아동 안전사고사망수(14세이 하)/10만명당	3.9 (1.1)	3.4 (1.4)	4.0 (1.0)	3.4 (1.1)	3.5 (1.1)	3.6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국비 집행률 *(국비집행실적/전체국비)×100	3.9 (1.0)	3.5 (1.2)	4.1 (0.9)	3.5 (1.0)	3.5 (1.0)	3.7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4.1 (1.0)	3.5 (1.3)	4.1 (0.9)	3.5 (1.1)	3.5 (1.0)	3.7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CCTV 설치율 *(15년 CCTV 설치 개소/설치 계획3,630)×100	3.8 (1.2)	2.9 (1.4)	3.9 (1.2)	3.2 (1.2)	3.5 (1.1)	3.5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자체 수 /28)×100	3.6 (1.3)	2.9 (1.4)	3.9 (1.3)	3.3 (1.2)	3.5 (1.3)	3.5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전·후 성의식교육효과성	3.0 (1.3)	2.7 (1.3)	3.1 (1.2)	2.8 (1.0)	3.1 (1.2)	3.0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 확충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3.6 (1.2)	3.0 (1.3)	3.7 (1.3)	3.1 (1.2)	3.3 (1.2)	3.3
	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3.4 (1.2)	3.0 (1.3)	3.6 (1.3)	3.1 (1.1)	3.3 (1.1)	3.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 신고의무자 신고율 *(신고의무자 신고건수/전체신고 건수)×100	3.9 (1.1)	3.2 (1.3)	3.9 (1.1)	3.3 (1.1)	3.4 (1.1)	3.5
	2) 학대 재발률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던 건 수/당해년도 아동학대 판정건수)×100	3.9 (1.1)	3.4 (1.3)	3.8 (1.1)	3.3 (1.1)	3.4 (1.1)	3.5
	3) 심리아동 심리치료 효과율 *(심리치료프로그램 완료 후 아 동의 참여 후 향상된 평균점수/ 심리치료프로그램 완료아동의 참 여 전 평균점수)×100	3.7 (1.2)	3.4 (1.3)	3.6 (1.2)	3.3 (1.1)	3.4 (1.1)	3.4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	아동안전 지킴이 만족도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 설문조 사 실시 결과 만족응답 비율	3.3 (1.1)	3.3 (1.2)	3.6 (1.1)	3.2 (1.0)	3.4 (1.1)	3.4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강화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 *인터넷중독 개선율(본인 및 관 찰자 대상 설문 실시) 측정	3.4 (1.3)	3.1 (1.3)	3.5 (1.2)	3.1 (1.0)	3.2 (1.1)	3.3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흡연·음주청소년교육 및 치료지원건수	3.6 (1.2)	3.2 (1.4)	3.8 (1.2)	3.3 (1.1)	3.4 (1.1)	3.5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중고등학교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 한 사람의 비율(청소년)	3.5 (1.1)	3.2 (1.2)	3.6 (1.0)	3.2 (0.9)	3.3 (0.9)	3.3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청소년 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3.4 (1.1)	3.1 (1.2)	3.6 (1.0)	3.2 (0.9)	3.2 (0.9)	3.3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대상 어린이 수해율	3.7 (1.0)	3.5 (1.2)	3.9 (0.9)	3.3 (1.1)	3.5 (1.0)	3.6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 *초기 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 점수-6개월 이후 SDQ-Kr 점수가 호 전된 아동 청소년 수/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100	3.6 (1.1)	3.5 (1.3)	3.6 (1.2)	3.1 (1.0)	3.2 (1.0)	3.4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3.6 (1.2)	3.5 (1.2)	3.9 (1.1)	3.5 (1.2)	3.8 (1.1)	3.7
청소년정책 15년 시행계획 수립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3~'17) '15년 시행계획 수립	3.7 (1.1)	3.4 (1.2)	3.8 (1.0)	3.5 (1.1)	3.8 (1.1)	3.6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 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2)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 분야 평가 74개 과제의 89개 성과지표 및 고령사회 분야 전체 성과지표의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측정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가능성, 시간 내 달성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순으로 낮아짐
-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구체성은 최대 4.6점에서 최소 3.1점까지 분포하며 구체적(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47개이고, 나머지 42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 과제와의 관련성은 최대 4.2점에서 최소 2.9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관련(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43개이고, 나머지 45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 측정 가능성은 최대 4.6점에서 최소 3.3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가능(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63개이고, 26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나머지 1개의 성과지표는 다소 불가능(2점)한 것으로 평가됨
 - 해당 성과지표는 정년(고령자) 고용 캠페인(강조주간 운영)인 것으로 나타남
-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최대 4.3점에서 최소 3.1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적절(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12개이고, 나머지 77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 시간 내 달성 가능성은 최대 4.4점에서 최소 3.0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가능(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22개이고, 나머지 67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표 6-5〉 고령사회 분야 성과지표별 평가척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성과지표 합계	89	89	89	89	89
3점 미만	0	1	0	0	0
3점	42	45	26	77	67
4점 이상	47	43	63	12	22
최고점	4.7	4.7	4.6	4.3	4.4
최저점	3.1	2.9	3.3	3.1	3.0
평균	3.9	3.9	4.1	3.6	3.7

주: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 고령사회분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는 3.9점(고령사회 분야 전체 평균의 단순평

균, 최고4.5~최저3.2)으로 보통 이상이며, 세부영역별 단순평균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3.8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3.9점),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3.9 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역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이 영역의 최고점은 고령사회 분야의 다른 중역역의 최고점(4.4~4.5점)에 비해 높지 않으나,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명예 상담원 채용 수),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퇴직연금가입률),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성과지표는 4.1~4.2점으로 높게 평가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의 성과지표는 5개 항목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마을기업 활성화(3.2점),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3.3점),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3.3점)는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고령사회 분야 전체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정년(고령자)고용 캠페인(강조주간 운영) 성과지표의 측정 가능성(4.1점)과 시간 내 달성 가능성(4.0), 구체성(3.5점)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3.1 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과제와의 관련성은(2.9점)은 고령사회 분야 중 가장 낮게 평가됨

〈표 6-6〉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근로자수 증가율 *[(당해연도 수혜인원-전년도 수 혜인원)/(전년도 수혜인원)]X100	3.9 (1.2)	3.9 (0.9)	4.3 (1.1)	3.6 (1.0)	3.6 (1.0)	3.9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당해연도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 자재고용 지원 인원 수	3.8 (1.3)	4.1 (1.0)	4.5 (0.6)	3.5 (1.1)	3.9 (1.1)	4.0
베이비붐 세대 고령대책 추진	사업장 평균 정년연령 *조사 대상 사업장 중 단일정년 사업장의 평균 정년	3.7 (1.1)	3.7 (1.0)	4.0 (0.9)	3.4 (1.0)	3.2 (1.1)	3.6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개정안 시행령 마련 *법 개정 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여부	3.5 (1.1)	3.6 (0.8)	3.9 (0.9)	3.4 (1.0)	3.4 (1.1)	3.5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	취업자 수 *사업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3.7 (1.3)	3.8 (1.1)	4.0 (0.9)	3.3 (1.3)	3.6 (1.1)	3.7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령자특화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취업자수/(취업능력향상프로그 램) 수료인원X100	4.1 (1.3)	4.2 (1.1)	4.3 (0.9)	3.8 (1.3)	3.7 (1.2)	4.0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4개 돌봄분야 일자리 합계 *종사자 수	3.8 (1.2)	3.9 (0.8)	4.2 (0.8)	3.8 (0.9)	3.9 (1.1)	3.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채용지원	사회적기업 소속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 비율	3.8 (1.1)	3.8 (1.0)	4.1 (1.1)	3.5 (1.1)	3.3 (1.3)	3.7
마을기업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사업 총 매출현황 *Σ(당해년도 마을기업 총 매출액)	3.3 (1.2)	3.2 (1.2)	3.6 (1.1)	3.1 (1.3)	3.0 (1.3)	3.2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귀농·귀촌 가구증가율 *[(귀농·귀촌 가구 수-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 수)/최근 5 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 수]X100	3.5 (1.1)	3.2 (1.2)	3.7 (1.1)	3.2 (1.1)	3.1 (1.1)	3.3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활성화	시니어창업 활성화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취업 성공 시니어 비율	3.7 (1.1)	4.2 (0.8)	4.1 (0.8)	3.5 (1.0)	3.2 (1.2)	3.7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1) 분석물 다운로드 수 *당해년도 목표 분석물 수×전년도 첨단기술정보분석 분석물 1건당 다 운로드 수×최근 3년 실적증가(22%) (3,000건×6.7건×1.22=24,522건)	4.0 (1.3)	3.7 (1.2)	4.0 (1.1)	3.4 (1.1)	3.2 (1.1)	3.7
	2)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확충 실적 *전년도 퇴직과학기술자 자원인원 수 ×0.8건(1인당 기술개발성과가 0.7건 (산업기술 주요통계요람, 산업협, '12 을 감안, 1인당 0.1건 상향 설정)	4.0 (1.1)	3.8 (1.1)	3.9 (1.0)	3.7 (1.2)	3.6 (1.1)	3.8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명예상담원 채용인원 수	4.1 (1.0)	4.0 (1.1)	4.4 (0.7)	3.9 (1.3)	4.0 (1.1)	4.1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진로코치 선발 *전국 선발 인원수	4.2 (0.8)	4.2 (0.7)	4.5 (0.6)	3.4 (1.1)	3.7 (1.0)	4.0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추진실적 / 목표치 X 100	3.4 (1.2)	3.5 (1.2)	3.7 (1.3)	3.5 (1.1)	3.8 (1.0)	3.6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전문인력채용 지원자 수	3.6 (1.3)	3.7 (1.2)	3.7 (1.1)	3.3 (1.0)	3.5 (1.0)	3.6
중·고령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50대 이상 여성멘토 *사이버멘토링에 가입한 50대 이상 여성멘토 수	3.5 (1.2)	3.3 (1.1)	3.8 (1.2)	3.1 (1.1)	3.7 (1.1)	3.5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 실습 연계율 *(실습 연계자수/총 참여자수)X100	3.7 (1.1)	3.1 (1.2)	3.9 (1.1)	3.2 (1.2)	3.3 (1.2)	3.4
은퇴인력 활용	은퇴자 교육기부 참여인원	3.9 (1.2)	4.0 (0.7)	4.2 (0.7)	3.8 (1.0)	3.7 (1.0)	3.9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교육기부 활성화	*대학생교육기부단 프로그램 참여 은퇴인력 수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인력풀 확대 *(전년대비)×2 **누적인원기준	4.0 (1.2)	3.5 (1.2)	3.9 (1.1)	3.1 (1.0)	3.5 (1.0)	3.6
정년(고령자)고용 캠페인	1)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운영	3.5 (1.4)	2.9 (1.2)	4.1 (1.1)	3.1 (1.3)	4.0 (1.0)	3.5
	2) 주요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건수	4.0 (0.9)	3.7 (1.0)	4.2 (0.8)	3.5 (1.1)	4.3 (0.6)	4.0
	3) 장년고용지원제도안내 책자 발간	3.8 (1.3)	3.3 (1.2)	4.0 (1.2)	3.5 (1.2)	4.3 (0.7)	3.8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건수	4.0 (1.1)	4.1 (1.2)	3.9 (1.2)	3.5 (1.3)	3.8 (1.2)	3.9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 및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제도평가 연구용역 실시 *포럼 개최실적	3.9 (1.0)	3.9 (1.0)	4.2 (1.1)	3.6 (1.3)	4.1 (1.1)	3.9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홍보효과도 조사 * $Y=(1/M+a \cdot bt)-1$ **M: 80%(최대목표치) a: 0.0032(연도증가에 따른 기본적 기본 증가값) b: 0.8512(연도증가시에 따른 누적효과값) t: 회차(연도)	3.9 (1.3)	3.7 (1.1)	4.1 (1.1)	3.5 (1.5)	3.7 (1.1)	3.8
특수고용관계근로자 의 국민연금 적용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추진 *(국민연금소득신고자 수/과세자료 보유자 수) ×100	4.2 (0.7)	4.1 (0.9)	4.2 (0.5)	3.9 (0.8)	3.7 (0.9)	4.0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 자 수	4.4 (0.8)	4.1 (1.1)	4.3 (0.8)	4.0 (0.8)	3.9 (0.8)	4.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연금보험 지원사업 증가율 *(당해연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액/ 전년도 지원액) ×100	4.3 (0.8)	4.0 (1.0)	4.3 (0.8)	3.9 (0.8)	4.0 (0.7)	4.1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1) 퇴직연금가입률 *(가입사업장 수/전체사업장 수)×100	4.5 (0.8)	4.3 (0.8)	4.4 (0.8)	3.8 (1.0)	3.5 (0.9)	4.1
	2) 교육실시 횟수	4.0 (1.2)	3.8 (1.0)	4.4 (0.8)	3.5 (1.0)	3.7 (1.0)	3.9
개인연금 활성화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 마련	3.1 (1.3)	3.5 (1.2)	3.6 (1.3)	3.2 (1.2)	3.6 (1.1)	3.4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노후준비 인식도 *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 중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사람의 비율	4.0 (1.0)	3.9 (1.2)	3.9 (1.2)	3.7 (1.2)	3.6 (1.1)	3.8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금융상품자문업 도입방안 마련	3.2 (1.3)	3.2 (1.2)	3.3 (1.2)	3.3 (1.2)	3.6 (1.3)	3.3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	고령층 특화 보험상품 개발	3.4 (1.3)	3.7 (1.0)	3.7 (1.1)	3.5 (1.1)	3.6 (1.2)	3.6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만족도 *건강정보이용자의 콘텐츠(용이성, 유익성, 구체성) 평가값의 평균	3.9 (1.0)	3.9 (1.1)	4.0 (0.8)	3.7 (1.0)	3.6 (1.0)	3.8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4.0 (1.2)	4.2 (1.1)	4.1 (1.1)	4.0 (1.1)	4.1 (1.0)	4.1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증진관리체 계 구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지역사회 주민 대상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설문조사	4.0 (1.0)	4.0 (1.1)	4.2 (1.0)	3.9 (1.0)	3.7 (1.0)	4.0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병 등록환자 수/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추정환자 수) ×100	4.3 (0.9)	4.2 (1.0)	4.3 (0.9)	4.1 (1.0)	3.9 (1.0)	4.2
U-health 서비스 확충	진료정보교류인증체계 구축	3.9 (1.2)	3.9 (1.1)	4.0 (1.1)	3.5 (1.1)	3.8 (0.9)	3.8
U-health 서비스 확충	특허건수(지원금액 10억 원 당) *{(등록X0.6XSMART 가중치)+ 출원X0.4}/지원예산(10억원당)	4.1 (1.2)	3.7 (1.0)	4.1 (0.9)	3.4 (1.0)	3.6 (0.9)	3.7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입법 진행 현황	3.6 (1.2)	3.9 (1.1)	4.1 (1.1)	3.6 (1.0)	3.6 (1.0)	3.7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후설계지원법(가칭)국회통과	3.8 (1.2)	4.1 (0.9)	4.1 (1.1)	3.7 (1.2)	3.9 (1.0)	3.9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에 있어서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이 영역의 5개 항목 단순평균은 3.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기초연금 내실화(4.3점),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보건소 의치(틀니) 사업(4.4점),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추진(4.5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4.3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프로그램 수)(4.2점)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기초연금 내실화,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어르신문화프로그램개발·보급(프로그램 수, 수혜자 수) 성과지표는 5개 영역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은 최소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가장 낮은 점수는 3.5점으로, 해당 성과지표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농촌생활 활력 증진인 것으로 나타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농촌생활 활력 증진 성과지표의 과제와의 관련성(3.3점)은 이 영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3.4점), 노인건강정책 제

도기반 확충(3.4점),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수)(3.3 점),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4개의 성과지표가 3.5점 미만의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 시간 내 달성 가능성에 있어서는 연기연금제도 활성화(3.4점),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3.1점),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3.3점) 3개의 성과지표가 3.5 점 미만의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표 6-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1)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수 합	4.1 (1.0)	4.4 (0.6)	4.3 (0.8)	3.7 (0.9)	4.0 (0.8)	4.1
	2) 사업참여자 만족도	4.1 (0.8)	4.1 (0.5)	4.3 (0.6)	3.7 (1.0)	4.0 (0.7)	4.0
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연금 지급 *(실제수급자수/지급대상자수)× 100 **기초연금 도입 당시 수급자 수 (410만 명) 대비 약 10% 증가	4.6 (0.6)	4.5 (0.8)	4.5 (0.7)	4.1 (1.0)	4.0 (0.8)	4.3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1)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가입 허용 *법안 개정안 마련	4.0 (1.1)	4.2 (1.0)	4.1 (1.2)	3.8 (1.2)	3.9 (1.1)	4.0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시 계약 유지 *시행령개정 여부	4.0 (1.1)	4.0 (0.9)	4.1 (1.1)	3.6 (1.1)	3.7 (1.2)	3.9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 개선 *급여업무 지침 개정	3.9 (1.2)	4.0 (1.0)	4.1 (1.1)	3.9 (1.1)	3.8 (1.1)	3.9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국민연금제도 개선 *급여업무 지침 개정	3.7 (1.0)	3.9 (0.9)	3.9 (1.0)	3.7 (1.1)	3.4 (1.1)	3.7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경영이양목표면적 달성률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면적/당 해연도 경영이양 계획면적) ×100	3.7 (1.1)	3.6 (1.2)	3.7 (1.2)	3.4 (1.1)	3.1 (1.1)	3.5
농지연금 활성화	농지연금 가입률 *(연도말 유지건수/총 목표농가 수) ×100	4.2 (1.1)	4.0 (1.1)	4.1 (1.1)	3.8 (1.1)	3.5 (1.1)	3.9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4.0 (1.0)	4.4 (0.8)	4.1 (0.7)	3.9 (1.0)	3.8 (0.9)	4.1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노인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지역 수	3.9 (1.1)	4.0 (1.0)	4.1 (0.9)	3.4 (1.1)	3.9 (0.9)	3.8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보험료 공시제도 강화 *보험료 공시제도 개선여부	3.5 (1.3)	3.5 (1.1)	3.8 (0.9)	3.5 (1.1)	3.3 (1.1)	3.5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전년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 *(전년대비 상담건수 증가량/전년 정 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건수)×100	4.0 (1.0)	3.9 (0.8)	4.3 (0.8)	3.8 (0.9)	4.0 (0.9)	4.0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의치(틀니) 사업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수혜인원	4.5 (1.0)	4.5 (0.7)	4.6 (0.6)	4.2 (0.7)	4.2 (0.7)	4.4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추진	체계적인 치매예방 치료관리 - 지역사회 치매조기 검진율 *(지자체에서 실시한 조기검진건수/만 60세 이상 인구수)x100	4.7 (0.7)	4.7 (0.7)	4.6 (0.5)	4.3 (0.9)	4.1 (0.7)	4.5
지역밀착형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추진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 *사례관리 대상자 수	4.3 (0.8)	4.1 (0.6)	3.9 (0.9)	3.8 (1.0)	3.5 (1.1)	3.9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장기요양 질 평가 체계 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3.8 (1.2)	4.2 (1.1)	4.0 (1.1)	4.0 (1.1)	4.0 (1.0)	4.0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개정	3.9 (1.1)	3.7 (1.3)	4.0 (1.0)	3.8 (1.2)	3.8 (1.3)	3.8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인정자 중 치매환자	4.5 (0.8)	4.4 (0.9)	4.5 (0.7)	4.1 (1.1)	3.9 (1.1)	4.3
노인 운동 활성화	노인건강운동교실 강습실시 횟수	4.4 (0.9)	4.3 (0.9)	4.1 (0.8)	3.7 (1.2)	3.8 (1.0)	4.1
농촌생활 활력 증진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증가율 *(2년차 실천율 - 사업 전 실천율)/사업 전 실천율x100	3.6 (1.3)	3.3 (1.1)	3.6 (1.1)	3.5 (1.1)	3.5 (1.0)	3.5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1)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수	4.2 (1.0)	3.6 (1.2)	4.1 (1.2)	3.3 (1.1)	4.1 (0.9)	3.9
	2)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	4.3 (0.8)	4.0 (1.0)	4.0 (1.1)	3.7 (1.0)	4.0 (0.8)	4.0
	3) 광역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수	4.1 (1.1)	3.5 (1.1)	4.0 (1.2)	3.5 (1.2)	4.0 (1.0)	3.8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적립금규모/14년 총 급여비≥24%	4.3 (1.1)	4.0 (1.1)	4.2 (1.1)	3.7 (1.1)	3.7 (1.1)	4.0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	4.2 (1.1)	4.1 (1.1)	4.3 (1.0)	3.6 (1.1)	3.8 (1.0)	4.0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1)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노인자원봉사 클럽 수	3.8 (1.3)	3.7 (1.1)	3.8 (1.1)	3.4 (1.2)	3.6 (0.9)	3.7
	2)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수	4.0 (1.0)	3.9 (1.0)	4.1 (0.9)	3.8 (1.1)	3.9 (0.9)	3.9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1) 원로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횟수	3.7 (1.2)	3.6 (1.2)	3.8 (1.2)	3.5 (1.1)	3.6 (1.1)	3.6
	2) 원로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참가자 수	4.0 (1.2)	3.6 (1.3)	3.8 (1.2)	3.6 (1.2)	3.7 (1.1)	3.7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수 합산	4.1 (1.1)	4.0 (0.9)	4.2 (0.8)	3.7 (1.2)	4.0 (1.0)	4.0
어르신문화프로그램개발·보급	1) 프로그램 수	4.0 (1.1)	4.3 (0.9)	4.3 (0.9)	4.1 (1.0)	4.4 (0.8)	4.2
	2) 수혜자 수	4.0 (1.1)	4.1 (0.8)	4.2 (0.8)	4.0 (1.0)	4.2 (0.9)	4.1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 있어 높게 평가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4.2점),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4.4점), 독거노인 보호 강화(4.4점) 성과지표가 높게 평가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독거노인 보호 강화는 5개 항목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은 최소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가장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훈포장 수여자 수, 진흥원 설립 공정률)은 3.4점으로 이 영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 여건 마련(훈포장 수여자 수, 진흥원 설립 공정률) 성과지표는 5개 항목 모두 보통(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평가됨

<표 6-8>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후 공공임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자금지원	4.5 (0.9)	4.3 (0.8)	4.4 (0.7)	3.8 (1.0)	3.9 (1.0)	4.2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8%, 5%)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전체 임대주택 ×100	4.7 (0.6)	4.6 (0.6)	4.5 (0.7)	4.0 (0.8)	3.9 (1.1)	4.4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추진실적 *(추진실적/계획물량) ×100	4.1 (1.0)	4.2 (0.8)	4.1 (1.0)	3.8 (1.0)	3.9 (0.9)	4.0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생활 만족도	3.5 (1.2)	3.3 (1.1)	3.7 (1.0)	3.2 (1.2)	3.5 (1.0)	3.5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행환경 여건 개선 *보행환경 개선 실적/계획 ×100	4.2 (0.8)	4.4 (0.8)	4.2 (1.0)	3.8 (1.1)	3.8 (1.1)	4.1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고령자 교육인원 *교육 참여 인원	4.3 (0.7)	4.1 (0.8)	4.1 (0.8)	3.7 (0.9)	3.8 (0.8)	4.0
독거노인 보호 강화	수혜노인 수	4.3 (0.9)	4.7 (0.5)	4.4 (0.8)	4.0 (1.0)	4.4 (0.6)	4.4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 강화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3.8 (1.3)	4.0 (1.2)	4.0 (1.0)	3.6 (1.2)	3.9 (0.9)	3.8
농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가사도우미) 고객만족도 *항목 만족지수(사업절차, 유용	3.7 (1.1)	3.6 (1.1)	3.7 (1.1)	3.4 (1.1)	3.5 (0.9)	3.6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성 등) 및 체감 만족지수에 평 가항목 중요도 가중치의 합산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1)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	3.7 (1.2)	3.0 (1.3)	3.8 (1.2)	3.1 (1.3)	3.5 (1.2)	3.4
	2) 효문화진흥원 설립 공정률 *누적투자율/ 총 사업비	3.5 (1.4)	3.0 (1.4)	3.7 (1.1)	3.3 (1.4)	3.4 (1.4)	3.4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우수 프로그램 포상 수	3.9 (1.0)	3.8 (1.1)	4.0 (1.0)	3.7 (1.2)	4.0 (1.1)	3.9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평가 57개 과제의 89개 성과지표 및 고령사회 분야 전체 성과지표의 각 항목별 평균점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측정가능성과 구체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시간 내 달성가능성, 과제와의 관련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순으로 낮아짐
-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구체성은 최대 4.6점에서 최소 3.3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구체적(4.0점) 이상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56개이고, 나머지 33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 과제와의 관련성은 최대 4.2점에서 최소 3.1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관련(4.0점 이상)있는 것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32개이고, 나머지 57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 측정 가능성은 최대 4.7점에서 최소 3.8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가능(4.0점 이상)한 것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87개이고, 나머지 2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해당 성과지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평가됨
-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최대 4.1점에서 최소 3.2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적절(4.0점 이상)한 것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8개이고, 나머지 81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성실근로자재입국고용허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다문화 예비학교),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적성검사 이용실적), 재직근로

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인 것으로 나타남

- 시간 내 달성 가능성은 최대 4.2점에서 최소 3.0점까지 분포하며 다소 가능(4.0점 이상)한 것으로 평가된 성과지표는 89개 중 30개이고, 나머지 59개 성과지표는 보통(3.0점)으로 평가됨

〈표 6-9〉 성장동력 분야 성과지표별 평가척도 평균점수

(단위: 개, 점)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성과지표 합계	89	89	89	89	89
3점 미만	0	0	0	0	0
3점	30	57	2	81	59
4점 이상	59	32	87	8	30
최고점	4.6	4.2	4.7	4.1	4.2
최저점	3.3	3.1	3.8	3.2	3.0
평균	4.0	3.8	4.2	3.7	3.9

주: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 성장동력 분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3.9점(성장동력 분야 전체 평균의 단순평균으로, 최고4.2~최저3.6)으로 보통 이상이며, 세부영역별 단순평균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3.8점),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3.9점),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3.9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영역에 있어서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4.2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4.2점),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다문화 예비학교)(4.2점),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4.2점)인 것으로 나타남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다문화 예비학교)은 5개 항목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성과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은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외국인근로자 지도점검),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문화교실 운영 참여 학교 수),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벤처·창업 체험프로그램 도입(창업인턴제),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성과지표는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보통(3.0점)수준이지만 나머지 4개 항목에서 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의 성과지표는 시간 내 달성 가능성은 보통(3.0점)수준이지만 나머지 4개 항목에서 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영역은 최소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가장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여성과학기술인 수혜자 만족도),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참여자 만족도),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적극유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은 3.6~3.7점으로 이 영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수혜자 수) 성과지표의 구체성은 3.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사이버 원격교육 수료자 수),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성과지표는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에 있어 3.5미만으로 평가되었고,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적극유치 성과지표는 과제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에 있어서도 3.5미만으로 평가됨
-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여성 고용률, 관리직 여성고용률), 여성 대표성 제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성과지표의 시간 내 달성 가능성은 3.5미만으로 평가됨

〈표 6-1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확보	1) AA적용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여성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x100	4.2 (0.8)	4.1 (0.9)	4.7 (0.5)	3.7 (0.7)	3.2 (0.9)	4.0
	2) AA적용사업장의 관리직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직수 / 전체관리직수)x100	4.1 (0.9)	4.1 (0.9)	4.3 (0.9)	3.6 (0.9)	3.0 (1.0)	3.8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4급 이상 여성공무원수/4급 이상 전체공무원수)x100	4.5 (0.6)	4.0 (0.9)	4.6 (0.7)	4.0 (0.7)	3.6 (1.2)	4.2
여성 대표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수/ 5급 이상 전체공무원수) x 100	4.3 (0.8)	4.0 (0.8)	4.4 (0.8)	3.8 (0.9)	3.3 (1.2)	3.9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	1)여성교장·교감임용비율 *(여성 교장·교감/전체 교장·교감) x100	4.6 (0.5)	3.9 (1.3)	4.4 (1.1)	3.9 (0.9)	3.7 (0.9)	4.1
	2)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비율 *(여성교수 수/ 전체 교수 수) x 100	4.4 (0.8)	3.7 (1.1)	4.4 (1.1)	3.6 (1.1)	3.5 (1.1)	3.9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1)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 수 *사업 참여 여학생 수 및 센터 이용자수 총계	3.9 (1.0)	3.8 (1.2)	4.3 (0.8)	3.5 (0.8)	3.9 (0.7)	3.9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만족응답수/ 전체응답수) x100	3.5 (1.1)	3.8 (1.2)	4.2 (0.7)	3.5 (0.9)	3.7 (0.8)	3.7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 집합교육 수료자 인원 *전년교육목표대비 6.3%증	4.0 (1.0)	3.6 (1.0)	4.2 (1.1)	3.5 (0.8)	4.0 (1.0)	3.9
	2) 양성평등 사이버 원격교육 수료자 인원	4.1 (0.9)	3.6 (1.0)	4.3 (1.0)	3.4 (0.9)	4.1 (0.8)	3.9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환산	3.7 (1.2)	3.7 (0.7)	4.0 (1.0)	3.5 (0.9)	3.7 (0.8)	3.7
	1)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환산	3.7 (1.2)	3.9 (0.9)	4.1 (1.1)	3.7 (0.9)	3.8 (0.9)	3.8
	2) 참여자 수료율 *(수료인원/참여인원) x 100	4.2 (0.8)	3.9 (0.7)	4.2 (0.8)	3.5 (1.0)	3.9 (0.9)	3.9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새일센터 이용자 취업자 수 *4년간('11~'14)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수 평균 증가인원을 반영 하여, '14년도 실적대비 6,913명 증가하여 상향 설정함	4.4 (0.7)	4.1 (0.9)	4.5 (0.5)	4.1 (0.6)	3.9 (0.8)	4.2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결혼이민여성 인턴취업자 고용유지율 *결혼이민여성인턴 종료연도의	4.4 (0.8)	4.1 (1.0)	4.4 (0.8)	4.0 (1.1)	3.8 (1.0)	4.1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1년 경과 시점에서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현황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중국, CIS지역 재외동포 자격 체류자 수	3.9 (0.9)	3.1 (1.1)	4.0 (1.1)	3.2 (0.9)	3.7 (0.7)	3.6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적극유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HuNet Korea)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건수	4.0 (0.8)	3.2 (1.0)	4.0 (1.1)	3.2 (0.9)	3.9 (0.8)	3.7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1)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3.7 (1.2)	4.0 (1.2)	3.8 (1.2)	3.7 (1.1)	4.0 (1.2)	3.8
	2) 외국인력 상담센터 상담실적 제고	4.1 (0.9)	3.8 (0.9)	4.2 (0.9)	3.9 (0.8)	4.0 (0.8)	4.0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전년목표와 동일	4.2 (0.7)	4.1 (0.6)	4.2 (0.8)	3.8 (0.6)	4.1 (0.7)	4.1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1) 성실근로자재입국고용허가	3.8 (1.2)	3.8 (1.0)	4.1 (1.0)	4.0 (0.9)	4.2 (0.9)	4.0
	2)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국가 확대(국가 수)	4.0 (1.0)	3.6 (0.9)	4.2 (0.8)	3.8 (0.8)	4.1 (0.8)	3.9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4.0 (0.9)	3.6 (0.9)	4.1 (0.8)	3.6 (1.0)	3.9 (0.9)	3.8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다문화 예비학교	4.4 (0.8)	4.1 (0.6)	4.3 (0.7)	4.0 (0.7)	4.0 (0.7)	4.2
	2)교원연수 참여인원 *집합 및 온라인 연수 참여 실적합계(15시간이상 집합원격연수 이수인원 대상)	4.2 (0.9)	3.8 (0.9)	4.5 (0.6)	3.9 (0.7)	4.2 (0.9)	4.1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응답건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걸려온 인입전화에 대한 상담원의 실제 응답건수	4.0 (0.8)	3.7 (0.9)	4.1 (0.8)	3.7 (0.9)	3.9 (1.0)	3.9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1)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참여 학교 수 *프로그램 참여 학교수(실적)/프로그램 참여 학교수(목표)	4.3 (0.8)	4.0 (0.8)	4.3 (0.7)	3.9 (0.4)	4.2 (0.7)	4.1
	2)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학교 수 *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실적)/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목표)	4.3 (0.7)	3.9 (0.8)	4.3 (0.8)	3.8 (0.7)	4.0 (0.8)	4.0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1) 미래의 직업세계 책자 개발 *서적 발간 횟수	4.0 (0.9)	3.8 (0.8)	4.2 (0.7)	3.8 (0.9)	4.2 (0.9)	4.0
	2) 진로 적성검사 이용 실적 *커리어넷 이용실적 자동집계	4.3 (0.9)	3.8 (0.9)	4.2 (0.9)	4.0 (0.7)	4.2 (0.8)	4.1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직업심리검사 개발검수 및 직업정보·직업지도간행물 발간 건수	4.0 (0.8)	3.9 (0.9)	4.0 (0.8)	3.9 (0.8)	4.1 (0.7)	4.0
학교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프로그램 참여자수/재학생수x100	4.2 (0.9)	3.6 (1.0)	4.2 (0.9)	3.6 (0.8)	3.8 (0.8)	3.9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개수	3.9 (1.1)	3.5 (0.9)	4.0 (1.1)	3.4 (1.0)	3.7 (1.1)	3.7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	4.4 (0.9)	3.8 (1.0)	4.3 (0.8)	3.7 (0.9)	3.7 (0.8)	4.0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실적						
기업 맞춤형반 확대	기업 맞춤형반 *학교당 3.5개 반×지원학교 수	4.2 (0.8)	4.0 (0.9)	4.3 (0.7)	3.8 (0.5)	3.8 (0.6)	4.0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계좌발급 대비 참여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참여자/계좌발급자 ×100	4.3 (0.9)	4.0 (0.8)	4.5 (0.6)	3.9 (0.7)	4.0 (0.7)	4.1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1)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재직근로자 직업훈련건수/ 고 용보험 피보험자수) × 100	4.3 (0.8)	4.1 (0.9)	4.4 (0.7)	4.1 (0.6)	3.9 (0.8)	4.2
	2)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4.0 (1.0)	4.0 (1.0)	4.1 (1.0)	3.9 (0.8)	3.8 (1.0)	4.0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만족도	4.0 (1.3)	4.0 (1.1)	4.1 (1.1)	3.9 (0.9)	3.9 (0.8)	4.0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 제고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5점 척도 양면평가: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 상도 평가	3.7 (1.2)	3.9 (1.1)	4.0 (1.1)	3.9 (0.8)	3.9 (0.9)	3.9
	2)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5점 척도 양면평가: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 상도 평가	3.8 (1.2)	3.8 (1.0)	4.1 (1.1)	3.8 (0.9)	3.8 (1.0)	3.9
	3)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훈련 참여자직무능력 향상도 *5점 척도 양면평가: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 상도 평가	3.9 (1.0)	3.8 (1.0)	4.1 (0.7)	3.9 (0.9)	3.7 (0.9)	3.9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	4.1 (1.0)	4.0 (0.8)	4.4 (0.8)	3.9 (0.9)	3.9 (0.7)	4.0
	2) 산업현장교수지원 기업 수	4.2 (0.8)	3.9 (0.7)	4.4 (0.9)	3.9 (0.6)	3.8 (0.7)	4.0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력	4.1 (0.8)	3.7 (1.0)	4.3 (0.9)	3.7 (1.1)	3.8 (0.9)	3.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WFK 봉사단 파견인원	4.1 (1.0)	3.7 (1.1)	4.4 (0.7)	3.7 (0.8)	3.7 (1.0)	3.9
벤처·창업체험프로그램 도입(창업인턴제)	창업인턴 수료자 창업건수 *창업인턴 수료후 창업자수/선 발인턴수×100	4.2 (0.8)	4.0 (0.9)	4.3 (0.7)	3.8 (0.6)	4.0 (0.6)	4.1
창업보육센터 지원	대학생 공동창업공간 조성 지원	4.0 (1.0)	3.7 (1.0)	4.3 (0.8)	3.7 (0.8)	4.0 (0.7)	3.9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맞춤특기병제 기술훈련 추천 및 선발인원 *Σ지원확인서 발급인원(훈련미 이수자) + Σ맞춤특기병 선발인 원(훈련수료 후 지원자)	4.2 (0.8)	4.0 (0.9)	4.3 (0.8)	3.8 (0.9)	3.7 (0.7)	4.0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청년 가젤형기업 지원 수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수/가 젤형 기업 전체 지원 수)×100	4.2 (1.0)	4.0 (0.9)	4.4 (0.7)	3.9 (1.0)	3.7 (0.8)	4.1
성과보상금 관련 세제혜택 확대	가입자 수 (누적)	4.1 (1.0)	3.8 (1.1)	4.2 (1.0)	3.7 (1.1)	3.6 (0.8)	3.9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전문/희소계열 분야 지원 수	3.8 (0.9)	3.8 (0.9)	4.2 (0.8)	3.7 (0.9)	3.9 (0.7)	3.9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지원대학의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	3.9 (1.0)	3.7 (1.1)	4.2 (0.9)	3.4 (1.0)	3.6 (0.9)	3.8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 *(형식교육참여자추정치+비형식 교육참여자추정치 - 동시참여자	4.0 (0.9)	4.1 (0.9)	4.0 (0.9)	3.6 (0.9)	3.4 (1.0)	3.8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추정치)/(만25세~만 64세 한국 성인수) x 100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1) 학습계좌 개설 인원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학습계좌를 개설한 학습자 수 합계(누적 인원)	4.1 (0.9)	4.2 (0.8)	4.2 (0.8)	3.5 (0.9)	3.6 (0.9)	3.9
	2)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평균 접속 수 *연간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접속 수/12개월	4.0 (0.9)	3.8 (1.0)	4.3 (0.7)	3.6 (0.8)	3.7 (0.8)	3.9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	1) NCS 개발 개수	3.9 (1.0)	3.9 (0.8)	4.3 (0.7)	3.9 (0.8)	3.8 (0.8)	4.0
	2) 新 자격설계분야 개수	4.0 (1.0)	4.0 (0.7)	4.2 (0.7)	3.7 (0.8)	3.8 (0.7)	3.9
	3)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 종목 수	3.9 (1.1)	3.9 (0.9)	4.3 (0.8)	3.8 (0.8)	3.8 (0.9)	3.9
	4)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선정 종목 수	4.0 (0.9)	3.9 (0.9)	4.0 (0.9)	3.6 (0.9)	3.7 (0.7)	3.8
	5) 지원 특성화고 수	4.1 (0.9)	3.8 (0.9)	4.2 (0.9)	3.6 (0.9)	3.8 (0.9)	3.9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계약학과 학위 취득율 *Σ(학위 취득자/참여자)X 100	4.1 (0.9)	3.8 (0.9)	4.1 (0.9)	3.9 (0.9)	3.6 (0.9)	3.9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 *[지원전 재해율 - 지원후 재해율)/지원전 재해율) X 100	4.2 (0.8)	3.9 (1.0)	4.1 (0.9)	3.8 (1.0)	3.6 (1.0)	3.9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취약계층(외국인·여성·고령) 교육지원 실적 *(교육실적/교육목표)×100/교육지원 횟수 입력	3.8 (1.0)	4.0 (1.0)	4.0 (1.1)	3.7 (1.0)	3.9 (0.9)	3.9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1)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사업장 수	4.0 (0.9)	4.2 (0.6)	4.1 (1.1)	3.9 (0.8)	4.0 (0.9)	4.1
	2)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근로자 수	4.2 (0.8)	4.1 (0.7)	4.3 (0.9)	3.8 (0.9)	4.1 (0.9)	4.1
	3)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금액	4.2 (0.9)	4.1 (0.8)	4.2 (0.9)	3.8 (1.1)	4.1 (0.9)	4.1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사회심리재활만족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조사(100점 만점)	3.7 (1.1)	3.9 (0.9)	4.1 (1.0)	3.9 (0.9)	3.9 (0.9)	3.9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직업복귀자/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 X 100	4.2 (0.8)	4.1 (0.8)	4.1 (1.1)	3.9 (1.0)	3.9 (1.0)	4.0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영역에 있어서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4.0점)의 성과지표는 과제와의 관련성이 보통(3.8점)으로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4개 항목에서 4점 이상의 평가를 받아 이 영역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영역은 최소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가장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 국민연금 자산운영 효율성 제고의 측정가능성은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보통수준으로 평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51) 성과지표는 5개 항목 모두 보통으로 평가됨

〈표 6-1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영역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사업)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취업자/졸업대상자X100	3.3 (1.1)	3.7 (1.1)	4.0 (0.9)	3.5 (1.1)	3.5 (1.1)	3.6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1) 통폐합 학교 수	4.0 (0.9)	3.6 (1.0)	4.3 (0.8)	3.6 (0.8)	3.8 (0.8)	3.8
	2) 학교수용시설 재정투자 심사 추진율 *적정·조건부 추진 건 수/중앙 투자심사 신청건수X100	3.7 (0.9)	3.5 (0.8)	4.2 (0.8)	3.6 (0.7)	3.8 (0.8)	3.8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	2015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4.0 (0.9)	3.8 (1.0)	4.1 (0.9)	4.0 (1.0)	4.2 (0.8)	4.0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공급 *특별(우선)공급 추진 여부	3.4 (0.9)	3.9 (0.8)	4.1 (0.9)	3.8 (1.2)	3.8 (1.0)	3.8
국민연금 자산운영 효율성 제고	해외·대체투자액/금융부문 기금투자액×100	3.7 (1.1)	3.4 (0.9)	4.1 (0.9)	3.4 (0.9)	3.4 (1.0)	3.6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보완 여부	3.5 (1.0)	3.8 (0.8)	3.9 (0.8)	3.7 (0.9)	3.7 (0.9)	3.7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2) 구체성 점수는 '매우 추상적(1점)~매우 구체적(5점)', 과제와의 관련성 점수는 '매우 무관함(1점)~매우 관련(5점)', 측정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목표치설정의 적절성 점수는 '매우 부적절(1점)~매우 적절(5점)', 시간 내 달성 가능성 점수는 '매우 불가능(1점)~매우 가능(5점)'
 3) ()안은 표준편차임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 친화산업 육성 영역에 있어 높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고령친

화제품 실태조사)(4.0점),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지역사회밀착형 체험관 운영)(4.0점),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정보 DB구축, 제품 건수)(4.0점)의 성과지표가 높게 평가됨

- 각 항목별로 비교할 경우 측정가능성은 이 영역의 성과지표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됨

○ 고령친화산업 육성 영역은 최소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가장 낮게 평가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5개 항목의 단순평균을 비교할 경우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유공자 발굴)의 측정가능성(4점)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보통수준으로 평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각 영역별로 비교할 경우 목표치 설정의 가능성은 모두 보통(3점)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화장품관련 수출지원(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 수, 연간 화장품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 성과지표는 3.5점 미만으로 평가됨

〈표 6-12〉 성장동력정책 3. 고령친화산업 육성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사용성 평가 실시 *사용성평가 품목 수	4.0 (0.9)	3.9 (0.9)	4.1 (0.7)	3.8 (1.0)	4.1 (0.8)	3.9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	1)고령친화제품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여부	3.8 (1.1)	4.0 (0.9)	4.2 (0.8)	3.8 (1.1)	4.1 (0.8)	4.0
	2) 고령친화제품 개발연구 *연구과제 지원 실적	3.8 (1.0)	4.0 (0.9)	4.2 (1.0)	3.5 (1.0)	4.0 (0.9)	3.9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표준 제/개정 및 확인 수	3.9 (1.0)	4.1 (1.0)	4.0 (1.0)	3.7 (0.8)	3.8 (0.9)	3.9
고령친화산업 국가 간 표준화 협력강화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 (회의참석+국제문건검토+전문위원회+국가 간 협력)	3.7 (0.8)	4.0 (0.9)	4.1 (0.9)	3.7 (1.0)	4.0 (0.8)	3.9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 표시제도 확대	제품·서비스표준 확대 수	4.0 (0.8)	4.1 (0.8)	4.2 (1.0)	3.4 (1.0)	4.1 (0.9)	3.9
화장품관련수출지원	1) 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 수	4.1 (0.8)	3.5 (1.0)	4.1 (1.0)	3.2 (0.9)	3.9 (1.0)	3.8
	2) 연간 화장품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 *{(국내특허 출원건수X0.3)+(국내특허 등록건수X0.7)}+{(국외특허 출원건수X0.3)+(국외특허 출원등록건수X0.7)}X3	4.1 (0.8)	3.5 (1.0)	4.2 (0.9)	3.4 (0.8)	4.1 (0.8)	3.8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	1) 유공자(기업) 발굴 *유공자 표창 건수	3.8 (0.9)	3.5 (1.2)	4.0 (1.0)	3.5 (0.9)	3.9 (1.1)	3.7
	2) 지역사회밀착형 체험관 운영 *체험관 운영 건수	4.0 (1.0)	3.9 (1.0)	4.3 (0.9)	3.8 (0.9)	4.1 (1.1)	4.0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정책별 평균점수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측정 가능성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체험관 참관객수 *연간(1~12월) 체험관 참관객수 측정	3.9 (0.9)	3.7 (0.9)	4.2 (0.9)	3.5 (1.1)	3.8 (1.0)	3.8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수출정보DB구축·제공 건수	3.8 (1.0)	3.9 (0.8)	4.2 (0.9)	3.9 (0.9)	4.1 (0.8)	4.0
	2) 해외진출 협의체 운영	3.6 (1.1)	3.7 (1.1)	4.0 (1.0)	3.8 (0.9)	4.0 (1.0)	3.8

주: 1) '모름'을 제외한 결과임

□ 종합해볼 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전반적으로 측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시간 내 달성 가능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높게 평가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2. 성과지표 개선방안

가. 전체 성과지표의 공통적 개선 방안

□ 기본적인 방향성

- 기본계획과 각 과제 목표와 부합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제추진의 성격상 핵심지표와 보조지표 등의 방식으로 다층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세부사업별 가중치 부여를 통한 차별화가 필요함
 - 현재의 성과평가 방식은 세부사업 모두가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고 평가하는 것임.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과 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차별 없이 평가되고 있다는 한계를 내포함
 - 세부사업 모두를 중요도와 예산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접근은 정부정책 노력의 성과를 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노력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함
- 각 과제에 대하여 성과지표의 성격을 투입에 따른 직접적 산출(output) 지표와 장기적 성과(outcome)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정에 따른 노력(process) 지표를 고려해야 함. 더 나아가 핵심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 지표를 선정하고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세부사업 가운데 각 영역에 있어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력을 대표적으로

로 잘 보여줄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이들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 지표를 적용

- 사회적 성과 지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가, 혹은 사회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노인의 상대빈곤율, 노인 자살률 등이 여기에 해당됨.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기초연금 내실화사업의 경우 수혜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전체 노인 중 몇 퍼센트라는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회성과 지표는 연도별 변화 추이를 추적하기가 용이하고, 중장기 정책성과를 판단하기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음. 더하여서 사실상 해당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언론, 일반 시민, 전문가 등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이기도 함
-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단순 건수(또는 발생 건수) 등은 지양하여, 현황에 근거한 비율(ratio)로 설정하도록 해야 함. 동시에 예산 등을 포함한 양적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지표를 고려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는 저출산 회복을 위한 도움이 되는 보다 도전적인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 특히, SMART분석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 조사를 통한 성과지표 평가 결과,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어 향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함

□ 성과지표 점검항목 I: SMART 기준

-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SMART 기준을 활용하였음. 이러한 SMART 기준은 성과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특성이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나 성과지표를 수립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최정아, 2014; 김영록, 2013)

- * SMART
- 지표의 구체성(specific)
 - 지표의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지표의 달성 가능성(attainable)
 - 지표의 과제목표와의 관련성(relevant)
 - 지표의 시간 내 달성 가능성(time-bounded)

- SMART 기준에 따른 점검 문항은 다음과 같음

- 구체성(specific): 누구 또는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기대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명확한가?

- 측정가능성(measurable): 결과를 측정 가능한가?
- 달성가능성(attainable): 성과지표는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 목표와의 관련성(relevant): 성과지표는 과제의 목표, 더 나아가 기본계획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가?
- 시간 내 달성가능성(time-bounded):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과지표의 목표는 1년 내로 달성가능하며 핵심성과지표는 5년간의 기본계획 기간 동안 목표 달성 가능한가?

□ 성과지표 점검항목 II: 추가 점검항목

- 추가적으로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항목을 고려할 수 있음(권순만 외, 2010)
- 추가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음
 - 직접성(direct): 의도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가?
 - 명시성(specific): 성과지표는 누가 측정해도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하는가?
 - 실용성(practical): 성과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수집이 가능한가?
 - 포괄성(comprehensive):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측정하는가?

나. 영역별 성과지표의 개선 방안

□ 저출산 영역 성과지표 개선방안

- 여러 정책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정책적 과제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함
- 저출산대책과 무관한 또는 관련성이 적은 정책은 제외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산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만을 평가할 필요 있음
- 특히, 출산과 양육 지원과 무관한 지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육의 문제가 대체로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어있다는 점과 청소년 분야에 저출산정책의 성격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분야에서는 저출산과의 관련성이 높은 정책과 성과지표만을 선택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보육 지원사업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계속 유지 확충 필요성 있으나 지역에 따라 향후 꾸준한 저출산 기조로 인해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도 함. 대상 영유아 등의

숫자 감소로 민간 영역의 운영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공립과 민간 보육 사업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령사회 영역

- 고령사회 영역의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측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과제와의 관련성이 적고,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달성을 위한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과제와의 관련성, 더 나아가 기본계획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과제명은 ‘특정사업의 확대’이지만 성과지표는 ‘관련 종사자 교육’이며, ‘대책추진’과 관련한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는 ‘조사 실시 및 발표’로 측정된 경우가 있음. 또한 과제명이 ‘인프라 확대’ 또는 ‘지원 확대’이지만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로 측정된 경우도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와 측정산식·방법 간 일치하도록 설정
 - 예를 들어 성과지표인 ‘특정사업의 지원금’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지원인원수’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됨. 지원금 총액 및 1인당 평균 지원액수와 함께 지원인원수가 제시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함
- 성과지표로 선정된 항목들이 지나치게 정부투자(투입)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향후 투입에 대비하여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항목개발이 필요함

□ 성장동력 영역

- 정성적인 성과지표와 현장위주의 성과 지표도 병행되어야 함
- 현장중심의 사업 계획 및 목표 재설정 및 성과지표와 목표의 과감한 설정이 필요
 - 성장동력 영역의 일부 사업의 목표치는 지나치게 이행 가능여부만을 생각하여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 성과지표와 목표를 보다 성과 지향적으로 설정할 필요 있음

제3절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현 성과 평가체계의 한계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립 주체에 있어서의 문제점
 -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의 설정은 사업담당자에게만 의존하는 구조임
 - 사업 목표와 목표치의 경우도 중앙부처의 사업담당자가 설정함으로써 목표치 달성률에 근거한 추진 실적 평가의 의미는 약화됨
 - 이에 따라 사업목표치 달성 정도가 대체로 100%를 초과하여 의미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검토 과정 부재
 -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때 핵심 성과지표를 제외한 모든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매년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서 설정되는 목표치에 대한 검토는 부재함. 이에 따라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평가결과 100% 이상 달성한 과제가 대부분임
- 사업수행과 평가, 심의 시점의 괴리로 인해 평가 결과 환류의 문제
 - 실적이 취합되고 평가되는 시점은 사업수행 다음 연도의 하반기가 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추진실적이 보고되어 심의되는 시기는 사업이 수행된 지 2년이 지난시점이 됨
 -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수행 담당자와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발생함
 - 또한 성과 평가의 결과를 다음 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
 - 5년간의 기본계획 기간 동안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유동적 환류의 제한
 - 현재의 성과평가는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대체로 동일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매년 조금씩 목표치를 증가시키고 이를 달성하는지를 평가하는 구조임
 - 이에 따라, 기본계획 이행 전반기 사업 중 초반부에 목표가 달성되어 완료과제가 된 과제는 그 상태로 해당 기본계획 마지막 해까지 지속되어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되지 않음
 - 더 나아가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 또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가 부재함

2. 개선방안

- 중복된 평가 방지를 위한 기제 마련
 - 현재 정부 사업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중복해서 평가를 받는 경우 발생
 - 따라서 정부 부처의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재평가를 받기보다 평가 결과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 대표적인 정부 부처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정부업무평가(국무총리실)
 - 행정관리역량평가(행정자치부)
 - 재정사업자율평가(기획재정부)
- 기본계획의 연차별 평가 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 방식, 사업별 성숙도에 따른 평가 내용에 따라 평가내용의 차별화
 - 평가 내용은 기본계획의 연차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별 성숙도(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되며, 각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차별 평가 내용과 점검항목의 차별화
 - 5년간 지속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평가에 있어 연차별 중점을 두는 사항을 차별화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 1차 연도: 사업 적절성 평가
 - 정책 대상자가 되는 모집단을 파악하고 모집단에 대한 욕구조사(수요조사)를 통해 모집단의 욕구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평가, 지원대상의 적절성,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점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평가
- 2차 연도~4차 연도: 사업 과정의 효율성 및 성과 평가
 - 시행 체계, 사업 관리(지침의 전달 방식 등)의 효율성, 실적 등에 대해 평가
- 5차 연도: 사업 효과성 평가
 - 정책이 정책 대상에게 미친 결과에 대한 평가
 - 정책이 저출산 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 연차별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음(표 6-13 참조)

〈표 6-1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차별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checklist)

1차 연도	-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지 않게 설계되었는가? -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모집단의 수요(욕구)를 토대로 설계되었는가? -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있는가?
2차~4차 연도	-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사업의 지침은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가? -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사업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5차 연도	- 사업 추진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 사업의 성과(목표치 달성)는 우수한가? -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사업 결과는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이었는가?

□ 연차별 시행 계획의 평가 방식의 차별화

- t-1년: 목표, 성과 지표, 목표치 초안 설정
 -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한 점검(consulting)과 평가
- t년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확정, 성과 관리, 실적 취합, 실적 평가 결과의 환류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확정
 - 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사업 점검
 - 해당 연도의 실적 취합
 - 예산집행률이나 사업목표치 달성 부진 또는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설명을 명시. 구체적으로, 목표치 달성 정도가 90% 미만의 과제와 110% 이상의 과제에 대해

필수적으로 사유를 명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

○ t+1년 : 심층 성과 평가, 결과의 환류

- 연 초에 취합된 실적을 토대로 간략한 실적 평가
-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해 실적 평가가 아닌 심층 평가를 연중 실시
- 연 말에 과제별 성과지표의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영역 및 소영역 별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
- 부진 사업에 대해 성과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표 6-14 참조)

〈표 6-1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과정

연도	과업	주체(담당자)
t-1년	부처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정부부처 사업 담당자
	※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의 점검 항목 - 성과 목표 또는 성과 지표가 사업의 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성과 지표의 목표는 합리적으로(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t-1년	↓ 전문가 검토 저출산·고령사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검토	전문가 및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분과별)
t년	t-1년도 실적을 토대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정 및 보완	정부부처 사업 담당자
t년	연도별 최종 지표 및 목표치 결정	정부부처 사업 담당자
t년	사업 상시 점검	정부부처 사업 담당자 및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분과별)
t년	최종 실적 취합	정부부처 사업 담당자
t+1년	실적 평가	전문가 및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분과별)
t+1년	심층 성과 평가 및 성과 보고서 작성	전문가(연구 담당)

□ 과제의 성숙도 및 중요도에 따른 개별 과제 평가 항목의 차별화

- 과제의 안정화 정도 또는 성숙도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동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기간 중에 단계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제의 성숙도 따라 단계별 평가 내용을 적용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
- 기본계획 이행 후반기로 갈수록 사업이 안정화되어 기존의 성과지표의 목표가 달성되면 다음 단계로의 전환. 해당 과제의 경우 다음 단계의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함
- 과제 성숙 1단계: 성과 목표 평가
 - 사업의 목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홍보 및 인지도에 관한 평가
- 2단계: 성과 관리 평가
 - 실적 평가로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에 대한 평가,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
 - 기존의 성과평가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
- 3단계: 성과 심층 평가
 - 매년 10개 정도의 실적평가에서 미흡한 저성과 과제와 중점과제에 대해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 평가
 - 심층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수정 권고
- 평가 주체의 역량 강화
 - 사업 담당자
 - 당해 연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 이를 토대로 당해 연도 최종 추진실적을 해당 사업 담당자가 당해 연도 연말에 작성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 설정에 반영되도록 함
 - 사업 평가 담당자
 - 사업의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 활용. 또한, 사업성과(outcome)를 평가하는 심층 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사업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점검에 있어서 자문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 사항이 각 부처에 전달되는 신속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의 제한점
 - 제안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실적(output)의 평가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속한 과제의 목표 달성 여부는 예산확보에 영향을 받아 평가 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목표에 미달하게 되며, 추경 등으로 예산이 초과로 확보되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게 되는 등 목표 달성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성과(outcome)의 평가에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내의 200개 이상 과제의 효과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data)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되며 심층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자료(data)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문헌 <<

- 강소량, 김병수. (2016).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자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0(1), 167-199.
- 강은나, 이소영, 오신휘, 이재량. (2015). 2014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은나. (2016).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32, 29-37.
- 권순만, 박건희, 송정국, 윤난희, 정연, 한현진. (2010).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사업 수행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 고용노동부. (2015). <http://www.miel.go.kr/pension/law/stats-view.do?no=335¤tPage=1&srchKey=&srchWord>. 2011.12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 현황, 15년 퇴직연금 주요동향(2015년 12월 말 기준). 2015.12.13. 인출.
- 국민연금공단. (2016). 2015 국민연금 생생통계.
- 국토교통부. (2015). 행복주택 브로슈어.
- 김영록. (201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영선, 강은나. (2011). 노인일자리사업의 건강 효과성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419-435.
-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운진, 양미선, 김정민. (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정호. (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34(1), 한국개발연구원. 172-192.
- 김찬우.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283-296.
- 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_____. (2010).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15).
- _____. (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
- 도로교통공단. (2015a).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 _____. (2015b). 2015년판(2013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 민기채.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모델 분석. 한국노년학, 31(4), 999-1014.
- 박영미, 제갈돈, 김병규. (2016).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참여유형과 참여기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261-286.
- 박준오. (2014).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 결혼차수를 중심으로, 2014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II권, 통계청 통계개발원, pp.50~86.
- 보건복지부. (2011). 보육통계.
- _____. (2015).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016 OECD Health Statistics.
-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어린이집 이용 가구 특성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 이해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육아정책연구소
- 선우덕, 김현식, 김대중, 오신휘, 안세아. (2012).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 강은나, 황주희, 이윤경, 김홍수, 최인덕, 한은정 등.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주환, 이진용, 박주옥, 임남구, 이정아, 이계연, 김수진 등. (201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윤자영. (2014). 모성보호제도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2014.6. 한국노동연구원 34-44.
- 윤희숙, 김인경. (2013).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 이삼식. (201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1-65.
- 이삼식, 최효진, 오영희, 서문희, 박세경, 도세록.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이소정. (2011).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이지혜, 이소영, 염주희. (201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 (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석민.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양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1), 167-194.
- 이석민, 원시연.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301-329.
- 이석원, 변재관, 허수정, 김두리. (20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403-430.
- 이석원, 허수정, 변재관. (20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특성에 따른 보건의료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95-122.
- 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331-354.
- 이정재, 이임순, 이은실, 박보라, 김수용, 안혜영, 오세운 등. (2016).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
- 이준우, 이현아, 박종미, 배수문. (2015).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비용-편익 분석: 경기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57-84.
- 이철희, 정선영. (2015). 국내외국인력 취업현황 및 노동수급에 대한 영향, BOK 이슈노트. 2015-13. 한국은행.
- 장지연, 윤자영, 신현구. (2013).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효과 강화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재설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한국노동연구원.

- 전해영. (2014). 외국인재 유치현황과 시사점,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 정영진. (201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2(2), 319-354.
- 지은정. (2015).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보험 적용과제와 해외 유사정책의 시사점. 직업능력개발연구, 18(3), 89-124.
- 최정아. (2014). 보건복지 정보화 성과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2014, 01, N207, 98-109.
- 통계청. (2015a). 2014년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_____. (2015b).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_____. (2016). 2015년 고령자통계.
- 통계청 보도자료. (2016.12.8.)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한국고용정보원. (2015). 고용보험통계연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 <http://www.hf.go.kr/hindex.html>. 주택연금 한 눈에 보기. 2017.1.11. 인출.
- 함철호, 오혜연.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8, 229-250.
- 황나미. (2016).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 황남희. (2016).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ogue, L. Robert. (2005). *Use S.M.A.R.T goals to launch management by objectives plan*. TechRepublic.
- Doran, G. T. (1981). There's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 goals and objectives. *Management Review*. 70 (11), pp. 35-36.
-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7.8. Average effective age of labour-market exit and normal pensionable age in 2014)
- OECD. (2016), Poverty rate(indicator). doi:10.1787/Ofe1315d-en(Accessed on 28December 2016).
- KOSIS,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부록1. 전문가조사 조사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틀 안에서 수립된 2015년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에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시어 정확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박성희 연구원 044-287-8298, 이재량 연구원 044-287-8199)

조사기관: (주)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02-3279-2340, 유진호센터장)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_____세
전공영역	① 인구학 ② 사회학 ③ 사회복지 및 정책 ④ 가족학 ⑤ 보건(의료)학 ⑥ 경제학 ⑦ 기타		

(저출산 부문)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다음의 성과지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각각의 지표에 대해 (1) 구체적인지, (2) 성과지표가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3) 성과지표가 측정 가능한 지표인지, (4)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한 지표인지, 5) 2015년 1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가능한 지표인지에 관해 응답 범주를 참고하시어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5.7월)	시행령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2	육아휴직대체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수당의 단계적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5.7월)	시행령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1.3(%)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출산전후 휴가자수×100						
1-5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안 국회 통과	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	가족돌봄휴직 실행상황 점검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 지도 점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고용보험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확대 *고용보험법 고시개정('15.1월)	고용보험 법 고시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10	유연근무제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	유연근무제 이용률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대상인원*100	1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11	시간제 근무 활성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 목표 달성률	981(명)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12	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산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	9,240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13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강화	유연한 근무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워크 및 대체인력뱅크 설치 개수	3(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14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스마트워크 센터 이용률	6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과제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시간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지연 등을 감안한 목표 산출						
1-23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추진	가족 사랑의 날 시행률	91(%)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26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개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27	대체인력뱅크 구축 지원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비율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자 수/육아휴직 이용 공무원 수) ×100	7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 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 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 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28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	1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29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신혼부부 우선입주 시행 여부	1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30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률 *(사업승인호수/목표호수)×100	38(만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31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시설사업 기본 계획 및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계획 대비 실적	7(개 대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협약 체결 및 착공 계획 대비 실적	3(개 대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32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기혼자 가구 장학금 우대 시행사업	2(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33	결혼준비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프로그램	1)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170(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예비부부 교육인원 *건가센터 및 시민단체 교육인원	7,5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 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 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 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 작은혼인식 서명	2,000 (명)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34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전년 대비 3%증	1,946 (천명)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35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분만산부인과 누적설치 개소 수	12 (개소)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36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	계획 대비 실제 설치 병상 수 비율 *(실제 설치 병상 수/ 계획 설치 병상 수)×100	50(%)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37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	76,000 (건)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38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영유아 완전 접종률 *(기본접종 3종(B형간염3차, DTaP3차, 폴리오3차) 완전접종자수/접종대상자 수)×100	93(%)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39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고위험임산부 수혜자 수 *25,670명(고위험임산부 추계)* 82.2%(소득 기준(월평균 가구소득 150%) *80%(신청률)*1/2(하반기 시행)=8,440명	8,440 (명)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41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1-3급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을 반영하여	80(%)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 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 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 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2년 실적대비(81.5%, 575/793명) 약 7% 증가한 지원율 80%로 목표치 설정						
1-42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 '14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8,700 (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43	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PKU)환아 장애 예방률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없는 PKU환아수 / PKU환아수)*100	98.2(%)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44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해당년도 수혜받은 모든 대상자 수 * '14년 이월대상자수+ '15년 대상자수	90(천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사업참여자 만족도 점수	91.5(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강화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연간 수혜자수/연간출생아수×100	1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46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보육료 지원 만족도	62(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47 -①.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3-5세 누리과정 연수 교사 수	148,872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47 -②.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만3-5세아 취원율 *취원아 수/취원대상아 수×100	91.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 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 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 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48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	75(점)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49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국내입양비율 *국내입양아 수/ (국내입양아수+국외 입양아수)×100	61(%)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0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가구 장학금 우대 시행사업 건수	2(건)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2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업무매뉴얼 개정	100(%)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3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 여부	1(회)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 수	150 (개소)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5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7(개소)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6	보육시설 평가인증 관리 강화	평가인증율 *평가인증통과시설(누계)/전체어린이집	117(%)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7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9.3(만명)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1-58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보수교육이수인원 *시·도별 보수교육 인원 및 온라인보수교육 인원	80 (천명)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①②③④⑤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 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 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 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59	유치원 평가 내실화	유치원 평가 내실화 *(3년 주기내 매년 평가 실시 유치원 수/총 유치원 수)×100	34.2(%)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시간 연장, 휴일, 24시 어린이집 수	9,400 (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1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전체유치원)×100	99(%)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2	실수요 계층 입소 우선순위 부여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 대한 시설보육 서비스 강화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 수립	입소우선 순위관련 법률 개정 및 시스템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3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실시 *제공기관 지정 수	230 (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4	이웃 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1)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	90(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이용자수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이용 연인원	200,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 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 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 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6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1) 아이돌봄서비스이용 가구 수 *월별 시간제·종일제 실이용 가구 수 합계	54,000 (가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서비스이용자 만족도+아이돌보미활동만족도(각 만족도 합산 평균)	72.1(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6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 수 *(만 6세 이상) 실이용아동 수	16,000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7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종일제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수 *(만 1세 이하) 실이용아동 수	4,500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68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수혜율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 수/방과후 돌봄필요 아동 수x100	44.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70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1) 초등돌봄 교실 수	10,966 (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학부모 만족도	92.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71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	60(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72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7,5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 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 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 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 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73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 *(드림스타트 수혜아동 수/취약계층아동 수)×100	25.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74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의 위 기수준변화정도	17.0(p)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1-75	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퇴소아동 자립률 *(취업자+대학진학자)/퇴소아동 수×100	77.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27.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78	휴먼 네트워크 확대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협력기관 수	900 (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79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연인원) *50천명×800개소=40,000천명 (800개소 '15.12 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추정수)	40,000 (천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0	아동·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동아 리활동활성화	1) 동아리 지원사업 수혜 청소년 수	296,640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 14년 목표 대비 3% 상향 설정						
		2)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인원	2,900,00 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 13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5% 상향						
1-81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만족도 *국제교류 파견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점 수의 평균값	83.8(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 원	문화바우처 이용자 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와 기획사 업 참여자 수의 합계	155(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3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램 확대	2) 참여자 수료율 *(수료인원/참여인원)×100	96.2(%)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4	아동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아동안전사고사망수(14세이하)/10만명당	4.7(%)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5-①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국비 집행률 *(국비집행실적/전체국비)×100	95.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5-②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373(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6-①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CCTV 설치율 *(‘15년 CCTV 설치 개소/설치계획 3,630)×100	95(%)이 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6-②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자체 수/28)×100	9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7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전·후 성의식교육효과성	0.62(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8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 시설 확충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25,200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81(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89	이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1) 신고의무자 신고율 *(신고의무자 신고건수/전체신고건수)×100	39(%)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 학대 재발률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던 건수/ 당해년도 아동학대 판정건수)×100	12(%)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쉼터아동 심리치료 효과율 *(심리치료프로그램 완료 후 아동의 참여 후 향상된 평균점수/심리치료프로그램 완료 아동의 참여 전 평균점수)×100	2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1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 지속 추진	아동안전 지킴이 만족도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 과 만족응답 비율	73.8(%)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2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 지원강화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 *인터넷중독 개선율(본인 및 관찰자 대상 설문 실시) 측정	7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3- ①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흡연·음주청소년교육 및 치료지원건수	20,500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3- ②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중고등학교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청소년)	9.7(%)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3- ③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청소년 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이 있는 사람의 분율	14.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4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설치·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대상	5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영	어린이 수혜율						
1-95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효과율 *초기 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 점수-6개월 이후 SDQ-Kr 점수가 호전된 아동 청소년 수/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100	43.5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6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97	청소년정책 15년 시행계획 수립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3~'17) '15년 시행계획 수립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 부분)

II.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다음의 성과지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각각의 지표에 대해 (1) 구체적인지, (2) 성과지표가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3) 성과지표가 측정 가능한 지표인지, (4)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한 지표인지, 5) 2015년 1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가능한 지표인지에 관해 응답 범주를 참고하시어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1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근로자수 증가율 *[(당해연도 수혜인원-전년도 수혜인원)/ (전년도 수혜인원)]X100	2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13,0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당해연도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 인원 수	(명)					
2-3	베이비붐 세대 고령대책 추진	사업장 평균 정년연령 *조사 대상 사업장 중 단일정년 사 업장의 평균 정년	59.6(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개정안 시행령 마련 *법 개정 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 령 입법예고 여부	시행령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	취업자 수 *사업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3,000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령자특화직업훈련 참여자 취업률 *취업자수/(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수료인원X100	4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7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4개 돌봄분야 일자리 합계 *중사자 수	66,643(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 령자채용지원	사회적기업 소속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 비율	2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9	마을기업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사업 총 매출현황 *Σ(당해년도 마을기업 총 매출액)	803(억 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0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귀농·귀촌 가구증가율	5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귀농·귀촌 가구 수-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 수)/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 수]X100						
2-11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활성화	시니어창업 활성화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취업 성공 시니어 비율	2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2	과학 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1) 분석물 다운로드 수 *당해년도 목표 분석물 수×전년도 첨단 기술정보분석 분석물 1건당 다운로드 수×최근 3년 실적증가(22%) (3,000건×6.7건×1.22=24,522건) **상기 측정산식에 따라 '15년도 목표치는 24,522건이나 35,400건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35,40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확충 실적 *전년도 퇴직과학기술자 지원인원 수×0.8건(1인당 기술개발성과가 0.7건(산업기술 주요통계요람, 산기협, '12을 감안, 1인당 0.1건 상향 설정)	58(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3-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명예상담원 채용인원 수	1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13-②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진로코치 선발 *전국 선발 인원수	15,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4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추진실적 / 목표치 X 100	63(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5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전문인력채용 지원자 수	7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6	중·고령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50대 이상 여성멘토 *사이버멘토링에 가입한 50대 이상 여성 멘토 수	6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7	사회복지시설 등 연계 사회참여 지원	사회참여 실습 연계율 *(실습 연계자수/총 참여자수)X100	8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8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은퇴자 교육기부 참여인원 *대학생교육기부단 프로그램 참여 은퇴 인력 수	4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19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인력풀 확대 *(전년대비)×2 **누적인원기준	36,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0	정년(고령자)고용 캠페인	1) 고령자고용 강조주간 운영	기념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주요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건수	5건 이상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장년고용지원제도안내 책자 발간	책자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1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10,00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모니터링 건수							
2-22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 및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제도평가 연구용역 실시 *포럼 개최실적	재정목표 설정을 위한 전문가포럼(4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3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홍보효과도 조사 * $Y=(1/M+a \cdot bt)-1$ **M: 80%(최대목표치) a: 0.0032(연도증가에 따른 기본적 기본 증가값) b: 0.8512(연도증가시에 따른 누적 효과값) t: 회차(연도)	76.5(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4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추진 *(국민연금소득신고자 수/과세자료 보유자 수) ×100	6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5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수	82(만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2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연금보험 지원사업 지원액 증가율 *(당해연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액/ 전년도 지원액) x100	7.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7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1) 퇴직연금가입률 *(가입사업장 수/전체사업장 수)×100	16.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교육실시 횟수	150(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8	개인연금 활성화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 마련	정책자료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29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노후준비 인식도 *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 중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사람의 비율	93(%)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0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추진	금융상품자문업 도입방안 마련	발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1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개발	고령층 특화 보험상품 개발	보험상품 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2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만족도 *건강정보이용자의 콘텐츠(용이성, 유의 성, 구체성) 평가값의 평균	9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3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4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증진관리체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6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구축	*지역사회 주민 대상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체감도 설문조사						
2-35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 등록환자 수/사업지역 65세 이상 고혈압, 당 뇨병 추정환자 수) ×100	62(%)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6-①	U-health 서비스 확충	진료정보교류인증체계 구축	1(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6-②	U-health 서비스 확충	특허건수(지원금액 10억 원 당) *{(등록X0.6XSMART 가중치)+출원X0.4}/지 원예산(10억원당)	1.53(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7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입법 진행 현황	국회 제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38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확충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후설계지원법(가칭)국회통과	법률 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39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1) 노인일자리 확대 *Σ노인일자리 창출 수 합	337(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사업참여자 만족도	80.5(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0	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연금 지급 *(실제수급자수/지급대상자수)× 100 **기초연금 도입 당시 수급자 수(410만 명) 대비 약 10% 증가	450(만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1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1)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가입 허용 *법안 개정안 마련	한국주택 금융공사 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시 계약 유지 *시행령개정 여부	한국주택 금융공사 법 시행령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2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 개선 *급여업무 지침 개정	세부 지침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3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국민연금제도 개선 *급여업무 지침 개정	세부 지침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44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내실화	경영이양목표면적 달성률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면적/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면적) x100	1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5	농지연금 활성화	농지연금 가입률 *(연도말 유지건수/총 목표농가 수) x100	28.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6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성 확대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세부시행방 안 마련	개정 및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7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노인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지역 수	6(지역)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8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보험료 공시제도 강화 *보험료 공시제도 개선여부	공시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49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 건강 증진	전년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 *(전년대비 상담건수 증가량/전년 정신건 강증진센터 일반상담건수) x100	2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0	노인 구강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 보 건소 의치(틀니) 사업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수혜인원	8,516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1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수립·추진	체계적인 치매예방 치료관리 - 지역사회 치매조기 검진을 *(지자체에서 실시한 조기검진건수/만 60 세 이상 인구수)x100	10.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2	지역밀착형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추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	4,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진	*사례관리 대상자 수						
2-53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장기요양 질 평가 체계 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4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부담청구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개정	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인정자 중 치매환자	23.5(만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6	노인 운동 활성화	노인건강운동교실 강습실시 횟수	249,192(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7	농촌생활 활력 증진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증가율 *(2년차 실천율 - 사업 전 실천율)/사업 전 실천율x100	41.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8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 충	1)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수	1(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	1,08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광역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수	17(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9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 정건전성 확보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적립규모/14년 총 급여비 ≥24%	2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0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	950(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61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1)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노인자원봉사 클럽 수	1,700(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수	40(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2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 등 활성화	1) 원로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횟수	1,650(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원로 과학기술인 봉사활동 참가자 수	6,65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3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 발보급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수 합산	7,5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4	어르신문화프로그램개발·보급	1) 프로그램 수	400(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수혜자 수	13,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65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후 공공임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자금지원	8.5(억 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6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목표치(8%, 5%)≤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 x100	수도권 8%, 지방 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7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추진실적 *(추진실적/계획물량) x100	71(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68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생활 만족도	77.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70-①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보행환경 여건 개선 *보행환경 개선 실적/계획 x100	1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71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고령자 교육인원 *교육 참여 인원	200(만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72-①	독거노인 보호 강화	수혜노인 수	250(천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72-②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 강화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9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73	농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취약нга 인력지원 사업 (가사도우미)	91(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고객만족도 *항목 만족지수(사업절차, 유용성 등) 및 체감 만족지수에 평가항목 중요도 가중 치의 합산						
2-75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1)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	161(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효문화진흥원 설립 공정률 *누적투자율/ 총 사업비	80.1(%)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76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 례 개발	우수 프로그램 포상 수	17(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 부문)

Ⅲ.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1. 다음의 성과지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각각의 지표에 대해 (1) 구체적인지, (2) 성과지표가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3) 성과지표가 측정 가능한 지표인지, (4)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한 지표인지, 5) 2015년 1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가능한 지표인지에 관해 응답 범주를 참고하시어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1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확보	1) AA적용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여성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 x100	38.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AA적용사업장의 관리직 여성고용률 *(여성관리직수 / 전체관리직수) x100	17.20 (%)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①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4급 이상 여성공무원수/4급 이상	12.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전체공무원수)x100						
3-2-②	여성 대표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수/ 5급 이상 전체공무원수) x 100	13.8(%)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	1)여성교장·교감임용비율 *(여성 교장·교감/전체 교장·교감) x 100	30.1(%)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비율 *(여성교수 수/ 전체 교수 수) x 100	14.7(%)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1)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 수 *사업 참여 여학생 수 및 센터이용자수 총계	153,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만족응답수/ 전체응답수)×100	88(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 집합교육 수료자 인원 *전년교육목표대비 6.3%증	11,73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양성평등 사이버 원격교육 수료자 인원	49,46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6-①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환산	85.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6-②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1)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환산	9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6-②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2) 참여자 수료율 *(수료인원/참여인원) x 100	96.2(%)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7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새일센터 이용자 취업자 수 *4년간('11~'14)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수 평균 증가인원을 반영하여, '14년도 실적대비 6,913명 증가하여 상향 설정함	136,545(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8	이주·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결혼이민여성 인턴취업자 고용유지율 *결혼이민여성인턴 종료연도의 1년 경과 시점에서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현황	65.9(%)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9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중국, CIS지역 재외동포 자격 체류자 수	230,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0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 적극유치	온라인 사증발급시스템(HuNet Korea)을 통한 사증발급신청서 신청건수	85,00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11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	1)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외국인력 상담센터 상담실적 제고 *전년 목표대비 6.8% 증 ** '14년도에 출국만기보험 변경 등 제도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의상담건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14년 상담건수의 약 85%로 산정	290,00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전년목표와 동일	3,000(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2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1) 성실근로자재입국고용허가	3,6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국가 확대(국가수)	15(개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3-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서비스 이용자 수	18,000(천명, 연인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3-②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1) 다문화 예비학교	100(개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교원연수 참여인원 *집합 및 온라인 연수 참여 실적합계(15시간이상 집합원격연수 이수인원 대상)	26,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14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종합 안내센터 응답건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걸려온 인입전화에 대한 상담원의 실제 응답건수	1,500,00 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5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1)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참여 학교 수 *프로그램 참여 학교수(실적)/프로그램 참여 학교수(목표)	345(개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사업 참여 학교 수 *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실적)/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목표)	265(개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6- ①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1) 미래의 직업세계 책자 개발 *서적 발간 횟수	1(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진로 적성검사 이용 실적 *커리어넷 이용실적 자동집계	250(만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6- ②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직업심리검사 개발건수 및 직업정보·직업지도간행물 발간 건수	9(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17	학교내 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대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프로그램 참여자수/재학생수 x100	31.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19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등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개수	12(개 과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0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산학협력 중점교수 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실적	1,8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1	기업 맞춤형반 확대	기업 맞춤형반 *학교당 3.5개 반×지원학교 수	580(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2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계좌발급 대비 참여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참여자/계좌발급자 x100	68(%)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3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1)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율 *(재직근로자 직업훈련건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x 100	31.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사업주훈련 참여자 만족도	83.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만족도	82.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 제고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 향상도 *5점 척도 양면평가: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도 평가	81.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81.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5점 척도 양면평가: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도 평가						
		3)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훈련 참여자직무능력 향상도 *5점 척도 양면평가: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도 평가	82.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5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	6,000 (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산업현장교수지원 기업 수	1,300 (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6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력	34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7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WFK 봉사단 파견인원	4,71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29	벤처·창업체험프로그램도입(창업인턴제)	창업인턴 수료자 창업건수 *창업인턴 수료후 창업자수/선발인턴수×100	5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0	창업보육센터 지원	대학생 공동창업공간 조성 지원	7(누적, B개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1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맞춤특기병제 기술훈련 추천 및	1,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선발인원 * Σ지원확인서 발급인원(훈련미이수자) + Σ맞춤특기병 선발인원(훈련수료 후 지원자)						
3-32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청년 가젤형기업 지원 수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수/가젤형 기업 전체 지원 수)×100	20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3	성과보상기금 관련 세제혜택 확대	가입자 수 (누적)	10,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4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전문/희소계열 분야 지원 수	4(분야)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5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지원대학의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	100(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6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 *(형식교육참여추정치+비형식교육참여 추정치 - 동시참여추정치)/(만25세-만 64세 한국성인수) x 100	40(%)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7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1) 학습계좌 개설 인원수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학습계좌를 개설한 학습자 수 합계(누적 인원)	30,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2)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평균 접속 수 *연간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접속 수/12개월	4,30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8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	1) NCS 개발 개수	50(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新 자격설계분야 개수	17(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 종목 수	232(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4)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선정 종목 수	15(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5) 지원 특성화고 수	3(개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39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계약학과 학위 취득율 * $\Sigma(\text{학위 취득자/참여자}) \times 100$	86.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0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 *[지원전 재해율 - 지원후 재해율]/지원전 재해율] X 100	34.8(%)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1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취약계층(외국인·여성·고령) 교육지원 실적 *(교육실적/교육목표)×100/교육지원 횟수 입력	100,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42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1)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사업장 수	7,000 (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근로자 수	70,0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건강증진활동비용지원 금액	770(백만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3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사회심리재활만족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100점 만점)	82.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4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직업복귀자/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 X 100	53.9(%)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46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취업자/졸업대상자X100	55(%)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7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1) 통폐합 학교 수	50(개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학교수용시설 재정투자 심사 추진율 *적정·조건부 추진 건 수/중앙투자심사 신청건수X100	64(%)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8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수립	2015년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49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공급 *특별(우선)공급 추진 여부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0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해외·대체투자액/금융부문 기금투자액X100	2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1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보완 여부	'15년 상반기 보고서 작성완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 고령친화산업 육성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3-52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사용성 평가 실시 *사용성평가 품목 수	3(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3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지원	1)고령친화제품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여부	1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고령친화제품 개발연구 *연구과제 지원 실적	6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4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표준 제/개정 및 확인 수	16(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5	고령친화산업 국가 간 표준화 협력강화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Σ(회의참석+국제문건검토+전문위원회+국가 간 협력)	56(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6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표시제도 확대	제품서비스표준 확대 수	2(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7	화장품관련수출지원	1) 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 수	3(개국)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연간 화장품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 *(국내특허 출원건수X0.3)+(국내특허 등록건수X0.7)+(국외특허 출원건수X0.3)+(국외특허	41.7(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관련과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치 (단위)	제시된 성과지표를 각 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 주십시오.				
				(1)구체성 ① 매우 추상적 ② 다소 추상적 ③ 보통 ④ 다소 구체적 ⑤ 매우 구체적 ⑥ 모름	(2)과제와의 관련성 ① 매우 무관함 ② 다소 무관함 ③ 보통 ④ 다소 관련 ⑤ 매우 관련 ⑥ 모름	(3)측정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4)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름	(5)시간 내 달성 가능성 ① 매우 불가능 ② 다소 불가능 ③ 보통 ④ 다소 가능 ⑤ 매우 가능 ⑥ 모름
		출원등록건수(X0.7)X3						
3-58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 체험관 운영	1) 유공자(기업) 발굴 *유공자 표창 건수	12(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지역사회밀착형 체험관 운영 *체험관 운영 건수	5(개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59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체험관 참관객수 *연간(1~12월) 체험관 참관객수 측정	166,600(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3-60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수출정보DB구축·제공 건수	100(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해외진출 협의체 운영	4(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과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특성

〈부록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일반적 특성 비교

구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시·일용직근로자	전체 근로노인
전체(명)	428	605	2970
성별			
남	30.7	59.6	54.2
여	69.3	40.4	45.8
전체	100.0	100.0	100.0
연령대			
65-69세	19.9	62.1	43.5
70-74세	36.7	26.8	29.7
75세 이상	43.5	11.1	26.8
전체	100.0	100.0	100.0
평균연령	73.7	69.3	71.5
교육수준			
글자모름	8.7	5.3	7.4
글자해독	24.6	15.9	19.1
초등학교	40.5	34.2	36.0
중학교	11.7	18.7	15.4
고등학교	13.1	19.5	15.7
전문대 이상	1.4	6.4	6.4
전체	100.0	100.0	100.0
가구형태			
노인독거	34.9	19.7	18.7
노인부부	42.6	47.3	53.6
자녀동거	19.0	26.6	23.6
기타	3.5	6.4	4.5
전체	100.0	100.0	100.0
주관적 건강	2.97(.92)	3.26(.91)	3.11(.95)
균등화 가구소득	936.7(632.4)	1650.5(893.1)	1618.5(1601.6)

자료: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